

발간등록번호

11-1051000-00007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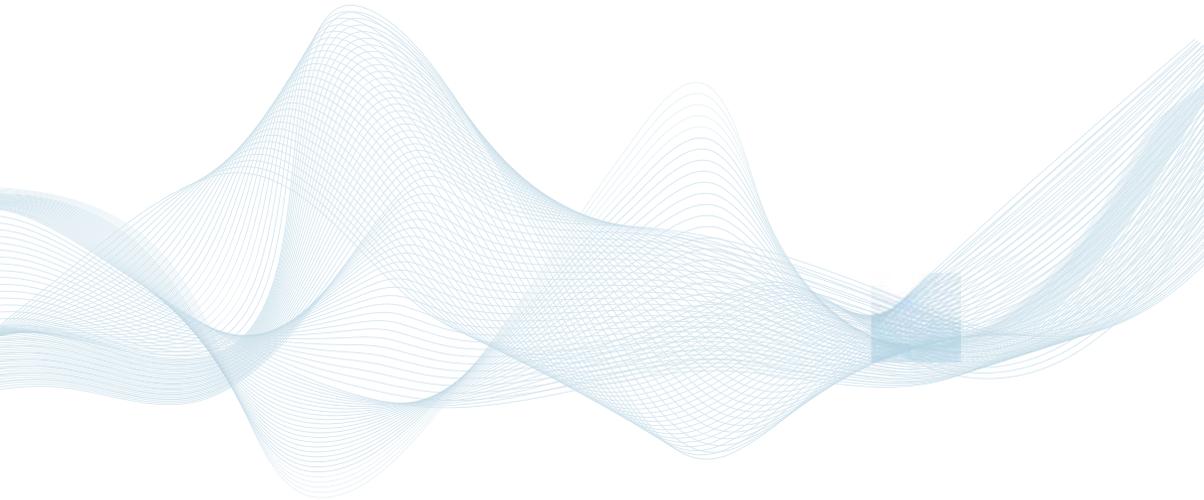
經濟白書

경제백서 2010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2010 경제백서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발간사

2010년은 한국전쟁 6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빠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함께 이루었습니다. 2010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서울 G20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기도 하였습니다. 불과 반세기만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하고, 세계 질서를 만들어가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공의 역사가 미래의 성공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경제는 주요국의 재정 위기와 경기 둔화 등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진이 계속되면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화된 가운데,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부문간 격차가 여전하고, 고령화로 인해 복지·교육·주택수요 등에 구조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복지를 꾸준히 넓히는 동시에 재정건전성도 확보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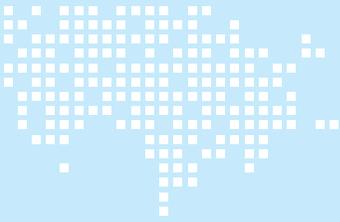
한국인 특유의 역동성과 도전정신의 DNA를 바탕으로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는 '선진한국'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2010년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지원을 지속하면서 동반성장과 서민 체감 경기를 개선하는 데 힘썼습니다. 서비스산업 육성, 녹색성장 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FTA 등 대외경협을 확대하는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2010년 경제백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 집필에 참여한 기획재정부 직원들의 구슬땀에 감사드립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Contents

제 1 장 2010년 우리경제의 종합평가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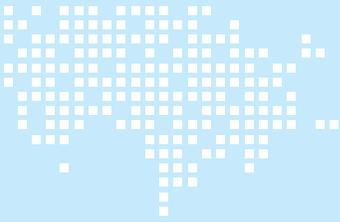
제 2 장 2010년 거시경제 개관 | 7

제1절 세계경제동향 | 9

1. 개관 | 9
2. 선진국 경제동향 | 10
3. 신흥시장 경제동향 | 15
4.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동향 | 19
5. 국제금융시장 동향 | 20

제2절 국내경제동향 | 26

1. 개관 | 26
2. 경제성장 | 28
3. 소비 및 투자 | 33
4. 경기 및 산업생산 | 37
5. 수출입 및 경상수지 | 39
6. 고용 | 50
7. 외환보유액 및 국가신용등급 | 54
8. 물가 | 58



9. 금융시장 | 60

10. 외환시장 | 67

제3 장 안정성장기반 강화 | 71

제1절 거시정책의 안정 운용 | 73

1.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 73

2. 통화정책 완화기조의 단계적 정상화 | 75

3. 한시적 대책의 점진적 철회 | 76

제2절 물가의 안정적 관리 | 77

1. 생필품 가격 안정 유도 | 77

2. 공공요금 안정 |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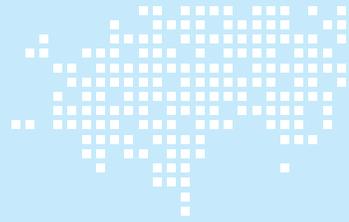
제3절 경제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 및 위기대응능력 제고 | 82

1. 자본 유출입에 따른 대응 및 위기대응능력 제고 | 82

2. 외환건전성 제고 | 84

3. 기업 구조조정 | 87

4. 부동산시장 안정 | 89



제 4 장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 | 93

제1절 일자리 창출 | 95

1. 국가고용전략회의 운영 | 95
2.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내실화 | 101
3. 인력양성 체계 개선 | 103
4.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 |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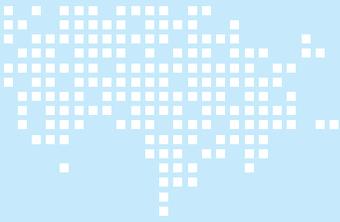
제2절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 110

1. 1과 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 110
2.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보완 | 112
3. 생활비 부담 경감 | 114

제 5 장 경제시스템 선진화 | 119

제1절 공공기관 선진화 | 121

1.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 121
2.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 123
3. 공공기관 경영자율권 확대 | 126



제2절 국고관리의 선진화 | 130

1. 국고금 관리체제 선진화 | 130
2. 국유재산 관리체계 선진화 | 134
3.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시행대비 | 139

제6장 지속성장 강화 및 미래대비 | 145

제1절 성장동력 확충 | 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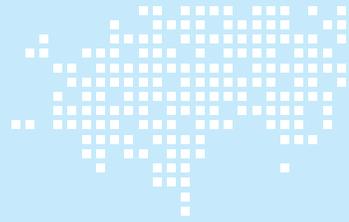
1. 신성장동력 투자활성화 | 147
2. 서비스산업 선진화 | 152
3. 4대강 살리기 사업추진 | 157

제2절 산업체질 개선 | 160

1.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 160
2.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 163

제3절 미래 위험요인 관리 | 168

1. 재정건전성 확보 | 168
2.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 170
3. 기후변화 및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 | 173



제 7 장 일자리창출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개편 추진 | 177

제1절 2010년 세제개편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 179

제2절 일자리 창출 지원 | 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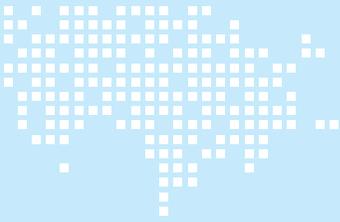
1.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 | 181
2. 고용유발 효과가 큰 업종 지원 강화 | 184
3. 취약계층 고용 인센티브 강화 | 185

제3절 서민 · 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 187

1. 저소득 근로자, 중소기업인, 농어민 등 지원 | 187
2. 중소기업 지원 | 191
3. 기부문화 활성화 | 196

제4절 지속성장 지원 | 198

1. 신성장동력 확충 지원 | 198
2. 기업경쟁력 제고 | 201
3. 저출산 · 고령화 대응 | 206



제5절 재정건전성 제고 | 208

1. 과표양성화 및 비과세 · 감면 정비 | 208
2. 신규세원 발굴 | 214
3. 기타 과세제도 보완 | 215

제 8 장 국제공조 강화와 개방 확대 | 219

제1절 적극적 국제공조와 국격제고 노력 | 221

1. G20 정상회의 개최 | 221
2. 글로벌 금융협력 강화 | 225
3. 지역적 금융협력 강화 | 230
4. 원조공여국의 역할 수행 | 235

제2절 전략적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강화 | 241

1. 글로벌 FTA 네트워크 강화 | 241
2. 신흥경제권과의 맞춤형 복합 경제협력 확대 | 245

부록 1. 국내 및 해외경제 일지 | 247

부록 2. 주요 경제 통계 | 275

- 〈표 2-1〉 미국경제 주요지표 | 11
- 〈표 2-2〉 일본경제 주요지표 | 13
- 〈표 2-3〉 유로지역경제 주요지표 | 15
- 〈표 2-4〉 중국경제 주요지표 | 17
- 〈표 2-5〉 인도경제 주요지표 | 18
- 〈표 2-6〉 동아시아지역 GDP 성장률 | 18
- 〈표 2-7〉 유종별 국제유가 추이 | 19
- 〈표 2-8〉 주요 원자재 가격추이 | 20
- 〈표 2-9〉 주요국 기준금리 | 22
- 〈표 2-10〉 국제금리 | 22
- 〈표 2-11〉 외평채 가산금리 및 CDS 프리미엄 | 23
- 〈표 2-12〉 글로벌 주가 | 24
- 〈표 2-13〉 주가변동성지수(VIX) | 24
- 〈표 2-14〉 주요 환율 | 25
- 〈표 2-15〉 주요 거시경제지표동향 | 28
- 〈표 2-16〉 경제활동별 성장률 | 29
- 〈표 2-17〉 지출항목별 성장률 | 30
- 〈표 2-18〉 국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 | 31
- 〈표 2-19〉 교역조건 변화율 및 GNI 증가율 | 31
- 〈표 2-20〉 경제규모 및 국민소득 | 32
- 〈표 2-21〉 GDP 디플레이터 | 32
- 〈표 2-22〉 총저축률 및 투자율 | 33
- 〈표 2-23〉 소비 증가율 | 34
- 〈표 2-24〉 부문별 가계소비 | 35
- 〈표 2-25〉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 36
- 〈표 2-26〉 건설투자 증가율 추이 | 36
- 〈표 2-27〉 2010년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 37

- 〈표 2-28〉 2010년 선행지수 전년동월비 추이 | 38
- 〈표 2-29〉 생산·출하·재고 및 서비스업 활동 증가율 추이 | 39
- 〈표 2-30〉 수출 | 40
- 〈표 2-31〉 수입 | 41
- 〈표 2-32〉 연도별 무역수지 | 41
- 〈표 2-33〉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증가율 | 42
- 〈표 2-34〉 품목별 수출 | 43
- 〈표 2-35〉 품목별 수입 | 44
- 〈표 2-36〉 주요지역별 수출실적 | 45
- 〈표 2-37〉 주요지역별 수입실적 | 46
- 〈표 2-38〉 주요지역별 무역수지 | 47
- 〈표 2-39〉 경상수지 | 48
- 〈표 2-40〉 상품수지 | 49
- 〈표 2-41〉 서비스수지 | 49
- 〈표 2-42〉 본원 소득수지 및 이전 소득수지 | 50
- 〈표 2-43〉 취업자 증감 | 52
- 〈표 2-44〉 주요 고용지표 | 53
- 〈표 2-45〉 한국의 외환보유액 추이 | 54
- 〈표 2-46〉 2010년 말 국가별 외환보유액 순위 | 55
- 〈표 2-47〉 주요지표별 물가상승률 | 59
- 〈표 2-48〉 주요지표 물가상승률 | 60
- 〈표 2-49〉 주요금리 및 금리격차 추이 | 61
- 〈표 2-50〉 주식시장 동향 | 62
- 〈표 2-51〉 투자자 주체별 주식순매수 추이 | 63
- 〈표 2-52〉 금융기관 수신 추이 | 64
- 〈표 2-53〉 기업자금 조달 | 65
- 〈표 2-54〉 기업자금사정 | 66

- 〈표 2-55〉 가계대출 현황 | 66
- 〈표 2-56〉 가계신용 연체율 추이 | 67
- 〈표 2-57〉 2009년 달러/원 환율추이 | 68
- 〈표 2-58〉 달러/원 환율 변동성 추이 | 69
- 〈표 2-59〉 은행간 외환거래 추이 | 69

- 〈표 3-1〉 2010년 총지출 규모 | 74
- 〈표 3-2〉 2010년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실적 | 74
- 〈표 3-3〉 2010년 재정수지 | 75
- 〈표 3-4〉 공공요금 상승률 | 79
- 〈표 3-5〉 「자본유출입 변동완화방안」(6. 9일)의 주요내용 | 83
- 〈표 3-6〉 외채 건전성 지표의 추이 | 84
- 〈표 3-7〉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현황 | 85
- 〈표 3-8〉 외환건전성 부담금의 주요 내용 | 86
- 〈표 3-9〉 외환건전성 부담금의 부과 · 활용체계 | 87
- 〈표 3-10〉 기업구조조정 추진경과 | 88
- 〈표 3-11〉 월간 아파트 거래량 | 90
- 〈표 3-12〉 미분양 주택 추이 | 91

- 〈표 4-1〉 2010년 국가고용전략회의 개최 일시 및 안건 | 100
- 〈표 4-2〉 2010년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 102
- 〈표 4-3〉 일자리 사업 효율화 추진 전 · 후 | 103
- 〈표 4-4〉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대한 평가 | 106
- 〈표 4-5〉 노사정 합의문 주요내용 | 106
- 〈표 4-6〉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내용 | 107
- 〈표 4-7〉 10년 건강보험 보장범위 확대 내용 | 114

- 〈표 5-1〉 공공기관 재무 현황 | 122

- 〈표 5-2〉 연봉구조 설계 | 124
- 〈표 5-3〉 경영자율화 확대 대상기관 심사기준(안) | 127
- 〈표 5-4〉 경영자율화 확대 내용 예시 | 128
- 〈표 5-5〉 경영자율화 확대 기관의 고유 성과 목표 | 128
- 〈표 5-6〉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 129
- 〈표 5-7〉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선 내용 | 136
- 〈표 5-8〉 결산보고서의 구성 | 139
- 〈표 5-9〉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추진전략과 과제 | 142

- 〈표 6-1〉 녹색인증 관련 세제지원현황 | 149
- 〈표 6-2〉 서비스수출 비중 | 155
- 〈표 6-3〉 4대강 살리기 사업 투자현황 | 158

- 〈표 7-1〉 최근 3년간 기업상속 공제제도 개정내용 | 183
- 〈표 7-2〉 우대 내용(기준공제) | 190
- 〈표 7-3〉 우대 내용(기준 공제율) | 191
- 〈표 7-4〉 주류제도 면허 시설기준변경 | 196
- 〈표 7-5〉 2010년 기본관세율 개정내용 | 199
- 〈표 7-6〉 회계기준 개편내용 | 202
- 〈표 7-7〉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 203

- 〈표 8-1〉 2010년 G20관련 주요회의 | 222
- 〈표 8-2〉 2010년 신탁기금 출연 현황 | 227
- 〈표 8-3〉 작년 12월 이후 국제금융기구별 신규 진출 현황 | 229
- 〈표 8-4〉 우리나라의 연도별 ODA 지원규모 | 235
- 〈표 8-5〉 KSP 지원대상국 연도별 현황 | 239
- 〈표 8-6〉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 244

- [그림 2-1] GDP 규모 및 성장률 | 29
- [그림 2-2] 정부 및 민간부문의 성장기여도 | 29
- [그림 2-3]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p) | 37
- [그림 2-4] 선행지수 전년 동월비 추이(%) | 38
- [그림 2-5] 장단기 금리 추이 | 61
- [그림 2-6] 회사채 금리 추이 | 61
- [그림 2-7] 주가지수 추이 | 62
- [그림 2-8] 종합 주가지수와 외국인 순매수 | 62
- [그림 2-9] 2009년 달러/원 환율추이 | 68

- [그림 3-1] 기준금리 추이 | 75

- [그림 4-1] 취업자 증감 추이 | 101

- [그림 6-1] 신성장동력 투자활성화 개념도 | 148
- [그림 6-2] 녹색인증 신청 및 인증 추이 | 150
- [그림 6-3] 국가온실가스 관리체계 | 150
- [그림 6-4] 최저한세율 체계 개편안 | 165
- [그림 6-5] 일반 R&D 세액 공제율 개편안 | 165
- [그림 6-6] 인구구조의 변화 추이 | 171

- [그림 7-1] R&D 세액공제율 개편 | 194
- [그림 7-2] 최저한세율 체계 개편 | 195

- [그림 8-1] 전세계 지역무역협정(RTA) 발효 현황 | 242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1

2010년 우리경제의 종합평가

제1장 2010년 우리경제의 종합 평가¹⁾

성공적인 위기극복

2010년 우리 경제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6.2% 성장하였다. 1인당 국민소득은 2만불을 넘었으며, 수출규모는 세계 7위로 부상하였다. 해외언론들과 국제기구들도 우리를 위기극복의 모범사례(textbook recovery)로 높게 평가하였다. 특히 2010년 11월에는 G20 정상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위상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경제는 국제금융시장 불안 완화, 교역량 증가, 각국의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전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탈피하여 5.1% 성장하였다. 선진국은 3.0%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 반면,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은 내수와 수출이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7.4%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세계경제 회복을 주도하였다.

유가 등 국제원자재가격은 세계경제 회복과 함께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전년대비 상승하였다.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전년대비 26% 상승한 연평균 78\$/B를 기록하였으며, 국제 곡물가격은 러시아, 미국 등 주요 산지의 기상악화로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국제금융시장은 세계경제 회복에 따라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으나, 2010년 상반기중 유럽국가 재정위기 등 불안요인이 대두되면서 주가·환율 등 주요 금융지표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1) 집필자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남병훈 사무관, 박지원 사무관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및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회복을 바탕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6.2%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8.0%의 높은 회복세를 보인 이후, 하반기에는 성장 속도가 4.5%로 정상화되었다. 2009년 경기위축을 보완했던 정부부문의 성장기여도는 줄어들고 민간부문의 기여도가 늘어나는 등 경기회복의 자생력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년대비 5.5% 증가하여 실질 GDP 성장률을 하회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부진했던 고용은 2010년 들어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다. 공공부문 취업자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에 따라 민간부문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는 연간 32.3만명 증가하였다.

소비자물가는 2.9%의 상승률을 보이며 안정되었다. 기상악화에 따른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9~10월중 소비자물가가 크게 상승하였으나, 채소류 가격이 정상화되면서 11월 들어 3%대 초반으로 하락하였다.

경상수지는 282.1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2009년의 327.9억달러 흑자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하였지만 사상 네 번째로 큰 규모에 해당했다. 상품수지는 수출호조에 힘입어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서비스수지는 경기회복에 따라 해외여행 수요 회복, 기업의 지적재산권 사용 및 해외진출의 확대 등으로 인해 적자가 증가하였다.

경기회복 공고화

2010년 정부는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도록 거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가운데 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였다. 재정의 조기집행(상반기 61.0%)을 통해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면서 중기적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을 병행하였으며,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 희망근로사업 등 한시적 위기대응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였다.

정부는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하여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제도, 외화대출 관리강화,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관리강화 등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마련하고, 외환건전성부담금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경제체질 개선과 금융부실 확산 방지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정부는 2010년 1월에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설치하여 고용을 국정운영의 최우선에 두고 장·단기 과제를 추진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위기로 악화된 고용을 회복하기 위해 구직 DB와 구인 DB를 확충하고, 한시적인 세제·재정 지원을 통해 취업애로계층의 취업을 지원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와 정책을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서비스산업 선진화, 노동유연성 제고, 인력양성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였다. 10월에는 청년층의 고용여건 개선에 특화된 ‘청년 내 일 만들기’ 대책을 마련하여 2011~2012년간 7만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 창출 목표를 제시하였다.

한편, 위기로 어려움이 컸던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친서민정책을 추진하고, 경제성과를 사회 전반으로 골고루 확산시키기 위해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든든학자금, 미소금융, 희망키움통장 등을 통해 일과 교육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한편, 중증장애인 연금을 도입하고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였다. 서민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한편, 보금자리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저소득층에 대한 저리의 주택자금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였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하였다.

위기이후 재도약 준비

정부는 신성장동력 확충과 함께 대외리더십 제고, 개방확대 등을 통해 중장기 성장기반을 강화하였다.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녹색성장을 위해 녹색인증제를 시행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G20 정상회의의 개최와 FTA 네트워크 확대 등으로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였다. 非G7국가에서 최초로 개최된 G20 서울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거시정책 공조, 금융규제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 기존 의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글로벌 금융안전망, 개발 등 우리나라가 제안한 새로운 의제에 대해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였다. 한-미, 한-EU FTA 등 FTA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적 영토를 확장하는 한편, 개도국에 대한 ODA 지원 확대와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을 통해 대외협력을 강화하였다.

미래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기반을 강화하고, 출산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재정관리시스템을 개선하였다.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2

2010년 거시경제 개관

제2장 2010년 거시경제 개관

제1절 세계경제동향

1. 개 관²⁾

2010년 세계경제는 5.1%의 성장률³⁾을 기록하며 글로벌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되었다. 선진국이 3.0%의 성장세를 보인 반면, 신흥국은 7.4%⁴⁾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 신흥국의 회복속도는 빠르나, 선진국의 회복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린 두 속도의 회복(two-speed recovery) 모습을 보였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2010년 상반기에는 빠른 회복세를 보여 당초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나, 하반기 들어 유럽 재정위기,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성장세가 다소 약화되었고 고용과 주택시장이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미국·일본·유로 등은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양적완화정책을 확대하는 등 기존의 완화된 통화정책을 유지 또는 확대하였다.

신흥국의 경우 수출과 내수의 증가세가 모두 유지되면서 실물경기의 회복세가 비교적 빠르게 나타났다. 특히 중국은 GDP규모가 일본을 앞서며 G2로 부상했으며, 외환보유고 다변화, 위안화의 점진적 국제화를 추진

2)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김현영 사무관

3) IMF World Economic Outlook('11.6월)

4) IMF World Economic Outlook('11.6월)

하며 위상이 강화되었다. 한편 식료품 가격 상승 등에 따라 물가상승세가 확대되고, 외국인 자본 유입에 따른 자산 버블 압력이 높아진 주요 신흥국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긴축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였다. 또한 브라질·태국·인도네시아 등은 금리인상에 앞서 급격한 자본유출 발생 시 금융시장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자본 규제를 강화하였다.

국제금융시장은 실물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다만, 일부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부각되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급증하는 등 일시적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2. 선진국 경제동향

가. 미국⁵⁾

미국 경제는 2010년 중 3.0% 성장하여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분기별로는 1/4분기 전분기대비 연율로 3.9% 성장하였으며 2/4분기에는 수입증가로 순수출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정부지출이 증가하면서 성장률이 3.8%를 기록하였다. 3/4분기는 2.5%, 4/4분기는 2.3%를 기록하며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민간소비는 고용시장의 완만한 회복과 저금리 지속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등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세가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설비투자는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주택투자는 주택구매자에 대한 세제혜택 종료(4월)를 앞두고 주택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 2/4분기 22.8% 증가하였

5)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강희민 사무관

으나, 세계혜택 종료 이후 다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경상수지는 수출보다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2009년에 비해 적자 폭이 확대되었다. 물가상승률은 1/4분기에는 다소 높았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되는 흐름을 보였고, 고용시장은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등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으나 개선 속도는 더딘 모습을 보였다.

미 연준은 2008년 12월 이후 기준금리를 0~0.25%로 유지하였으며, 2010년 8월에는 이미 보유 중인 모기지 관련 증권의 만기 도래로 회수되는 자금을 미 국채에 재투자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11월에는 2011년 6월 말까지 8개월간 6,000억 달러의 국채를 매입하는 추가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는 등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였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었다. 11월에는 여야 합동의 재정개혁위원회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총 3.8조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안한 바 있다.

〈표 2-1〉 미국경제 주요지표

(단위 : 전기비 연율, 전년동기비, %, 억달러)

	2009년					2010년 ^p				
		1/4	2/4	3/4	4/4		1/4	2/4	3/4	4/4
실질 GDP ¹	△3.5	△6.7	△0.7	1.7	3.8	3.0	3.9	3.8	2.5	2.3
- 민간소비	△1.9	△1.5	△1.9	2.3	0.4	2.0	2.7	2.9	2.6	3.6
- 고정투자	△18.8	△32.2	△17.0	0.7	△3.8	2.6	1.2	19.5	2.3	7.5
(설비투자)	△17.8	△31.3	△15.8	△3.3	△3.7	4.4	6.0	18.6	11.3	8.7
(주택투자)	△22.2	△35.4	△21.3	17.8	△3.8	△4.3	△15.3	22.8	△27.7	2.5
- 정부지출	1.7	△1.7	5.9	1.3	△0.9	0.7	△1.2	3.7	1.0	△2.8
- 총수출	△9.4	△29.0	△0.5	13.9	23.5	11.3	7.2	10.0	10.0	7.8
- 총수입	△13.6	△34.0	△15.0	16.3	17.4	12.5	12.5	21.6	12.3	△2.3
경상수지	△3,766	△953	△828	△979	△1,006	△4,709	△1,183	△1,203	△1,201	△1,122
소비자물가 ²	△0.4	0.0	△1.2	△1.6	1.4	1.6	2.4	1.8	1.2	1.3
실업률	9.3	8.2	9.3	9.7	10.0	9.6	9.7	9.6	9.6	9.6

주 : 1) 전기비연율 2) 전년동기비
 자료 : 미 상무부, BLS

나. 일본⁶⁾

일본 경제는 2010년 중 전년의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정책 지원 효과, 수출 증가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다만, 민간 소비와 수출 둔화로 4/4분기중 경제성장률이 하락세로 전환되며 경기 회복세가 다소 약화되었다. 민간소비는 자동차 구입보조금 제도 종료 및 담배세 인상 등으로 3/4분기에 선취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4/4분기에는 크게 위축되며 전기대비 감소하였고,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제 회복을 견인하였던 수출도 엔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4/4분기에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주택투자는 친환경주택 보조금제도 시행 등의 영향으로 4/4분기 들어 플러스로 전환되었고, 설비투자도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2010년 소비자물가는 경제 전체의 수요 부족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09년에 이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디플레이션의 장기화는 기업실적을 악화시키고 임금수준을 끌어내려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등의 악영향이 우려된다.

엔/달러 환율은 2008년 하반기 이후 강세 기조가 계속되면서 2010년 10월에는 80엔대 초반까지 진입하였다. 급격한 엔고로 인해 자동차, 철강, 전기기계, 정밀기계 업종 등을 중심으로 일본 기업이 수출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또한 일본기업이 엔고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해외투자 및 현지생산 확대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어 일본내 설비투자 및 고용을 억제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었다.

6)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김현영사무관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디플레이션의 장기화 및 급격한 엔고에 대해 경계감을 표시하며 각종 금융완화 정책 및 외환시장 개입 등 본격적인 대책추진을 강화하였다. 지난 2009년 11월 디플레이션을 선언하고 대책 마련에 돌입한 일본정부는 2010년 10월 「엔고·디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급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에 국비 5.1조엔, 사업비 21.1조엔을 책정하였다. 일본 은행도 2010년 10월 정책금리를 0.1%에서 0~0.1%로 추가 인하하였고, 2010년 10월 기존 30조엔 규모의 고정금리대출프로그램 외에 신규로 5조엔 규모의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등의 「포괄적 금융완화정책」을 발표해 양적완화정책을 확대하였다.

〈표 2-2〉 일본경제 주요지표

(단위 : 전기비, 전년동기비, %조엔)

	2009년					2010년				
		1/4	2/4	3/4	4/4		1/4	2/4	3/4	4/4
실질 GDP ¹⁾	△6.3	△4.2	2.4	△0.4	1.0	4.0	2.3	0.0	0.9	△0.7
- 민간소비	△1.0	△1.3	1.3	0.5	0.7	1.8	1.0	△0.2	0.8	△1.0
- 설비투자	△19.3	△8.7	△5.0	△2.1	1.7	2.1	1.6	2.6	1.0	0.0
- 정부지출	1.5	0.7	0.1	0.1	0.7	2.3	△0.4	1.2	0.3	0.4
- 총수출	△23.9	△24.8	10.1	9.3	5.1	23.9	8.5	5.2	1.6	△0.8
광공업생산	△21.9	△20.0	6.5	5.3	5.9	16.4	7.4	0.7	△1.0	△0.1
소비자물가 ²⁾	△1.4	△0.1	△1.0	△2.2	△2.0	△0.7	△1.2	△0.9	△0.8	0.1
실업률	5.1	4.5	5.1	5.4	5.2	5.1	5.1	5.1	5.0	5.0
경상수지	13.3	2.5	3.3	4.0	3.4	17.1	4.5	3.9	4.4	4.3

주 : 1) 전기비 2) 전년동기비
자료 : 일본 통계청

다. 유로지역⁷⁾

2009년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유로 경제는 2010년 경기

7)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김현영사무관

회복 속도가 국가별로 상이해 역내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독일, 프랑스 등 중심국은 플러스 성장한 반면,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등 재정 위기국은 마이너스 성장하였다. 전반적으로는 수출이 경기회복을 주도하는 가운데, 정부지출의 비중이 줄어들고 민간소비의 비중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수출 부문의 경우 세계 교역량 증가와 유로화 약세에 힘입어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3/4분기 이후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유로화의 강세 전환 등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유로지역 소비자물가는 점진적으로 상승폭이 확대되어 2010년 4/4분기에는 ECB의 중기물가관리 목표치인 2.0%에 달했다. 한편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10.0%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국가별로는 독일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인 반면, 스페인은 20%를 상회하며 역내 최고 수준을 유지하며 고용 여건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재정운용, 취약한 세수기반, 재정 관리의 한계 등 유로지역의 구조적인 문제가 내재된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그리스 등을 중심으로 재정위기가 발생하였다. 특히 단일 통화의 사용으로 독립적인 통화·환율 정책을 사용할 수 없어 경상수지 불균형 등 역내 불균형이 해소되지 못한 점이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2010년 5월 1,100억유로의 그리스 구제금융, 7,500억유로 규모의 유럽안정메커니즘이 마련되고, 각국이 공공부문 임금동결, 연금개혁, 세제개편 등 재정건전화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재정위기가 다소 진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11월 아일랜드에 대한 850억유로의 구제금융 이후 금융위기 불안요인이 포르투갈, 스페인 등으로 이동하면서 다시 위기 전염에 따른 우려가 높아졌다.

〈표 2-3〉 유로지역경제 주요지표

(단위 : 전기비, 전년동기비, %, 억유로)

	2009년					2010년				
	1/4	2/4	3/4	4/4		1/4	2/4	3/4	4/4	
실질 GDP ¹⁾	△4.1	△2.5	△0.2	0.4	0.2	1.7	0.4	1.0	0.3	0.3
- 민간소비	△1.1	△0.5	0.0	△0.2	0.3	0.8	0.4	0.2	0.2	0.3
- 고정투자	△11.3	△5.2	△2.2	△1.3	△1.1	△0.8	△0.2	2.2	△0.2	0.0
- 정부지출	2.5	0.7	0.6	0.5	0.0	0.7	0.0	0.2	0.2	△0.1
- 총수출	△13.1	△8.7	△1.0	2.7	2.2	11.1	2.8	4.2	1.7	1.7
소비자물가 ²⁾	0.3	1.0	0.2	△0.4	0.4	1.6	1.1	1.5	1.7	2.0
실업률	9.5	8.8	9.4	9.7	9.9	10.0	9.9	10.0	10.1	10.1
경상수지	△585	△297	△126	△84	△77	△367	△179	△186	△62	60
독일 GDP ¹⁾	△4.7	△3.4	0.5	0.7	0.3	3.6	0.6	2.1	0.8	0.4
프랑스 GDP ¹⁾	△2.7	△1.5	0.1	0.3	0.6	1.5	0.3	0.5	0.4	0.3
이탈리아 GDP ¹⁾	△5.2	△2.9	△0.3	0.4	△0.1	1.3	0.4	0.5	0.3	0.1

주 : 1) 전기비 2) 전년동기비
 자료 : 유로통계청

3. 신흥시장 경제동향

가. 중국⁸⁾

중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힘입어 2010년 연간으로 10.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분기별로는 1/4분기에 11.9% 성장하면서 다소 과열 양상을 보였지만, 지급준비율 및 기준금리 인상 등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률이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산업생산은 하반기로 갈수록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여전히 10%이

8)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강희민 사무관

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고, 소매판매도 가전하향(家電下鄉), 기차하향(汽車下鄉) 이구환신(以舊換新) 등 소비촉진 정책 연장⁹⁾,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2010년 연간으로 23.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급증한 고정자산 투자는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어 가는 흐름을 보였다. 경기회복과 기저효과로 인해 상반기에는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초과했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 수출이 증가하면서 경상수지는 3,05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009년 비례 흑자폭이 소폭 증가하였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식품가격이 급등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상승세가 확대되었으며 연간으로도 정부 목표치인 3%를 초과한 3.3%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이에 인민은행은 2010년 중 지급준비율을 6차례(15.5%→18.5%), 기준금리를 2차례 인상(2.25%→2.75%)하는 등 점진적으로 통화정책을 정상화하였다.

2009년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부동산 가격은 2010년에 들어서면서 상승세가 더욱 확대되었다. 이에 중국 정부는 2010년 4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가구당 1주택 이상 소유 제한(北京) 등 강력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였고,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부동산 가격은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되는 흐름을 보였다.

9) 가전하향 : 농민이 TV, 세탁기 등 가전제품 구입시 보조금(구입가의 13%)을 지급하는 제도
 기차하향 : 3륜차, 소형화물차 등 구입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2011년 2월말 폐지)
 이구환신 : 낡은 가전제품 및 자동차를 신제품으로 교체시 보조금(구입가의 10%)을 지급하는 제도(2011년 2월말 폐지)

〈표 2-4〉 중국경제 주요지표

(단위 : 전년동기비, %)

	2009년					2010년 ^p				
		1/4	2/4	3/4	4/4		1/4	2/4	3/4	4/4
실질 GDP	9.2	6.2	7.9	9.1	10.7	10.3	11.9	10.3	9.6	9.8
산업생산	11.0	5.1	9.1	12.4	18.0	15.7	19.6	16.0	13.5	13.3
소매판매	15.5	14.9	15.0	15.4	16.9	23.3	23.7	23.8	23.9	22.0
고정자산투자(누계)	30.5	28.6	33.6	33.3	30.5	24.5	26.4	25.5	24.5	24.5
경상수지(억달러)	2,971	-	1,345	-	1,626	3,054	365	651	1,017	1,021
수출	△16.0	△19.7	△23.4	△20.3	0.2	31.3	28.7	40.9	32.2	24.9
수입	△11.2	△30.8	△20.2	△12.0	22.3	38.9	64.7	44.1	27.4	29.5
소비자물가	△0.7	△0.6	△1.5	△1.3	0.7	3.3	2.2	2.9	3.5	4.7
M2 증가율	26.5	21.5	26.7	28.7	28.9	20.6	24.7	20.3	18.6	19.5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등

나. 인도¹⁰⁾

2010년 인도 경제는 1/4분기(4-6월) GDP가 전년동기대비 9.3% 증가하는 등의 고성장을 시현하며,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이러한 인도경제의 고성장 등으로 인해 해외자본 유입이 증가하여 주식시장의 호황과 루피화 절상이 지속되었다. 2010년 12월 뭘바이 센섹스 지수는 연초대비 약 20% 상승하였고, 루피/달러 환율도 지속적으로 떨어져 연초대비 약 2.5%, 2010년 3월 고점대비 약 12.6% 하락하였다.

한편 농업생산이 회복됨에 따라 물가상승 압력은 2009년에 비해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최대 정책 현안으로 삼고, 2010년 7번의 금리 인상(Repo 금리 4.50%→6.25%, [역Repo 금리 3.5%→5.75%])을 단행하였다.

10)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김현영 사무관

〈표 2-5〉 인도경제 주요지표

(단위 : 전년동기비, %)

	2009년					2010년				
		1/4	2/4	3/4	4/4		1/4	2/4	3/4	4/4
실질 GDP	8.0	6.3	8.6	7.3	9.4	8.5	9.3	8.9	8.3	7.8
산업생산	5.3	△1.8	2.9	6.1	14.0	8.2	9.6	6.8	8.6	7.7
소비자물가	12.4	8.9	11.7	13.3	15.3	10.4	13.6	10.4	9.2	9.0

자료 : 블룸버그

다. 동아시아지역¹¹⁾

동아시아지역은 2010년 세계 교역규모 증대 등에 따른 수출 증가로 싱가포르의 성장률이 14.5%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2/4분기 이후 유럽 재정위기와 달러 약세로 인한 수출 감소로 인해 성장률이 다소 하락하였다. 경기 회복세와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으로 인해 소비자물가는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표 2-6〉 동아시아지역 GDP 성장률

(단위 : 전년동기비, %)

	2009년					2010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대만	△1.9	△8.6	△7.2	△1.2	9.2	10.9	13.6	12.9	10.7	7.1
홍콩	△2.7	△7.9	△3.4	△2.1	2.5	7.0	7.0	6.7	6.9	6.4
싱가포르	△0.8	△8.4	△1.3	2.1	4.6	14.5	16.4	19.4	10.5	12.0
말레이시아	△1.6	△6.2	△3.9	△1.2	4.6	7.2	10.1	9.0	5.3	4.8

자료 : 블룸버그

11)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김현영 사무관

4.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동향¹²⁾

2010년 국제유가는 글로벌 경기회복과 함께 두바이유 기준으로 전년대비 평균 26% 상승하였다. 3/4분기에는 남유럽 재정위기 등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조정받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는 2009년 글로벌 위기 극복과정에서 비롯된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을 바탕으로 경기회복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연초부터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표 2-7〉 유종별 국제유가 추이

(단위 : \$/b, 기간중 평균유가)

구 분	2009년	2010년				
			1/4	2/4	3/4	4/4
Dubai	61.9	78.1	76.0	78.1	74.0	84.4
Brent	61.7	79.7	76.5	78.3	76.9	86.9
WTI	61.9	79.5	78.8	77.9	76.1	85.2

자료 : petronet

원유 뿐만 아니라 비철금속 및 곡물 등 여타 국제원자재 가격도 풍부한 유동성과 경기회복 기대감을 바탕으로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하였다. 원유를 제외한 주요 17개 원자재로 구성된 대표적 원자재지수인 로이터 상품지수의 경우 2009년에 비해 23% 상승하였다.

비철금속의 경우, 품목별로 수급여건 등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주석(52.8%), 구리(45.7%), 알루미늄(29.2%) 등 6대 비철금속 모두 전년대비 평균가격이 25~53%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구리, 주석 등 일부품목의 경우 금융위기 전인 2008년의 최고점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승하기도 하였다.

12) 집필자 :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김현익 사무관

국제곡물의 경우, 옥수수(15.3%), 소맥(10.5%), 대두(3.7%), 원당(22.6%) 등 주요 곡물이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하반기 들어서는 러시아(소맥), 미국(옥수수) 등 주요산지의 기상악화로 수급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미국의 양적완화 등으로 투기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곡물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2-8〉 주요 원자재 가격추이

구 분	(단위)	2009년	2010년				
				1/4	2/4	3/4	4/4
구리	(\$/톤)	5,185	7,555	7,270	7,047	7,262	8,616
알루미늄	(\$/톤)	1,702	2,199	2,196	2,121	2,107	2,368
니켈	(\$/톤)	14,778	21,874	20,144	22,452	21,247	23,665
아연	(\$/톤)	1,686	2,185	2,311	2,051	2,041	2,334
납	(\$/톤)	1,741	2,172	2,243	1,972	2,057	2,408
주석	(\$/톤)	13,394	20,468	17,290	17,898	20,528	25,983
옥수수	(센트/부셸)	376	433	373	357	434	564
소맥	(센트/부셸)	533	589	498	471	665	715
원당	(센트/파운드)	18.1	22.1	24.4	15.4	19.7	29.0

자료 : KOREAPDS

5. 국제금융시장동향¹³⁾

2010년 상반기 중 유럽국가 재정위기로 인해 국제금융 불안 심리가 확산되었다. 하반기 들어서도, 불안요인이 잠재하고 있었으나, 유럽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정책 지속, 유럽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공개 등으로 시장상황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13)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 이미혜 사무관

2010년 국제금융시장 주요 키워드는 유럽 재정위기, 美 2차 양적완화(QE2) 등 선진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중국의 긴축정책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스 재정에 대한 우려로 2010년 5월 EU-IMF는 향후 3년간 1,10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합의(5.3일)한데 이어, 4,400억 유로 규모의 유럽금융안정기금(EFSF; 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설립계획을 발표(5.9일)하였다. 그리스 구제금융 이후에도 고채무 국가인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으로의 확산 우려가 지속 제기되었고, 2010년 11월에 아일랜드도 구제금융(향후 3년간 850억유로)을 지원받게 되었지만, 유럽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었다.

미국은 1차 양적완화(QE1), 제로금리 정책 유지 등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하였으나, 경제둔화 우려가 계속됨에 따라 2010년 11월 FOMC에서 2011년 6월말까지 6,000억달러 규모의 국채를 매입하는 2차 양적완화(QE2) 실시 계획을 발표하였다.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 저금리 기조 등으로 풍부해진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국, 상품시장 등으로 유입되면서 신흥국 자산가격 및 상품가격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중국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정부목표(2010년 정부목표 : 3%)를 상회하자, 2010년중 기준을 6회 인상(1.12일, 2.12일, 5.10일, 11.10일, 11.19일, 12.10일; 15.5%→18.5%), 기준금리 2회 인상(10.19일, 12.25일; 5.31%→5.81%) 등 긴축적 통화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 경제둔화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가. 美 국채금리 하락, 신용 가산금리 하락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선진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신흥국 중앙은행은 경제회복, 국제상품가격 상승 등으로 인

플레이션 압력이 심해짐에 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선진국-신흥국간 기준금리 차이가 벌어졌다.

〈표 2-9〉 주요국 기준금리(기말)

	2009년	2010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미국 연준	0~0.25	0~0.25	0~0.25	0~0.25	0~0.25
유로 ECB	1.0	1.0	1.0	1.0	1.0
한국 BOK	2.0	2.0	2.0	2.25	2.5
중국 PBOC	5.31	5.31	5.31	5.31	5.81

자료 : 국제금융센터

미국 장기국채금리는 상반기 중에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수시 재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경향 강화, 하반기 들어서는 경기회복세 둔화 우려 등으로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10월 이후에는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등에 따라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신흥국 채권에 대한 가산금리는 유럽 재정불안 우려로 위험기피 성향이 강화되면서 2/4분기중 상승하였으나, 4/4분기 이후에는 미국 QE2 등에 따른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미국 경제회복 등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등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표 2-10〉 국제금리(기말)

	2009년	2010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美 국채금리(10년, %)	3.84	3.83	2.93	2.51	3.29
EMBI+ 가산금리(bp)	274	251	337	277	248

주 : EMBI+ : JP Morgan에서 작성하는 주요 신흥국 외화채권 가산금리 가중평균
 자료 : 국제금융센터

한국물 CDS 프리미엄은 유럽 재정불안이 잔존하는 가운데 천안함 침몰(2010년 5월 침몰원인 발표) 등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면서 5.25일 172bp로 2010년중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하반기 이후 유럽 재정불안이 다소 해소되면서 70bp대로 안정화되었으나, 북한의 연평도 포격(11.23일)으로 100bp대로 재상승하였다.

〈표 2-11〉 외평채 가산금리 및 CDS 프리미엄(기말)

	2009년말	2010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최고치
외평채 가산금리 (2016년 만기, bp)	94	184	220	169	184	221 (5.25일)
CDS 프리미엄 (5년물, bp)	85	83	131	101	94	172 (5.25일)

주 : 외평채(2016년 만기) 가산금리는 미국 10년만기 국채 기준 가산금리
 자료 : 국제금융센터, Bloomberg

나. 글로벌 증시 상승

글로벌 증시는 세계경제의 회복과 선진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등을 배경으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다만, 유럽 재정위기, 중국의 긴축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등락을 반복하였다.

대부분 국가의 주가가 8월 이후 회복흐름을 지속하면서 12월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다만, 중국 증시의 경우 긴축적 통화정책에 대한 우려로 2009년말 대비 14%가량 하락하였다.

〈표 2-12〉 글로벌 주가

	2009년	2010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2009년말 대비 상승률)
美 Dow	10,428	10,857	9,774	10,788	11,578	(+11.0%)
獨 DAX	5,957	6,154	5,966	6,229	6,914	(+16.1%)
中 Shanghai	3,277	3,109	2,398	2,956	2,808	(△14.3%)
韓 KOSPI	1,683	1,693	1,698	1,873	2,051	(+21.9%)

자료 : 국제금융센터

주가변동성 지수(VIX)는 상반기 중 그리스 재정위기가 주변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한때 45.8(5.20일)까지 상승하였으나,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국채발행 성공 등에 따라 하반기 이후 안정화되면서 연말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표 2-13〉 주가변동성 지수(VIX)

	2009년말	2010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주가변동성 지수(VIX)	21.7	17.6	34.5	23.7	17.8

자료 : Bloomberg

다. 美 달러화 가치 하락

美 달러화는 엔화에 대해서는 5월 초순까지, 유로화에 대해서는 6월 초순까지 전반적인 강세를 보이다가 이후에는 美 연준의 2차 양적완화 등으로 대체로 약세를 나타내었다. 특히, 선진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지속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해진 가운데 높은 경제성장세를 보인 신흥국에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입되면서 신흥국 통화는 달러화 대비 큰 폭으로 절상되었다.

〈표 2-14〉 주요 환율(기말)

	2009년말	2010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달러/유로	1,4325	1,3405	1,2211	1,3572	1,3233
엔 /달러	92.1	93.2	88.5	88.3	81.4
브라질 헤알/달러	1,7405	1,7887	1,8102	1,7000	1,6767
인니 루피/달러	9,431	9,110	9,070	8,920	8,980

자료 : 한국은행 ECOS

제2절 국내경제동향

1. 개관¹⁴⁾

2010년 중 우리 경제는 물가안정목표인 3% 내외의 물가상승률을 유지한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위축되었던 수출과 내수가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6%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 0.3% 증가에 그쳤던 실질 GDP는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8% 내외의 빠른 회복세를 보인 이후 하반기에는 회복 속도가 4% 중반대 수준으로 정상화되었다. 수출(통관기준)은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는 신흥국에 대한 수출비중 확대 등에 힘입어 2010년 전기간에 걸쳐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수입(통관기준)도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국내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등으로 2009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내수의 경우 건설투자가 SOC 예산 축소, 부동산시장 위축 등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인 반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고용·소득여건 개선, 높은 설비가동률 등에 힘입어 내수회복을 견인하였다. 2009년중 경기위축을 보완했던 정부부문의 역할이 줄어들고 민간부문이 경기회복을 주도한 것도 2010년 경제성장의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2010년중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년대비 5.5%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무역손실규모가 증가하면서 GDP 증가율인 6.2%에는 미치지 못했다.

14)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이승한 서기관

한편, 소비자물가는 연간 2.9% 상승하면서 전년(2.8%)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상반기에는 2%대의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였으나, 하반기 들어 기상여건 악화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다소 불안한 모습을 나타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강세를 보인 것도 2010년 소비자물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고용시장은 2009년에 7.2만명 감소했던 취업자가 2010년에 32.3만명 증가하는 등 회복이 가시화되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규모가 축소되면서 공공행정 취업자가 감소하였으나, 제조업·서비스업 중심으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고용시장 회복을 견인하였다. 고용안정성이 높은 상용직이 일자리 증가를 주도하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2010년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가 커졌으나, 수출호조에 힘입어 상품수지 흑자가 확대되면서 예년에 비해 높은 282억불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상품수지는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수입이 크게 증가했으나, 글로벌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수출이 더 크게 늘어나면서 419억불의 흑자를 올렸다. 상품외수지의 경우는 국내 경기회복 효과가 내국인의 해외여행 수요 확대, 국내기업의 해외영업활동 및 배당금 지급 증가 등으로 이어지면서 2009년에 비해 적자규모가 86억불 늘어난 137억불의 적자를 보였다.

〈표 2-15〉 주요 거시경제지표 동향

(단위 : 전년동기비, %, 만명, 억달러)

	'08년	'09년	'10년				
			연간	1/4	2/4	3/4	4/4
실질 GDP	2.3	0.3	6.2	8.5	7.5	4.4	4.7
- 민간소비	1.3	0.0	4.1	6.6	3.5	3.6	2.9
- 설비투자	△1.0	△9.8	25.0	29.1	30.5	26.6	15.9
실질 GNI	△0.6	1.6	5.5	9.6	5.6	4.5	3.0
소비자물가	4.7	2.8	2.9	2.7	2.6	2.9	3.6
취업자증감	14.5	△7.2	32.3	13.2	43.3	36.9	35.8
실업률	3.2	3.6	3.7	4.7	3.5	3.5	3.3
경상수지	32.0	327.9	282.1	2.6	88.6	99.3	91.6
수출(통관)	4,220	3,635	4,664	1,011	1,202	1,163	1,288
수입(통관)	4,353	3,231	4,252	982	1,056	1,057	1,157

자료 : 한국은행

2. 경제성장¹⁵⁾

2010년 우리경제는 내수와 수출이 동반호조를 나타내며 6.2% 성장하며,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대를 회복하였다. 기간별로 보면 1/4분기와 2/4분기에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빠르게 회복하면서 각각 전기대비 2.1%, 1.4%의 성장률을 나타내었으며, 3/4분기와 4/4분기에는 점차 성장속도가 정상화되면서 각각 전기대비 0.6%, 0.5% 성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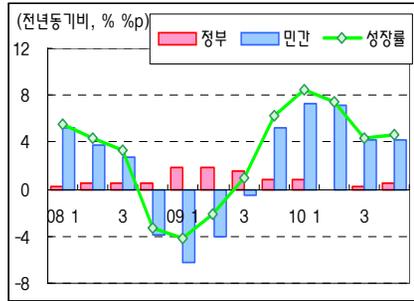
정부와 민간부문의 성장기여도를 보면 2009년중 경기위축을 보완했던 정부부문의 역할이 줄어들고 민간부문이 경기회복을 주도하였다.

15) 집필자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남병훈 사무관

[그림 2-1] GDP 규모 및 성장률



[그림 2-2] 정부 및 민간부문의 성장기여도



경제활동별로 보면 제조업이 내수 및 수출수요 증대에 힘입어 14.8%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업도 3.5% 증가하여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다만, 이상기온에 따른 농작물 작황 부진 등으로 농림어업이 4.3% 감소하였고, 주거용 건물건설 부진 등으로 건설업이 0.1% 감소하였다.

〈표 2-16〉 경제활동별 성장률

(단위 : %)

	2009	2010년 ^o (전년동기비)				2010년 ^o (전기대비)				
		1/4	2/4	3/4	4/4	1/4	2/4	3/4	4/4	
실질 GDP	0.3	6.2	8.5	7.5	4.4	4.7	2.1	1.4	0.6	0.5
- 농림어업	3.2	△4.3	0.9	△2.2	△7.3	△6.7	△3.1	△2.5	△2.5	0.2
- 제조업	△1.5	14.8	22.2	17.8	9.8	11.1	4.2	4.0	2.3	0.1
- 건설업	1.8	△0.1	2.2	0.8	0.9	△3.2	1.4	△0.1	△1.2	△3.2
- 서비스업	1.2	3.5	4.5	3.7	2.8	3.0	1.5	0.2	0.3	1.1

자료 : 한국은행

지출항목별로는 건설투자가 부진한 반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민간소비는 고용·임금 회복세가 지속되고 소비심리가 양호하게 지속되면서 전년대비 4.1% 증가하였으며, 위기기간 중 큰 폭으로 감소했던 설비투자도 수출호조, 기업 영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25.0% 증가하였다. 다만, 건설투자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 주거용 건물 중심의 건설부진이 이어져 전년대비 1.4% 감소하였다.

수출은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해외수요 증가와 높아진 제품경쟁력을 바탕으로 14.5% 증가하였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대부분의 품목이 호조세를 보인 가운데, 중국과 아세안 등 신흥국의 높은 성장세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수입도 내수경기가 회복되면서 기계류, 전자부품 등을 중심으로 16.9% 증가하였다.

〈표 2-17〉 지출항목별 성장률

(단위 : %)

	2009	2010년 ^o (전년동기비)				2010년 ^o (전기대비)				
		1/4	2/4	3/4	4/4	1/4	2/4	3/4	4/4	
실질 GDP	0.3	6.2	8.5	7.5	4.4	4.7	2.1	1.4	0.6	0.5
- 민간소비	0.0	4.1	6.6	3.5	3.6	2.9	0.5	0.7	1.4	0.3
- 설비투자	△9.8	25.0	29.1	30.5	26.6	15.9	2.8	7.9	5.6	△1.0
- 건설투자	3.4	△1.4	4.3	△2.3	△3.1	△2.9	2.0	△4.2	△0.8	△1.0
- 수 출	△1.2	14.5	20.8	14.7	11.6	16.9	3.0	7.4	2.5	3.0
- 수 입	△8.0	16.9	21.6	20.4	16.0	15.5	4.8	7.1	3.6	△0.7

자료 : 한국은행

성장기여도를 살펴보면 내수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에 6.8%p 기여하면서 성장을 주도하였다. 수출도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며 7.2%p 성장에 기여하였으나,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크게 증가함에 따라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0.6%p로 나타났다.

〈표 2-18〉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

(단위 : 전년동기비, %p)

	2009년					2010년 ^o				
		1/4	2/4	3/4	4/4		1/4	2/4	3/4	4/4
실질GDP	0.3	△4.2	△2.1	1.0	6.3	6.2	8.5	7.5	4.4	4.7
내 수	△3.4	△8.2	△6.8	△3.5	4.9	6.8	10.2	8.5	5.5	3.5
- 민간소비	0.0	△2.7	△0.6	0.2	2.9	2.2	3.8	1.9	1.9	1.5
- 정부소비	0.9	1.2	1.1	0.8	0.4	0.5	0.6	0.5	0.4	0.5
- 건설투자	0.6	0.0	0.9	0.6	1.0	△0.3	0.7	△0.5	△0.6	△0.6
- 설비투자	△0.9	△2.1	△1.8	△0.9	1.0	2.3	2.4	2.7	2.5	1.6
순수출	3.7	3.9	4.9	4.6	1.4	△0.6	△1.8	△1.0	△1.0	1.3
- 재화와 서비스 수출	△0.6	△5.9	△2.0	0.6	4.5	7.2	8.0	7.2	5.8	7.9
- 재화와 서비스 수입	△4.3	△9.8	△6.9	△4.0	3.1	7.8	9.8	8.2	6.8	6.6

자료 : 한국은행

2010년중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년대비 5.5% 증가하여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다만,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인 6.2%보다는 낮았는데, 이는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실규모가 전년에 비해 늘어나고 실질국외순수취요소소득 흑자규모도 크게 축소된 데에 기인한다.¹⁶⁾

〈표 2-19〉 교역조건 변화율 및 GNI 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비)

	2009년					2010년 ^o				
		1/4	2/4	3/4	4/4		1/4	2/4	3/4	4/4
교역조건지수	2.9	△1.9	3.3	5.2	5.8	△0.2	2.6	△2.3	0.5	△1.8
실질 GNI	1.6	△5.2	0.0	3.4	7.8	5.5	9.6	5.6	4.5	3.0

자료 : 한국은행

2010년중 국내총생산(GDP)은 1,172조 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0.1% 증

16)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10억원) : ('09)△35,622.1 ('10)△39,741.5
 실질국외순수취요소소득(10억원) : ('09)4,055.5 ('10)114.9

가하였으며, 달러기준으로는 환율하락¹⁷⁾(연평균 9.4%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21.6% 증가한 10,14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400만원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하였으며, 달러기준으로는 전년대비 20.7% 증가한 20,759 달러를 기록하여 2007년 이후 3년만에 2만불대를 회복하였다.

〈표 2-20〉 경제규모 및 국민소득

(단위 : 당해년도 가격기준)

	단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p
국내총생산(GDP)	조원	908.7	975.0	1,026.5	1,065.0	1,172.8
	(증감률,%)	5.0	7.3	5.3	3.8	10.1
	억달러	9,511	10,493	9,309	8,344	10,143
	(증감률,%)	12.6	10.3	△11.3	△10.4	21.6
1인당 GNI	만원	1,884	2,016	2,128	2,195	2,400
	(증감률,%)	4.9	7.0	5.5	3.2	9.3
	달러	19,722	21,695	19,296	17,193	20,759
	(증감률,%)	12.5	10.0	△11.1	△10.9	20.7

자료 : 한국은행

한편, GDP 디플레이터는 내수 상품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3.7% 상승하였다.

〈표 2-21〉 GDP 디플레이터

(단위 : 2005년=100기준, %)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p
GDP 디플레이터	99.9	101.9	104.9	108.5	112.5
(상승률)	△0.1	2.1	2.9	3.4	3.7

자료 : 한국은행

17) 원/달러 환율(연평균): ('09)1,276.4 ('10)1,156.3

총저축률은 32.0%로 전년(30.2%)대비 1.8%p 상승하였다. 이는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이 전년에 비해 9.4% 증가한 반면 최종소비지출은 이보다 낮은 6.6% 증가한 데 기인한다. 민간총저축률은 소비지출 증가율(6.8%)이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을 하회함에 따라 전년(23.4%)보다 1.8%p 상승한 25.2%를 나타내었으며, 정부총저축률은 전년과 동일한 6.8%를 나타내었다.

한편, 국내총투자율은 29.2%로 전년(26.2%)대비 3.0%p 상승하였는데, 이는 기업의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데 주로 기인하였다.

〈표 2-22〉 총저축률 및 투자율

(단위 : %)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p
총저축률	30.8	30.8	30.5	30.2	32.0
민간	20.8	20.2	21.2	23.4	25.2
- 개인	5.7	4.3	4.4	5.3	5.0
- 기업	15.1	15.8	16.8	18.1	20.2
정부	10.0	10.6	9.3	6.8	6.8
국내총투자율	29.7	29.5	31.0	26.2	29.2

자료 : 한국은행

3. 소비 및 투자

가. 민간소비¹⁸⁾

2010년 민간소비는 4.1% 증가하여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 같은 민간소비의 회복은 고용 회복, 임금 상승세 지속, 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여력 증대 및 소비 심리 개선 등이

18)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강희민 사무관

주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기간별로 보면 1/4분기에 전년동기비 6.6% 상승하였으나 2/4분기 이후에는 기저효과 등으로 상승폭이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4/4분기의 경우 국제 유가 및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비 및 전기비 모두 상승폭이 둔화되었다.

〈표 2-23〉 소비 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비, %)

	2008년	2009년		2010년 ^p			
				1/4	2/4	3/4	4/4
민간소비	1.3	0.0	4.1	6.6	3.5	3.6	2.9
(계절조정 전기비)	-	-	-	0.5	0.7	1.4	0.3
- 가계소비	1.3	△0.1	4.1	6.7	3.5	3.5	2.8
-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소비	3.4	3.9	5.2	3.9	5.5	5.8	5.8

자료 : 한국은행(국민계정)

부문별 민간소비 동향을 살펴보면 내구재 소비가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준내구재 및 비내구재 소비도 점차 회복되는 흐름을 보였다. 내구재 소비는 자동차 구입에 대한 세제지원¹⁹⁾ 종료 등의 영향으로 전반기에는 전기비 상승률이 부진한 흐름을 보였으나, 3/4분기 이후 신차 효과 등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 연간으로 전년대비 11.9% 증가하였다. 준내구재, 비내구재 소비는 전년대비 각각 8.0%와 3.4% 증가하여 회복세를 보였으나, 비내구재는 국제 유가 및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3분기 이후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19)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2009년 5월 1일~2009년 12월 31일) :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할 경우 총 25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취득세 및 등록세를 70% 감면

〈표 2-24〉 부문별 가계소비

(단위 : 전년동기비, %)

	2008년	2009년	2010년 ^p				
			1/4	2/4	3/4	4/4	
가계 국내소비	2.6	0.8	3.5	4.5	3.4	3.4	2.9
- 내구재	0.4	8.3	11.9	27.9	4.1	13.8	5.0
(계절조정 전기비)	-	-	-	1.3	△5.8	11.2	△1.7
- 준내구재	△0.8	△4.2	8.0	4.7	6.7	7.3	12.8
- 비내구재	3.9	△0.6	3.4	4.5	5.4	4.3	△0.1
- 서비스	2.8	1.2	2.0	2.0	2.1	1.3	2.6

자료 : 한국은행(국민계정)

나. 설비투자²⁰⁾

2010년 설비투자는 대내외 경기 회복, 환율안정으로 인한 자본재수입 부담 감소 등으로 25.0%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특히 IT 업종의 경기가 개선되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기계류 투자가 크게 증가(30.8%)하였다. 반면, 2009년 노후차 세제지원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던 운수장비 투자는 2010년 3/4분기 이후 다소 부진세를 나타냈다.

국내기계수주, 기계류 수입, 설비투자조정압력 등 선행지표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2009년 말 설비투자가 상승세로 전환된 기저효과로 인해 2010년 4/4분기 상승률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다.

20)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이미희 사무관

〈표 2-25〉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08년	2009년	2010년 ^p				
			연간	1/4	2/4	3/4	4/4
설비투자	△1.0	△9.8	25.0	29.1	30.5	26.6	15.9
- 기계류	△1.8	△13.5	30.8	30.0	35.3	38.9	20.5
- 운수장비	1.8	2.8	6.7	24.2	15.6	△6.6	0.6
국내기계수주	△14.1	△10.3	11.2	10.3	24.7	△0.2	11.3
기계류 수입	6.4	△16.6	40.4	48.3	51.3	40.0	26.3
설비투자조정압력	△1.7	△3.7	9.5	20.4	12.1	3.4	4.6

자료 : 한국은행(국민계정), 통계청(산업활동동향), 무역협회

다. 건설투자²¹⁾

2010년 건설투자는 건물건설 부진이 지속되며 전년대비 1.4% 감소하였다. 건물건설은 경기회복으로 비주거용 건물건설이 다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주거용 건물건설이 하락세를 지속함에 따라 전년대비 2.9% 감소하였다. 토목건설 역시 2009년 SOC 투자가 큰 폭 증가하였던 기저 효과로 인해 2010년 증가세가 둔화된 모습이다.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도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표 2-26〉 건설투자 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08년	2009년	2010년 ^p				
			연간	1/4	2/4	3/4	4/4
건설투자	△2.8	3.4	△1.4	4.3	△2.3	△3.1	△2.9
- 건물건설	△4.6	△2.3	△2.9	4.5	△5.1	△6.3	△2.8
- 토목건설	△0.2	11.6	0.5	4.0	1.0	1.7	△2.9
건설수주	△7.6	5.0	△18.7	△1.6	△6.7	△3.6	△40.2
- 건물건설	△15.4	△14.2	△9.9	8.3	55.3	△1.3	△46.4
- 토목건설	13.5	44.3	△29.5	△12.4	△49.7	△7.0	△29.9

자료 : 한국은행(국민계정), 통계청(산업활동동향), 국토해양부

21)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이미희 사무관

4. 경기 및 산업생산²²⁾

2010년 국내 경기는 상반기에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나, 하반기 들어서는 회복 속도가 다소 완만해진 모습을 나타냈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10년 7월까지의 계속 상승세를 시현하다가 2010년 8월 이후에는 대체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2-27〉 2010년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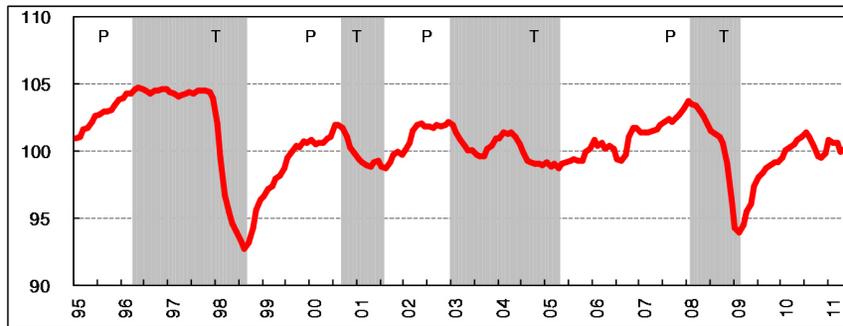
(단위 : 2005년=100기준, p)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99.5	100.0	100.3	100.5	100.8	101.0	101.4	101.1	100.4	99.6	99.5	99.8
(0.3)	(0.5)	(0.3)	(0.2)	(0.3)	(0.2)	(0.4)	(△0.3)	(△0.7)	(△0.8)	(△0.1)	(0.3)

자료: 통계청, ()는 전월차

[그림 2-3]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p)

(기준치=100, 음영 : 경기하강기)



향후의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2010년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 연속 하락한 후 2010년 12월에 소폭 상승하였다. 2010년 중 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계속 하락한 것은 2009년 중 선행지수가

22)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이승한 서기관

여는 해보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기저효과가 큰 영향을 미친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표 2-28〉 2010년 선행지수 전년동월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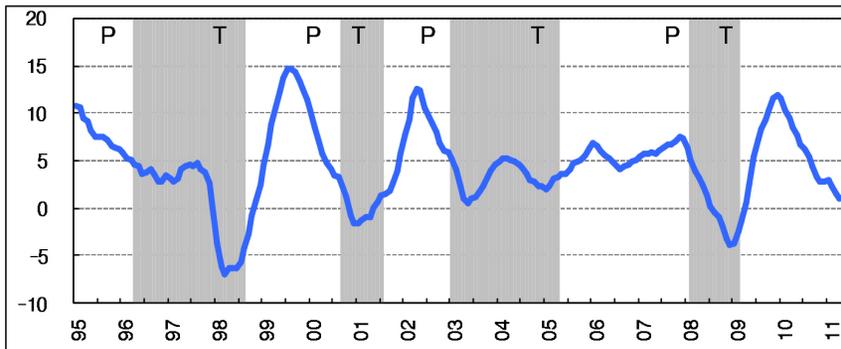
(단위 : %, %p)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1.6	10.4	9.6	8.6	7.7	6.8	6.2	5.4	4.5	3.3	2.8	2.9
(△0.4)	(△1.2)	(△0.8)	(△1.0)	(△0.9)	(△0.9)	(△0.6)	(△0.8)	(△0.9)	(△1.2)	(△0.5)	(0.1)

자료 : 통계청, ()는 전월차

[그림 2-4] 선행지수 전년동월비 추이(%)

(음영 : 경기하강기)



2010년 광공업 생산은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수출 수요가 크게 확대되면서 전년대비 16.2% 증가하였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업종이 광공업 생산 호조를 주도하였으며, 여타 업종들도 10%대 초반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2009년 중 감소했던 재고도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전년대비 17.4% 증가하였다.

〈표 2-29〉 생산·출하·재고 및 서비스업 활동 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08년	2009년	2010년				
			연간	1/4	2/4	3/4	4/4
광공업생산	3.4	△0.1	16.2	25.4	18.8	10.9	11.7
출하	2.6	△1.4	14.4	20.9	15.9	9.9	11.9
재고	6.9	△7.8	17.4	7.5	17.5	19.1	17.4
서비스업	3.6	1.8	3.9	6.2	4.2	2.3	3.2

2010년 서비스업 생산은 2009년보다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2009년에 부진했던 도·소매업, 운수업, 음식숙박업 등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방송통신업 등은 전년보다 증가율이 높아졌다. 다만, 부동산 및 임대업은 부동산 경기 부진 등으로 전년대비 8.6% 감소하였다.

5. 수출입 및 경상수지²³⁾

가. 수출입

2010년 수출(통관기준)은 2009년 대비 28.3% 증가한 4,664억달러를 기록하였다.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수요 위축으로 수출이 13.9% 감소하였으나 2010년중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출 역시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선박, 자동차 수출이 연간 사상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하는 등 주요품목 수출이 대부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반도체는 스마트폰 등 신규 IT제품 출시에 따른 수요 증가로 전년대비 61.2% 증가하였

16)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조성중 사무관

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45.9%), 석유제품(37.3%), 석유화학(30.0%), 일반기계(26.7%), 철강제품(26.0%)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만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스마트폰 출시 지연 등으로 10.3% 감소하였다.

지역별로는 개도국(29.3%)에 대한 수출이 선진국(25.9%)에 대한 수출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중남미(35.2%), 중국(34.8%), 동남아(33.0%)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EU(14.8%) 중동(18.0%)에 대한 수출은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표 2-30〉 수출

(단위 : 억달러,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4	2/4	3/4	4/4	
수출액	3,254.7	3,714.9	4,220.1	3,635.3	4,663.8	1,010.8	1,202.4	1,163.2	1,287.5
증감률	14.4	14.1	13.6	△13.9	28.3	35.8	33.1	22.7	23.8

자료 : 관세청

2010년 수입(통관기준)은 2009년 대비 31.6% 증가한 4,252억달러를 기록하였다.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입단가 상승, 국내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등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품목별로는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원자재 수입이 34.1% 증가하였다. 특히 전체 수입에서 15.7%를 차지하는 원유수입이 단가(29.7%)와 물량(4.2%)이 함께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35.3% 증가하였으며, 철광(87.8%), 니켈(49.8%), 고무(76.4%) 원당(39.4%) 등 주요 원자재 수입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자본재 수입은 반도체제조용장비(182.0%), 메모리반도체(46.2%) 등을 중심으로 29.8% 증가하였고, 소비재 수입도 승용차(54.2%), 의류(31.5%) 수입 확대로 전년대비 23.9%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미국(39.1%), 일본(30.1%), 동남아(31.5%), 중국(31.9%), 중동(31.2%) 등 주요 교역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2-31〉 수입

(단위 : 억달러,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4	2/4	3/4	4/4
수입액	3,093.8	3,568.5	4,352.8	3,230.9	4,252.1	981.6	1,056.3	1,057.0	1,157.3
증감률	18.4	15.3	22.0	△25.8	31.6	37.4	42.8	24.6	24.6

자료 : 관세청

2010년 수출입차는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감에 따라 사상 최대규모인 412억불 흑자를 기록하였다. 월별로는 1월에 난방연료수입 증가 등 계절적 요인으로 적자를 기록했으나 2월 이후 11개월 연속 두자릿수 흑자를 기록하였다.

지역별로는 중국(452.6억불), 동남아(336.3억불), 미국(94.1억불), EU(147.8억불) 지역에 대해서는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한 반면, 일본(△361.2억불), 중동(△148.7억불) 지역에 대해서는 적자를 보였다.

〈표 2-32〉 연도별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4	2/4	3/4	4/4
수출입차	160.8	146.4	△132.7	404.5	411.7	29.3	146.1	106.2	130.2

자료 : 관세청

2010년 중 수출단가는 세계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로 전년대비 11.8%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유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석유제품이 28.7% 상승했고, 화공품(17.0%), 철강제품(13.5%), 전기전자제품(12.7%) 등 대부분의 품목이 상승하였다. 수입단가역시 전년대비 12.2% 상승하였다. 자본재 수입단가가 전년대비 1.2% 하락하였으나 원유(29.3%), 화공품(10.0%), 철강재(5.9%), 비철금속(22.2%) 등 원자재 수입단가가 18.5% 상승하였다. 수입단가가 수출단가보다 더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순상품교역조건은 전년대비 0.3% 악화되었다.

〈표 2-33〉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증가율

(단위 : %, 전년동기비)

	2008년	2009년	2010년				
			1/4	2/4	3/4	4/4	
수출 단 가	4.4	△16.5	11.8	15.2	15.0	12.3	6.6
수입 단 가	21.1	△24.0	12.2	14.7	19.3	10.4	8.9
수출 물 량	6.4	0.6	16.2	22.4	17.9	8.4	17.2
수입 물 량	0.9	△2.4	17.4	20.1	20.3	13.4	13.5
순상품교역조건	△13.8	9.9	△0.3	0.4	△3.6	1.7	△2.1

자료 : 한국은행

〈표 2-34〉 품목별 수출

(단위 : 백만달러, %, 통관기준)

구 분	2009년	2010년	증감률
1. 식료 및 직접소비재	4,283	5,238	22.3
2. 원료 및 연료	27,892	38,530	38.1
- 석유제품	23,192	31,862	37.4
3. 경 공 업 품	27,498	32,690	18.9
- 섬유사	1,167	1,578	35.2
- 직물	4,522	5,463	20.8
- 의류	1,393	1,605	15.2
- 고무타이어 및 튜브	2,781	3,560	28.0
- 금	2,757	2,911	5.6
- 종이류	2,298	2,763	20.2
4. 중화학공업품	303,861	389,925	28.3
- 화공품	36,631	47,491	29.6
- 철강제품	29,876	37,649	26.0
- 기계류와 정밀기기	32,772	44,041	34.4
- 전기·전자제품	121,217	154,148	27.2
(가 전 제 품)	10,436	13,618	30.5
(정보통신기기)	39,421	37,567	△4.7
〈컴퓨터〉	7,133	8,351	17.1
〈무선통신기기〉	20,576	18,452	△10.3
(반도체)	31,918	51,464	61.2
- 수송장비	81,111	103,433	27.5
(승용자동차)	22,399	31,782	41.9
(선박)	42,825	47,112	10.0
총 계	363,534	466,384	28.3

자료 : 관세청

〈표 2-35〉 품목별 수입

(단위 : 백만달러, %, 통관기준)

구 분	2009년	2010년	증감률
1. 소 비 재	34,133	42,282	23.9
- 곡 물	5,298	5,295	11.8
- 직접소비재	8,856	10,987	24.1
(담배)	104	134	28.8
(주류)	505	595	17.8
- 내구소비재	12,900	16,205	25.6
(가전제품)	3,259	3,601	10.5
(승용차)	1,882	2,902	54.2
(금)	1,115	1,549	39.0
(골프용품)	296	345	16.6
- 비내구소비재	7,078	9,165	29.5
(의류)	3,295	4,333	31.5
2. 원자재	184,405	247,221	34.1
- 연 료	90,595	121,250	33.8
(원 유)	50,757	68,662	35.3
- 광 물	13,660	21,359	56.4
- 경공업원료	6,170	8,587	39.2
- 유 지	846	1,003	18.5
- 섬 유 류	3,198	4,378	36.9
- 화 공 품	28,708	37,667	31.2
- 철 강 재	21,561	27,312	26.7
- 비철금속	9,111	12,618	38.5
- 기 타	10,555	13,048	23.6
3. 자본재	104,547	135,709	29.8
- 기계류와 정밀기기	33,618	47,656	41.8
- 전기·전자기기	59,782	73,320	22.6
(정보통신기기)	13,414	17,392	29.7
(반도체)	27,306	32,081	17.5
- 수송장비	9,545	12,848	34.6
- 기 타	1,602	1,885	17.7
총 계	323,085	425,212	31.6

자료 : 관세청

〈표 2-36〉 주요 지역별 수출실적

(단위 : 백만달러, %, 통관기준)

구 분	2009	2010년	증감률
전체수출	363,534	466,384	28.3
대선진국 수출	104,683	131,792	25.9
대개도국 수출	258,848	334,592	29.3
미국	37,650	49,816	32.3
일본	21,771	28,176	29.4
EU	46,608	53,507	14.8
호주	5,243	6,642	26.7
캐나다	3,440	4,102	19.3
동남아	70,141	93,320	33.0
(홍콩)	19,661	25,294	28.7
(싱가폴)	13,617	15,244	11.9
(대만)	9,501	14,830	56.1
중동	24,039	28,369	18.0
중국	86,703	116,838	34.8
중남미	26,763	36,187	35.2
CIS	6,520	11,054	69.5
동구권	10,729	13,708	28.0

자료 : 관세청

〈표 2-37〉 주요 지역별 수입실적

(단위 : 백만달러, %, 통관기준)

구 분	2009	2010년	증감률
전체수출	323,085	425,212	31.6
대선진국 수출	133,688	173,863	30.1
대개도국 수출	189,397	251,349	32.7
미국	29,039	40,403	39.1
일본	49,428	64,296	30.1
EU	32,232	38,721	20.1
호주	14,756	20,456	38.6
캐나다	3,535	4,351	23.1
동남아 (홍콩)	45,392	59,692	31.5
(싱가폴)	1,487	1,946	30.8
(대만)	7,872	7,850	△0.3
중동	9,851	13,647	38.5
중국	61,613	80,815	31.2
중남미	54,246	71,574	31.9
CIS	11,648	14,645	25.7
동구권	6,877	11,209	63.0
	1,207	1,626	34.8

자료 : 관세청

〈표 2-38〉 주요 지역별 무역수지

(단위 : 백만달러, 통관기준)

구 분	2009년	2010년	증감액
전체	40,449	41,172	723
대선진국	△29,005	△42,071	△13,065
대개도국	69,451	83,242	13,808
미국	8,610	9,413	803
일본	△27,657	△36,120	△8,463
EU	14,376	14,786	409
호주	△9,513	△13,815	△4,302
캐나다	△96	△249	△153
동남아	24,749	33,628	8,879
(홍콩)	18,174	23,348	5,175
(싱가폴)	5,745	7,395	1,649
(대만)	△350	1,183	1,534
중동	△37,574	△52,446	△14,872
중국	32,457	45,264	12,807
중남미	15,116	21,543	6,427
CIS	△357	△156	202
동구권	9,522	12,081	2,576

자료 : 관세청

나. 경상수지

2010년 경상수지는 수출호조에 힘입어 282억불 흑자를 기록하였다. 다만 국내경기회복, 환율하락에 따라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되면서 2009년에 비해서는 흑자폭이 줄어들었다. 1/4분기에는 동절기 연료수입 증가, 겨울방학 해외여행 증가 등 계절적 요인으로 균형수준을 보였으나 2/4분기 이후 상품수출이 크게 확대되면서 분기별로 90억불 내외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표 2-39) 경상수지

(단위 : 억달러)

	2008년	2009년		2010년			
				1/4	2/4	3/4	4/4
경상수지	32.0	327.9	282.1	2.6	88.6	99.3	91.6
- 상품수지	51.7	378.7	419.0	47.9	122.4	125.4	123.4
(수 출)	4,346.5	3,581.9	4,642.9	1,013.5	1,175.9	1,182.6	1,270.9
(수 입)	4,294.8	3,203.2	4,223.8	965.7	1,053.4	1,057.2	1,147.5
- 서비스수지	△57.3	△66.4	△112.3	△42.0	△18.7	△29.5	△22.0
(수 입)	906.3	735.8	827.2	180.7	201.8	204.4	240.3
(지 급)	963.7	802.2	939.5	222.7	220.5	234.0	262.3
- 본원소득수지	44.4	22.8	7.7	5.5	△10.1	△13.0	△0.7
(수 입)	216.5	145.1	158.8	35.5	41.9	40.2	40.3
(지 급)	172.2	122.4	151.1	31.0	52.0	27.2	40.9
- 이전소득수지	△6.7	△7.1	△32.3	△8.7	△5.0	△9.5	△9.1
(수 입)	140.7	127.0	134.0	29.9	36.2	31.6	36.2
(지 급)	147.4	134.1	166.3	38.6	41.2	41.2	45.3

자료 : 한국은행 ECOS

상품수지는 419억달러 흑자로 2009년보다 흑자폭이 확대되었다. 1/4분기에는 계절적 요인에 따른 수출의 상대적 부진, 동절기 연료 수입 증가 등으로 48억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나, 2/4분기부터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분기별로 120억달러를 상회하는 상품수지 흑자가 이어졌다.

〈표 2-40〉 상품수지

(단위 : 억달러)

	2008년	2009년	2010년				
			1/4	2/4	3/4	4/4	
상품수지	51.7	378.7	419.0	47.9	122.4	125.4	123.4
- 수 출(FOB)	4,346.5	3,581.9	4,642.9	1,013.5	1,175.9	1,182.6	1,270.9
〈통관수출〉	4,220.1	3,635.3	4,663.8	1,010.8	1,202.4	1,163.2	1,287.5
- 수 입(FOB)	4,294.8	3,203.2	4,223.8	965.7	1,053.4	1,057.2	1,147.5
〈통관수입〉	4,352.8	3,230.9	4,252.1	981.6	1,056.3	1,057.0	1,157.3

자료 : 한국은행 ECOS

서비스수지는 112억달러 적자로 2009년보다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교역량 증가 및 운임상승 등으로 운송수지는 흑자폭이 늘었으나, 국내경기회복과 환율하락으로 여행수지 적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국내 기업의 해외영업활동 관련 경비지급 증가, 생산활동 증가에 따른 지적재산권 사용료 지급 증가로 기타서비스수지 적자도 확대되었다.

〈표 2-41〉 서비스수지

(단위 : 억달러)

	2008년	2009년	2010년				
			1/4	2/4	3/4	4/4	
서비스수지	△57.3	△66.4	△112.3	△42.0	△18.7	△29.5	△22.0
- 운 송	80.0	52.4	92.5	15.6	20.5	24.6	31.9
- 여 행	△92.9	△52.2	△79.0	△19.9	△13.6	△27.0	△18.5
- 기타 서비스	△44.4	△66.6	△125.8	△37.7	△25.6	△27.1	△35.4
(사업서비스)	△142.8	△150.1	△168.4	△41.7	△37.5	△35.9	△53.3
(지적재산권등 사용료수지)	△32.7	△39.9	△58.2	△14.9	△10.1	△13.1	△20.1

자료 : 한국은행 ECOS

본원소득수지는 8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2009년보다 흑자폭이 15억달

러 감소했다. 분기별로는 연말 결산법인의 배당금 지급이 집중되는 2/4분기에 10억불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중간배당 증가로 4/4분기에도 소폭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전소득수지는 32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환율하락 및 국내소득증가로 거주자의 해외송금이 늘어나면서 2009년에 비해 적자규모가 25억불 확대되었다.

〈표 2-42〉 본원소득수지 및 이전소득수지

(단위 : 억달러)

	2008년	2009년		2010년			
				1/4	2/4	3/4	4/4
본원소득수지	44.4	22.8	7.7	5.5	△10.1	13.0	△0.7
- 급료및임금	1.9	△0.5	△4.8	△0.6	△0.8	△1.3	△2.0
- 투자소득	42.3	23.3	12.5	6.1	△9.3	14.3	1.4
이전소득수지	△6.7	△7.1	△32.3	△8.7	△5.0	△9.5	△9.4

자료 : 한국은행 ECOS

6. 고용²⁴⁾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감소했던 취업자는 2010년 들어 경기회복과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등 정부 일자리 대책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32.3만명 증가하였다. 2009년에 비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공공행정 취업자는 전년에 비해 7.2만명 감소하였으나, 공공행정을 제외한 민간부문 취업자가 2/4분기 이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고용 회복을 주도하였다.

24) 집필자 :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 이근우 사무관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한 가운데, 2/4분기 이후 건설업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는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이후 최대 폭인 19.2만명 증가하였다. 서비스업 취업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유망 서비스업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20.0만명 증가하였다. 다만, 전통적인 서비스업 종인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는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6.7만명 감소하였다. 이는 기업화·대형화, 과당경쟁 등에 따른 영세 업체의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고용안정성이 높은 상용직(69.7만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하여 고용의 질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임시·일용직(△18.0만명)과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19.4만명)는 감소하였다.

〈표 2-43〉 취업자 증감

(단위 : 만명)

	2008	2009	2010				
			연간	연간			
				1/4	2/4	3/4	4/4
전체 취업자 증감	14.5	△7.2	32.3	13.2	43.3	36.9	35.8
- 공공행정	4.3	19.2	△7.2	2.5	0.9	△19.8	△12.0
- 민간부문(공공행정 제외)	10.1	△26.3	39.5	10.8	42.5	56.8	47.8
〈산업별〉							
제조업	△5.2	△12.6	19.1	6.1	17.2	26.2	26.9
건설업	△3.7	△9.1	3.3	△6.1	4.4	9.2	5.7
서비스업	25.9	17.9	20.0	31.2	32.4	8.3	8.0
- 보건·사회복지업	10.3	15.6	15.5	11.4	16.0	18.2	16.3
-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2.0	△2.9	7.8	3.1	7.0	11.6	9.6
- 전문·과학기술업	5.5	8.7	4.0	3.9	4.1	2.3	5.6
- 도소매·음식숙박업	△4.7	△13.9	△6.7	△5.7	△7.3	△6.9	△6.9
- 기타 서비스	12.9	10.4	△0.6	18.5	12.6	△16.9	△16.7
농림어업	△3.7	△3.8	△8.2	△16.4	△8.5	△4.5	△3.5
기 타	1.0	0.5	△1.9	△1.7	△2.3	△2.3	△1.3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23.6	24.7	51.7	37.1	62.3	54.1	53.2
- 상용직	38.6	38.3	69.7	65.1	76.6	67.1	69.9
- 임시·일용직	△15.0	△13.6	△18.0	△28.0	△14.3	△13.0	△16.7
비임금근로자	△9.2	△31.9	△19.4	△23.9	△18.9	△17.2	△17.4
- 자영업자	△7.9	△25.9	△11.8	△10.6	△9.1	△13.0	△14.6
- 무급가족종사자	△1.3	△6.0	△7.6	△13.3	△9.8	△4.2	△2.8

자료 : 통계청

취업자 증가에 따라 고용률은 58.7%로 2009년에 비해 0.1%p 상승하였다. 실업률은 연초 희망근로 등 정부 일자리 사업 모집시 응모자가 실업자로 집계됨에 따라, 1월(5.0%)에 크게 상승한²⁵⁾ 이후 3월까지 4%대를 유지하다가 4월 이후 3%대의 안정세를 회복하였다. 2010년 연간 실업률

25) 1월 희망근로 접수 결과, 사업규모(10만명)의 4.2배인 42.2만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은 1/4분기 실업률 급등의 영향으로 2009년에 비해 0.1%p 상승한 3.7%를 기록하였다.²⁶⁾

〈표 2-44〉 주요 고용지표

(단위 : 만명, %)

	2008	2009	2010				
			연간	1/4	2/4	3/4	4/4
15세 이상 인구	3,960	4,009	4,059	4,042	4,053	4,065	4,076
경제활동인구	2,435	2,439	2,475	2,417 (2,466)	2,504 (2,473)	2,499 (2,482)	2,480 (2,476)
- 경제활동참가율	61.5	60.8	61.0	59.8 (61.0)	61.8 (61.0)	61.5 (61.1)	60.8 (60.8)
취업자	2,358	2,351	2,383	2,304 (2,360)	2,417 (2,386)	2,412 (2,393)	2,399 (2,392)
- 고용률	59.5	58.6	58.7	57.0 (58.4)	59.6 (58.9)	59.3 (58.9)	58.9 (58.7)
실업자	77	89	92	113 (106)	87 (87)	87 (89)	81 (85)
- 실업률	3.2	3.6	3.7	4.7 (4.3)	3.5 (3.5)	3.5 (3.6)	3.3 (3.4)
비경제활동인구	1,525	1,570	1,584	1,625 (1,577)	1,549 (1,580)	1,566 (1,583)	1,596 (1,599)

자료 : 통계청, ()는 계절조정

26) 2010년 연간 실업자는 92만명으로 2009년에 비해 3.1만명 증가하였는데, 특히 1/4분기에는 실업자가 113만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22.2만명 증가하였다.

7. 외환보유액 및 국가신용등급²⁷⁾

가. 외환보유액

2010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2,916억달러로 전년말에 비해 216억달러가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는 단기외채의 약 2.2 배 수준이며, 경상지급액의 6.4개월분에 해당한다. 외환보유액은 예상치 못한 대외위험이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후의 대응수단(Last line of Defense)으로 2008년부터 2009년 초까지 이어진 전례 없는 글로벌 신용경색 상황을 극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던 바 있다.

〈표 2-45〉 한국의 외환보유액 추이

(단위 : 억달러)

97말	98말	01말	02말	03말	04말	05말	06말	07말	08말	09말	10말
89	485	1,028	1,214	1,554	1,991	2,104	2,390	2,622	2,012	2,700	2,916

2010년 중 외환보유액이 증가한 것은 2008~2009년 글로벌 신용경색 상황에서 정부가 시중에 공급했던 외화유동성을 추가 회수함과 동시에 외환보유액 투자 운용에 따른 수익 발생 및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등의 약세로 인한 이들 통화 표시자산의 미 달러화 환산액이 증가한 데에 주로 기인한다.

국가별로는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2010년말 현재 2.8조달러 수준으로 가장 많으며, 우리나라는 2007년 이후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 인도에 이어 세계 6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7) 집필자 :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 배준형 사무관

〈표 2-46〉 2010년말 국가별 외환보유액 순위

(단위 : 억달러)

순위	국가	외환보유액	순위	국가	외환보유액
1	중 국	28,473	6	한 국	2,916
2	일 본	10,962	7	브라질	2,886
3	러시아	4,794	8	스위스	2,705
4	대 만	3,820	9	홍 콩	2,687
5	인 도	2,973	10	싱가포르	2,258

한편, 정부는 공공부문 보유 외화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2005년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하여 외환보유액 중 일부(2010년말 현재 외평기금 165억달러, 한국은행 170억달러)를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다.

나. 국가신용등급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2010년 우리 경제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잠재성장률 수준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지속되고, 대외채무도 감소하였으며, 외환보유액도 확대되는 등 대외적인 여건도 개선되었다. 개선된 경제여건과 전망을 기반으로 정부는 국가신용등급 상승을 목표로 신용평가사와의 연례협약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동안 신용평가사들이 관심을 가져온 대외채무, 금융기관 건전성, 그리고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집중적인 설명과 함께 위기극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노력과 성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Moody's는 2010년 4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2에서 A1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반면 Fitch와 S&P는 우리나라의 등급과 등급전망에 대해 현재 수준을 유지했다. 국제신용평가사와의 연례협약 및 등급조정 결과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Moody's, A2(안정적; Stable)에서 A1(안정적; Stable)으로 상향조정

정부는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Moody's와 연례협의를 실시하였다. Moody's가 우리 경제의 취약요인으로 보고 있는 은행부문의 건전성, 공기업 부채, 북한 문제 등에 대해서 설득하는 노력을 집중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외화유동성의 개선과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고 및 감독방안 발표(2009년 11월)」 등 우리 정부의 외환건전성 향상 노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공기업의 경우 부채와 함께 자산도 증가하고 있으며, 당기순이익 시현으로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으나, 과도한 차입방지를 위해 2010년중 재무건전성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전달하였다. Moody's가 많은 관심을 표명한 북한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정부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강점인 빠른 위기회복, 재정 건전성, 기업경쟁력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Moody's는 2010년 4월 14일 우리의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A2에서 A1으로 1단계 상향조정하였다. Moody's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한국의 재정 및 통화정책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경상수지 흑자 지속, 단기외채 감소, 2,700억달러 이상의 외환보유액 확충 등으로 인해 한국의 대외채무 상환불능 우려가 현저하게 개선된 점을 국가신용등급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견고한 한·미 동맹과 한반도 안정을 희망하는 중국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남북관계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Moody's의 상향조정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킨 것이다.

2) Fitch, A+(안정적; Stable) 유지

정부는 Fitch와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연례협의를 실시했다. 정부는 Fitch가 관심을 보인 은행부문의 건전성, 공기업 부채, 북한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강점인 빠른 경제회복, 재정 건전성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였다. Fitch가 취약요인으로 제시한 은행 부문의 건전성과 관련하여 예대율 규제, 자본유출입 완화방안 등 정부의 정책노력을 적극 설명하였으며, 공기업 부채의 관리 가능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방안 등 대응방안 수립 계획 등을 Fitch측에 전달하였다. 한편,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견고한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정을 희망하는 중국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남북간의 전면전 발생 및 북한의 붕괴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 등을 설명하였다.

Fitch는 11월 11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과 신용등급 전망을 종전과 같은 A+, 안정적으로 유지하였음을 발표하였다. Fitch는 우리나라가 다변화된 수출경쟁력과 외환보유액 축적으로 인해 단기외채와 외화유동성 측면의 안정성이 개선되었으며,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도 이루어지고 은행의 조달구조도 개선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장기간 유지되어온 보수적인 재정운용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높게 평가하였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서 통일이 잠재적인 재정부담 요인으로 남아있으며, 통일방식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3) S&P, A(안정적; Stable) 유지

정부는 S&P와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연례협의를 실시했다. 정부는 S&P가 취약점으로 지적해왔던 외채 및 외화유동성 부문과 북한문제 등

지정학적 우려의 해소에 대해 역점을 두고 대응하였다. 먼저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개선된 대외채무와 외화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예대율 규제와 자본유출입 변동완화 방안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노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또한, 전통적으로 S&P가 북한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였던 점을 고려하여, 연례협의 과정에서 안보부처 및 북한문제 전문가 면담 등을 확대하였으며, 천안함 사건, 북한의 권력승계, 통일비용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북한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S&P는 12월 9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과 등급전망을 종전과 같은 A, 안정적으로 유지하였음을 발표하였다. S&P는 우리경제의 역동성과 건전한 재정, 순대의 채권국으로서의 지위 등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기반이 되었다고 설명하였으며, 특히 2,900억 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액으로 인해 대외채무의 위험성을 상쇄할 수 있다고 높게 평가하였다. 다만, S&P는 금융기관의 단기외채가 높아 향후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할 경우 유동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북한의 후계자 승계와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있으며, 북한이 붕괴될 경우 발생할 막대한 통일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위험요인으로 지적하였다.

8. 물 가²⁸⁾

2010년 소비자물가는 연간 2.9% 상승하면서 전년(2.8%)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1월에는 3.1% 상승률을 나타냈으나 이후 8월까지 2%대의 비교적 안정적인 물가흐름을 보였다. 다만, 폭염, 폭우 등 여름철 기

28) 집필자 :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정동영 사무관

상이변으로 9~10월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물가 상승률은 3.3%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나타내었다. 특히 먹거리물가를 대표하는 신선식품물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21.3% 상승하면서 1994년(23.8%)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이 주로 공급측 요인에 의해 나타나면서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수요측 물가상승을 나타내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1.8%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 2-47〉 주요지표별 물가상승률

(단위 : 전년동기비,%)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4	2/4	3/4	4/4	
소비자물가	2.2	2.5	4.7	2.8	2.9	2.7	2.6	2.9	3.6
근원물가	1.8	2.4	4.2	3.6	1.8	1.9	1.6	1.8	1.9
생활물가	3.1	2.1	5.4	2.1	3.3	3.4	2.9	3.1	4.1
신선식품물가	1.0	4.5	△5.8	7.5	21.3	7.5	11.8	27.2	40.2

자료 : 통계청

부문별 물가상승률을 살펴보면 정부의 강력한 물가관리로 공공요금인 1.2%, 개인서비스요금이 2.2% 상승률을 나타내는 등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상이변에 따른 채소류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산물은 전년대비 13.5% 상승하였고 저수온의 영향으로 수산물도 높은 상승 수준을 나타내었다. 또한 국제유가가 높게 상승하여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11.3% 상승하는 등 2010년도의 주요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표 2-48〉 주요지표별 물가상승률

(단위 : 전년비 %, 기여도 %p)

	소비자 물가지수	농 축 수산물	농산물		공업 제품	석유류	집 세	공공 서비스	개인 서비스
			농산물	수산물					
가중치	1,000	88.4	54.5	13.4	307.4	53.9	97.5	163.1	343.6
전년비	2.9	10.0	13.5	11.3	3.1	9.2	1.8	1.2	2.2
(기여도)	(2.93)	(0.85)	(0.67)	(0.16)	(0.98)	(0.52)	(0.16)	(0.19)	(0.76)

자료 : 통계청

9. 금융시장²⁹⁾

가. 금리동향

2010년 중 시장금리는 대체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기시장금리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과 보험사, 연기금 등 장기투자기관의 수급우위로 연중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12월 중 외국인 채권 투자 과세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물가상승 우려 등으로 반등하였다.

단기금리의 경우 상반기 중 하락세를 나타낸 후 하반기 들어 7월과 11월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2.00→2.50%)에 따라 소폭 상승하였다. 장기금리 하락과 단기금리 상승에 따라 장단기금리차(3년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 - 91일물 CD금리)는 점차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회사채 수익률은 경기상승세에 따른 신용위험 완화 등으로 우량물을 중심으로 빠르게 하향안정화 되었으며 하반기에는 국고채 수익률과 일정

29)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박은미 사무관

한 스프레드를 유지하며 유사한 움직임을 지속하였다. 다만, 비우량물(BBB-)의 신용위험 해소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었다.

은행 여수신금리는 단기시장금리의 움직임을 반영하여 상반기 중 빠르게 하락하였으며 하반기 들어서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표 2-49〉 주요금리 및 금리격차 추이

(단위 : %, 기말기준)

	09.12	10.1	2	3	4	5	6	7	8	9	10	11	12
콜(1일)	2.01	2.01	2.02	2.00	2.00	2.00	2.03	2.28	2.28	2.28	2.26	2.51	2.51
CD(91일)	2.86	2.88	2.88	2.78	2.45	2.45	2.46	2.63	2.66	2.66	2.66	2.80	2.80
국고채(3년)	4.41	4.27	4.10	3.89	3.61	3.58	3.86	3.80	3.55	3.32	3.25	3.19	3.38
회사채(3년, AA-)	5.53	5.39	5.24	4.89	4.41	4.45	4.77	4.75	4.53	4.26	4.03	4.03	4.27
수신금리 ¹⁾	3.64	3.87	3.60	3.27	2.89	2.89	3.00	3.10	3.16	3.08	3.01	3.09	3.31
여신금리 ²⁾	5.81	5.94	5.84	5.69	5.49	5.40	5.32	5.39	5.51	5.45	5.37	5.34	5.42
장단기금리차 ³⁾	1.55	1.39	1.22	1.11	1.16	1.13	1.40	1.17	0.89	0.66	0.59	0.39	0.58
회사채프리미엄 ⁴⁾	1.12	1.12	1.14	1.00	0.80	0.87	0.91	0.95	0.98	0.94	0.78	0.84	0.89
회사채 신용등급별 금리차 ⁵⁾	6.03	6.09	6.15	6.17	6.11	5.91	6.05	6.07	6.06	6.06	6.07	6.07	6.08

1) 예금은행 가중평균 저축성 수신(신규취급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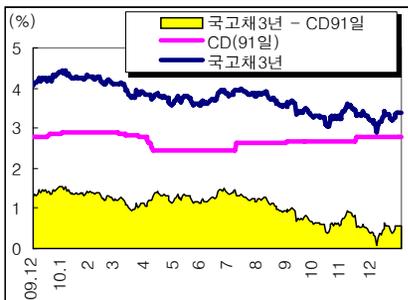
2) 예금은행 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

3) 국고채(3년) - CD(9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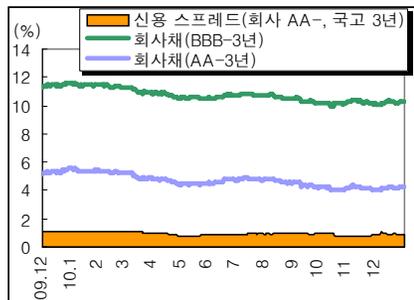
4) 회사채(AA-, 3년) - 국고채(3년)

5) 회사채(BBB-, 3년) - 회사채(AA-, 3년)

[그림 2-5] 장단기 금리 추이



[그림 2-6] 회사채 금리 추이



나. 주식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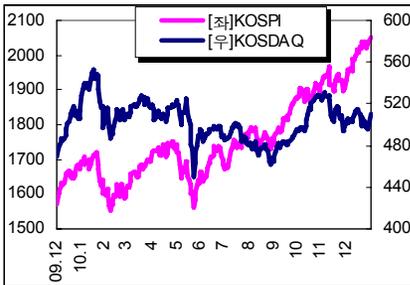
2010년중 주가는 국내경기 상승, 글로벌 주가상승,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수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코스피지수는 연초 중국의 유동성관리 강화 및 미국의 금융규제방안 발표, 5월 중 남유럽 재정위기 가능성 및 천안함 사태에 따른 북한 관련 리스크 부각, 11월 중 옵션만기일(11.11일) 등으로 일시 조정을 받기도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말 기준으로 2,051.0p로서 2009년말의 1,682.8p보다 21.9% 상승하였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2009년도에 이어 개인투자자의 차익실현 등으로 코스피지수와 차별화가 심화되면서 연말까지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말 코스닥지수는 510.7p로서 2009년말에 비해 0.6%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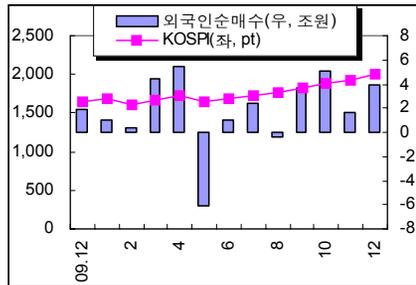
〈표 2-50〉 주식시장 동향

	2009	2010				
	연중	연중	1/4	2/4	3/4	4/4
종합주가지수(기말)	1,682.8	2,051.0	1,692.9	1,698.3	1,872.8	2,051.0
거래량(일평균, 억주)	4.8	3.8	4.2	3.9	3.4	3.7
코스닥 지수(기말)	513.6	510.7	515.7	490.0	492.8	510.7
거래량(일평균, 억주)	7.7	6.3	8.9	5.6	5.3	5.7

[그림 2-7] 주가지수 추이



[그림 2-8] 종합주가지수와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투자자는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국내경기 상승 및 미달러화 약세 전망 등으로 2009년도에 이어 큰 폭의 순매수를 유지하며 주가상승을 견인하였다.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보유 비중은 2009년말 30.4%에서 2010년말 31.2%로 확대되었다. 기관투자자의 경우 자산운용사의 주식형 펀드 환매 확대 등으로 2009년에 이어 순매도가 지속되었으나, 연기금의 순매수 전환으로 그 규모는 축소되었다. 개인투자자는 차익실현 등으로 순매도를 기록하였다.

〈표 2-51〉 투자자 주체별 주식순매수 추이

(단위 : 조원)

	2009	2010				
		연중	1/4	2/4	3/4	4/4
외국인	32.3	23.5	6.3	△0.2	7.2	10.2
기관투자자	△27.1	△14.1	△3.4	△1.7	△3.1	△5.9
개인	0.3	△2.6	△1.8	4.1	△3.1	△1.8

다. 자금흐름

2010년 중 은행 수신은 CD 등 단기시장성 수신의 부진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다만 예대율 규제에 대비한 은행의 자금유치노력 등에 힘입어 정기예금 등 저축성예금 수신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2-52〉 금융기관 수신 추이

(단위 : 조원, 기간중 증감)

	'09년	'10년					
		연중	1/4	2/4	3/4	4/4	'10년말 잔액
은행	54.8	36.9	16.4	20.6	△3.3	3.1	1,044.5
(수시입출식 ¹⁾)	41.1	25.8	△6.0	16.8	△8.7	23.7	313.0
(정기예금)	39.1	95.7	42.0	29.5	25.8	△1.6	472.7
(단기시장성수신 ²⁾)	△11.6	△68.9	△15.6	△25.8	△13.3	△14.1	53.5
(은행채)	△19.3	△12.1	△1.7	△0.6	△6.9	△2.9	163.9
자산운용사	△27.6	△16.7	10.7	△8.4	△7.9	△11.2	315.1
(MMF)	△17.2	△4.8	10.6	△4.0	△4.0	△7.3	66.9
(주식형)	△14.0	△25.2	△3.4	△6.6	△9.0	△6.3	101.0
(채권형)	15.8	6.5	2.1	1.7	2.7	0.0	52.5
(혼합형, 신종)	△12.2	6.8	1.4	0.5	2.5	2.5	94.7
금전신탁	△4.7	12.9	4.0	1.8	△1.1	8.2	80.9
우체국예금	△3.0	6.2	8.9	△0.1	△0.6	△2.0	50.4
종금사수신	△2.0	0.1	1.2	△1.6	0.1	0.4	21.8
증권사 고객예탁금	2.5	1.9	1.3	0.6	0.2	△0.1	13.7

1) 실세요구불예금 포함

2) CD, RP, 표지어음

자산운용사 수신은 2010년중 16.7조원 감소하였다. 주식형 펀드자금이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 실현으로 인해 크게 유출되었으나, 정기예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진 금리경쟁력 등으로 MMF 이탈규모가 줄어들면서 2009년에 비해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이 밖에 금전신탁, 우체국 예금, 종금사 수신이 증가로 전환되었고 증권사 고객예탁금은 주가상승과 주식투자 대기자금 유입의 영향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라. 기업자금사정

은행의 기업대출은 2009년에 비해 증가폭이 감소하였다. 은행의 대기업대출은 증가로 전환하였으나, 보수적인 대출태도 등으로 중소기업 대출은 감소하였다.

회사채의 경우 영업실적 호조 등 기업의 자금사정 호전으로 순발행규모가 감소하였다. CP 발행의 경우 MMF 감소에 따른 수요위축 등으로 순발행 규모가 감소하였으나 2009년에 비해서는 그 규모가 줄어들었으며, 유상증자 등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2009년보다 소폭 둔화되었다.

〈표 2-53〉 기업자금조달

(단위 : 조원, 기간중 증감)

	'09년	'10년				
		연중	1/4	2/4	3/4	4/4
은행대출 ¹⁾	14.5	10.9	8.1	3.7	5.9	△6.8
(대기업)	△5.2	11.8	4.9	2.7	4.1	0.1
(중소기업)	19.7	△1.0	3.2	1.0	1.7	△6.9
직접금융	33.0	16.3	4.4	5.4	2.1	4.4
(회사채 순발행)	32.6	10.9	3.6	3.1	△0.7	4.9
(CP 순발행) ²⁾	△8.3	△3.4	△0.5	△0.3	1.4	△4.2
(주식발행) ³⁾	9.1	8.8	1.2	2.5	1.4	3.7

1) 예금은행(신탁대출 포함) 2) 은행연합회 CP거래정보 기준 3)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 합계

2010년 중 기업 자금사정은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어음부도율은 2009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부도업체수는 2009년보다 크게 감소하여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안정되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도 2009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으나 하반기 이후 일부 건설 및 중소 조선업체 등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소폭 상승하였다.

〈표 2-54〉 기업자금사정

	'09년	'10년				
		연중	1/4	2/4	3/4	4/4
어음부도율(%)	0.03	0.03	0.03	0.03	0.03	0.02
부도업체수(개)	1,998	1,570	396	367	363	444
중기대출 연체율(%)	2.3	1.8	1.6	1.8	2.0	1.9

마. 가계대출

가계대출은 2009년에 비해 증가폭이 소폭 확대되었다. 주택거래 부진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마이너스 통장대출 등의 신용대출은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증가로 전환되었다.

〈표 2-55〉 가계대출 현황

(단위 : 조원, 기간중 증감)

	'09년	'10년					잔액
		연중	1/4	2/4	3/4	4/4	
가계대출	20.1	21.8	0.7	8.6	3.7	8.9	430.4
- 주택담보대출 ¹⁾	25.4	20.3	3.0	5.9	3.6	7.7	284.6
-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4.5	1.7	△2.2	2.7	0.1	1.1	145.8

1) 은행권 및 비은행권 포괄(은행권의 경우 대출채권양도 포함, 비은행권은 대출채권양도 미포함)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신용카드사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연중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전년에 비해 하락하였다.

〈표 2-56〉 가계신용 연체율 추이

(단위 : %, 기간중 평균)

		'09년	'10년				
			연중	1/4	2/4	3/4	4/4
은행 ¹⁾		0.7	0.7	0.6	0.6	0.7	0.7
신용카드사 ¹⁾	은행겸영사	2.4	1.7	1.8	1.7	1.8	1.7
	전업사 ²⁾	2.7	1.7	1.8	1.6	1.5	1.4

1) 월연체율의 단순평균 (단, 분기말월 제외)

2) 분기말월 포함

10. 외환시장³⁰⁾

가. 환율동향

2010년말 달러/원 환율은 증가 기준으로 1,134.8원으로 마감하여 전년말(1,164.5원)에 비해 29.7원 하락(2.6% 절상)되었고, 평균기준으로는 1,276.3원으로 전년(1,103.4원)에 비해 172.9원 상승(13.6% 절하)하였다.

시기별로 보면 1~4월중에는 수출호조,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대체로 하락하여 4.26일 1,104.1원(연저점)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5~6월중에는 유럽 재정위기 우려, 천안함 침몰원인 조사결과 발표 등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 부각, 선물환포지션 한도 제도 도입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빠르게 상승하여 5.26일 1,253.3원(연고점)까지 상승하였다. 7월 이후 수출호조,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 美 연준의 추가적인 양적완화 기대에 따른 글로벌 美 달러화 약세 등으로 다시 내림세를 보이면서 11.5일 1,107.3원까지 재차 하락하였다. 11월 중순 이후에는 G-20 서울 정상회

30) 집필자 :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 도종록 사무관

의(11.11~12일) 이후 자본유출입 관련 거시건전성 정책 추진 기대, 아일랜드 구제금융 신청(11.21일) 등 유럽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 북한의 연평도 포격 등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 부각 등으로 반등하여 1,134.8원으로 마감하였다.

[그림 2-9] 2009년 달러/원 환율 추이



<표 2-57> 2009년 달러/원 환율 추이

	2007	2008	2009	2009 분기			
				1/4	2/4	3/4	4/4
달러/원	1,259.5 (-25.7)	1,164.5 (8.2)	1,134.8 (2.6)	1,131.3 (2.9)	1,222.2 (-7.4)	1,140.2 (7.2)	1,134.8 (0.5)
(평균) ¹⁾	1,103.4 (-15.8)	1,276.3 (-13.6)	1,156.0 (10.4)	1,143.4 (2.2)	1,165.2 (-1.9)	1,183.6 (-1.6)	1,132.3 (4.5)

1) 기간중 평균 환율 기준, ()내는 전기(말) 대비 절상(+)/절하(-)율(%)

나. 외환시장 동향

2010년중 달러/원 환율의 일중 변동폭 및 전일대비 변동폭은 각각 9.5원 및 6.9원으로 전년(14.6원 및 9.4원)에 비해 축소되었다. 다만 2/4분기중에는 유럽 재정위기, 천안함 침몰원인 조사결과 발표 등에 따른 지정

학적 리스크 부각 등으로 환율이 단기간에 급등함에 따라 달러/원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표 2-58〉 달러/원 환율 변동성 추이

(단위 : 일평균 기준, 원, %)

	2008	2009	2010				
				1/4	2/4	3/4	4/4
일 중 변동폭 (일중변동률 ¹⁾)	18.3 1.50	14.6 1.10	9.5 0.81	7.1 0.62	12.8 1.08	8.3 0.70	9.7 0.85
전일대비 변동폭 (전일대비 변동률 ²⁾)	12.0 0.99	9.4 0.71	6.9 0.60	5.6 0.49	10.9 0.92	5.1 0.43	6.2 0.55

1) $100 \times (\text{일중 최고가} - \text{일중 최저가}) / \text{당일 평균 환율}$

2) $100 \times (\text{금일 종가} - \text{전일 종가}) / \text{절대값} / \text{전일 종가}$

2010년중 은행간 시장의 외환거래 규모(외국환중개회사 경우분 기준)는 일평균 194.6억달러로 전년(183.1억달러)에 비해 6.3% 증가하였다. 상품 종류별로 거래규모를 살펴보면, 외환스왑이 101.9억달러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현물환(76.6억달러), 기타(14.3억달러) 등의 순을 보였다.

〈표 2-59〉 은행간 외환거래¹⁾ 추이

(단위 : 일평균, 억달러, %)

	2008	2009	2010		1/4	2/4	3/4	4/4
				()				
현 물 환	78.1	58.3	76.6	(31.4)	76.7	86.0	71.3	72.8
선 물 환	9.1	4.6	1.8	(-60.9)	2.9	1.7	1.1	1.3
외환스왑	92.3	105.3	101.9	(-3.2)	96.1	107.3	98.3	103.9
기타파생상품 ¹⁾	21.3	14.9	14.3	(-4.0)	14.5	14.8	12.9	14.8
계	200.8	183.1	194.6	(6.3)	190.2	209.8	183.6	192.8

1) 외국환중개사 경우 거래 통화스왑 및 옵션 등

2)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3

안정성장 기반 강화

제3장 안정성장 기반 강화

제1절 거시정책의 안정 운용³¹⁾

2009년 이후 우리경제는 회복세를 지속하였다. 하지만 민간부문의 소비와 투자, 고용여건이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자생적 회복기반이 강화될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견지하였다. 다만, 위기극복과정에서 도입한 한시적인 대책들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였다.

1. 확장적 재정정책기조

정부는 경기회복세가 강화되도록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하였다. 2010년에는 2009년 본예산 대비 2.9% 늘어난 총지출 292조 8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뒷받침하였다. 또한, 경제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기회복 추세를 공고히 하고자 2010년 상반기 집행관리 대상 사업비 271.3조원중 165.4조원을 집행(진도율 61.0%)하는 등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였다.

31) 집필자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남병훈 사무관, 박지원 사무관

〈표 3-1〉 2010년 총지출 규모

(단위 : 조원)

	'09		'10
	본예산	추경	
▪ 총지출	284.5	301.8	292.8
▪ 예산	204.1	210.3	205.3
(일반회계)	158.3	163.1	159.9
(특별회계 18개)	45.8	47.2	45.4
▪ 기금	80.4	91.5	87.5

〈표 3-2〉 2010년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실적

(단위 : 조원, %, 누계)

구 분	'10년 집행규모	6월말 계획		6월말 실적		
		금액	진도율	금액	집행률	진도율
합 계	271.3	162.9	60.0	165.4	101.6	61.0
예 산	175.1	105.7	60.4	109.3	103.4	62.4
기 금	31.3	17.8	56.8	18.2	102.2	58.1
공공기관	64.9	39.3	60.6	38.0	96.4	58.6

다만, 재정건전성을 회복하여 2013~2014년에 재정균형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자폭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갔다. 2010년에는 관리대상수지 적자를 GDP대비 $\Delta 2.7\%$ 수준으로 낮추어 2009년보다 2%p 이상 개선하였고, 국가채무는 2009년 추경의 GDP대비 35.6%보다 다소 증가한 36.1%로 억제하였다.

〈표 3-3〉 2010년 재정수지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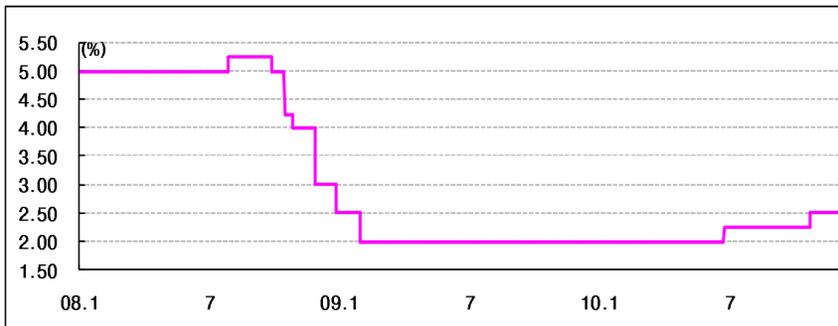
	'09		'10
	본예산	추경	
■ 관리대상수지 ¹⁾ (GDP대비, %)	△24.8 (△2.4)	△51.0 (△5.0)	△30.1 (△2.7)
■ 국가채무 (GDP대비, %)	349.7 (34.1)	366.0 (35.6)	407.2 (36.1)
■ 일반회계 국채	19.7	35.5	29.3

1)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사학,고용,산재)을 제외한 수치

2. 통화정책 완화기조의 단계적 정상화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2.0%로 낮춘 기준금리를 2.0%로 낮추고 이를 2010년 상반기까지 유지하였으나,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7월과 11월에 2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각각 25bp씩 인상하였다.

[그림 3-1] 기준금리 추이



3. 한시적 대책의 점진적 철회

한시적인 위기대응조치는 시장에 큰 충격이 없도록 경기회복 효과, 수혜대상별 지원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한만료에 따라 사업을 종료하거나 점진적으로 지원규모를 축소하였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적인 신용보증확대 조치는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장치를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보증 만기연장조치는 2010년 상반기에 종료하였으며 한계기업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원의 선별성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보증비용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한편³²⁾, 초과보증에 대해서는 가산료 부과 등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2009년에 감축조치를 일시 중단하였던 장기·고액 보증은 가산보증료 부과 등을 통해 2010년부터 감축을 재개하였다. 다만, 중소기업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않도록 Fast Track은 2011년까지 연장하였다.

2009년 25만명, 2010년 10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던 희망근로사업을 2010년 상반기에 종료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정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하반기부터 추진하였다.

한국은행은 지난해에 이어 위기대응 차원에서 확대 공급하였던 원화 유동성에 대한 환수 노력을 지속하였다. 2009년 3월말 3.3조원을 지원하였던 은행자본확충펀드의 경우 2010년 3월과 12월에 각각 0.2조원과 0.3조원을 회수하였으며,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취급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3.5조원을 증액했던 총액대출한도도 2010년 3/4분기에 1.5조원 감축하였다.

32) (기존보증) : (09년) 95% → (10.1월부터) 90% → (10.7월부터) 85%
(신규보증) : 신용등급별 50~85% 차등적용 (위기이전 수준)

제2절 물가의 안정적 관리

1. 생필품 가격 안정 유도³³⁾

2010년 정부는 가격 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제고,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생필품 가격 안정을 도모하였다.

가. 생필품 등 가격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정부는 소비자 단체를 활용하여 서민 지출비중이 높은 생필품의 판매 가격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였다. 2010년 초부터 주요 가공 식품을 중심으로 가격비교 정보를 제공하였고, 2010년말에는 소비자원 홈페이지(T-Gate)에 지역별·유통업체별 판매가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의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이외에도 전기, 열차, 도시가스, 상수도, 도로통행료, 우편료 등 공공요금 6종에 대해 결산실적 발표 후 3개월 이내에 원가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요금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원가절감 노력 강화를 유도하였다.

나. 생필품 관세율 인하

서민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생필품은 국내의 가격동향에 따라 원료 또는 완제품의 관세율을 인하하여 가격안정을 유도했다. 한편,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하여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기본관세율 인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시장경쟁여건 확충을 통한 물가안정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33) 집필자: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정동영 사무관

다. 이동통신요금 인하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였다.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는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를 빌려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파수 재판매제도(MVNO)를 도입하고, 단말기 보조금 지급 자제를 통해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여 요금인하 여력을 확충하도록 유도하였다.

라.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활동 강화

또한 정부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등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특히 제수용품, 선물세트, 밀가루, 설탕, 제빵 등 명절시 가격 인상 가능성이 큰 품목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여 명절물가 안정에 기여했다. 11.18일에는 주부 물가모니터단 745명을 구성하여 소비자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주부 물가모니터단의 체감물가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현장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2. 공공요금 안정³⁴⁾

정부는 공공요금이 서민생활에 밀접한 만큼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원칙적으로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인상이 불가피한 요금의 경우 공공기관의 원가절감 등을 통해 인상수준을 최소화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도 공공요금 상승률이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1.2% 수준을 보이는 등 공공요금의 안정을 통해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34) 집필자 :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김현익 사무관

〈표 3-4〉 공공요금 상승률

(전년대비, %)

연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소비자물가	2.5	3.2	3.5	3.1	2.4	1.9	1.2

가. 중앙공공요금³⁵⁾

정부는 2010년 하반기 이후 물가압력 확대, 어려운 서민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공공요금부터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물가 불안 심리를 차단하고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도로통행료, 열차요금, 국제항공요금(인가제노선), 광역상수도(도매), 우편요금은 경영효율화를 통해 2010년 중에 동결하고, 통신요금은 결합상품 활성화, 초당요금제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금 인하를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다만, 손실 누적, 에너지 절감유도 필요성 등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한 분야(전기, 도시가스, 시외버스, 고속버스)에 대해서는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도 하반기 중 분산하여 추진함으로써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였다.

전기요금의 경우 에너지 절약 유도, 한전의 적자 해소 등을 위해 8.1일부로 평균 3.5%를 인상하였다. 한전의 자구노력(1.3조원)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주택용은 2% 인상하고 농사용은 동결하여 서민들의 부담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였다.

35) 중앙공공요금(11종) : 전기료, 열차료, 시외버스료, 고속버스료, 도로 통행료, 우편료, 통신료, 유료방송요금, 국제항공요금, 도시가스요금(도매), 상수도요금(광역, 댐용수)

가스요금의 경우 2008년 3월 이후 원료비 연동제가 유보되면서 누적된 미수금(2010.8월 기준 4.3조원)의 회수를 위해 9.1일부로 평균 4.9% 인상하고, 원료비 연동제를 재시행하였다. 다만, 가스공사의 예산절감 등을 통해 2,607억원의 지구노력을 추진하여 인상요인을 최소화하였다.

특히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서민(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금인상율만큼 서민층 할인율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서민요금은 동결하였다. 전기요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할인(주택용 20 → 21.6%, 심야용 25.9 → 31.4%)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할인(주택용 신규할인 2.0%, 심야용 24.1 → 29.7%)을 대폭 확대 하였다. 가스요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1~3급)에 대한 할인율을 확대(11 → 16%)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할인(5.6%)을 신설하여 서민층 부담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였다.

시외·고속버스운임은 2009년 이후 경유 등 원가상승분을 반영하여 8월에 최소 수준(시외버스 평균 4.3%, 고속버스 5.3%)으로 인상하였다.

2010년 중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로 물가 안정 및 서민생활 부담 완화에는 크게 기여했으나, 요금인상요인이 누적되면서 공공기관의 부담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향후 공공요금의 안정 노력과 함께,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단계적 요금 현실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 지방공공요금³⁶⁾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적극 동참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예산상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 (2009년 52억원 → 2010년 108억원)하여 요금 안정을 적극 유도하였다.

36) 지방공공요금(11종) : 지하철,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소매), 문화시설입장료, 고등학교납입금, 정화조청소료, 공연예술관람료

제3절 경제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 및 위기대응능력 제고

1. 자본유출입에 따른 대응 및 위기대응 능력 제고³⁷⁾

우리경제가 과거 2차례 경험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높은 점에 있었다. 우리경제는 대외개방도가 높기 때문에 경기가 좋을 때는 해외자본이 과도하게 유입되었다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 급격하게 유출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이러한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 위축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경험해 왔다.

정부는 과거의 경험을 교훈삼아 위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외환시장안정협의회」를 구성하고 6개월간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동 방안은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높여온 주요 원인인 은행의 과도한 단기차입을 줄이고 불요불급한 외화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은행의 외환부문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자본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우리의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포함하였다.

37) 집필자 :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 오재우 서기관

〈표 3-5〉 「자본유출입 변동완화 방안」(6.9일)의 주요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선물환포지션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환은행의 전월말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신설·운영 (국내은행 50%, 외은지점 250%) • 시행후 3개월간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기존거래분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하는 보완조치를 마련
외화대출 관리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화대출을 해외사용 용도로만 제한 • 중소 제조업체의 '국내 시설자금 용도' 외화대출은 기존 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
금융기관의 외환건전성 관리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국내 은행은 물론 외은지점에도 동일하게 적용 • 기업들의 환헤지를 위한 선물환거래 한도를 실물거래의 100% 이내로 제한
자본유출입 모니터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 종합예측모형(Early Warning System) 보완 • 국제금융센터내, '자본유출입 모니터링본부' 설치

「자본유출입 변동완화 방안」은 다음의 네가지 기본방향을 염두에 두고 마련되었다. 첫째, 기존의 자본자유화와 시장개방의 기초는 유지하면서 과도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시켜 우리 경제의 거시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둘째, '사전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위기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셋째, 거시건전성 제고조치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에 맞추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넷째, 모든 조치는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없이 금융·실물거래를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기간과 다양한 보완조치를 담았다.

대책시행으로 우려했던 외화유동성 악화, 환율변동성 심화 등 시장의 혼란은 발생하지 않고 순조롭게 정착되었으며, 은행부문의 단기외채가 감소하고 외채구조가 장기화되는 등 우리 경제의 거시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당초 의도한 정책효과가 달성되었다.

〈표 3-6〉 외채 건전성 지표의 추이

- | |
|---|
| ① 은행 단기외채 : '10년 6월말 1,165억달러 → '10년 12월말 1,013억달러 |
| ②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율 : '10년 6월말 42.6% → '10년 12월말 37.5% |

또한, 11월 G-20 서울정상회의에서는 산흥국들이 필요한 경우 과도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회원국간 상호 확인하는 합의가 있었던 바, 우리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이 대내외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정부는 대책 시행이후에도 자본유출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보완대책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11.18일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 환원조치」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국회의 입법과정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선진국의 양적완화와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풍부해진 글로벌 유동성이 우리나라의 채권시장으로 급격히 유입되어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심화시키고 우리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약시킬 가능성이 우려됨에 따라 외국인의 국제·통안채 투자에 대한 기존의 세제혜택을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 환원조치」는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2. 외환건전성 제고 -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도입³⁸⁾

우리나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국내로 과도하게 유입된 자

38)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부운용과 손선영 사무관, 외환제도와 정규삼 사무관

금이 일시에 급격하게 유출되면서 경제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가 확대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일례로 리만브러더스社가 파산한 '08.9월부터 '08년 말까지 4개월 간 695억불이 일시에 유출되면서 글로벌 위기가 우리 경제로 확산된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위기에방을 위해서는 과도한 자본유출입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저금리 및 양적 완화로 증가한 글로벌 유동성이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인 우리나라 등 신흥국으로 대거 유입되는 상황이 새로운 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조치로서 2010년 12월 외환건전성부담금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G-20 차원에서 논의되어 온 은행부과금(bank-levy)³⁹⁾을 우리 경제상황에 맞게 응용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동 제도는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표 3-7〉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현황

(단위 : 억불)

	07	08	09	10	10년말 잔액
주식순매수	△329	△413	184	203	3,405
채권순투자	341	4	145	146	654

자료 : 한국은행 ECOS DB

39) 2009년 9월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고 향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금융권이 직접 분담하게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를 계기로 금융기관의 과도한 리스크 유발을 억제하고 위기 대응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부과금(bank levy)을 부과하는 방안이 G-20 회원국간에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그 결과 2010년 6월 G-20 토론토 정상회의에서는 은행부과금 등 금융권 분담방안 도입에 관한 일반 원칙을 채택하고 국별 상황에 맞게 각국이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이후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재정 확충, 정리기금 재원 마련 등 자국의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형태의 은행부과금 도입 방안을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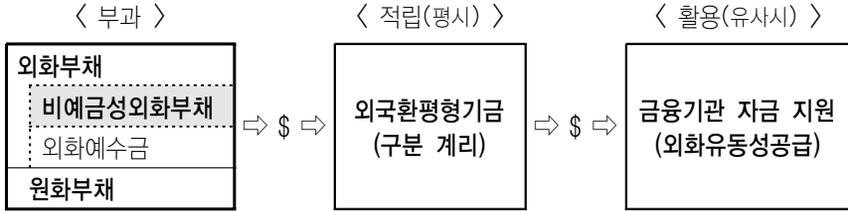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사 직접적인 재정손실이 없어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양호하였고, 금융기관 부실에 따른 리스크를 방지할 제도(예금보험기금, 구조조정기금, 금융안정기금, 은행자본확충펀드 등)를 상당 부분 이미 갖추고 있어 다른 선진국들과 동일한 방식의 은행부과금을 도입할 필요성은 적었다. 이에 따라 외환건전성부담금은 급격한 외화유출입을 방지하고, 유사시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유동성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목적에 맞도록 설계되었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8〉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부과대상	○ 비예금성외화부채(전체 외화부채 - 외화예수금)
대상기관	○ 전체 금융기관 - 다만,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 ⁴⁰⁾ 등을 고려하여 우선 56개 은행권으로만 한정
부과요율	○ 0.5% 범위 내에서 만기에 따라 차등 부과 - 1년이하 0.2%, 1~3년 0.1%, 3~5년 0.05%, 5년초과 0.02% ○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입으로 금융시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6개월이내 기간 동안 최대 1%까지 추가부과요율 적용 가능
적립 및 활용	○ 부담금은 외국환평형기금에 적립하되, 기존 재원과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 ○ 적립된 재원은 위기시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유동성 지원 용도로 활용

40) 은행권이 전체 금융기관이 보유한 비예금성외화부채의 96% 차지(10년말)

〈표 3-9〉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활용 체계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를 통해 자본유출입 변동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외화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함으로써 외환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 경제의 외채구조를 장기화하여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시 자본의 급격한 유출을 최소화하고, 부담금 적립금을 위기시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는 효과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3. 기업 구조조정⁴¹⁾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 이후 경제전반 및 개별 기업의 부실 우려가 확산되면서 경제체질 개선과 금융부실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정부는 실효성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09년 2월 구조조정의 원칙과 전략을 마련하였다.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세제지원, 규제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0년에도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대기업그룹·개별대기업·중소기업 등 기업규모별 특성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41) 집필자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 김민규 사무관

〈표 3-10〉 기업구조조정 추진경과

구 분	평가 업체수	C등급					D등급	C·D 합 계	
		졸업	진행중	중단	기타	소계			
업 종 별	건설	308	7	21	10	-	38	24	62
	조선	40	1	4	3	-	8	7	15
	해운	117	-	4	2	-	6	16	22
개별대기업	925	8	33	15	4*	60	29	89	
중소기업	5,958	59	211	123	-	393	398	791	
합 계	7,348	75	273	153	4	505	474	979	

* 합병 등 자체정상화 추진
 자료 : 금융위원회 기업재무개선지원단

2009년 1월~2010년 12월 기간 중 총 7,849개 기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922개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C등급업체는 489개로 주로 워크아웃을 통해 조기 정상화를 지원하였으며, 업체의 상황에 따라 기업 회생절차 및 자율 협약 등 여타 구조조정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였다. 433개의 D등급 업체에 대해서는 채권회수 및 청산 등을 통한 퇴출이 유도되었다.

또한, 민간시장을 통한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0년 세제개편을 통해 기업구조조정 관련 조세특례제도의 일몰을 연장하였다. 일몰이 연장된 제도의 주요내용은 채무상환 목적의 기업자산 매각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부실기업의 양도·청산을 전제로 주주가 채무 인수시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이연,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간 주식 교환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등이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패스트트랙(Fast Track) 프로그램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

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제도인 대주단 협약은 당초 2010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선진국의 경기둔화, 유럽의 재정위기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대내외 불안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 및 건설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2011년 말로 종료를 1년 연장하기로 하였다.

한편, 시장 자율의 구조조정(워크아웃) 절차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운용하기 위해 도입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시한이 2010년 말로 종료되었다. 당초 경제의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시장 자율의 구조조정 관행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어 구조조정 절차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보완하여 시한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개정할 계획이었으나,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실효되었다.⁴²⁾

4. 부동산시장 안정⁴³⁾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전반의 회복기조가 공고해지는 가운데, 2010년 부동산시장은 높은 주택가격 수준과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거래가 위축되고 미분양도 예년보다 많이 적체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미분양 해소를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였다.

42) 2010년말 실효되었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새로운 제정안이 201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부활되었다. 새로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2013년말까지 한 시적으로 운영될 내용이며 워크아웃 추진과정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내용이 보완되었다.

43) 집필자 :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이진호 사무관

가. 주택거래활성화 방안 마련

2010년 8월에 마련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정부는 실수요 주택거래자의 거래불편을 해소하고 주택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해 금융, 세제상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하였다.

우선, 실수요자의 원활한 주택자금 조달을 위해 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11년 3월말까지 금융회사가 DII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2011년 3월말까지 주택기금을 통해 호당 2억원의 범위 내에서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세제부분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규정을 2년 더 연장하여 2012년말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함으로써 주택거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보완하였다. 대책 발표 이후 주택거래량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으며 연말에 가까워지면서는 예년 평균 수준을 상회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0년 하반기에는 주택가격이 보합수준에서 유지되는 가운데 주택 거래는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매매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나갔다. 다만, 매매시장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전세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건설 부진의 여파 등에 따른 수급불균형으로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표 3-11〉 월간 아파트 거래량

(단위 : 건)

	'10.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30,454	32,227	31,007	33,685	41,342	53,558	63,192
수도권	7,967	8,404	8,091	9,022	12,401	17,455	20,174
서울	2,051	2,203	2,123	2,248	3,126	4,948	6,629
지방	22,487	23,823	22,916	24,633	28,941	36,103	43,018

자료 : 국토해양부

나. 미분양주택 해소 방안 마련

주택업체 자금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인 미분양주택의 해소를 위해 2010년 4월 ‘주택미분양 해소방안’을 마련·추진하고 8월에는 보완방안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미분양 주택을 장기평균 수준으로 줄여나가면서도 업계의 노력과 정부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우선 유동성 지원차원에서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을 확대하고, LH의 준공후 미분양 매입을 추가로 시행하는 한편, 준공후 미분양을 담보로 하는 P-CBO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강을 제공하였다. 또한 세제부분에서도 미분양 리츠·펀드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재산세 감면과 법인세 추가과세 면제, 종부세 비과세 등 각종 세제 지원을 연장·확대하기로 하였다. 특히 미분양 주택 구입시 부여하는 세제 지원 혜택을 업계의 분양가 인하 노력과 연계하여 차등 적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 방지에도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2분기 이후 미분양주택이 점차 소진되면서 2010년말에는 2009년말대비 28% 이상 감소하는 등 회복세를 이어나갔다. 특히,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각종 유동성 지원 방안에 따라 지방 소재 미분양주택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주택 입지 등의 문제로 인해 미분양주택이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3-12〉 미분양 주택 추이

(단위 : 건)

	'10.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110,409	110,460	110,020	106,464	103,981	100,325	99,033	94,539	88,706
수도권	25,910	27,647	28,268	28,151	28,152	29,201	29,334	29,189	29,412
지방	84,499	82,813	81,752	78,313	75,829	71,124	69,699	65,350	59,294

자료 : 국토해양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4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

제 4 장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

제1절 일자리 창출

1. 국가고용전략회의 운영⁴⁴⁾

글로벌 금융위기로 큰 폭의 경기침체를 겪었던 우리경제는 적극적 재정·통화정책 및 해외 경제여건 개선에 힘입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고용의 경기 후행성으로 인해 고용의 회복속도는 경기의 회복속도에 미치지 못하여 국민들의 경기회복 체감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경기회복 기초를 공고히 하고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증대시키는 것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등장 하였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2010년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통령 주재의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월 1회⁴⁵⁾, 1년간 한시적으로 개최기로 결정하였다. 총리실 국무차장, 재정부·교과부 차관이 각각 담당하는 ‘고용·사회안전망 TF’, ‘실물경제TF’, ‘교육·인력양성 TF’를 전략회의 산하에 구성하여 노동시장 효율화, 서비스산업 선진화, 교육제도 개선 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였다.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는 2010년 1.21일(목)에 대통령 주재로 각 부

44) 집필자 :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 정원 사무관

45) 대통령 주재로 매주 개최되는 비상경제대책회의 중 월 1회를 국가고용전략회의로 1년간 한시적으로 개최기로 결정

처 장관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⁴⁶⁾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정부는 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책과 제도를 고용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고용률(취업자수/15세이상 인구)을 경제정책 핵심지표의 하나로 삼아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고용정책의 대상을 실업자뿐만 아니라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취업애로 계층으로 확대하는 등 실업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대처하기로 하였다. 경제위기로 악화된 고용을 시급하게 회복하기 위한 단기대책으로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높여 나가기 위한 구조개선 대책의 방향도 제시하였다.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는 2010년 중 취업자 25만명 이상 증가, 고용률의 증가세 전환, 실업률 3% 초반대를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취업애로계층의 구직 DB와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대한 구인 DB를 확충하고 상호연계를 강화하는 맞춤형 대응을 추진하였고, 구인-구직 중개에 취업애로 계층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재정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단기적 대책과 병행하여 추진될 구조적 고용창출 방향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었으며 2010년 내에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필요한 제도적 조치들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구조적 대책들을 통해 매년 고용률을 0.1%p 이상 제고하여 2015년까지 위기 이전 고용수준을 회복하고 향후 10년 이내에 고용률 6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제고하기위해 산업정책과 재정·세제 등의 지원제도 전반을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해 나가기로 하였다.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 외국과 비교하여 고용비중이 낮은 서비스 분야는 소관부처별로 일자리 창출 규모를 제시하고 규제개선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경쟁력이 없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임금·고용

46) 참석대상(총46명) :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노동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등 관계부처 장관,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KDI원장 등 전문가, 일자리 중개기관장 등

유연화를 통해 기업의 채용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고용지원서비스 위탁단
가 현실화를 통해 민간위탁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2.18일)에서는 ‘인문계 대졸 미취업자 직업훈련
지원방안’과 ‘유연근로제 확산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인문계 대졸 미취업
자 직업훈련 지원 방안은 대졸자 중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인문계열 미취
업자를 대상으로 훈련수요 조사를 실시하고(개인별 DB 구축) 고용지원센
터, 대학 취업지원실 등을 통해 원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개인별 밀
착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유연근로제 확산방안은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
근로를 중심으로 유연근무제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유연근
무제 선도모델을 발굴하여 민간에 확산하고 민간부문에는 단시간 근로
확산 지원과 함께 유연근무 확산에 장애가 되는 법령을 개선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3.4일)는 광역·기초자치단체장(246명)들이 함
께 참석하여 지역일자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지역일자리 활성
화 방안은 개별 자치단체를 조기에 일자리 총력체제로 전환하고 중앙과
지방, 민간과 공공부문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선정하여 추진기로 하였다.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4.8일)는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듣기 위해
충남테크노파크에서 개최되었으며 ‘유망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 방향’ 및
‘콘텐츠·미디어·3D산업분야 발전전략’ 등이 논의되었다. 4차 회의는 1
차 국가고용전략회의(‘10.1.21) 후속조치로 주요선진국과 비교하여 고용창
출 여지가 많은 서비스분야의 일자리창출 방안을 마련·시행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데 의미가 있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고용비중이 낮은 업
종 중에서 고용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등 5

대 유망서비스 분야⁴⁷⁾를 선정하여 일자리창출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고 그 중 첫 번째로 콘텐츠·미디어·3D산업분야의 육성전략을 논의하였다.

제5차 국가국가고용전략회의(5.12일)는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는 고용동향을 면밀히 검토해보고 '2008년~2018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정책 과제'와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향후 취업자는 연평균 20.8만명씩 증가하는 가운데 고령화·고학력화·여성 증가의 세 가지 트렌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전문대·대학 졸업자가 연간 약 4.5만명 초과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어 대학구조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별 고용구조도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구조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를 위해 마이스터고·특성화고를 집중 육성키로 하였으며 소규모 종합고등학교를 '거점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능동적인 선취업 후진학 체계를 구축하여 일자리에 대한 미스매치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었다.

제6차 국가고용전략회의(5.27일)에서는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 방안', '금융채무 불이행자 취업지원 방안', '우수기능인 처우개선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를 통해 간병·돌봄·보육·장기요양·지역사회서비스 등 5대 유망서비스 선진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채무불이행자가 효과적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국위를 선양한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도 체육올림픽 메달리스트와 동등한 예우를 받도록 각종 지원 제도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47) 콘텐츠·미디어, 사회서비스, 관광·레저, 교육·R&D, 보건·의료

제7차 국가고용전략회의(6.11일)에서는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어 자치단체가 앞장서고, 중앙정부가 밀어주는 방식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제8차 고용전략회의(7.15일)에서는 '관광·레저산업 육성방안'이 논의되어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분야별 관광활성화 방안, 레저산업 육성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었다. 제9차 고용전략회의(8.19일)에서는 청년의 창의적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기술창업 지원대책'이 논의되었다.

마지막으로 제10차 국가고용전략회의(10.14일)에서는 청년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인 '청년 내 일 만들기 제1차 프로젝트'와 '원자력 인력수급 전망과 양성대책'이 논의되었다. 청년 내 일 만들기 프로젝트는 청년 고용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①고용친화적 경제성장으로 민간부문의 고용창출력을 높여서 청년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②청년의 직업경쟁력 자체를 높여 국내외에서 자생적으로 일자리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③민·관 공동으로 청년이 가고 싶어 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충 노력을 강화한다는 3가지 정책방향을 표명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2011~2012년간 7만개 이상의 청년일자리 창출한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였다.

〈표 4-1〉 2010년 국가고용전략회의 개최 일시 및 안건

차 수	일 자	안 건
제1차	1.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고용전략회의 운영방안 • 현 고용상황 평가 및 향후 고용정책 방향
제2차	2.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연근무제 확산 방안 • 인문계 대졸 미취업자 직업훈련 지원 방안 •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전략
제3차	3.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안 • 사회적기업(영상물)
제4차	4.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고용동향과 유망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방향 • 콘텐츠-미디어-3D산업 발전전략
제5차	5.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고용동향 및 평가 •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정책과제 •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제6차	5.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 방안 • 금융채무 불이행자 취업지원 방안 • 우수기능인 처우개선 방안
제7차	6.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제8차	7.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레저산업 육성방안
제9차	8.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기술창업 지원대책
제10차	10.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내 일 만들기 • 원자력발전 인력수급 전망과 양성대책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지속적으로 다뤄졌고 단기적인 일자리 보완대책과 중장기적인 고용창출 대책들이 관련부처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종합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었다. 그 결과 고용회복세가 2010년 상반기 이후 급격히 강화되었고 2010년 하반기 이후에도 회복세가 견조하게 유지되면서 당초 목표인 취업자 25만명 증가를 크게 상회하는 32.3만명의 취업자 증가를 실현하였다.

[그림 4-1]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내실화⁴⁸⁾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고용여건이 악화되자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였다. 특히, 저소득층 및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일자리사업을 강화하여 총 5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44.8만명에 대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등 총 8조9천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였다. 이렇게 경제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고용안정과 위기극복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부처별로 산발적인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인해 사업간의 유사·중복 요소가 많고 낭비와 비효율이 크다는 지적도 있어 범정부 차원에서 일자리사업에 대한 효율화가 필요했다.

48) 집필자 :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 방대성 사무관

〈표 4-2〉 2010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단위 : 억원)

계	직접일자리 창출	직업능력 개발훈련	고용 서비스	고용 장려금	창업지원	실업급여 등
88,986	27,270	11,518	2,495	8,818	1,386	37,498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내실화를 위해서 수요자 입장에서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여 단순화하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취업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 및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되, 중앙은 조정 및 평가기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수요자 중심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위해서 추진한 정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각 부처가 발굴·추진해 온 일자리사업을 OECD 기준을 참고하여 202개 사업으로 재분류하였고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여 153개 사업으로 단순화하였다. 이로 인해 수요자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직접일자리 창출 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을 원칙적으로 50%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일반 실직자를 채용한 경우 지급하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자활사업,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면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취업취약계층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할 경우에는 자비부담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셋째, 민간 취업지원기관의 일자리 중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지역은 지역노사민정협의체를 통해 유사·중복사업을 지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이밖에도 일자리사업이 끝나면 취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 향상 훈련과 취업알선을 지원하였다. 일자리사업의 참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당 8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일자리사업이 끝나면 실업급여 안내 및 공공취업지원 기관에 구직등록을 하도록 안내하였다.

〈표 4-3〉 일자리 사업 효율화 추진 전·후

구 분	당초 (10년)		구 분	OECD기준 (10년)		효율화 (11년)
① 직접 일자리 창출	117개	1) →	① 직접 일자리 창출	97개	2) →	79개
② 교육 및 훈련	46개		② 직업능력 개발훈련	41개		25개
③ 고용 유지	3개		③ 고용서비스	32개		27개
④ 고용 촉진	13개		④ 고용장려금	18개		12개
			⑤ 창업지원	10개		6개
			⑥ 실업급여 등	4개		4개
【합 계】	179개 (26부처)		【합 계】	202개 (23부처)		153개 (22부처)

- 1) 고용서비스 및 실업자 창업지원사업 등을 새롭게 포함하고, 일자리사업으로 보는 것이 부적절한 일부 사업을 제외
- 2) 각부처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직업능력개발 사업 등 유사사업 정비

3. 인력양성 체계 개선⁴⁹⁾

대학진학자의 증가와 청년 눈높이 상승 등으로 청년 실업률이 일반 실업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현장에서는 기술·기능 인력 확보에 애로를 겪는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는 「고

49) 집필자 :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 김남희 사무관

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2010.5월)하였다. 이를 통해 2012년까지 마이스터고를 50개 육성하고, 산학협력형 특성화고를 확대(350개)·내실화 하는 등 전문계고 체제개편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산업계와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실무중심으로 개편하고 산학겸임교사를 채용하는 등 교육의 현장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또한 청년취업인턴제를 확대하고, 재직경험만으로 대학에 가는 재직자 특별전형을 확대하는 등 선취업 후진학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고등교육과정에서는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발전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취업역량이 강하고 산업계 수요에 맞는 우수 전문대학이 'World Class College'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10년 80교, 교당 32억원)하고, 공학기술교육 인증 및 전문대학 기관인증 등 평가·인증체계를 통해 교육의 질 관리를 강화하여 잘하는 대학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였다. 또한, 대학 중심의 산학협력만으로는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 및 고용효과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R&D·고용이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된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을 추진하였다.

한편, 경기회복의 과실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생산성 제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 아래 직업능력개발도 강화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이 직업능력개발 계좌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시 자부담(20~40%)을 면제하고, 훈련비 지원을 확대(200만원→300만원)하는 등 우대방안을 마련하였다. 실업자 훈련에 있어서도 물량배정 방식을 축소하고 계좌제를 확대 실시하여 훈련효과 향상을 도모하였고, 근로자 수강지원금·능력개발카드제를 통해 재직 근로자의 자율적 능력개발 선택기반을 강화하였다. 또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10년 106,000개 중소기업), 학습조직화('10년 317

개) 등 중소기업에 특화된 능력개발지원을 확대한 결과 중소기업의 직업 능력개발 참여가 증가('08년 35.1%→'10년 41.0%)하였다. 이에 더하여 폴리텍대학 학과개편('10년 13개),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확대('10년 12,330명)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 등 미래산업 분야의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였다. 그러나 인적자원투자에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중소기업 훈련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1년에도 생산력 확대, 기술력 증진, 일자리 복지를 위한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계 구축 및 인재양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저소득층·중소기업 근로자·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능력개발·취업알선 등 고용가능성(Employability)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 대학구조조정, 진로교육 활성화 등 우수 인적 자본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4.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⁵⁰⁾

가. 노동 유연성 제고

2006년 9월 노사정 대타협으로 정규직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대한 평가는 세계은행(World Bank) 및 국제경영개발원(IMD) 등 국제기구 평가와 각종 조사결과에서 경직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문제가 대두되었다.

50) 집필자 :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 강창기 사무관

〈표 4-4〉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대한 평가

World Bank(2009년) : 고용 및 해고 분야 경직성 순위는 150위/183개국
IMD(2009년) : 기업활동에 대한 노동규제 부문은 54위/57개국
주한 외국기업인 인식 조사(2008년) : 87.8%가 경직적이라고 평가

더욱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위기는 일자리 나누기와 고용안정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근로시간 및 임금 등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의 틀로 노사정위원회에 「근로시간·임금제도개선위원회」가 마련되었고, 폭넓은 실태조사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위원회는 휴일·휴가사용 활성화 등 장시간근로 개선, 정규직 파트타임 활성화 등 근로시간 모형 개발, 임금체계의 중·장기 개선방안 모색 등을 중점합의 과제로 선정하고 논의를 진행, 노사 의견을 조정하여 6월 8일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하였다.

〈표 4-5〉 노사정 합의문 주요내용

분 야	수행주체	주 요 내 용
근로시간 단축	노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1,800시간 이내로 단축시키기 위해 노력 • 노사정을 포함한 범국민추진기구 구성
단시간 근로 활성화	노사	• 단시간 근로에 적합한 직무 및 임금체계를 개발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
	정부	•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계층의 단시간 일자리 참여 지원
임금체계 개선	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성, 직무 등을 반영하는 합리적 임금체계로 전환 • 임금피크제 등 고용친화적 임금체계 도입을 위해 상호 협력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사례 발굴·보급 및 컨설팅 실시 • 다양한 임금정보 데이터 구축
인프라 구축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조건과 관련한 조사 및 통계기반 구축 • 근로시간 진단 및 컨설팅 지원방안 마련

2010년에는 근로기준 선진화 관련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2010년 11월 18일 입법예고하였다.

〈표 4-6〉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내용

구 분	개 선 내 용
근로시간 유 연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2주, 3개월에서 각각 1개월, 1년으로 확대 • 근로시간저축휴가 도입
연 차 유급휴가 개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시점을 1년간의 휴가청구권 행사기간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조기화 •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개근월당 1일의 연차휴가 부여

나. 고용 안정성 제고

정부는 유연성 제고 노력과 더불어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 사내 하도급 및 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였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 법 취지와 달리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을 더욱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사용기간 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마련, 2008년 4월부터 노사정위 「비정규직대책위원회」에서 노사정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여야 및 노사의 입장차로 입법 추진이 어려워졌다.

그러나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대학 시간강사, 연구원 등의 경우 강의 및 연구과제 수행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사용기간이 2년이 되면 정규직 전환 대신 실직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에 2010년 2월 기간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들의 업무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또한 당사자가 계속근로를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종료를 당하는 등 기간제한 규정의 부정적 측면을 보완하고 인력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간제한의 예외를 추가하고, 차별시정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2010년 10월 12일 발표된 「국가고용전략 2020」에 이러한 방안을 담고,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해 사회안전망 확충, 직업능력개발 강화 등 고용개선 지원 방안도 아울러 추진하였다. 기간제근로자 등에 특화된 단기직무능력향상사업(JUMP)을 확대 실시하였고,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주말·주중·야간의 비근로시간대 훈련과정 운영기관을 16개에서 26개로 증설(훈련과정은 전년 대비 182개 증가한 총 464개)하였다.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하고, 기간제근로자가 직업훈련에 전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2009년에 이어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을 지속 추진하였다.

한편 근로자파견에 있어서는 노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2007년 이후 심도 있는 제도개선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노동계는 파견을 사용자책임 회피하는 수단으로 보아 정규직이 파견근로자로 대체되면서 고용불안 및 저임금근로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는 반면, 경영계는 현행 파견법이 파견대상 업무를 32개로 제한하고 있어 시장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기업의 탄력적인 인력운용을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파견수요가 많으면서도 정규직 근로자를 대체할 가능성이 적은 업무를 파견대상에 추가하기 위해 노사정위 「고용서비스발

전위원회」에서 파견대상 업무 조정방향을 논의하였으나,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문에 파견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지 못한 채 2010년 7월 14일 논의가 종결되었다. 노동계는 파견과 도급의 구분을 명확히 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불법파견 확인 시점에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경영계는 파견허용 업무를 네거티브 리스트로 변경하고 파견근로자 기간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공익위원은 파견허용 업무를 네거티브 리스트로 변경하되 파견과 도급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사업주에게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정부는 고용서비스발전위원회의 종료 이후 노사 및 공익위원 의견서를 토대로 노사 간담회를 개최(7월 19일, 7월 22일)하여 파견대상 업무 조정 등 제도개선을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7월 22일 현대자동차의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현대자동차간의 파견관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2008두4367)이 나오에 따라 노동계를 중심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등 사내하도급 관련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노사협의를 통한 파견 제도 추진이 어렵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10월에는 자동차·조선·철강·전자 등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다수 활용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중점점검을 실시하였고, 사내하도급을 불법파견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일부 확인됨에 따라 향후 사내하도급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인력운용의 탄력성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노사정위원회에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구성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2010년 12월 본회의에서 위원회 구성을 의결하였다. 2011년부터 동 위원회에서 사내하도급의 적정한 운용과 근로자보호를 위한 원·하청사업주의 준수사항을 정한 가이드라인 마련, 근로자 파견제도 개선, 비정규직 차별제도 개선 등 기간제법 개정, 연공급 임금체계 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제2절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1. 일과 교육을 통한 자립지원⁵¹⁾

가. 취업성공패키지 및 고용촉진지원금

저소득·취약계층의 궁극적인 자립을 위해 취업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우선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게 집중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취업능력을 진단, 그에 맞는 훈련을 제공하여 취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취업성공패키지를 운영하고 있다. 저소득층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생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생계유지수당’을 지급하고 참여자의 취업을 독려·유지할 수 있도록 3회에 걸쳐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0년 2만명의 저소득·취약계층이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았다.

또한 동일한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곤란한 저소득·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촉진 지원금 제도도 운영하였다. 이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을 한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뒤 지원금을 신청하면 연간 최대 6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10년 28만명이 취업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나. 미소금융 및 서민금융 지원

2010년에는 금융의 사각지대에 있던 서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미소금융도 확대하였다. 총 7,770명의 서민들이 창업자금 170억원,

51) 집필자 : 기획재정부 사회정책과 박지혜 사무관

시설개선·운영 자금으로 625억원을 대출 받아 경제활동을 재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미소금융지점에서 매월 해당 점포를 방문하여 영업과 관련된 컨설팅 등 사후관리를 지원하였다. 또한 신용회복지원기관을 통해 금융채무 불이행자 총 40만명의 채무를 조정하고 신용회복에 성공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중 39천명에게 생계자금대출과 취업알선을 지원하였다.

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저소득층의 배움의 기회가 대학 등록금 부담으로 차단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든든학자금)'를 운영하였다. 소득 7분위 이하의 대학생은 등록금 전액과 연 200만원의 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10년 총 232,448명의 학생에게 8,456억원을 대출하였으며 이들은 연간소득이 일정소득 이상(10년도 4인가구 1,592만원)이 될 때까지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다. 그 외에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미래드림, 희망드림 장학금과 저소득층성적우수 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을 통해 저소득층 200,424명의 학생에게 3,176억원을 지원하였다.

라. 희망키움통장

2010년 하반기에는 근로활동을 하는 기초보장 수급자들의 탈수급촉진과 자립을 위해 도입된 희망키움통장의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 탈수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였다.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 이었던 소득기준을 60%로 완화하였다. 그 결과 67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3인가구의 경우 월 10만원씩 저축시 3년후에는 총 1,7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탈수급 이후의 생활에 연착할 수 있도록 기초보장제도의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를 탈수급 이후에도 2년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였다.

2.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보완⁵²⁾

가. 장애인 생활기반 안정

2010년에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매월 일정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중증장애인 연금을 도입하였다.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⁵³⁾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월 9~15만원을 지급한다. 중증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신변처리, 가사지원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와 함께 대표적인 장애인 지원제도로 자리매김 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생활 기반이 더욱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여성 취업지원 강화

정부는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10년에는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역량강화·일자리 알선·직무교육 등을 실시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72개에서 77개소로 확충하고, 직접 방문이 어려운 사각지대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취업상담서비스⁵⁴⁾를 도입하였다.

다. 다문화가족 조기적응 지원

2010년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자녀 수는 30.3만명(전체 인구의 0.63%)

52) 집필자 : 기획재정부 사회정책과 이운호 사무관

53) 배우자가 없는 장애인(53만원), 배우자가 있는 장애인(84.8만원)

54) 온라인 취업상담사가 원격으로 교육·경력개발·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의 경제·사회적 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정부는 다문화가족의 조기 적응을 위해 한국어교육·취업 알선 등 여러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우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009년 100개에서 2010년 150개로 확충하여 센터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였으며 집합 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아동양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지도사도 2009년 2,559명에서 2010년 2,819명으로 확충하였다. 또한 2010년부터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의 경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등 보육비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라. 독거노인 지원사업

정부는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의 안전 및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해 노인돌봄기본서비스⁵⁵⁾의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2009년 12만명→2010년 13.8만명)하였다. 독거노인응급안전돌봄서비스⁵⁶⁾를 실시하는 지자체도 2009년 6개 시·군·구에서 2010년 9개 시·군·구로 증가하였다. 특히 민·관 협동으로 콜센터 상담원이 1:1 안부 확인전화를 드리고 자원봉사자가 월 1회 이상 직접 방문하여 보살펴 드리는 ‘독거노인사랑잇기’ 사업을 새로이 추진하는 등 독거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

55) 독거노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자원 발굴·연계, 생활교육,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정서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56) 독거노인의 안전 확인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 대응 등을 위해 독거노인 가구에 가스·화재·활동 감지기를 설치해 주는 서비스

3. 생활비 부담 경감

가. 의료 보장성 강화

기존 건강보험은 경증(외래)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도덕적 해이에 의한 소액 경증질환의 의료 이용이 과도하고, 중증(입원) 의료 이용시 비급여 항목이 많아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과도한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정부는 2010년 건강보험 보장성을 경증질환 위주에서 중증질환 중심으로 보완·확대하였다.

〈표 4-7〉 10년 건강보험 보장범위 확대 내용

보장성 확대 내용	시행시기
○ 심장질환·뇌혈관질환 본인부담 경감 (10→5%)	1월
○ 중증화상 본인부담률경감 (20, 30~60→5%)	7월
○ 결·핵환자 본인부담률 경감(20, 30~60→10%)	1월
○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병용투약 항암제, 유방암, 다발성 골수증 등)	10월
○ 희귀난치 치료제 보험급여 확대 (B형간염 치료제, 건선·류마티스 치료제, 빈혈치료제)	10월
○ 장애인보호장구 보험급여 확대(지체·뇌병변장애→심장·호흡기 장애) 및 소모품(배터리) 보험 적용	10월
○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 확대(20→30만원)	4월
○ MRI보험급여 확대(암·뇌양성종양·뇌혈관질환→ 척추·관절)	10월
○ 치료재료 급여 전환	1월

나. 주거비 부담 완화⁵⁷⁾

1) 보금자리주택 공급

정부는 향후 2010년간 총 150만호의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2008년)'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시범지구인 서울강남, 서초지구는 2010년 하반기에 착공하였고, 새로이 3차지구⁵⁸⁾와 4차지구⁵⁹⁾를 지정하였다. 또한 분양주택에 대한 거주 의무 부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사전예약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제도 보완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에 에너지 절감, 디자인 차별화, 이용자 중심 편의시설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품격향상 방안'을 2010년 5월에 발표하여 공공부문에서 주거문화 향상을 선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2) 공공임대주택 공급

임대주택 공급에 있어서는 무주택 서민이 소득과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영구·국민임대주택 4.1만호, 다가구매입·전세임대주택 2.1만호, 임대·분납형 임대·장기전세주택 4.4만호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57) 집필자 :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최형석 사무관

58) 서울 향동, 인천 구월, 광명 시흥, 하남 감일, 성남 고등(2010년 5월)

59) 하남 감북, 서울 양원(2010년 12월)

한편 무주택 서민들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약 50만 세대에 대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2008년 7월 이후 2년간 동결하였고,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비도 2008년 대비 40% 인하했다. 아울러, 영구임대주택 중 일부 물량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여 다양한 연령 및 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단지내 활력이 저하되는 부작용을 해소하였고,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부대·복리 시설을 개선(10년 국비 500억원)하여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환경도 개선하였다.

또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임차인에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10.3.30 시행)하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적인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및 전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허용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했다.

3) 주택자금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 주택구입자금 0.2조원, 전세자금 4.8조원 등 국민주택기금의 주택자금 융자 지원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동시에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하여, 연소득기준을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하여 대출대상자를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제도를 재개하였다.

또한 서민들의 전세자금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기간 연장시 적용하는 가산금리를 0.5%→0.25%로 인하하였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세보증금을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한도도 4,9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확대함⁶⁰⁾으로써 저소득·서민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했다.

60) 전세자금지원 규모 : (2007년) 28,528억원, (2008년) 42,186억원, (2009년) 47,657억원, (2010년) 47,857억원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5

경제시스템 선진화

제5장 경제시스템 선진화

제1절 공공기관 선진화

1.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⁶¹⁾

가. 공공기관 재무 현황 및 평가

2010년말 현재 공공기관 자산은 654.0조원, 부채는 386.6조원이며 2009년말 대비 각각 63.1조원(10.7%), 45.0조원(13.2%)이 증가하였다. 이는 공공기관이 수년간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SOC부문과 에너지부문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기인한다.

특히, 투자회임기간이 장기인 보금자리, 국민임대주택 등 대규모 SOC 사업의 수행과 '08년 이후 계속된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에너지 부문의 수익성이 악화로 공공기관 부채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공공기관 부채는 자산이 부채보다 훨씬 크고,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자체 상환 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말 현재 공공기관 자산은 부채 보다 267.4조원 만큼 크며, 2010년도의 공공기관 총 당기순이익은 7.2조원으로 2006년도 이후 연평균 6.4조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 중에 있다.

61) 집필자 : 기획재정부 민영화과 조영관 서기관

〈표5-1〉 공공기관 재무 현황

(단위 : 조원)

	자산		부채		당기순이익	
	'09	'10	'09	'10	'09	'10
합 계	590.9	654.0	341.6	386.6	5.9	7.2
공 기 업	402.2	444.6	237.5	271.8	3.6	5.0
준정부기관	165.2	183.7	94.6	104.5	1.4	1.1
기타공공기관	23.5	25.7	9.5	10.3	0.9	1.1

나. 관리 현황 및 계획

정부는 최근 부채증가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부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우선, 공기업이 방만 경영 해소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공기업 선진화’를 진행중이다. 36개 기관의 통폐합과 2.2만명에 대한 정원 감축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2010년중 24개 기관에 대한 민영화와 131개 출자회사에 대한 지분매각이 이루어졌다.

공공기관은 기관별로 재무여건이 달라 공통적이고 일관적인 관리방안 보다는 기관별 관리방안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부채규모가 큰 40개 공공기관에 대해 부채증가원인을 분석(10.4~9월)하였다. 점검을 통해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공공기관 선진화와 별도로 자산매각, 인력조정, 경비절감 등 지구노력을 추가로 시행하였다.

공공기관의 신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제도를 강화하여 사업 선정의 타당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을 개정(10.11월)하여 예비타당성 타당성 검증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2011년 시행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사업 추진이 사

전에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 4월, 자산 2조원이상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해 5년 단위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정부 및 국회에 제출토록 국가재정법 및 공공기관운영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1년부터 시험운용 등 사전준비를 할 계획이며, 동 법이 시행되는 2012년부터는 대형 공공기관에 대한 재무건전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⁶²⁾

가. 도입 배경

그동안 공공기관은 퇴출 없는 안정된 직장, 내부 경쟁 미흡 등으로 인해 내부 성과관리를 강화하려는 유인이 부족했고, 임금체계 역시 연공급 위주로 되어 있어 생산성, 경영실적과는 무관하게 보수가 결정되어 왔다. 외환위기 이후 널리 보급된 연봉제 역시 근속년수에 따른 연봉 자동인상, 개인별 역량, 성과에 따른 임금 차등수준 미미, 낮은 성과급 비중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 개인의 업적·성과에 따라 임금의 차등수준이 확대되도록 연봉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연봉제 운영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에 권고하였다. 이러한 성과연봉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직원을 통솔(지도·감독·평가 등)하는 간부직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62) 집필자 : 기획재정부 제도기획과 이윤범 사무관

나. 성과연봉제 도입내용

1) 연봉구조 설계

성과연봉제 설계 시 연봉 구성항목을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수당으로 단순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종전의 기본급과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던 각종 수당은 원칙적으로 기본연봉으로 통합하였다. 성과상여금 등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지급되는 임금 구성항목은 성과연봉으로 일원화하였으며, 급여성 복리후생비나 고정상여금 등도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성과연봉으로 전환하였다. 다만, 시간 외 수당 등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법정수당은 기타수당으로 구성하여 연봉구조를 단일화하였다.

〈표 5-2〉 연봉구조 설계

호봉제(과거)	형식적연봉제	연봉제(조정후)
기본급	기본연봉	기본연봉
고정상여		
각종수당 (가족,근속,기술,직위)		
설날 귀향여비 김장보조, 기타	급여성 복리후생비	(직무급)
법정수당 (연월차, 시간외)	연봉외 수당	기타수당
기타수당	변동성과 상여	성과연봉
성과상여		

2) 기본연봉

기본연봉체계는 기존의 직급별 호봉 또는 연봉 테이블을 폐지하고, 직급별 임금범위(Pay-Band)로 관리하는 방안을 권장하였다. 임금범위의 크기는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되, 직급별 임금 폭을 중첩형으로 설계하고 상위직급으로 올라갈수록 임금 폭이 확대되도록 하였다. 또한 기본연봉 인상의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인상되지 않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차등적으로 인상되도록 하고, 그 영향이 다음 연도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누적식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기본연봉 인상률의 차등수준은 도입 초기에는 평가 상·하위 등급 간에 2~3%의 차이가 나도록 설정하되,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였다. 더불어 기본연봉에 직무급제를 도입하도록 권장하여 직무가치에 따라 차등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3) 성과연봉

개인의 업적·성과에 좌우되는 성과연봉 비중은 총연봉 대비 20~30% 이상으로 운영토록 하고, 성과연봉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재원은 고정상여금·고정수당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하였다. 성과연봉 차등폭은 평가에 따라 개인·집단의 성과가 합리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설정하되 최고·최저 등급간 최소 2배 이상이 되도록 기존 차등폭보다 확대하였다. 차등 등급 수는 5개 등급 이상, 인원비율은 최고·최저등급을 각각 10% 이상으로 하되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다. 기대효과

형식적 연봉제가 실질적 연봉제로 전환됨에 따라 향후 공공기관 내 체

계적인 성과평가시스템이 갖춰지고, 복잡한 수당 등이 통폐합되며, 성과에 따른 연봉의 차등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근속연수에 따른 연봉의 자동 상승이 사라지고, 개인의 능력·성과에 따라 연봉이 결정되는 관행이 확립될 것이다. 이는 결국 공공기관 내 공정한 보상문화 및 건전한 경쟁문화 형성을 통해 생산성 증대와 효율성 향상이라는 열매를 맺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공공기관 경영자율권 확대⁶³⁾

가. 도입 배경

2008년부터 시작된 공공기관 선진화는 민영화, 기관 통·폐합, 노사관계 선진화, 보수체계 합리화 등을 통해 양적으로 슬림(slim)한 공공기관으로의 개혁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양적 개혁의 성과를 내부적인 질적 성장으로 파급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하드웨어적 개혁의 성과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적 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내부적·질적 성장의 필수요건이 바로 자율과 책임의 운영체계 확립이다. 충분한 자율을 부여하되 향후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여 경영진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성과목표 달성에 동기부여(motivation)되도록 하는 경영자율권 제도는 이러한 목표 하에 추진되었다. 경영자율권을 바탕으로 보다 높은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종전보다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이를 추진하며, 최종적으로 성과평가를 통해 엄중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본 제도의 핵심이다.

63) 집필자 : 기획재정부 제도기획과 이윤범 사무관

나. 경영자율권 확대사업 추진내용

1) 대상기관 선정

경영자율권 확대사업 대상기관 선정을 위해 2009년 12월 성과 우수 기관 및 민간과 경쟁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였다. 각 공모기관들이 제출한 자율경영계획서를 외부전문가로 이루어진 TF에서 검토한 후 총 4개 기관(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을 선정하였다. 주요한 심사기준은 자율권 부여의 적합성 여부, 기관이 제출한 성과목표의 적정성 및 합리성, 자율권 이행실적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 및 노사관계 등이다.

〈표 5-3〉 경영자율권 확대 대상기관 심사기준(안)

심사기준	평가지표
자율권 부여의 적합성	① 자율성 확대를 통해 가시적인 생산성 제고(원가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성과목표의 적정성 및 합리성	② 기관의 미션에 상응한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있는가? ③ 성과목표치가 합리적이고 의욕적으로 설정되었는가?
후속조치 계획	④ 평가 결과에 따른 적정수준의 보상, 불이익 및 자체 자구 노력 등의 후속조치를 제시하고 있는가?
노사관계	⑤ 노사관계의 안정성 및 선진화 수준

2) 경영자율권 확대 내용

경영자율권 확대 기관은 인력·조직·예산 상 일정한 범위의 자율권을 부여받는다. 각각의 공공기관은 자율경영계획서 상에 기관별 실정에 맞는 자율권을 신청하고, TF와의 협의를 통해 이를 확정한다.

〈표 5-4〉 경영자율권 확대 내용 예시

구 분	경영자율권 세부 내용(예시)
인력운영	• 해외사업 및 신규사업의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
조직운영	• 조직신설, 직위·직급 자율 운영
예산운영	• 초과이익·원가절감의 일부를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 • 해외사업 전문인력에 대한 별도 급여체계 적용

3) 자율경영계약 체결

경영자율권 확대 기관으로 선정되면 기관장과 주무부처 장관간에 경영자율권 확대 내용 및 이에 상응하는 성과목표,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율경영계약(MOU)을 체결한다. 이 때 경영자율권 확대 내용에 부합하는 높은 성과목표 수준을 담보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TF와의 협의를 통해 도전적인 경영목표를 설정하도록 한다. 경영목표는 기관 특성에 따른 고유 성과목표 및 기관 공통목표로 대별된다. 공통목표는 노사관계 및 공공기관 선진화로 구성된다.

〈표 5-5〉 경영자율권 확대 기관의 고유 성과목표

기관명	고유 성과목표
인천국제공항공사	• 동북아허브공항 실현, 기업가치제고, 해외진출기반 확대
중소기업은행	• 지속성장의 토대구축, 영업역량 제고, 중소기업 자금공급 강화
한국가스공사	• 해외사업 확대, 유·가스전 확보매장량 증대, 천연가스 도입가격 안정, 미공급지역 배관망건설, 종업원 생산성 향상
한국지역난방공사	• 원가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서비스 공급단가 개선

4) 평가 및 후속조치

기획재정부장관이 자율경영계획서 이행실적을 1년 단위로 평가한다. 이때 경영자율권 확대 기관에 한하여 기존의 기관장 평가는 자율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로 대체된다. 평가결과는 우수, 보통, 부진으로 구분되며, 평가결과에 따라 차년도 자율권 지속여부가 결정되는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진다.

〈표 5-6〉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구 분 \ 등 급		우 수		보 통		부 진	
자율권 지속여부		지속				회수	
기관장	인사	연임 건의		-		자진사퇴	
	성과급	성과급 차등지급				미지급	
임직원 성과급		1등급 범위내 가산		-		1등급 범위내 차감	

제2절 국고관리의 선진화

1. 국고금 관리 체제 선진화⁶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적극적 국고금 관리 체제(Active Government Cash Management)’를 도입해 재정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했다. 적극적 국고금 관리란, 국고금 수입·지출 흐름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국고금 조달 규모와 시기를 최적화하고 유휴자금(idle money)은 최소화함으로써 재정활동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국고금 관리는 주로 부족자금 조달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따라서 정부는 2010년 7월, ‘적극적 국고금 관리체제’로 전환하여 국고관리의 선진화를 모색하였다.

국고금 관리 체제 전환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구축되어 국고금 수입·지출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측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했다는 점이다. ‘자금배정⁶⁵⁾’ 제도가 있지만, 각 부처가 실제 필요한 자금보다 과다하게 자금배정을 요구하는 관행이 존재해 국고금 흐름의 예측 가능성은 저하되었다. 자금배정 후에도 지출되지 않는 대기성 자금 규모가 늘어나고, 집행실적 대비 미집행자금이 통상 3~4조원 발생했다. 더욱이, 우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된 수시배정 제도가 남용되어 국고금 수입·지출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되었다.

64)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고과 이정선 사무관

65) 자금배정은 각 부처가 쓸 수 있는 자금의 한도를 배정하는 활동이다. 각 부처의 자금배정 요청에 기초해 기획재정부가 결정하며, 월별 자금배정은 연초에 당해 회계연도 내 각 부처의 월별 자금지출 한도를, 월별 세부 자금배정은 매월 말 각 부처의 익월 자금 지출 한도를 5일 단위로 규율해 지출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한다.

둘째, 국고금 수입·지출 흐름의 불확실성은 국고금 운용의 제약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국고에 여유자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상당 부분 보유함으로써 불확실한 자금 수요에 대비해야 했다. 1주일 이상 대기성 자금으로 예상되는 여유자금에 한해서만 금융시장에서 운용되었고, 통합계정 잔고는 연평균 5조원이란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또한, 국고 계좌 잔고의 불확실성 및 높은 변동성은 본원통화 증감을 초래해 통화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18개 특별회계 중 6개의 특별회계(조달, 우편사업, 책임운영기관, 우체국예금, 우체국 보험, 양곡관리 특별회계)가 통합계정⁶⁶⁾에서 제외되어 운영되었던 문제를 들 수 있다. 통합계정을 통한 중앙 집중화된 자금관리방식은 국고금 수급 조절 창구를 단일화하고 회계간 여유자금 활용을 용이하게 하여 자금 조달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연평균 잔고 5천억원 수준의 6개 특별회계가 별도 관리됨에 따라 정부내 자금의 활용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2010년 7월 적극적 국고금 관리체제로 전환하여 위와 같은 문제점의 해결을 모색하였다. 우선, 각 부처의 재정자금 지출규모와 시기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고자금 집행지침’이 마련되었다. 인건비, 보조금 등 반복적인 지출 경비의 규모, 시기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월중 수시 자금배정 제한, 대규모 자금 집행(500억원 이상)의 사전통보 제도가 도입되었다. 10월에는 미집행 자금 발생시 이를 자동으로 회수하고 향후 자금배정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각 부처의 자금 과다 요청 유인을 제거하였다.

66) 통합계정이란, 종전에 여러 회계로 구분되어 관리되던 국고금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최상위 계정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하위계좌에 잔고를 남기지 않고 중앙은행에 설치된 통합계정에 모든 자금을 집중시킨다.

둘째, 정부는 국고 일시여유자금의 적극적 운용을 추진하였다. 통합계정의 잔고목표(target balance)를 1조원으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자금은 전액 금융시장에서 운용하는 국고계좌 목표 잔고제를 도입하였다. 자금 흐름의 예측가능성 제고에 힘입어 1주일 미만의 초단기 일시자금도 매일 금융시장에서 운용하게 되었다. 더불어, 그간 한국증권금융 1개사가 일시 여유자금을 운용하였으나 국고금 위탁운용기관에 경쟁을 도입하여 한국산업은행을 추가로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셋째, 통합계정의 범위를 넓혀 통합 관리하는 현금의 규모를 증대하였다. 그 동안 통합계정에서 제외되었던 6개 특별회계 중 3개(조달, 우편사업,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의 특별회계가 통합계정에 편입되었다. 이번 조치로 그간 제외되었던 6개 특별회계 계좌의 연평균잔고 5천억원 중 약 90% 이상이 통합계정으로 포함되어, 정부는 사실상 전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국고금을 통합계정에서 관리하게 되는 효과를 달성하게 되었다.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의 적극적 국고금 관리체제를 운영한 성과는 다음과 같다. ‘국고자금 집행지침’의 제정으로 인해 국고금 흐름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제고되었다. 경비별 세부 지출 방식 규정으로 인해 불규칙하게 지출되던 보조금, 출연금 등이 정기적으로 지출되게 되었고, 10월부터 미집행 자금 회수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4/4분기 미집행 잔고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⁶⁷⁾.

국고계좌잔고 목표제 도입은 연간 약 1천억원 수준의 재정수지 개선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평균 5조원에서 유지되던 국고계좌잔고가 평균 1조원으로 축소되었고, 이는 금리 2.5%를 가정할 때 약 1천

67) 2010년 분기별 미집행 잔고(조원) : 1분기(4.3) 2분기(5.1) 3분기(5.1) 4분기(2.2)

억원 수준의 재정수지 개선으로 평가 할 수 있다. 더불어 지난해 한국은행에 지급한 일시차입 이자비용의 감소⁶⁸⁾와 국고금 운용 수익 증가⁶⁹⁾는 목표잔고 초과 자금의 적극적 운용 및 통합계정 범위 확대에서 비롯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고금 계좌 잔고의 변동성 감소는 그간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수행시 겪었던 문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했다. 2009년 통합계정 변동성이 3.1조원이었던데 비해 목표 잔고제 실시 이후인 2010년 하반기의 통합계정 변동성은 0.4조원으로 감소하였다⁷⁰⁾. 본원통화량의 증감을 초래하는 통합계정 잔고의 변동성 감소는 통화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토대가 되었다.

정부는 향후 국고금 흐름 예측 능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수입·지출에 대한 데이터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고금 운용기관의 자금 운용에 대해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국고금 운용을 유도하고, 적극적 국고금 관리 체제가 더욱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68)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평잔, 조원) : ('09년) 2.5 → ('10년) 1.4 (△1.1)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이자 (억원) : ('09년) 637 → ('10년) 331 (△306)

69) 국고금 운용 (평잔, 조원) : ('09년) 0.4 → ('10년) 2.8 (↑2.4)

국고금 운용 수익 (억원) : ('09년) 100 → ('10년) 676 (↑576)

70) 한국은행 통합계정 변동성 (조원) : ('09년) 3.1 → ('10년) 2.5 (1/4 : 3.5, 2/4 : 0.9, 3/4 : 0.4, 4/4 0.4)

2. 국유재산 관리체계 선진화⁷¹⁾

가. 추진배경

1950년 국유재산법이 제정된 이래로 국유재산은 각 부처가 소관 재산을 각각 관리하는 분산관리방식으로 관리되어 왔다. 이에 따라 부처별 칸막이식 권한 행사로 인해 유휴 행정재산을 과다하게 보유하는가 하면, 전체 국유재산의 수급에 대한 고려없이 부처별로 경쟁적으로 공용재산을 취득하는 등 국유재산의 수급 조절이나 효율적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국유재산에 대한 경제적 비용개념이 부족하여 무려 169개의 개별 법률에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유재산특례⁷²⁾가 적절한 통제없이 방만하게 운용되었다. 그리고 획일적·소극적인 매각기준으로 인하여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을 과다하게 보유함으로써 불필요한 인력과 비용이 소모되었고, 국유재산 매각정보에 대한 국민 접근성도 제한되는 등 기존 국유재산 관리체계에 따른 문제점들이 지속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노출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선진화된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10년 2월 기획재정부, 조달청,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국유지선진화기획단’을 발족하고,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유재산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제·개정⁷³⁾을 추진하게 되었다.

71)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유지선진화기획단 이병두 사무관

72) 국유재산특례 : ①사용료등의 감면(국유재산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등을 감면), ②장기 사용허가등(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 및 ③양여(국유재산을 무상으로 국가 이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

73) 2010년 10월 국유재산법 개정안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11년 3월 국회 통과, 2011년 4월부터 시행됨

나. 주요 내용

국유재산 관리체계 선진화는 국유재산 관리체계의 개선, 종합수급조정 기능의 강화 및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를 목표로 추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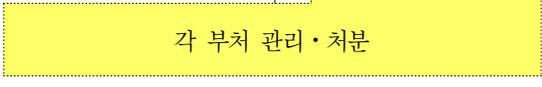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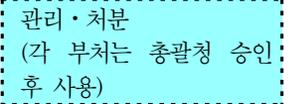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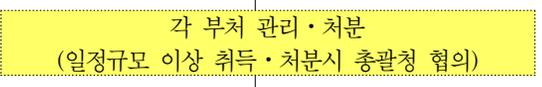
1) 국유재산 관리체계의 개선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분산관리방식을 통합관리방식으로 전환하고,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제도적 규율장치를 마련하였다.

우선, 국유재산의 부처별 분산관리방식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고, 전체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괄청이 국유재산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통합관리방식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국유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원칙적으로 총괄청이 행사⁷⁴⁾하며, 각 부처는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부처가 보유한 저활용·유휴 재산은 총괄청이 적극적으로 회수하여 필요로 하는 부처에 제공하거나 개발을 통해 국유재산의 활용도 및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74) 다만, 특별회계·기금 소속의 국유재산은 국가재정법상 회계구분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 중앙관서의 장이 계속 관리·처분

〈표 5-7〉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선 내용

		일반재산	행정재산
^ 기존 v	일반회계	기획재정부 관리·처분	
	기금·특별회계	 각 부처 관리·처분	
			
		일반재산	행정재산
^ 개선 v	일반회계	 기획재정부	 관리·처분 (각 부처는 총괄청 승인 후 사용)
	기금·특별회계	 각 부처 관리·처분 (일정규모 이상 취득·처분시 총괄청 협의)	

다음으로, 그동안 특별한 통제없이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던 국유재산특례도 총괄청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매년 국유재산특례종합계획의 수립을 통해 국유재산특례의 총괄 관리 및 적정 운용을 도모하고, 국유재산특례 신설에 대한 사전 심사와 기존 특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평가를 통해 국유재산특례가 필요최소한도로 운용되도록 하였다. 2016회계연도부터는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 제도를 도입하여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를 예산서의 첨부자료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유재산특례 운용의 투명성도 강화하였다.

2) 종합수급조정기능 강화

국유재산에 관한 총괄청의 종합수급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종합계획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으며,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새로 신설했다.

먼저, 국유재산의 총괄 관리 강화와 적극적인 활용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중장기 정책방향에 따른 연간 총괄 기본운영계획인 국유재산종합계획으로 개편했다. 기존의 국유재산관리계획은 국유재산의 소극적 유지·보존과 개별재산의 처분 승인 중심으로 운영되어 전체 국유재산에 관한 총괄적인 수급조정이 곤란하였고,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총괄청이 부처별 연간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을 전정부적·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 조정하여 전체 국유재산에 관한 연간 총괄계획인 국유재산종합계획⁷⁵⁾을 수립하고 각 부처는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관리·이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수립된 국유재산종합계획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이용에 관한 투명성을 강화하였으며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집행실적에 대한 평가분석을 실시토록 하여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집행효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 지원과 개발 등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새로이 설치하였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국유부동산의 매각대금, 국유부동산의 대부료·변상금 등 운용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이를 청사·관사 등 공용재산 취득, 비축토지 매입, 국유부동산 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게 하였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에 따라 2012회계연도부터는 각 부처 청사·관사와 같은 공용재산의 취득·신축사업을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해 총괄청이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개발로 국고수입 증대와 국유재산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공공사업에 필요한 국유지를 적기에 매입하고 비축함으로써 지가상승에 대비한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75) 주요 내용 : ①국유재산의 중장기 정책방향, ②국유재산 관리·처분 총괄계획(취득, 처분, 사용승인, 개발, 사용허가·대부 등 관리에 관한 계획), ③국유재산 처분기준, ④국유재산특례종합계획으로 구성

3)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

국유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불요불급한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유지 개발방식도 다양화하였다.

먼저, 국유재산의 매각방식을 국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에 정해진 경우에만 매각이 가능했던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Positive System)에서 보존·활용이 필요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일반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Negative System)으로 전환⁷⁶⁾하였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재산은 매각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양질의 국유지를 비축함으로써 국유지 관리를 효율화하고, 한정된 국토자원이 민간에 의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개발방식의 다양화를 통한 국유지 개발⁷⁷⁾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신탁개발⁷⁸⁾과 위탁개발⁷⁹⁾ 방식 외에 ‘민간참여개발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국유지개발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행정목적 등을 위한 대규모 유희·저활용 국유지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유지 개발에 따른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자본과 노하우의 활용도 가능하게 되어 국유지 개발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6) 다만, 매각대상 재산이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각할 수 있도록 함

77) 2005년 위탁개발방식 도입 이후 나라키움 저동빌딩 등 총 9건의 국유지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해당 국유재산의 시장가치가 개발전 847억원에서 개발후 2,839억원으로, 연간 임대료수입은 2.3억원에서 61.4억원으로 증가

78) 신탁개발 : 국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신탁회사가 개발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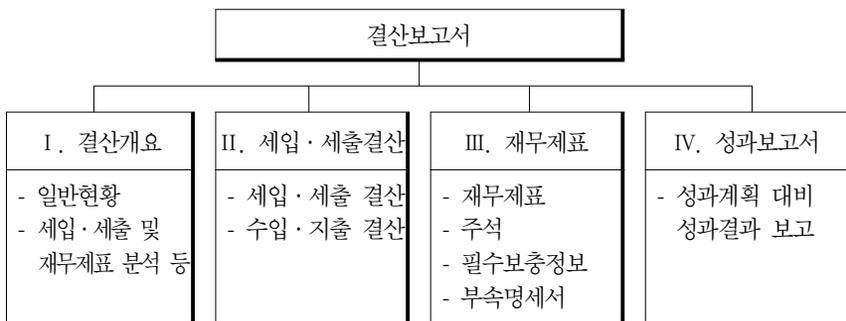
79) 위탁개발 : 국유지를 위탁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위탁기관이 자금을 조달하여 개발사업을 추진

3.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시행 대비⁸⁰⁾

1990년대 중반부터 재정수요의 급증 등 재정여건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재정건전성 점검 및 성과평가가 가능한 새로운 선진 재정운영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재정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와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기업에서 오랜기간 사용하여 온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2007년 10월 발생주의 회계 도입을 근간으로 한 국가회계법 제정과 2008년 12월 결산보고서의 체계적 정비 등을 위한 국가회계법 개정을 거쳐, 2009회계연도부터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모든 기금에 그동안의 현금주의·단식부기 회계방식의 세입세출 결산에 추가하여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방식에 따라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다만, 발생주의 회계에 따른 국가재무제표는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증절차를 거쳐 2011회계연도 결산부터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표 5-8〉 결산보고서의 구성



80) 집필자 :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 김완수 사무관

국가재정에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국가 전체의 재정현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재정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생산·제공함으로써 재정관리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고, 장기적·미래지향적 재정관리가 가능해진다. 또한 중앙관서별, 정책사업(프로그램)별 결산방식의 도입으로 정책사업별 원가정보 산출을 통하여 성과중심의 재정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국가의 자산 및 부채를 포함한 활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결산에 포함하여 관리함으로써 국가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되는 한편, 회계기록의 자동검증기능 강화로 국가회계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재정에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를 차질없이 도입하기 위해 국가회계제도를 체계적으로 구축·정비하였다.

먼저 국가회계기준, 항목별 회계처리준칙 등 국가회계처리기준 제·개정 작업을 순차적으로 마무리하였다. 2009년 3월에는 국가회계기준을 제정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등 국가재정 전 부문에 발생주의·복식부기에 따른 회계처리를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회계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6월에는 융자회계준칙 및 원가계산준칙 등 항목별 회계처리준칙을 제정하여 저리의 융자사업 및 프로그램원가 산출에 대한 세부회계처리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13개 실무회계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실무적용에 필요한 상세해설과 회계처리사례를 제시하였다. 실무회계처리지침은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등 각 재무제표 계정과목에 대한 3개의 회계처리지침과 국고금 회계, 세입·세출외거래, 기금 등 10개의 주요 사항별 회계처리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0년말 현재 연금·보험 등 충당부채에 대한 회계준칙 및 유·무형자산 재평가회계처리지침 등을 제정중에 있으며, 관계부처 의견조회 과정을 거쳐 금년내 완료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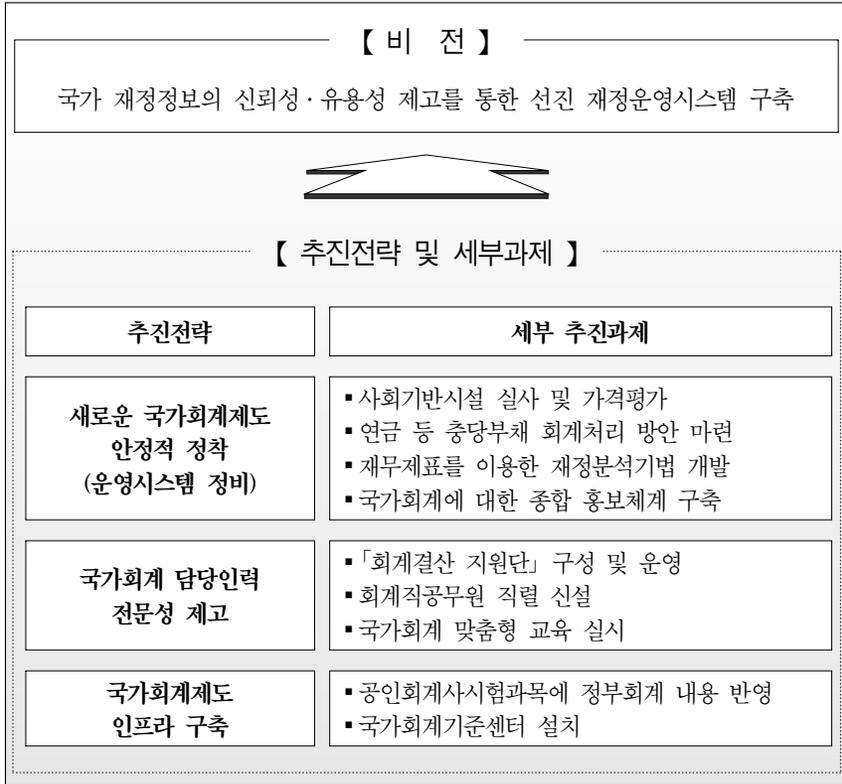
그리고 국유재산, 물품, 채권 등 국가자산에 대한 실사작업을 완료하여 신뢰성 있는 재정정보 산출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그동안 관리가 미흡하였던 사회기반시설의 체계적인 파악 및 관리를 위해 2009년 하반기부터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실사에 착수하였으며, 2011년 내에 수량실사를 마무리하고 가격을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최종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발생주의 회계에 따른 기초가액의 확정을 위해 2008년 결산상 국가자산과 부채를 토대로 개시재정상태표를 작성하였으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한 예산과 회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예산 거래유형에 따라 예산회계 정보가 재무회계 정보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계정과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정보관리항목을 표준화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한 자동분개를 실현하도록 하였으며, 기존의 현금주의·단식부기 회계제도에 익숙한 현업 담당자들의 부담과 회계처리 과정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회계처리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한편, 시스템 정비와 함께 회계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중앙관서 회계·기금별 재무결산 담당자 및 dBrain 사용자 등 교육대상별로 '09, '10년도에 걸쳐 발생주의 회계관련 전문화·특성화 교육을 실시하고 사이버교육도 병행하는 등 다양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였다.

정부는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차질없는 정착을 위하여 2010년부터 3개년에 걸쳐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추진전략과 과제」를 주요 추진전략과 세부 추진과제로 체계화하여 진행 중이다.

〈표 5-9〉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추진전략과 과제



먼저 새로운 국가회계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 실사 및 가격평가를 실시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연금·보험 등의 충당부채에 대한 회계처리방안을 제정 중에 있으며, 재정 분석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국가회계와 관련된 재정분석지표도 마련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국가회계 담당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09, '10회계연도에 회계결산 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각 중앙관서의 재무제표 작성지원 및 회계처리 검토를 수행하였다. 또한 회계·결산 담당공무원의 회계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가회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2012년부터 국가공무원 중 국가회계업무를 전담할 회계직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가회계제도의 지속적·체계적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회계에 관한 전문성 축적 및 체계적 연구를 위한 국가회계 기준센터를 2010년 7월에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2012년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과목에 정부회계 내용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민간회계전문가의 정부회계에 대한 전문지식 제고와 함께 전문인력의 저변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각 중앙관서가 재무제표를 차질 없이 작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정비와 전문교육 강화에 힘쓰고,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유용성 제고를 통해 재정건전성과 회계투명성이 높아지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지속성장 강화 및 미래대비

제6장 지속성장 강화 및 미래대비

제1절 성장동력 확충

1. 신성장동력 투자활성화⁸¹⁾

가. 추진경과

2010년은 전년에 발표한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과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보다 구체화하여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관련법제를 정비함으로써 실제적인 정책효과를 거양하는 시기였다. 특히 전년말 국회를 통과한 ‘저탄소 녹색성장법’의 시행령 등 하위법령과 녹색인증제도까지 완비함으로써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의 지위를 굳힌 한해였다.

나. 신성장동력분야 투자여건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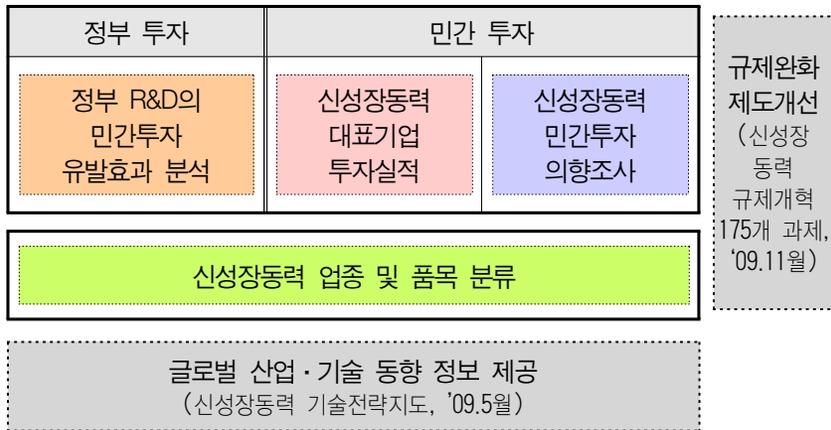
신성장동력의 본격 궤도진입을 위해서는 민간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신성장동력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투자정보 및 기술동향자료 제공, 신성장동력 분류체계 명확화 등 정부차원의 투자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투자확대에 필요한 정부의 체계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산업·기술 동향과 제도개선 등을 관리·점검 하고, 업종별 협회와 연구원 등으로

81) 집필자 :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 김영민 서기관

‘신성장동력 기술동향 작업반’을 구성하여 글로벌 기술동향 정보를 제공하여 민간기업의 사업추진과 투자의사결정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림 6-1] 신성장동력 투자활성화 개념도



아울러 ‘신성장동력 업종 및 품목 분류안’을 표준산업분류와 HS코드를 사용하여 제시함으로써 신성장동력 대상여부에 대한 불명확성을 제거하고 금융기관, R&D 지원기관 및 정부부처에서 투·융자지원대상 선정, 과제 평가, 지원대상 선정 등 정책집행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투자대상 설정을 위한 기초 인프라로서 기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 R&D의 선행투자자와 민간 R&D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민간의 R&D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실적 및 투자의향에 대해 정기적 조사도 실시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정부 정책에 힘입어 신성장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조사결과에 의하면 2010년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실적은 20.4조원으로 전년대비 11.4% 증가하였다.

다. 녹색성장관련 법제완비

2010년 4월에는 전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동 시행령은 총 7개장, 44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녹색산업 지원, 국가온실가스 관리체계와 구체적 실행조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녹색인증제 절차(제19조) 및 녹색산업투자회사⁸²⁾ 지정요건(제17조) 마련, 녹색제품의 공공기관 구매 촉진(제20조) 등 녹색기업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절차 등을 규정하여 녹색분야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녹색인증제는 인증된 기술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예금, 녹색채권, 녹색펀드 등 녹색금융상품 가입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통한 녹색산업 육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6-1〉 녹색인증 관련 세제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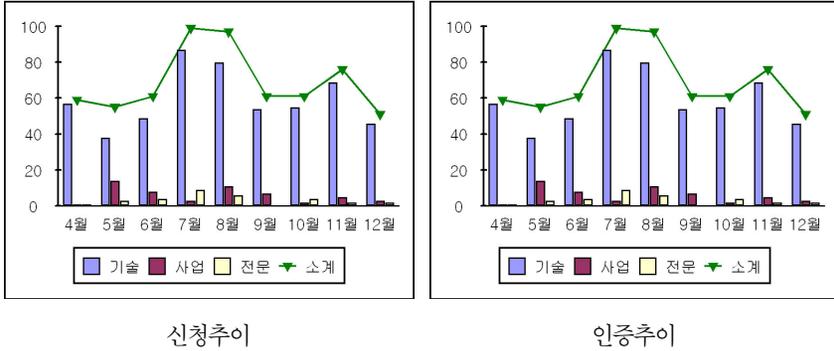
구 분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
세제지원 내용	배당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한도(반기)	3천만원(3년 이상)	2천만원(3년 이상)	3천만원(3년 이상)

* 녹색금융상품으로 조달된 자금의 60%이상을 녹색사업·녹색전문기업에 투자 의무

한편 2010년말 기준으로 녹색기술·사업 인증을 신청한 건수는 각각 551건, 55건,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신청한 기업은 31개며, 이중 157개 기업, 6개 사업이 각각 녹색기술·사업인증을 받았으며, 21개 기업이 녹색전문기업 인증을 받는 등 제도도입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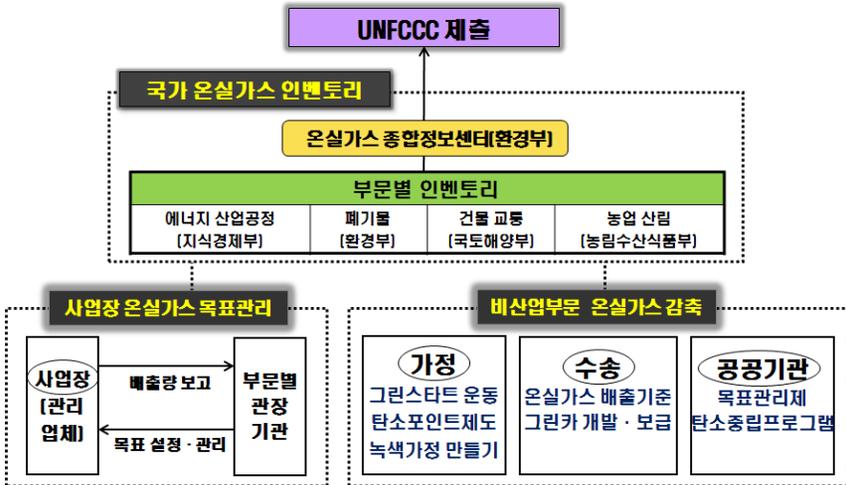
8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상 집합투자기구(Mutual Fund)로서,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

[그림 6-2] 녹색인증 신청 및 인증 추이



한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은 2020년 BAU 대비 30%라는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를 명시(제25조)하여 녹색성장 선도국가로서 대외적 약속이행의 의지를 표명하고, 국가온실가스 관리체계를 정립함으로써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시행령은 환경부를 국가·사업장 인벤토리를 총괄부처로, 관리업체별 규제기관을 소관부처별로 단일화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림 6-3] 국가온실가스 관리체계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하고,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각 소관부처는 관리업체 지정, 목표설정, 이행실적 보고 및 점검, 평가 등을 담당하게 되었다.

동 시행령 제정으로 각종 지원제도와 중기감축목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으며, 실행모드에 진입한 녹색성장이 향후 더 큰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 재정·금융지원 강화

세계 주요국간 녹색경쟁(Green race)이 가속화됨에 따라 향후 녹색시장은 과거 IT에 버금가는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녹색산업 초기 육성을 통한 시장선점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다만, 초기산업의 특성상 투자의 불확실성이 높고 회수기간도 장기라는 점이 녹색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실효성 있는 재정·금융지원을 통해 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경쟁력 있는 녹색산업 육성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녹색경쟁력 확충을 위한 재정·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방안은 우선 재정 투자 확대 및 효율화를 위해 2009~2013년간 예정된 107.4조원(GDP의 2% 수준)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녹색기술 개발촉진을 위한 녹색 R&D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2013년까지 3조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10대 녹색기술⁸³⁾의 성장동력화가 가능하도록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핵심·원천 기술개발과 실증

83) 이차전지, 미래 원자력, 고도 수처리, CO2 포집·저장, 스마트 그리드, LED, 그린 PC, 고효율 태양전지, 그린카, 연료전지(녹색위, '10.2월 선정)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녹색 R&D 성과 제고를 위해 부처간 공동연계 프로그램 도입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세제지원 측면에서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기술을 확대하고, 외국인투자 조세감면규정을 개정하여 녹색성장 관련 신기술을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대상에 추가 반영하기로 하였다. 녹색기업의 생산원가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리튬 이차전지 등 녹색산업 핵심 원재료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인하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금융지원 측면에서는 녹색기업의 자금조달 여건개선을 위해 정책금융공사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여 정책금융공사 내 녹색금융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동 공사에서 1조 5000억원을 출자하여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사업펀드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육성을 위해 정책자금 규모를 2010년 1,350억원에서 2011년에는 5,000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2. 서비스산업 선진화⁸⁴⁾

가. 유망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

1) 추진배경

서비스산업은 우리경제 대부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나,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을 선진국과 비교할 경우 여전히 낮은 수준⁸⁵⁾이다. 도소매,

84) 집필자 :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 김시동 사무관

음식숙박업 등 저부가가치 업종은 진입규제가 없어 과당경쟁 상태로 추가적인 고용창출에 한계가 있는 반면, 보건·사회복지, 사업서비스 등 고용창출이 유망한 분야는 높은 규제 등으로 고용수준이 매우 저조⁸⁶⁾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고용비중이 낮은 업종 중에서 고용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콘텐츠,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교육, 연구개발서비스 등 5대 유망 서비스 분야를 선정하여 일자리창출 방안을 마련하였다.

2) 주요내용

4월에는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유망 서비스산업 일자리창출 방향” 및 “콘텐츠·미디어·3D산업 분야 발전전략”을 수립·발표하였다. 우선, 콘텐츠 분야에서는 대·중소 콘텐츠업체와 정부가 참여하는 콘텐츠 생태계 프로젝트 추진과 글로벌 펀드 조성(13년 2천억)을 통해 대규모 콘텐츠 시장을 창출하고, 1인 창조기업을 확대(3.7→5만개)하는 등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미디어 분야에서는 제 2의 인터넷 붐 조성을 위해 모바일 금융결제 및 요금제도 개선을 통한 무선 인터넷 이용 활성화, 무선랜·와이브로 서비스 이용지역 확대 및 미디어·콘텐츠 기업간 불공정거래 환경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3D산업 분야에서는 인력양성, 3D 콘텐츠 전문펀드 조성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3D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기술 개발 방안을 수립하였다. 동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14년까지 약 8만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85) 서비스업 고용비중(%) : ('00) 61.5 → ('03) 63.6 → ('06) 66.2 → ('09) 68.5

우리나라 서비스업 고용비중('07년 66.7%)은 OECD국가중 23위

86) 도소매·음식숙박업 고용비중('07년, %) : (미국) 22.5 (독일) 19.5 (한국) 24.4

보건·사회복지 고용비중('07년, %) : (미국) 10.8 (독일) 10.4 (한국) 3.2

사업서비스 고용비중('07년, %) : (미국) 11.9 (독일) 10.9 (한국) 6.1

5월에는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 방안”을 마련·발표하였다. 간병, 돌봄, 보육 유망 사회서비스를 중점 육성하고 사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신규자격 도입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에 포함하는 등 제도화하고 노인·아이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진입장벽을 완화할 계획이며, 보육바우처 지원방식을 종일제에서 시간제로 효율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7월에는 성장기여도, 잠재력, 일자리 창출 효과와 외화획득 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레저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였다. 세계관광업계 핵심 고객으로 부상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호텔 투자여건 개선 등 관광숙박시설 확충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관광수요 창출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의 비자제도와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수립하였다. 이와 함께, 쇼핑·생태·해양항공·농산어촌·산업관광 등 분야별 관광을 활성화하고 수상·항공·승마 등 레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8월에는 “글로벌 교육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수 외국인 유학생과 경제자유구역내 우수 외국학교 유치 촉진과 국내 대학의 해외 분교 설립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9월에는 민간 지식재산서비스 시장 활성화, 국제공인 시험인증 기관 확대, 업체정보 DB 구축 및 인식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12월에는 임상시험서비스 글로벌 경쟁력제고, 해외 환자 유치 활성화, 건강관리서비스제도화, 뷰티서비스 산업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였다.

나. 서비스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1) 추진배경

최근 WTO, FTA가 확대됨에 따라 서비스시장 개방이 가속화되어 전세계 서비스수출과 해외투자는 확대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출과 해외투자도 확대 추세이나, 서비스수출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5.1%로 전세계 평균과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표 6-2〉 서비스수출 비중

	전세계 평균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총수출대비 서비스수출 비중 (%, '08년)	19.4	29.9	38.2	16.6	21.4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해외진출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은 내수지향적인 서비스업의 특성상 해외진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어 대외경쟁력이 취약할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해외인지도도 미약했기 때문이다. 수출지원 제도도 제조업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서비스기업이 이용하기에 제한적이고 서비스업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차원의 전략이 없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번 「서비스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상대적으로 부진한 서비스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여 서비스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 주요내용

우선, 제조업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서비스업 친화적으로 정비하였다. '지역별·국가별 해외진출 전략지도'와 '서비스 분

야별 해외진출 상세 가이드북'을 마련하여 진출지역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해외진출 경험이 부족한 서비스기업이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부족 문제로 애로를 겪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KOTRA의 서비스업 해외진출 지원체계도 대폭 보강한다. 국내에서 해외진출을 준비중인 서비스기업에 대해서는 체계화된 현지 정보제공, 투자절차 상담 등 종합적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현지진출 서비스기업에 대해서는 KOTRA 해외 무역관을 통해 거래파트너 물색, 마케팅 지원, 수출계약 체결 지원 등 사전지원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지사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KOTRA의 '해외지사화 사업'에 서비스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지사화사업 참가비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서비스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진출 지원의 효과성도 제고할 것이다. 서비스수출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은 제도화된지 오래되지 않아 지원규모가 미비하였고, 문화수출보험의 지원 대상도 영화·드라마·게임 등에만 해당되었다. 이에 따라 2013년까지 수출입은행의 여신을 3,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서비스분야에 지원되는 문화수출보험과 서비스종합보험을 각각 1,200억원, 2.5조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출판·CG 분야에도 문화수출보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외국의 콘텐츠관련 기업과 공동투자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지원근거가 미비하여 완성보증 지원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해외기업과 공동투자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완성보증을 적용하여 대규모 콘텐츠 제작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의료, 관광, 콘텐츠 등 해외진출 유망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서비스 R&D 투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해외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 브랜드의 인지도 제고를 지원하고, 1:1 비즈매칭 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해외 네트워크 활용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서비스 전문인력의 해외취업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는 해외 구인의뢰 대비 국내 구직인력의 해외취업률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취업이 되는 국가도 중국·일본 등 아시아 일부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해외취업률을 높이고 해외취업 국가를 다양화하기 위해 국내외 민간 헤드헌팅사와 협력을 강화하여 유럽·북미 등으로도 해외의 인력수요를 적극 확대하였다. 해외취업을 위한 국내외 사전연수 기관도 시설, 장비 등이 우수한 대형 교육기관 중심으로 내실화하였다. 현재는 중국·일본 등 4개국에 대해서만 해외취업후 애로사항 해결 등을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UAE·카타르, 미국 등에 대해서도 해외취업 사후관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기술자력이 외국에서도 동일한 자격으로 인정되어 서비스 전문인력이 활발하게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자격 분야 등을 분석하여 '국가기술 자격 상호인정 방안'을 수립하고 국가간 자격 상호인정 확대를 위한 협상도 적극 추진하였다.

3.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⁸⁷⁾

가. 추진 경과

우리나라는 강우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홍수기에는 거의 매년 홍수 피해를 입고 있는 반면, 갈수기에는 오히려 물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2002년에서 2006년까지 5년 동안의 4대강 지역의 연평균 수해관련 비용은 복구비 2.4조원, 수해 피해액 1.5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2016년에 약 10억m³의 물 부족도 예상된다.

87)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토해양예산과 김경국 사무관

이에 정부는 4대강의 물 확보, 홍수예방, 수질개선 등을 위해 2008년 12월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을 결정하고, 2009년에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를 발족 후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을 수립(2009년 9월) 하여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관련 절차이행 후 총 170개 공구 중 42개 공구의 사업을 착공하였다.

〈표 6-3〉 4대강 살리기 사업 투자현황

(단위 : 조원)

구 분	총사업비	2009년	2010년	2011년 ^o	2012년 ^o
국토해양부(SOC)	15.4	0.8	6.4	6.9	1.3
· 재정	7.4	0.8	3.2	3.1	0.3
· 수자원 공사	8.0	-	3.2	3.8	1.0

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본격 추진 및 향후 계획

2010년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총사업비 15.4조원 중 6.3조원(국가 3.2조원, 한국수자원공사 3.1조)을 투입하였다. 4대강 분류 구간간의 공사는 2011년에 마무리할 예정이며 10월경 대국민 개방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하천주변 친수구역의 활용을 위해 ‘친수 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2010년 12월에 제정하였고, 2011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친수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에게 품격 있는 국토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기대효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범정부 차원에서 강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단기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함은 물론, 환경·생태·생명의 복원을 통해 강 중심으로 국토를 재창조하는 종합 프로젝트이다.

이를 통해 9.2억 m^3 의 홍수조절능력 증대와 13억 m^3 의 용수 확보량의 증대가 기대되며 수질도 현재 76% 수준인 2급수 이상 비율이 2012년에는 86% 까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생태하천 조성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복합 공간이 만들어지고, 강 중심의 지역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2절 산업체질 개선⁸⁸⁾

1.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가. 추진배경

산업의 융·복합화와 기술의 복잡성 확대 등의 여건 변화는 글로벌 경쟁의 양상을 단일 기업간 경쟁에서 기업 생태계간 경쟁으로 전환시켰다. 이러한 글로벌 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인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필수요건으로 동반성장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그간 일부 대기업과 정부의 추진노력에도 불구하고 업계 현장에서는 불공정거래 관행이 아직도 일부 남아있었고, 오히려 대기업의 사업확장·진출 등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업계는 동반성장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동반성장 전략이 산업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9월 29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마련하였다.

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전략

1)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정부는 일방적 대기업 규제나 중소기업 보호가 아닌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를 통해 대기업의 성과가 중소기업으로 파급(trickle-down) 될 수 있는 동반성장 토대를 마련하였다.

88) 집필자 :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김준하 사무관

먼저,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납품단가’ 문제와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을 부여하여 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 지원 기능을 활성화하였다. 이를 통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09.4월시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공정한 납품단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당초 계약한 납품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감액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감액 사유와 산정 기준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토록 함으로써 객관적 근거 없는 자의적인 납품대금 감액 관행을 근절하고자 하였다. 업종별로 하도급계약에 관한 표준 서식을 보급하여 구두 발주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특히, 대형유통업체가 구매력을 바탕으로 납품업체에 대해 경품행사 참여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퇴치하기 위해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보급하고 유통 분야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및 현장조사를 강화하였다.

한편, 기술자료 임치제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동반성장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기술자료 공유는 허용하되, 부당한 기술 탈취·유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방지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들이 확산되어 대기업부터 최하위 협력사까지 원활한 대금지급 및 상생협력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도급법 적용을 2차 이하 협력사로 확대시켰다.

2) 사업영역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정부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아울러 기업의 자발적인 동반성장 노력이 산업 전반에 정착·확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즉, 대기업

과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유도하고 효과적인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였다.

먼저,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을 동반성장 위원회에서 민간 주도로 선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고 「상생특별보증 프로그램」 및 「동반성장기금」을 통한 투자액의 세액공제(7%)를 신설하여 동반성장 프로그램 정착 및 확산을 위한 대기업의 투자재원 확보를 유도하였다.

또한, 대·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비중 확대⁸⁹⁾, 2·3차 협력사에 대한 경영지문, 기술지원 등의 「생산성 동반향상 프로그램」추진 등 2·3차 협력을 중심으로 동반성장 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을 확대하였다.

3)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원

한편 중소기업이 역량 있는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투명성 강화, 구조개선, 역량확충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였다.

대부분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들의 경영·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 정책자금 신청시 우대⁹⁰⁾와 신·기보 보증료 할인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발적 외부감사 수감을 유도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이 스스로 마련한 구조개선 계획이 일정 요건에 부합한 경우 패키지로 지원

89) 정부 R&D 사업내 대·중소기업 공동 R&D 비중 확대 및 대·중소기업간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확대('10년 600→'11년 800억원)

90) 시설자금사정한다 확대(소요자금 80%→100%), 시운전자금지원 확대(시설자금 30%→50%)

하는 「상시 구조개선 지원프로그램」 도입방안을 마련하였고, 기술·인력·해외 마케팅·생산성 등 중소기업의 핵심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였다.

4) 민간과 정부의 동반성장 추진·점검 시스템

마지막으로 동반성장 노력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산업 생태계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민간의 자발적인 추진시스템과 정부의 강력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먼저, 경제단체, 전문가, 사회지도급 인사 등으로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반 성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합의 도출과 동반성장 문화 확산의 구심체를 마련하였으며,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확대·개편하여 동반성장위원회에 대한 실무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였다.

또한, 「동반성장 cyber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동반성장 관련 중소기업 현장의 의견을 전달받는 범정부 차원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범부처 차원의 「동반성장 추진 점검반」을 운영하여 동반성장 추진상황을 점검 및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2.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가. 추진배경

우리 경제는 1960년대 이후 대기업 중심 정책을 통해 고속 성장을 해왔으나, 최근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의 성장이 거의 정체되어 ‘경제의 성장과 활력’ 측면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었다.

또한,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 주력산업인 조립·장치부문에서 중국이 급부상 하면서, 고부가가치 부품·소재·장비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조립·장치부문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경제여건 하에서 고부가가치 부품·소재·장비를 공급하고 質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이분법적 정책 패러다임으로 인해 정책대상에서 소외되어 왔던 중견기업을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주체로 인정하고 3월 18일 범정부 차원의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였다.

나.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성장 역량 강화

1)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 도입

중견기업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향후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 정의 및 지원 근거를 명시키로 하였다.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 중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집단이 아닌 기업으로 중견기업을 정의하되 필요시 시행령에 더 구체적인 기준을 두기로 하였으며, 법에는 포괄적인 지원근거만 두고 정책별로 해당 법령에 별도의 추진 근거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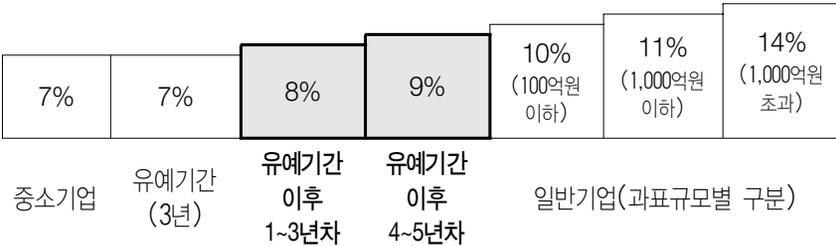
2) 중소기업 졸업 촉진과 졸업기업에 대한 부담 완화

중소기업 졸업시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졸업기업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하

였다. 부담완화 방식은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3년) 이후 별도의 부담완화기간(5년)을 두고 이 기간 동안 부담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도록 하였다.

먼저 조세부담 완화를 위해 부담완화기간(5년) 동안 최저한세율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R&D세액공제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그림 6-4] 최저한세율 체계 개편안



[그림 6-5] 일반R&D 세액공제율 개편안



또한, 자금조달 부담완화를 위하여 기업은행과 기존 거래관계에 있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자금회수 및 주거래은행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신용보증의 경우 중소기업 졸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증축소, 가산보증료 부과 등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담완화기간(5년) 중에는 기존 보증을 원칙적으로 축소하지 않고, 가산 보증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한편,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공사는 중견기업 특별시설자금 제도⁹¹⁾를 도입하여 중견기업의 장기설비 투자 및 R&D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출입은행은 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맞춤형 금융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3) 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과거 1970~80년대 R&D 중심의 집중적인 자생력 제고 정책으로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여 현재와 같은 세계적인 Hidden Champion을 보유하게 된 독일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R&D·사업화·기술확산 등을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하기로 하였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지원 비중을 2009년 17.9%에서 2012년까지 25%로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연간 최대 100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의 고부가가치화, 사업화를 위해 민관합동의 창의자본주식회사⁹²⁾를 설립하기로 하였으며 해외시장에서 발생하는 특허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R&D과제 기획시 특허분석을 통해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을 동시에 수립하는 IP(지적재산권)-R&D 연계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한편, 그간 다양한 지역 기술혁신거점을 구축하였지만, 공급자 중심의 칸막이식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현장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왔기에 독일의 '지역기술혁신센터'를 통한 중소기업 현장 밀착 지원 사례를 벤치마킹하였다. 즉, 중견기업 현장방문을 통해 기업을 진단

91) 녹색산업,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위험도가 높아 민간금융회사의 지원이 곤란한 중견기업 중 기술력과 사업성을 보유한 혁신형 중견기업에 자금을 지원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

92) 지식재산 매입→고도화→라이선스 및 이전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회사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술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1:1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업주치의센터」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중견기업의 R&D·마케팅 등 기업활동 단계별 전문인력에 대한 활용비용 지원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해외 전문인력 도입 지원 범위(기술→마케팅)와 대상(중소기업→중견기업) 및 규모(125→500명), 그리고 기술지도 지원기간(1년→2년)과 규모(30명→50명)도 확대하였다.

4) 글로벌 마케팅 지원체계 구축

성장성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진출을 하고 싶어도 경험이 없고 전문인력·정보·해외네트워크가 부족해 애로를 겪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해외 정보 네비게이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해외 진출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패키지형 마케팅 지원서비스」를 신설하여 기업의 수출성숙도에 따른 패키지를 구성하고 밀착 지원하기로 하였다.

5) “World-Class 300” 프로젝트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집중지원, 2020년까지 300개의 World-Class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글로벌 시장진출 의지가 강한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R&D, 전문인력, 자금, 해외 마케팅 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제3절 미래 위험요인 관리⁹³⁾

1. 재정건전성 확보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경기 침체의 여파로 한국의 경제도 2008년 하반기부터 고용부진, 소비·설비투자 감소 등을 겪게 되었다. 정부는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2009년 17.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10.2조원 규모의 감세 조치 등을 시행한 데 이어 2010년에도 7.4조원 규모의 한시적 예산을 편성하고, 9.7조원 규모의 감세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처럼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경제가 조기에 회복되면서 2009년 0.2%의 플러스 성장률⁹⁴⁾, 2010년 6.2%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고 국가신용등급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⁹⁵⁾

이러한 적극적 재정정책의 추진과정에서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불가피하게 다소 약화되었으나, 경기회복에 따른 세입 증대와 강력한 지출억제 등에 힘입어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었다. 국가채무는 2009년 359.6조원(GDP대비 33.8%)에서 2010년 392.8조원(GDP대비 33.5%)으로 감소하였고,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⁹⁶⁾)도 2009년 43.2조원 적자(GDP대비 △4.1%)에서 2010년 13.0조원 적자(GDP대비 △1.1%)로 개선되었다.

한편,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여타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도 회복속도가 빠르고 양호한 편이다. 2011년 예산기준으로 한국의 재정수지는 GDP대

93) 집필자 : 기획재정부 사회정책과 황석채 사무관

94) OECD 회원국중 한국, 호주, 폴란드만이 2009년 (+) 성장

95) 2010년 4월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외환위기 이전 최고수준인 A1으로 상향조정

96) 관리대상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

비 $\Delta 2.0\%$, 국가채무는 GDP대비 35.1%로 OECD 회원국 평균인 $\Delta 6.1\%$, 100.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⁹⁷⁾

그러나 각종 재정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향후 복지지출의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며, 잠재성장률의 저하로 세입·지출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미래의 통일비용도 재정이 감당해야 할 잠재적 위험 요인이다. 또한,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경제위기에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3년~2014년 중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를 2014년 GDP 대비 31.8%수준으로 관리하는 재정건전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세입기반 확대, 지출 생산성 제고, 재정관리시스템 개선 등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세입기반 확대를 위해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과표양성화, 신규세원 발굴 노력을 강화하는 등 ‘낮은세율·넓은세원’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지출생산성 제고를 위해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성과가 미흡한 사업이나 유사 또는 중복사업은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사업집행의 단계별(기획-편성-집행-평가)로 지출효율화 원칙을 추진하고 있다. 확보된 재원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미래대비 투자 등에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있다.

97)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의 경우 '09년에서 '10년 사이 OECD 회원국 평균은 6.3%p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0.3%p 감소하였고 GDP대비 재정적자는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평균은 0.3%p 감소하였으나 우리나라는 3.0%p 감소하였음.

재정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총지출증가율을 총수입증가율보다 2~3%p 낮게 유지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였다. 또한 국가재정법령 개정을 통해 부처가 재정수반 법률안 추진 시 재정당국과의 사전 협의절차를 내실화하는 등 협의·조정기능을 강화하였다. 그 밖에 발생주의 등 최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통계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⁹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복지 분야와 미래대비 투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위기이후 민생을 안정시키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1년도 보건·복지 예산을 전년대비 증액하여 서민·취약계층의 자립·자활을 강화하고, R&D 예산을 전년대비 증액하여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2.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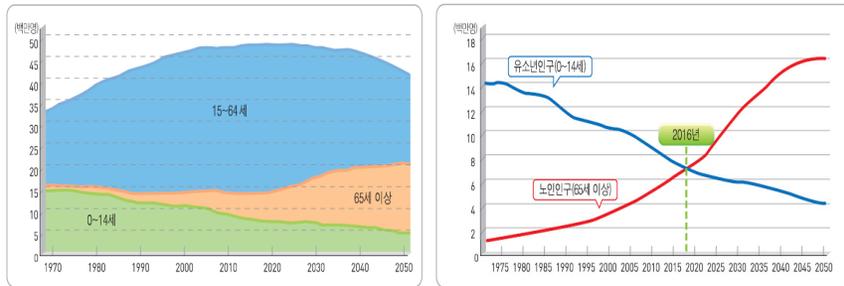
가. 추진배경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83년 인구대체 수준인 2.1명에 도달한 이후, 지속 하락하여 2010년 현재 1.2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10년 안에 생산가능인구 감소(2017년), 고령사회 진입(2018년), 총인구 감소(2019년) 등 인구구성 변화가 가시화 되고, 노인인구 비율도 2050년에는 38.2% 수준까지 증가하여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98) 정부는 2011년도부터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 회계기준의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예정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적기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노동인구 감소, 소비·투자 위축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또한,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조세·사회보장비 부담 증가는 미래 세대 부담으로 연결되어 세대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종합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그림 6-6] 인구구조의 변화 추이(절대인구수 기준)



자료 : 장래인구추계(통계청, '06)

나.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

지난 2006년 수립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06~’09년)」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1~’16년)」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저출산·고령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여 활력있는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중점 목표로 삼고 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여 여성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고, 2인 이상 다자녀 가정에게 세제, 주택, 학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고령자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보장하고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중·고령자 적합한 사회적 기업 등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활성화 등을 통해 다층적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여 고령자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여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 중이다.

아울러, 정부 대책만으로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바, 기업과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범국민운동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다. 향후 계획

2010년도 합계출산율의 반등을 계기로 출산율 상승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복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범사회적 정책 공조를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3. 기후변화 및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⁹⁹⁾

가. 기후변화 협상 및 대응

2010년 12월 멕시코 칸쿤 총회에서 칸쿤합의문(Cancun Agreement)이 공식채택됨에 따라 기후변화협상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2012년말 만료되게 되어 포스트 교토 기후협약 체제에 대한 UN 합의가 필요함에도 그동안 선진국과 개도국간 참여할 입장 차이로 인해 협상에 진전이 없었고, 이로 인해 유엔 기후변화체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일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2010년 칸쿤 당사국 총회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은 온실가스 감축 범위, 재정지원 등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절충함으로써 합의문을 채택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검증·적용 등에 대한 논의 내용이 유엔기후변화 협상체제로 편입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추가적인 논의와 협상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2010년도에 총 5차례 개최된 유엔기후변화 협상의 주요 과제중 하나는 온실가스 의무 감축의 범위이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선진국의 구속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치를 설정한 1997년의 교토의정서를 폐지하고 중국·인도 등 주요 개도국도 함께 참여하는 “단일의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a single legal binding instrument)”을 주장하였다. 반면에 개도국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과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따라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일한 형태의 구속적 온실가스 감축 의무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에 2009년 12월 코펜하겐 총회와 마찬가지로 칸쿤에서도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 대립으로 합의문 채택이 쉽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었다.

99)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 박상운 사무관

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은 2010년 칸쿤 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위하여 온실가스 의무감축 범위에 대한 입장 절충에 성공하였다. 의무감축 범위와 관련, 선진국은 감축 의무는 부담하되 감축 목표를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Information 문서)에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개도국은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되 자발적인 감축 목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도 칸쿤합의문에 반영되었다. 지난해 코펜하겐 총회에서 약속한대로 선진국들은 2010~2012년간 300억불,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불을 조성하여 개도국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기후변화 재원관리를 위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비부속서 국가(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가 주장한 저탄소 개발전략, 저탄소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 녹색성장의 이념적 요소를 공유비전 부문에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또한 자발적 감축행동을 ‘개도국 감축행동 등록부’ 항목에 등록하는 방안이 도입됨으로써 선진국으로부터 지원받지 않는 감축행동도 국제적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작년 칸쿤총회의 공식합의문 도출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신뢰회복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기후변화협상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칸쿤 총회는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과제인 전지구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합의하지 못하였다는 점, 교토의정서가 2012년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Post 2012 기후변화협상 체제를 합의하지 못하였다는데 그 한계가 있다. 이제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이나 Post 2012 기후 변화협상 체제는 201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더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Post 기후변화협상 체제에 대한 성공적인 합의 여부는 더반 회의의 성패를 결정할 요인이 될 것이다.

나. 에너지자원협력 강화

2010년은 에너지 자원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 공기업, 민간기업의 노력이 최고로 확대된 해였다. 정부·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에너지 자원개발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였다. 정부는 정상급 외교, ODA등을 통해 자원부국과의 에너지 자원 협력을 지속 강화하였고, 석유공사 75백억원, 광물공사 2백억원 등 공기업에 대해서는 출자를 크게 확대하였다. 또한 경제위기 등으로 침체되었던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해외자원개발 예산의 85%를 민간기업에게 지원하고 매장량 담보 용자 도입, 유망자원 개발기업에 대한 신용한도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였다. 수입이 급증하는 희유금속을 확보하기 위하여 리튬, 희토류 등 6개 광물을 '준 전략광물'로 선정하고 중남미, 아프리카 등 희유금속 보유국에 대한 에너지 자원 협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GCC, 페루, 호주, 콜롬비아 등 중남미, 중동의 자원부국과의 FTA 협상¹⁰⁰⁾도 지속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0년 해외 에너지 자원 개발투자는 투자금액, 사상 최대인 90.5억불에 이르렀다. 석유공사는 2005년부터 탐사사업을 추진해 온 카자흐스탄의 아다 광구 개발에 성공하였고, 베트남에서도 원유와 가스(매장량 2,900만 배럴) 개발에 성공하였다. 또한 영국의 Dana사를 인수하는 등 해외 M&A도 적극 추진하였다. 지식경제부는 세계 최대의 오일샌드 지역인 캐나다 앨버타주와 에너지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기도 하였다. 11월에는 중남미의 주요 자원보유국인 페루와 최초로 자원협력형 FTA를 가서명하기도 하였다. 한-페루 FTA는 우리나라가 타결한 FTA중 최초로 에너지·자원협력을 협정문에 명문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100) 협상개시 : GCC(2008년 7월), 페루(2009년 3월), 호주(2009년 5월), 콜롬비아(2009년 12일)

2010년 원유·가스 자주개발률은 당초 목표치인 10.0%를 크게 넘는 10.8%를 기록하여 두자리 대에 진입하였고, 우라늄, 철등 6대 전략광물 자주개발률은 당초 목표인 5.5%를 3%p 초과한 8.5%를 기록하였다. 결과적으로 2010년은 자주개발률, 투자금액 등 에너지 자원협력의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도 두드러진 한해였다.

2011년에도 국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협력, 자원부국과의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에너지 자원 확보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7

일자리 창출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개편 추진

제7장 일자리 창출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개편 추진

제1절 2010년 세제개편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¹⁰¹⁾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적시성 있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2010년 상반기에 7.6%의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등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었으나, 거시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저하되어 경제성장이 일자리 창출 및 서민들의 체감경기 개선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였다.

이에 체감경기를 개선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2010년 세제개편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2010년 세제개편의 4대 기본방향은 아래와 같다.

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세제지원 방향을 물적자본 중심의 투자지원제도에서 인적·지적자본 중심의 세제지원제도로 전환하고,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였다.

101)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김만수 사무관

② 서민생활 안정

경기회복의 성과가 서민·중산층에 확산될 수 있도록 서민생활 지원을 확대하였고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였다.

③ 지속성장 지원

최근 신성장기술로 부상하고 있는 3D기술, IT 융합기술 등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세계 최고 수준의 R&D 지원을 실시하는 등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④ 재정건전성 제고

국제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중대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에 착수하였고, 국내적으로도 조세감면의 기득권화, 각종 정책수립시 조세감면제도 신설로 인해 국세감면 규모가 국가재정법상 법정한도를 2년 연속 초과하였으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세입기반은 축소되는 반면 복지·통일비용 등 재정소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과세·감면 축소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세원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다.

제2절 일자리 창출 지원

1.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

- 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지역별·기업규모별로 임시투자세액공제율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차등화¹⁰²⁾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하고 이러한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였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제조업 등 32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사업용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 대비 고용이 증가한 인원 1명당 1,000만원(만 15~29세 근로자는 1,500만원)을 한도로 투자금액의 1%를 법인의 경우 법인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제도이다.

또한, 지방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7%)을 기업규모별·지역별로 구분하여 중소기업은 5%, 일반기업은 수도권 밖에 투자할 경우 5%, 수도권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할 경우 4%로 인하여 투자유인효과에 비해 과도한 세제지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102)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정형 사무관

나. 지역특구·외투기업 세제지원시 지원한도 및 고용인센티브 신설¹⁰³⁾

투자금액 및 고용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조세감면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특구·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세제지원 한도를 투자금액의 50% 이내로 조정하였다.

다만, 지역특구·외국인투자기업이 고용을 증대시키는 경우 상시근로자 1인당 1,000만원을 투자금액의 20%까지 한도를 증액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다. 중소기업 범위 산정시 인원기준을 고용친화적으로 개편¹⁰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수준 이하인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분류하여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 운영단계에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30%), 최저한세율 우대(7%), 법인세 분납기한 우대(2개월),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풀타임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해 짧음에도 불구하고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1인”으로 계산하여 중소기업의 단시간 근로자 고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0.5인”으로 산정하도록 조정하였다.

103)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윤충식 사무관

104)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윤충식 사무관

라.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¹⁰⁵⁾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한 가업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가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가업이 대를 이어 계속하여 존속·번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상속세 공제제도이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의 기술 및 경영노하우를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확대하여 왔다.

〈표 7-1〉 최근 3년간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정내용

구분	'07년 이전	'08년	'09년 이후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피상속인이 5년이상 영위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대표이사 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11년 이후)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
공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제금액 : 1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제율 : 가업재산의 20% 공제한도 : 3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제율 : 가업재산의 40% 공제한도 : 60억원~100억원
연부 연납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업상속재산이 50% 이상 : 15년 분납 기타의 경우 : 5년 분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업상속재산이 50% 이상 : 3년거치 12년 분납 기타의 경우 : 2년거치 5년 분납 	<p>좌동</p>

그러나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문턱효과로 기업의 적극적인 성장과 일자리창출 의욕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매출액 1천억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기업 중에 매출액 1천5백억원 이하인 기업은 현행

105)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이용선 사무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되 중소기업과 달리 가업을 상속을 받은 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20%를 유지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승계가 일차리창출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기업의 경우 가업상속 공제요건으로 피상속인이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을 합하여 종전에는 4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였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30% 이상으로 낮추어 상장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완화하였다.

2. 고용유발 효과가 큰 업종 지원 강화

가.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에 대한 세제지원¹⁰⁶⁾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3,029개),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960개),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413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8,296개) 등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을 세제지원 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하여 일차리창출을 지원하였다.

* 취업유발계수('07년, 명/10억원) : (제조업) 9.2 (건설업) 16.8 (서비스업) 18.1 (청소업·경비업 등 기타사업서비스) 24.2 (시장·여론조사업 등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13.9

106)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윤충식 사무관

나.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의 세제지원 신설¹⁰⁷⁾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해외창출 고용이 국내고용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신설하였다.

이는, 국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을 국내의 수도권 밖에 이전하여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를 감면하는 제도이다.

다만,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이전시 국외사업장을 양도·폐쇄하는 것을 지원요건으로 하고 있다.

3. 취약계층 고용 인센티브 강화

가.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¹⁰⁸⁾

고용여건이 취약한 장애인의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 장애인 10인 이상 고용 및 장애인 고용비율 30% 이상 등

107)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박성무 사무관

108)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박성무 사무관

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¹⁰⁹⁾

저소득층·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의 일몰기한을 2013년 말까지 연장하고 최저한세율을 중소기업 수준(7%)으로 우대하였다.

* 저소득층·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비중이 30% 이상 또는 서비스 이용자 중 취약계층 비중이 30% 이상인 기업 등

109)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윤충식 사무관

제3절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1. 저소득 근로자, 중소기업인, 농어민 등 지원

가.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¹¹⁰⁾

2010년 우리나라 경제의 빠른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경기후행적인 서민층의 체감도는 쉽게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상대적으로 근로여건이 열악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시켜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일용근로자¹¹¹⁾의 경우 일급여액에서 10만원을 공제한 후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세부담 금액이 결정된다. 금년에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8%에서 6%로 인하¹¹²⁾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나. 근로장학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¹¹³⁾

1996년부터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 지원을 위해 근로장학금¹¹⁴⁾

110) 집필자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최우석 사무관

111) 일당 또는 시급 단위로 급여를 받는 자로서 동일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노동자는 1년)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 (2009년 기준 일용근로자는 7,558,913명, 「2010년 국세통계연보」)

112) 일용근로자 세부담 : [(일급여액 - 10만원) × 원천징수세율(8% → 6%)]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55%)

113) 집필자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최우석 사무관

114) 근로장학금 제도 개요

- [근거] 대학 근로장학제도 운영규정(교육과학기술부 훈령)
- [개념]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대학생을 선정하여 학교 내의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지원금을 지급

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학생이 받는 장학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대학생이 학교 도서관 등에서 일을 하고 대학으로부터 받는 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¹¹⁵⁾에 해당하게 되어 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렇다 보니 근로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¹¹⁶⁾이 증가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근로장학금을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대학생이 근로장학금 수급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다. 농·어민 및 장애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¹¹⁷⁾

FTA 체결 등에 따른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 농기계에 농업용 로우더(자체 중량 2톤 미만)와 동력 제초기를 추가하였다.

또한, 농어민이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사후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양송이 재배용 복토, 어선용 유류절감장치 및 고효율 축매기기, 농산물 저온저장고, 농업용 환풍기를 추가하였다.

특히,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 [금액] 시간급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하되, 실제 근무한 시간에 시간당 금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월 30~50만원 지급)
 - [근로시간] 주당 20시간 이내(방학기간 중에는 주당 40시간 이내)
- 115)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소득세법 제20조)
- 116)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및 재산환산액 등을 기초로 산정
- 117) 집필자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이종수 사무관

축산용 인큐베이터, 축산용 출하돈선별기 등 11개 품목을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품목에 추가(2010.11.17 발표)하여 2011년 5월 30일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하여 축산업계를 지원하였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학습 및 정보 습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시각장애인용 전용 음성독서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토록 지원하였다.

라. 다양한 종류의 탁·약주 제조 여건 마련¹¹⁸⁾

종전에는 탁주의 발효 및 제성 과정에 과실이나 채소류를 첨가하거나 약주의 발효 및 제성과정에 주정이나 증류식소주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탁주나 약주가 아닌 기타주류로 분류되어 탁주 5%, 약주 30% 세율 대신에 기타 주류 72%의 고율의 주세가 부과되어 다양한 맛과 향을 가진 탁주와 약주의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양한 형태의 탁주와 약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료 및 첨가재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첫째, 탁주와 약주의 발효 및 제성과정에서 과실과 채소류를 원료 합계 중량의 20% 범위 내에서 원료 및 첨가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원래의 탁주 및 약주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둘째, 약주에 대하여는 제품 알코올분 총량의 20% 내에서 주정이나 증류식소주를 첨가하는 경우에도 약주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다양한 도수를 지닌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

118) 집필자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이호범 사무관

마. 경차소유자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 일몰연장¹¹⁹⁾

2008년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경차소유자에 대한 연간 10만원 한도의 유류세 환급제도의 일몰을 2년 연장하였다. 경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비과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지원 중이고 2008년 대비 유가가 하향 안정화된 측면이 있으나, 에너지절약 및 경차를 이용하는 서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일몰을 2년 연장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경차소유자에 대해 유류세 환급 혜택을 제공하였다.

바.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연장¹²⁰⁾

음식·숙박업자 등 중소기업인의 세금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선불카드 등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일정부분을 세액공제시 우대^{*}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0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였다.

〈표 7-2〉 우대 내용

구 분	기준공제		우대내용 (‘12년말까지 일몰기한 연장)	
	공제율	공제한도	공제율	공제한도
음식·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	결제금액의 2%	연 500만원	2.6%	연 700만원
이외 개인사업자	결제금액의 1%	연 500만원	1.3%	연 700만원

119) 집필자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박수현 사무관

120) 집필자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이종수 사무관

사.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우대제도 일몰연장¹²¹⁾

음식업자의 세금부담 경감을 위해 음식업자가 농·축·수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일정율을 한시적으로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우대공제*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0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였다.

〈표 7-3〉 우대 내용

구 분	기준 공제율	우대내용 (’12년말까지 일몰기한 연장)
음식업자	구입액의 3/103	· 유흥주점 4/104, 법인 6/106 · 개인 8/108
이외 사업자	구입액의 2/102	우대 없음

2. 중소기업 지원

가.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¹²²⁾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목적 기금에 대한 출연시 세액공제 신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상생보증펀드* 또는 동반성장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 상생보증펀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수탁기업 등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에 조성된 기금

121) 집필자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이종수 사무관

122)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윤충식 사무관

** 동반성장기금 :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R&D, 생산성 향상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을 위하여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조성된 기금

2) 상생협력 지원제도 일몰 연장

납품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매대금을 현금성 결제로 하는 경우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을 2013년 말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어음발행을 축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유도하였다.

또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대기업이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받은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제도를 2013년 말까지 3년간 일몰을 연장하였다.

나. 중소기업 창업 및 가업승계 지원¹²³⁾

2010년 세계개편 당시 우리나라는 상반기 7.6%의 성장세를 시현하는 등 빠른 경기회복이 이어지고 있었으나, 이러한 경제성고가 서민·중소기업 등에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국민들의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2010년 말에 종료되는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시한을 3년 더 연장하여 2013년 말까지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거나 또는 가업을 승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도록 하였다.

123)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이용선 사무관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창업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거나 부모가 영위하던 가업을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그 창업자금 또는 가업(이하 '창업자금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 후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그 창업자금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는 제도이다.

다.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적용 배제¹²⁴⁾

일반적으로 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 경영권 양도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주식가치에 의하여 양도되지 않고, 그에 따른 프리미엄이 추가되는데 이를 경영권프리미엄이라 한다. 이와 같이 최대주주 등이 갖고 있는 경영권프리미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을 평가할 때 반영하는 것이 할증평가 규정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이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두고 있는바, 동 특례제도의 적용시한을 2년 연장하여 2012.12.31.까지 중소기업의 주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라.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¹²⁵⁾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였다.

124)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이용선 사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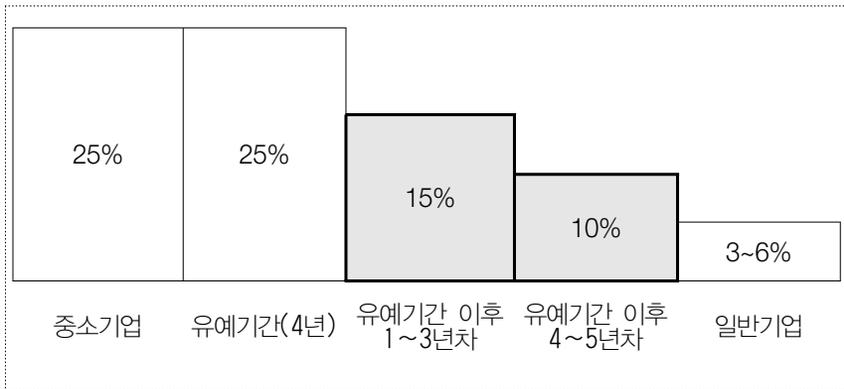
125)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윤충식 사무관

1)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R&D 세액공제율 단계적 인하

기존에는 중소기업을 졸업할 경우 R&D비용 세액공제율이 당기분 기준으로 당초 25%에서 3~6%로 일시에 축소되어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R&D비용)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1~4년차)에는 25%, 그 이후 3년간(5~7년차)은 15%, 그 이후 2년간(8~9년차)은 10%로 단계적으로 축소되도록 하였다.

[그림 7-1] R&D 세액공제율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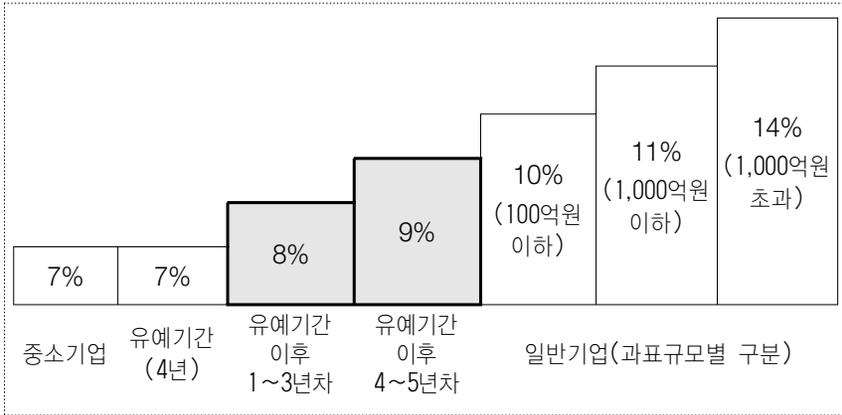
2)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최저한세율 단계적 인상

또한, 기존에는 중소기업을 졸업할 경우 최저한세율이 당초 7%에서 10%로 일시에 인상되어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최저한세율을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1~4년차)에는 7%, 그 이후 3년간(5~7년차)은 8%, 그 이

후 2년간(8~9년차)은 9%로 단계적으로 인상되도록 조정하였다.

[그림 7-2] 최저한세율 체계 개편



마. 주류제조면허 시설기준 대폭 완화¹²⁶⁾

종전 주류제조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맥주의 경우에는 1,850kl 이상의 발효조를 갖추어야 했고, 희석식소주의 경우에도 130kl 이상의 희석조를 갖추어야 하는 등 주류제조시설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시설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많은 설치비용이 소요되어 중소기업의 주류산업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는 시설기준을 아래와 같이 대폭 완화하여 중·소규모업체의 주류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고객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주류가 생산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126) 집필자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이호범 사무관

(표 7-4) 주류제조면허 시설기준 변경(변경된 부분만 표시)

주종별 시설	완화내용
<input type="checkbox"/> 맥주 ○ 전발효조 ○ 후발효조(저장조)	○ 925kl 이상 → 50kl 이상 ○ 1,850kl 이상 → 100kl 이상
<input type="checkbox"/> 희석식 소주 ○ 희석조 및 검정조 총용량	○ 130kl 이상 → 25kl 이상
<input type="checkbox"/> 탁주·약주·청주 ○ 증류식(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 8㎡ 이상 → 삭제
<input type="checkbox"/> 민속주(전통주) ○ 국실(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 증류실(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 6㎡ 이상 → 삭제 ○ 8㎡ 이상 → 삭제
<input type="checkbox"/> 소규모맥주제조 ○ 당화·여과·자비조 등 ○ 담금 및 저장조	○ 0.5kl~2.5kl → 0.5kl 이상 ○ 5kl~25kl → 25kl 이상

3. 기부문화 활성화

가. 기부금 제도 간소화 및 지원 확대¹²⁷⁾

최근 사회 분위기가 성숙되면서 기부를 통한 나눔 문화가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기부금 지원 세제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고, 기부 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종래 법정·특례·지정기부금 등 3단계로 이루어진 기부금 구분체계를 특례기부금을 폐지함으로써 2단계로 간소화하였다.

127) 집필자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박지훈 서기관

아울러,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개인 기부금의 경우 현행 소득금액의 20% → 30%로, 법인 기부금의 경우 현행 5% → 10%로 각각 확대하였고, 일정요건을 갖춘 전문모금기관, 공공기관 등은 법정기부금단체로, 비영리 외국법인·단체와 국제기구 등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

나. 주식 기부 활성화 지원¹²⁸⁾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출연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이며 이하 '동일기업 주식보유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동일기업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는 출연자가 공익법인을 이용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를 간접적으로 지배하거나 상속·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동일기업 주식보유한도가 선의의 주식 기부 문화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 2011년부터 성실공익법인에 한하여 동일기업 주식보유한도(10%)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상속·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되, 성실공익법인이 해당 주식을 출연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기업 주식보유한도(10%)를 초과하는 주식을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처분하도록 사후관리를 두었다.

128)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이용선 사무관

제4절 지속성장 지원

1. 신성장동력 확충 지원

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확대¹²⁹⁾

기업의 R&D비용 중 일반 R&D비용은 그 비용의 3~6%(중소기업 25%)가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되나, LED응용·바이오제약·의료기기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R&D비용은 그 비용의 20%(중소기업 30%)를 세액공제하도록 하여 일반 R&D 비용보다 R&D비용 세액공제를 대폭 우대하였다.

또한, 최근 신성장기술로 부상하고 있는 3D기술, 녹색기술, 차세대LCD 기술, IT 융합기술 등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였다.

나. 신성장동력 산업 관련 주요 원자재·부품 등에 대해 관세율 인하¹³⁰⁾

2010년 기본관세율은 1988년 확립된 이후 국내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3차례(1996년, 1999년, 2006년)의 부분 개정을 거쳤다. 2010년에는 신성장동력 산업을 지원하고, 희소금속 자원 확보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43개 품목에 대해 기본관세율을 인하하였다.

129)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정형 사무관

130) 집필자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문진주 사무관

녹색기술 산업 등 신성장동력 산업¹³¹⁾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관련 기초원자재 및 부품·소재 17개 품목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였고, 첨단산업의 핵심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희소금속 등 기초원자재 17개 품목에 대해서도 세율 인하를 추진하였다. 아울러, 중소·영세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수입 의존 비중이 높고 원가부담이 큰 9개 품목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였다.

〈표 7-5〉 2010년 기본관세율 개정내용

개정 기준	품목 (개)	관세율(%)		주요품목	
		종전	개정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①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	17	3~8	2~5	
	○ 그린카(이차전지)	5	8	5	황산코발트, 황산망간, 탄산망간 등
	○ 차세대디스플레이	6	8	5	도포기, 식각기, 증착기 등
	○ LED 응용	1	8	5	다이아몬드 코팅 와이어
	○ 태양·풍력발전	5	3~8	2~5	규사, 탄산이나트륨, 커플링 등
	② 기초 원자재 안정 확보	17	3~8	2~5	페로실리콘, 주석괴, 이산화망간, 탄산리튬 등
	③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9	1~8	0~4	원피, 견사, 견방사, 면사, 재생필라멘트사 등
합	계	43	1~8	0~5	

다.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¹³²⁾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 그 이

131)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관광 등 17개 분야(2009.1월)

132)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정형 사무관

후 2년간 50% 감면) 대상인 고도기술수반사업에 탄소저감, 친환경자동차 등 녹색성장 관련 신기술을 추가하였다.

또한, 저탄소·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투자금액의 10%)의 일몰을 2013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였다.

라.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연장¹³³⁾

산·학 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 내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이 산업체 등에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2010년 12월 3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였다.

마. 해외자원개발투자 등 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¹³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3%) 일몰을 2013년말까지 3년간 연장하였다.

또한, 의약품 품질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투자금액의 7%)의 일몰을 2013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였다.

133)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정형 사무관

134) 집필자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이종수 사무관

2. 기업경쟁력 제고

가. 기업구조조정 지원¹³⁵⁾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시급하고 일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특례제도를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기업구조조정 지원 특례제도〉

- ① 채무상환 목적으로 기업자산 매각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 ② 부실기업이 주식을 증여받아 소각시 증여받은 주식가액 법인세 면제
- ③ 기업채무 상환을 위해 주주가 기업에 자산 증여시 증여가액 과세이연
- ④ 부실기업 양도·청산을 전제로 주주가 채무 인수시 채무면제의 과세이연
- ⑤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이러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특례제도의 일몰시한이 도래하였으나,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 등으로 아직 글로벌 경제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민간부문의 자발적 구조조정이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특례제도의 일몰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였다.

나.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법 보완¹³⁶⁾

2011년부터 상장기업과 금융회사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K-IFRS)이 의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회계기준 개편 전후에 기업의 세부담 및 납세협력 비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법을 종합적으로 보완하였다.

135) 집필자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박지훈 서기관

136) 집필자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윤수현 사무관

〈표 7-6〉 회계기준 개편내용

구분	회계기준 변경 내용
'10년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기업에 기업회계기준(K-GAPP) 적용
'11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기업·금융회사* : 국제회계기준(K-IFRS) * 저축은행, 리스, 신기술, 할부금융사 제외 ▪ 비상장기업 : 일반기업회계기준

1)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

K-IFRS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증가와 상각방법의 변경(정률법→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가 감소한 기업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비에 대한 신고조정을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2013년 이전 취득자산에 대해서는 기존의 감가상각비만큼 추가로 손금산입 할 수 있으며 2014년 이후 취득자산에 대해서도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한도로 추가로 손금산입 할 수 있다.

2) 기능통화¹³⁷⁾ 개념의 도입

K-IFRS 적용 기업은 기능통화 개념을 도입하여 원화 외의 통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으나 기능통화 재무제표에 대한 세법상 규정이 없어 기업들이 세금납부를 위해 다시 원화로 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3가지를 신설하고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137) 기능통화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통화로서 해외에서 주로 활동하는 해운업체, 수출업체의 경우 달러화나 유로화가 기능통화가 될 수 있다.

〈표 7-7〉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구분	과세표준 계산방법
방법 1	기능통화로 계산한 과세표준을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
방법 2	원화로 제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방법 3	표시통화 재무제표 ¹³⁸⁾ 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3) 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 인식 방법 개정

기존 세법은 은행에 대해서는 모든 외화자산·부채에 대해 평가손익의 인식을 허용하고 은행 이외의 법인에 대해서는 평가손익의 인식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K-IFRS 도입으로 모든 기업이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해서만 평가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세법상 모든 기업이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해서만 평가손익을 인식하도록 개정하였다. 다만, 은행 이외의 법인의 경우 기존에 외화자산·부채에 대해 세법상 평가손익 인식이 허용되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의 인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대손충당금 일시환입액 익금산입 유예

기존에는 예상되는 손실을 추정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예상손실모형)하였으나 K-IFRS하에서는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대손충당금의 설정(발생손실 모형)이 가능하므로 K-IFRS 도입 기업은 대손충당금 비용계상액이 감소하고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 감소에 따른 세부담 증가분을 2013년까지 납부를 유예

138) 기능통화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대차대조표 항목은 기말환율, 손익계산서 항목은 거래일 환율(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등은 평균환율)로 환산한 재무제표

하였다. 2013년 이후에는 K-IFRS가 재개정되어 대손충당금 설정요건이 현재 수준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5) 비상위험준비금¹³⁹⁾ 손금산입 신고조정 허용

기업이 종전에는 비상위험준비금을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었으나, K-IFRS 도입으로 비상위험준비금을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게 되어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K-IFRS 도입 보험사에 대해서 신고조정을 통해 비상위험준비금을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손금산입 한도는 $\Sigma(\text{보험종목별 보유보험료} \times \text{적립기준율})$ 의 90%로 하였다.

6) 책임준비금 적립한도 개정

보험사는 결산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 해약시 지급해야할 금액을 적립(현행기준 적립액)하고 있으나 K-IFRS하에서는 현행기준 적립액에 대한 부채적정성 평가를 통해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세법상 책임준비금 적립한도를 개정했다. 적립한도는 현행기준 적립액과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최소적립기준 중 큰 금액으로 하였다.

7)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장기할부거래에 대해 종전에는 인도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인도기준과 회수기준 중 선택하여 수익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러나 K-IFRS는 모든 기업에 대해 인도기준만을 적용하도록 하고

139) 전쟁, 자연재해 등 통상의 범위를 벗어난 대형 재해손실시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손해보험회사가 보험료의 일부를 적립하는 금액

있으므로 중소기업 간에도 K-IFRS 도입 여부에 따라 과세 형평성이 저해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장기할부거래에 대해서는 결산상 인도기준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회수기준으로 신고조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찬가지로 건설계약·예약매출에 대해 종전에는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중소기업의 1년 미만 건설계약·예약매출의 경우에는 인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K-IFRS의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진행기준만이 적용되어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1년 미만 건설계약·예약매출의 경우에는 결산상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인도기준으로 신고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¹⁴⁰⁾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제도는 제조업자의 제3자 물류비용 증가분의 3%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인데, 물류전문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을 2012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하였다.

140)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정형 사무관

3. 저출산·고령화 대응

가.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¹⁴¹⁾

여성의 초혼·초산연령 상승, 여성의 대학진학 및 경제활동참가 증가, 육아비·교육비 상승 등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여건의 변화¹⁴²⁾에 따라 저출산·고령화 문제¹⁴³⁾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문화적 인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의 일환으로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을 2배로 대폭 확대하였다. 기존의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은 2자녀인 경우 연 50만원, 2자녀를 초과하는 경우 50만원과 2자녀를 초과하는 1인당 100만원의 합계액을 공제하였으나, 내년부터는 2자녀인 경우 연 100만원, 2자녀를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과 2자녀를 초과하는 1인당 200만원의 합계액을 공제하도록 하였다.

금번 세제혜택 확대로 다자녀가구의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141) 집필자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최우석 사무관

142) 여성 관련 각종 통계 :

- 여성의 초혼연령 : 24.8세('91년) → 28.7세('09년)
- 여성의 초산연령 : 26세('91년) → 30.1세('10년)
- 여고생 대학진학률 : 32.4%('90년) → 80.5%('10년)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 42.8%('80년) → 49.0%('09년)

143)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갖는 평균출생아수) : (한국) '10년 1.22명, (OECD평균) '08년 1.71명

나. 직장보육시설 등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지원 확대¹⁴⁴⁾

직장보육시설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보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인상하였다.

또한, 근로자 복지향상 지원을 위해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 공제(7%)의 대상에 종업원 휴게실 및 체력단련실을 추가하고, 국민주택 규모의 지방 미분양주택을 무주택종업원 임대용 및 종업원 기숙사 용도로 취득한 경우의 세액공제율을 취득금액의 10%로 상향조정하였다.

다. 퇴직급여 세제 보완¹⁴⁵⁾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였고 근로자가 받는 퇴직일시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퇴직소득금액의 45%에서 40%로 축소하였다.

라.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에 대한 세제지원¹⁴⁶⁾

노인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30%) 대상 업종에 추가하였다.

144)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박성무 사무관

145) 집필자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장대희 사무관

146)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박성무 사무관

제5절 재정건전성 제고

1. 과표양성화 및 비과세·감면 정비

가.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¹⁴⁷⁾

그 동안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가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소득과약률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경우 수입 금액 누락, 가공 비용 계상 등을 통해 탈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일부 사업자는 매출누락, 가공경비, 업무무관경비 계상 등을 통해 소득을 누락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세무사가 사업자와의 묵시적인 담합을 통해 탈세를 방조하더라도 세무사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0년 세제개편안’에서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음식점·장례식장 등 현금수입업종 중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업무무관 경비, 가공경비 계상 여부 등 사업소득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세무사에게 확인받도록 의무화하는 세무검증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기국회 논의과정에서 업종간 불형평 문제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로 기획재정부 세법심사소위는 2011년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2011년 2월 임시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도 명칭을

147) 집필자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양순필 서기관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변경하였고, 대상사업자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였으며, 가산세 수준을 완화(산출세액의 10% → 5%)하여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다.

성실신고확인제도¹⁴⁸⁾는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비용 부분의 세원투명성 시스템으로 작동하여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며, 세무사에 대한 명확한 책임과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세무대리 관행을 개선하고 기장단계에서부터 오류를 교정하는 등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자영업자 세원투명성 제고¹⁴⁹⁾

현금영수증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 종전에는 미가입기간 총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하였으나, 가산세율을 1%로 인상하였다.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는 기장 능력이 충분히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복식장부 기장 등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12년 말까지 2년 연장하였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과세를 받는 경우 기타 경비에 대한 비용 인정비율을 기준경비율의 1/2로 낮춰 기장신고를 하도록 유도하였다.

148) (인센티브) 확인 비용의 60% 세액공제, 성실사업자에 준하여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신고기간 연장(다음해 5월말~6월말) 등

(제재) 확인받지 않은 사업자는 가산세(산출세액의 5%)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 부실 확인 세무사도 징계조치

149) 집필자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양순필 서기관

다. 계산서·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¹⁵⁰⁾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위장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부과 대상에 종전에는 실제 공급자가 아닌 타인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만 해당되었으나, 앞으로는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타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위장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한 부당한 탈세가 제도적으로 방지되도록 보완하였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한 경우에 1건당 200원씩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2010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하였다.

라.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제한¹⁵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2006년)되고 양도소득세 과세제도가 기준시가 과세원칙에서 실거래가액 과세원칙으로 전환(2006.1.1부터 시행)되었음에도 실거래가 과세제도의 정착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었다.

특히,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 또는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자 등이 거래상대방의 양도소득세 등을 줄여주기 위해 허위계약서(일명 ‘다운 계약서’ 및 ‘업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았다.

150) 집필자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이종수 사무관

151)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방우리 사무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거래가 과세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1년 7월 1일 이후 양도·취득분부터는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세액에서 '계약서상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액'을 차감하도록 하여 허위계약서 작성 당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대폭 제한하였다.

마. 각종 세액공제제도 정비¹⁵²⁾

지원목적이 달성된 범용화된 설비임을 감안하여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투자금액의 3%, 중소기업은 7%) 적용대상에서 전자상거래설비,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 : 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설비를 제외하고, 공장자동화 시설에 대한 관세감면을 20%에서 10%로(중소기업 40%→30%)로 축소하였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거래가 어느 정도 보편화된 점, 성실사업자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등과 중복되는 점을 감안하여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을 종료하였다.

* 신용카드 등 수입금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50%(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의 5%)에 대해 소득세 감면

3년 이상 장기보유주식으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공익기부집합투자기금으로부터의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일몰종료하였다. 지난해 일몰 예정이었던 선박투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는 선박펀드를 통한 국적선사 확충 효과, 조선사

152)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정형 사무관

업의 높은 전후방 효과 등을 고려하여 일몰을 3년간 연장하되 비과세·감면 축소 필요성, 여타 펀드상품과의 과세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과도한 세제혜택은 축소¹⁵³⁾하였다.

이용실적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 과세 특례제도*의 일몰을 종료하였고, 일반 근로자의 퇴직소득과 형평을 감안하여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시 공제금액을 축소하였다.(초과반환금의 50%→40%)

* 이익을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중 일부를 비과세

개인 및 기관투자자와의 형평을 감안하여, 우정사업본부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하였으며, 장기간 지속된 특정산업 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 위하여 방위산업용품·항공기 항행안전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10~30%) 제도를 폐지하였다.

바. 개별소비세 비과세·감면제도 정비¹⁵⁴⁾

개별소비세와 관련하여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정비한 내용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이었다.

우선 주한 외교관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제도를 합리화하였다. 그간 주한 외교관 등에 대해서는 주한 외국공관이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석유류와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

153) (기존) 액면가액 3억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 5%, 3억원 초과 보유주식의 배당소득 14% 분리과세 → (개정) 액면가액 1억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 5%, 1억원 초과 보유주식의 배당소득 14% 분리과세

154) 집필자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박경찬 사무관

홍음식행위에 대해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주한 외국공관의 공용차와 외교관 차량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한해서만 면제하도록 하고 유홍음식행위에 대한 면제는 폐지하여 면세 적용을 엄격히 하는 한편, 주한 외교관 등이 개별소비세가 면제된 물품을 5년내 양도하면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던 것을 3년내에 양도하는 경우로 변경하여 면세품 사후관리를 완화하였다. 그리고 상호주의를 도입하여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외교관 등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우리나라도 그 나라의 외교관 등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주한 외교관에 대한 면제제도를 변경한 이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차량용 유류에만 면세를 적용하고 있고 유홍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이었다. 또한 국제적인 관례 및 공관원의 임기를 고려하여 개별소비세 면제물품의 보유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여 주한 외교관 등의 불편을 제거하고 과세관청의 사후관리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일몰 종료하여 2011년부터는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다.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수도권 및 지방 모두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2008년 10월부터는 지방경제 활성화 및 해외 골프수요의 국내전환 등을 위하여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감면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 골프장 입장객이 증가하는 등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도 있었지만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과의 과세불형평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2010년 12월 31일로 일몰종료 되었다.

2. 신규세원 발굴 :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¹⁵⁵⁾

국제적인 부가가치세 과세관행^{*}에 맞지 않고 품목간 과세형평을 초래하는 일부 의료보건용역 및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여 과세기반을 확대하였다.

- * 의료보건용역 : 인간의 질병치료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면제
- 교육용역 : 공교육 등 비영리교육은 면세, 사교육은 과세

의료보건 용역에서는 의사가 제공하는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 진료용역^{**}에 대하여, 교육용역에서는 무도(舞蹈)학원의 교육용역에 대하여 2011년 7월 1일부터 과세하도록 하였다.

- * 5개 :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
-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과 「기르는 어업 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 진료용역은 계속 면세 유지

다만,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2012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다.

155) 집필자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이종수 사무관

3. 기타 과세제도 보완

가. 「노동조합법」에 위반하여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시 비용 불인정¹⁵⁶⁾

「노동조합법」이 개정되어 2010년 7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금지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에 위반하여 지급한 노조전임자 임금은 위법·부당경비로서 업무와 무관한 지출인 점을 고려하여 법인세법 상 손금산입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 다만, 「노동조합법」에서 time off 제도 등 일정한 경우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同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임금은 손금산입을 허용하였다.

나. 공매제도 개선¹⁵⁷⁾

채납자의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적절한 가격과 빠른 시일에 낙찰되도록 유도하여 국고 손실을 방지하고, 공매과정에 관계된 채납자 등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간 공매절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제도적 미비점이 발견된 바, 국세징수법 개정을 통해 공매 절차를 개선·보완하였다.¹⁵⁸⁾

1) 참가압류한 기관에 공매 허용

압류재산에 대해 공매권한을 가진 기관은 원칙적으로는 최초로 그 재산을 압류한 기관이나, 동 기관이 공매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후에 참가압

156) 집필자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박지훈 서기관

157)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박은영 사무관

158) 1)은 2011년 4월 4일 시행, 2)~4)는 2012년 1월 1일에 시행 예정

류한 기관도 공매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참가압류 기관의 공매 진행은 최초 압류기관이 매각 최고를 받고도 3개월 이내에 매각 절차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는 공매가 지체됨에 따라 체납액 징수가 지연되고 체납자의 가산금이 증가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2) 공매공고 등기제도 신설

국세채권의 경우 민사채권과는 달리 압류 등기 이후에 실제 공매가 진행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게 보통이다. 따라서 일반인에게 공매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세무서장이 공매공고를 할 때 이를 등기·등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동 공매공고 등기제도는 공매재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공매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세무서장이 공매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정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세무서장이 공매물건에 대한 현황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하는 세무공무원에게 건물 출입 등 민사집행법상의 법원 집행관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4) 배분요구 종기(終期) 및 배분에 대한 이의 절차 신설

그간 공매재산의 매수인은 채권자의 배분요구 여부에 따라 인수부담이 달라지는 부담이 있었다. 한편 채권자는 배분계산 완료 후에는 배분 순위·금액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보장되지 않았다. 배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이해관계인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초 입찰기일

전에 배분요구 종기를 신설하여 종기 전까지 채권자가 배분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에 대한 원안(原案)을 작성·비치하고, 채납자 등이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순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국제공조 강화와 개방 확대

제8장 국제공조 강화와 개방 확대

제1절 적극적 국제공조와 국격 제고 노력

1. G20 정상회의 개최¹⁵⁹⁾

가. 정상회의 준비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2009년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우리나라가 2010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결정됨에 따라, 같은 해 11월 범 부처 차원의 대응체제로서 대통령 직속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발족하였다. 동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문화관광부 등 각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특히, 2010년은 우리나라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일 뿐 아니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의장국이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G20 준비위를 중심으로 회의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주요 공식회의로서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의 3회,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회의의 4회, 각종 의제별 실무그룹회의와 더불어 세미나, 워크숍 등이 수차례 개최되었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의제 및 세션 구성¹⁶⁰⁾, 발표자 및 토론자 선정, 코뮤티케 초안 작성, 이슈노트 작성 및 회람 등

159) 집필자 : 기획재정부 거시총괄과 지광철 서기관

160) I) 세계경제와 거시정책공조(framework), ii) 금융규제개혁, iii) 국제금융기구개혁, iv) 글로벌 금융안전망, v) 개발, vi) 금융소외계층 포용 등이 2010년 G20 주요 의제이다.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표 8-1〉 2010년 G20 관련 주요회의

일 시	회 의 명	장 소
2.27 - 28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회의	한국(인천)
4.22 - 2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미국(워싱턴)
5.19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회의	독일(베를린)
6.3 - 5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한국(부산)
6.26 - 27	G20 정상회의	캐나다(토론토)
7.20 - 22	Sherpa 회의	한국(서울)
9.4 - 5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회의	한국(광주)
10.7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회의	미국(워싱턴)
10.13 - 15	Sherpa 회의	한국(인천)
10.22 - 2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한국(경주)
11.10 - 11	Business Summit	한국(서울)
11.11 - 12	G20 정상회의	한국(서울)

G20 정상회의는 2011년부터는 매년 1회 개최하기로 결정되었으나, 2010년에는 11월 서울 정상회의에 앞서 6월에 특별히 제4차 G20 정상회의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주요 의제별 논의 상황을 중간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고, 하반기 주요 공식회의시 논의 진전을 위한 모멘텀을 제공하였다.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는 G20의 경제·금융 이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회의는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를 위한 기술적·실무적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Sherpa 회의와 함께 정상선언문(코뮌이케)의 초안을 작성하고 정상회의를 보좌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나. 정상회의 성공을 위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요국 순방

하반기 들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의장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국 순방 외교를 펼쳤다. 방문 시기는 중추절을 전후한 9월 18일부터 29일 동안이었으며, 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브라질 등 5개국이 방문 대상국이었다. 당시 신흥국과 선진국 간 견해차이가 컸던 IMF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 글로벌 금융안전망(FSN)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 조율이 주요 목적 중의 하나였다. 거시정책공조(Framework) 등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에서도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방문국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지구를 한 바퀴 돌며 의장국으로서 적극적 리더십과 중재력을 발휘함으로써 의제별 핵심 쟁점에 대한 교착상태를 해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특히, 유보적 입장을 견지했던 국가들의 긍정적 변화에 기여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IMF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에서 유럽과 브라질 등 신흥국 간 상호 양보를 유도하고, 글로벌 금융안전망(FSN)에 소극적 입장을 유지해 온 독일 등 선진국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관심을 제고시켰다.

다. 서울 정상회의의 성과와 의의 및 향후 계획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범정부적 노력을 통해 서울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였다. 기존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였을 뿐 아니라 새로운 의제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였다. 기존 의제분야의 경우, 거시정책공조(Framework)에서 G20 국가별 정책약속들을 종합한 서울 액션플랜(Seoul Action Plan)을 마련하고, 세계경제의 최대현안으로 부각된 환율정책에 대한 정책공조방향에 합의하였다. 금융규제 개혁은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BaselIII) 및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규제의 채택 등 위기재

발 방지를 위한 ‘새로운 금융규제 체계’의 핵심을 마무리하였다. 국제금융 기구 개혁에서는 IMF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을 달성하였다. 한편, 우리나라가 제안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에서는 IMF 대출제도 개선 등 유동성 위기방지를 위한 의미있는 합의를 도출하였다. 개발에서는 단순 원조를 넘어 개도국 성장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개발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 개도국 역량강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인 ‘다년간 개발행동계획(Multi-Year Action Plan)’을 채택하였다.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인해 G20은 그 신뢰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위기 이후 세계 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Premier Forum)으로서 위치를 굳건히 하였다. 우리나라는 非 G7국가로는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를 주최하여 선진국과 신흥국간 중재 역할 등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합의 도출 과정에서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주도하는 등 지적 리더십과 추진력을 발휘함으로써 국가적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하였다. 이와 같이 G20 서울 정상회의는 우리의 국격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자신감을 고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향후 G20의 발전과 우리의 국익 증진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대내외 홍보노력을 강화하여 서울 정상회의의 성과가 국격 제고와 우리나라 대외 이미지 개선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의장국을 수행하면서 축적된 자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인적 네트워크와 노하우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아울러 국제적 논의를 주도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글로벌 리더십 발휘를 통해 국제무대의 규범제정자(rule setter)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2011년 트로이카¹⁶¹⁾의 일원으로서 서울 합의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차기 의장국인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하여 의제의 이행을 관리할 필요가 있

다. 특히 내년에도 금융안전망, 개발 등 우리나라의 주도 의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2. 글로벌 금융협력 강화¹⁶²⁾

가.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기여 확대

2010년 G20 의장국 수입, OECD DAC 가입 등으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여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기여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1) 국제금융기구 증자 참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기구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2010년 주요 국제금융기구들은 자본증액안에 합의하였다. 특히, IMF와 세계은행(WB)의 경우 그간 경제력 확대에도 불구하고 과소대표 되어왔던 신흥개도국의 지분비중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도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제력에 보다 부합하는 지분을 확보하고 국제금융기구내에서 발언권을 확대하였다. 세계은행의 경우 지배구조개혁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분율도 1.0%(22위)에서 1.6%(16위)까지 확대되게 되었다. IMF의 경우에도 쿼터개혁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쿼터 비중이 1.41%(18위)에서 1.8%(16위)로 상승할 예정이다.

161) 前의장국(한국), 現의장국(프랑스), 次期的장국(멕시코)

162)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 허수진 사무관

2010년 상반기에 합의된 미주개발은행(I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일반자본증자¹⁶³⁾에도 참여하였다. 다만, 모든 회원국이 기존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자본금을 확대하는 일반자본증자의 성격상 우리나라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2) 양허성 기금 재원보충 기여 및 신탁기금 신규 출연

출자 뿐 아니라 양허성기금¹⁶⁴⁾ 및 신탁기금에 대한 기여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마무리된 국제개발협회(IDA)¹⁶⁵⁾ 16차 재원보충 협상에서 분담률을 0.92%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기로 약속했으며, 아프리카개발기금(AfDF)의 분담률도 0.878%에서 1.317%로 50% 상향조정기로 하였다. 이는 AfDF 전체 공여국중 최고 수준이다. 또한 그간 참여하지 않았던 IDB의 특별운영기금(FSO)에도 1백만불을 신규 출연기로 약속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2010년 각 국제금융기구에 설치된 12개의 신탁기금에 총 500.5억원의 신탁기금을 출연하였다. 특히, G20 정상회의 합의 등에 따라 세계은행의 「농업·식량안보기금」에 신규로 참여하기로 결정하는 등 글로벌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163) 증자 비율 : (IDB) 70%, (AfDB) 200%, (EBRD) 50%

164) 저소득 개도국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무이자에 가까운 금리로 제공하는 양허성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해 설치한 기금

165) 세계은행 그룹의 양허성 기금

〈표 8-2〉 2010년 신탁기금 출연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구	기금명	출연액
WB	농업식량안보기금	3,296
	재생에너지개발사업기술지원기금	3,690
	경제평화구축신탁기금	12,300
	경제위기국가지원체계	4,628
	JPO 파견	367
	고용과 성장기금	464
ADB	e - Asia & 지식협력기금	7,380
AfDB	한·아프리카 협력기금	8,204
EBRD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	1,230
	기술자문협력기금	4,305
IMF	자금세탁/테러방지기금	224
	IMF 이차보전재원	3,965
합 계		50,053

나. 우리 인력과 기업 진출 지원

1) 국제금융기구 인력 진출 확대

언어장벽,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그간 국내인력의 국제금융기구 진출은 우리의 재정적 기여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다. 2010년 6월 현재 국제금융기구내 우리나라 평균 지분율은 1.29%이나, 평균 인력비중은 0.6%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기여확대와 병행하여 우리 인력과 기업의 국제금융기구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먼저, 2010년 12.2~3일간 서울에서 총 7개 기구(IMF, WB, ADB, AfDB, EBRD, IDB, OECD)와 공동으로 제2회 국제금융기구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였다. 동 박람회에서는 각 국제금융기구의 인사담당자가 방한하여 채용절차를 안내하고 채용면접을 실시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와 별도로 세계은행은 2010년 8월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공개채용 행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국제통화기금(IMF) 3명, 세계은행(WB) 1명, 아시아 개발은행(ADB) 1명 등 총 5명이 정규직에 채용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총 26명이 정규직 선발후보군(short list)에 등록되어 향후 결원발생시 채용기회를 부여받았다.

우수한 청년인력 진출 확대를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졌다. 2010년 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제도¹⁶⁶)를 최초로 도입하여 WB 동아태국 및 수석이코노미스트실에 총 2명을 파견하였으며, IDB에 2명, AfDB와 EBRD에 각각 5명과 2명을 인턴으로 파견하였다.

아울러 2009년 12월 개최한 유럽부흥개발은행의 한국인 컨설턴트¹⁶⁷) 공개 채용행사를 통해 국내 컨설턴트 5명이 선정되고, 51명이 컨설턴트 풀에 등록되는 등 컨설턴트 인력의 국제금융기구 진출도 확대되었다. 이들은 몬테네그로 IT 컨설팅사업 등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이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5개 프로젝트에 참여해 우리의 선진기술과 경험 등을 전수할 계획이다.

166) 젊고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여 정부의 부담으로 국제기구에 1~2년간 파견하여 국제적 역량과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제도

167) 컨설턴트는 국제기구에서 추진하는 개별 프로젝트를 위해 한시적으로 고용되어 연구,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계약직 전문인력임

〈표 8-3〉 작년 12월 이후 국제금융기구별 신규 진출 현황

기구	정규직	JPO/인턴	컨설턴트
IMF	3	-	-
WB	1(13)	2	-
EBRD	(4)	2	5(51)
ADB	1(4)	-	-
AfDB	(5)	5	-
IDB	-	2	-
합계	5(26)	9	5(51)

* 괄호안은 후보자 등록인원

2) 우리기업 진출 지원

2008~2009년 평균 국제금융기구 조달시장 규모는 연간 250억불 규모에 달하나, 우리 기업의 수주액은 2.41%로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EBRD 조달시장 설명회(2010년 3월), UN-MDB 조달시장 설명회(2010년 9월) 등 우리기업들의 국제금융기구 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앞으로도 국제금융기구 합동 조달설명회 개최, 조달시장 진출 안내책자 발간 등 정보제공강화, 국제금융기구와 한국기업간의 네트워크 확대 등의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 지역적 금융협력 강화

가. ASEAN+3 금융협력의 가시적 성과 도출¹⁶⁸⁾

2010년은 ASEAN+3 금융협력에 있어 그간의 협력 성과의 모멘텀을 이어나가면서 향후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진 중요한 해였다. 우선 2000년부터 추진해온 역내 금융위기사 자금지원체제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가 공식 출범하여 운영을 개시하였고 2003년부터 추진해 온 역내 채권시장발전방안(ABMI: Asian Bond Markets Initiative)에서도 역내 채권에 대한 신용보증기구인 신용보증투자기구(CGIF: Credit Guarantee and Investment Facility)를 공식 출범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미래중점과제 TF(Future Priority TF)를 설치하여 운영을 개시함으로써 CMIM과 ABMI라는 양대 의제이후에 ASEAN+3에서 새로 추진할 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졌다.

1) CMIM의 공식 출범 및 AMRO의 설립

2006년부터 논의되어 온 CMIM의 분담금, 인출규모 등에 대한 쟁점이 2009년에 합의되어 2010년 3월 24일 CMIM 협정이 발효되었다. 협정 발효로 그간 ASEAN Big-5 국가(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와 한중일간 양자통화스왑 체제였던 CMI가 ASEAN+3 국가 전체의 다자통화스왑체제로 개편되었다. CMIM은 ASEAN+3 전회원국간 단일계약에 의한 다자스왑체제로,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하다. 2010년 5월 ASEAN+3 재무장관회의(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는 향후 CMIM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고,

168) 집필자 : 기획재정부 금융협력과 최원진 서기관, 서영환 사무관, 장인주 사무관

역내 경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한 CMIM 자금지원 결정을 보좌하기 위한 역내 거시경제감시기구인 AMRO(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의 위치(싱가폴), 역할(위기 조기감지 및 신속한 자금지원 결정 지원 등) 등 주요사항에 대해 합의하였다. 2010년 6월 CMIM TF에서는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의 첫 번째 과제로 CMIM 운영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하고, 논의 일정, 지원 절차, 인출 조건, 지원 후 모니터링 등 논의 과제를 확정하였다. 이후 2010년 8월 운영가이드라인 1차안, 9월 2차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AMRO는 운영구조, 자문단 구성을 완료하고, Director 선정,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였다. 2010년 11월 AMRO 협정문 최종안을 마련하여 회원국의 서명 절차를 시작하였다.

2) 역내 채권시장의 발전 : 아시아채권시장발전방안 (ABMI : Asian Bonds Markets Initiative)

우리나라 제안으로 2003년 시작된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 Asian Bonds Markets Initiative) 논의에서도 역내 신용보증투자기구(CGIF)의 출범을 공식 선언하고, 역내 예탁결제기구(RSI : Regional Settlement Intermediary) 설립을 공식 논의하기로 결정하는 등 역내 채권 시장 인프라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CGIF는 역내에서 발행된 채권에 대한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기구로서, 2009년 5월 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ADB의 신탁기금 형태로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CGIF의 자본금은 총 7억달러이며, 중국·일본 각 2억달러, 한국 1억달러, ASEAN 0.7억달러, ADB가 1.3억달러를 납입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CEO 선임 등을 거쳐 적절한 시기에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ABMI 논의는 2008년 합의된 뉴 로드맵(New Roadmap)에 따라 공급·

수요·규제·인프라의 각 TF별로 역내 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담고 있다. 이중 우리나라는 필리핀과 함께 인프라를 담당하는 TF4의 공동의장국을 맡고 있으며, RSI 설립방안을 주도하고 있다. RSI는 역내 국경간 증권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청산·결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2007년 한국이 필요성을 제안하여 논의가 개시되었다. ABMI TF4에서는 2007년 민간전문가그룹(Group of Expert: GoE)을 구성하여 RSI의 설립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2010년 5월 2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개최된 ASEAN+3 재무장관회의에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승인되었다. 회원국들은 RSI 실무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RSI와 관련된 실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2010년 10월 동경에서 첫 실무 워킹그룹 회의가 개최되어, ADB 기술지원자금(Technical Assistance)를 통해 민간 증권결제회사인 Clearstream社를 외부 컨설턴트로 선정하여 GoE 보고서상의 규제완화타당성(legal feasibility)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3) 미래 중점 협력과제(Future Priorities)

2010년 5월 그간의 ASEAN+3 금융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새로운 금융협력의 중점이슈(Future priorities)를 발굴하기 위하여 미래우선과제 T/F가 설치되었다.

ASEAN+3 금융협력 프로세스가 그동안 CMIM과 ABMI를 양대축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CMIM과 ABMI가 가시적 성과를 보이면서 성숙단계로 접어들어 따라 ASEAN+3 금융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의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2010년 11월 중국 시안에서 열린 ASEAN+3 차관회의에서는 그간의 금

융협력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새로운 금융협력 의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Stocktaking report가 보고되었다. 동 보고서는 향후 추진할 새로운 과제로서, 역내 인프라 투자 활성화 방안, 역내 재난보험 체제 마련, 역내 무역결제에서 역내 통화 사용 확대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동 차관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민관 전문가들로부터 ASEAN+3 금융협력의 미래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미래 중점과제 논의를 돕기 위하여, 2011년 2월에 한국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하기로 자원하여 차관들의 승인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ASEAN+3 주요국의 차관급들과 역내의 저명한 학자들을 초청하여 2011년 2월 서울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할 목표로 회의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하였다.

나. 양자협력의 공고화¹⁶⁹⁾

우리나라는 ASEAN+3 금융협력 외에도 여러 나라들과 양자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전개해왔다.

1) 한중일 금융협력

2010년 5월 2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개최된 한중일 재무장관회의에서 각국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역내 금융협력 강화방안과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회의에서 한중일 3국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예상되는 도전과제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해 역내 금융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고 G20, APEC 등 국제회의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69) 집필자 : 기획재정부 금융협력과 서영환 사무관

이 외에도 한중일 간에는 2010년 3월 5일 국제국장회의, 2010년 9월 6일 거시경제·금융안정워크숍 등 다양한 대화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2) 한싱 고위급 회담

한중일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싱가포르와 차관급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7월 8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3차 회의에 참석하여 G20의장국으로서 G20 논의동향을 설명하고 위기 이후 지속성장 방안에 대해 논의하여, 양국간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하였다.

다. 기타 다자협력에의 적극적 참여

우리나라는 ASEM(Asia-Europe Meeting)과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등의 논의에도 적극 참여했다. 2010년 4월 17일~18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ASEM 재무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과 대응, 출구전략의 방법과 시기, 유럽과 아시아의 중장기적 도전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중요성 및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하여 각국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2010년 11월 5일~6일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여 APEC 역내 경제전망,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재정관리 방안과 고령화에 대한 대비, 경제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 등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글로벌 불균형 완화, 건전한 재정관리 및 고령화 대비, 역내 금융인프라 강화, 중소기업과 금융소외계층의 자금조달 지원 및 녹색성장을 위한 금융활성화를 담은 '성장 전략과 금융에 대한 교토 보고서(The Kyoto Report in Growth Strategy and Finance)'를 채택하였다.

4. 원조공여국의 역할 수행

가. 원조규모 확대 및 국별 지원전략 수립¹⁷⁰⁾

1) 대외원조규모의 확대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범지구적 빈곤퇴치 노력에 동참하고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외원조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2010년에는 11.7억달러(잠정치)로 전년대비 43.1% 증가했다. 원화기준으로는 2010년도 ODA(대외원조)규모가 1조3천491억원으로 전년대비 29.8% 증가하였으며 환율(원/달러)이 하락(10.3% 절상)하면서 달러기준으로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GNI 대비 ODA비율은 0.12%로 2009년 0.10%에 비해 0.02%p 상승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우리나라의 재정·경제여건, 국제적 위상 등을 고려하여 대외원조를 적정 규모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표 8-4〉 우리나라의 연도별 ODA 지원규모

(단위 : 백만달러, 순지출기준)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증감률(%)	
ODA 규모	752.3	455.3	696.1	802.3	816.0	1,167.7	43.1
양자간	463.3	376.1	490.5	539.2	581.1	890.6	53.3
다자간	289.0	79.2	205.6	263.1	234.9	277.2	18.0

한편, 우리 정부는 개도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허성차관인 EDCF를 통해 개도국의 경제·사회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에는 16개국, 23개 사업에 총 1조 2,476억원을 EDCF를 통

170) 집필자 :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 권상원 사무관

해 지원(승인기준)함으로써 3년 연속 지원규모가 1조원을 돌파하였다. EDCF 자금 집행실적도 2009년 실적인 3,128억원보다 증가한 4,107억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중점기조를 유지해 아시아에 54%를 지원(승인기준)하였으며, 분야별로는 교통·에너지 등 경제인프라와 교육·보건 등 사회인프라 지원을 병행하여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노력에 동참하였다.

2)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및 기본계획 수립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2010년 10월 25일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근간으로 12월 21일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11년~’15년)”을 수립하였다.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은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원조시스템의 효과적 개편, 국제활동 참여 강화의 국제개발협력 3대 선진화 전략을 중심으로 한 ODA 국가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선진화 방안을 토대로 향후 5년간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사업의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수립되었으며, ODA 목표, 추진체계, 사업계획 등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 유·무상 통합 국별지원전략 수립 및 평가시스템 구축

한정된 ODA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무상 통합 국별지원 전략 수립에 착수하였다. 유무상 통합 국별지원전략은 대상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중기 지원규모, 중점 지원분야는 물론 수원국의 개발계획 및 개발수요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2010년 베트남, 솔로몬군도, 가나에 대한 국별지원전략 수립에 우선 착수하였으며, 2012년까지 총 26개국에 대한 지원전략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 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 따라 성과관리 및 피드백 기능을 강화하는 유·무상 통합 평가시

스텝을 구축하고 국별평가(캄보디아), 프로젝트평가(유·무상 연계), 주제별 평가(새마을운동 전수)를 실시하였다.

4) 녹색성장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범세계적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우리기업의 해외 녹색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1~2015년 EDCF 승인액의 30%를 녹색성장산업에 배정하였다. 아울러 2010~2013년 ADB 미래탄소펀드에 2천만불의 출자를 약속하고 2010년중 5백만불 출자를 실현하면서 개도국 CDM(청정개발체제) 사업을 지원하고 대외 녹색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추진¹⁷¹⁾

1) 추진 배경

2010년 G20 서울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으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단기간 내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우리의 발전경험이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의 발전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04년부터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이하 “KSP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KSP 사업은 한국의 경제개발경험과 컨설팅 인력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정책자문 사업으로, 여타 원조사업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지원대상국으로부터 정책자문 영역에 대한 수요를 수렴한 후 이에 기초하여 정책컨설팅을 실시하는 맞춤형 자문 사업이다. 둘째, 정책

171) 집필자 :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 정호용 사무관

자문 과정에서 대상국 정책담당자 및 연구진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대상국의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제고한다. 셋째, 대상국의 정책과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정책자문 결과가 실제 정책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성과중심의 접근을 취한다.

이와 같은 KSP 사업의 특성은 최근 국제개발협력 논의의 무게중심이 일반적 원조에서 개발로(“aid and beyond”)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가 국제개발협력사회의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지식공유”를 통해 지적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을만하다.

2) 추진 현황

KSP 사업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04년 10억원, 2개국(베트남, 우즈베키스탄)으로 출발한 KSP 사업은 2010년에는 예산규모가 약 75억 원으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책자문 대상국도 17개국으로 확대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전환기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사업 규모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10년 KSP 사업에는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민간컨설팅업체가 일부 국가에 대한 정책자문을 위탁 수행하였다. KSP 사업 참여주체가 민간 부문으로 확장됨으로써 향후 국내 개발컨설팅 산업기반 조성 및 국제컨설팅 수주경쟁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0년 KSP 사업은 대상국에 대한 정책자문 사업에 더하여 우리의 개발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발전경험 모듈화 사업(개발경험 콘텐츠 구축 사업)이 시작된 해이기도 하다. 우리만의 독특한 발전경험, 개발도상국의 높은 수요 등을 고려하여 총 8대 분과 20개 과제에 대해 모듈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특히 2010년 10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의 주요 방안으로 2012년까지 총 100개의 “개발경험

콘텐츠 구축”을 의결하였다. 2011년부터는 분야별 정책경험이 축적된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제를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함으로써 사업의 품질 및 결과물의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3) 향후 계획

앞으로 KSP 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수요를 감안하여 지원대상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지역도 기존 아시아 중심에서 중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다변화할 계획이다.

〈표 8-5〉 KSP 지원대상국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개)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예산	10	10	8	15	25	50	74.5
대상국	2	2	4	5	8	11	17
아시아	베트남 우즈벱	인니 터키	베트남 인니 캄보디아	베트남 우즈벱 쿠웨이트 아제르	베트남 오만 터키 아제르	베트남 우즈벱 인니 캄보디아 카자흐	베트남 우즈벱 인니 캄보디아 카자흐 아제르 라오스 몽골 UAE 쿠웨이트 사우디
아프리카			알제리	가나	알제리 모잠비크	알제리 리비아 가나	DR콩고 리비아 가나
중남미 기타					도미니카 우크라	도미니카 우크라	도미니카 브라질 페루

그리고 KSP 사업이 EDCF 등 프로젝트사업과 연계되는 사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정책자문 주제 선정시부터 후속 경제협력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높여나갈 것이다. 또한, 기존 양자협력 형태의 KSP 사업을 지역별 전문성을 갖춘 국제기구 등과 공동컨설팅을 실시하는 삼각협력 형태로 확장 시킴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이다. 이를 통해 KSP 사업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대표적 국가브랜드사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전략적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강화

1. 글로벌 FTA 네트워크 강화¹⁷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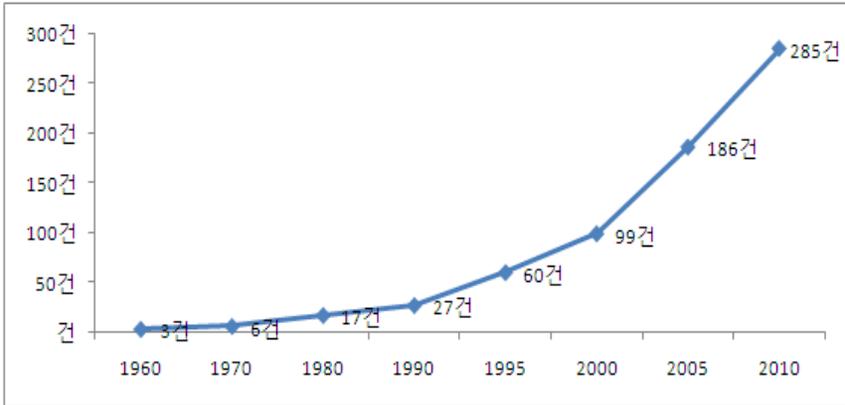
가. 세계 FTA 흐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WTO/DDA를 통한 다자무역자유화는 선진국과 주요 개도국 간 현격한 입장차이 등으로 논의가 거의 진전되지 못한 반면, FTA 등 지역무역협정체결은 지속적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 1947년 GATT 출범 이후 2010년 말까지 지역무역협정(RTA)은 285건이 발효되었으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 등 신흥 개도국이 부상하면서 세계경제의 성장축이 다극화되고 지역주의가 심화되면서 국가간·지역간에 FTA 체결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역무역협정이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지역무역협정의 참여국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주요국들의 국내 수요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확대 차원에서 해외 시장 선점을 위한 각국의 FTA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석유 등 에너지 자원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자원민족 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원부국과의 FTA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172) 집필자 : 기획재정부 통상정책과 엄경윤 서기관

[그림 8-1] 전세계 지역무역협정(RTA) 발효 현황



자료 : WTO

나.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대외개방을 통한 성장 및 경쟁력 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FTA 체결을 통해 좁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세철폐를 통해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글로벌 무한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경제 선진화, 신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해 FTA 네트워크 구축을 가속화해 왔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는 농업 등 특정분야를 배제하지 않고 경제 전반에 걸친 산업을 포함하며, 관세, 비관세장벽, 무역규범, 경제협력을 포함한 포괄적인 협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무역자유화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칠레와의 FTA 체결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미국, EU 등 주요 교역국과 FTA를 타결하고 발효¹⁷³⁾하였

173) 칠레(2004년 발효), 싱가포르(2006년 발효), EFTA(2006년 발효), ASEAN(2007년 발효), 인도(2010년 발효), 미국(2010년 추가협상 타결), EU(2010년 정식서명)

다. 미국과의 FTA는 2010년에 추가협상이 타결되어 양국 의회 비준을 남겨두고 있고, 세계 제1위 경제권인 EU와의 FTA는 2010년에 정식서명되었다. 이로써 미국, EU, ASEAN과 인도 등 세계 3대 선진·거대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하게 되어 우리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호주, 터키, 콜롬비아 등 주요 거점경제권 및 자원부국과의 FTA 협상도 진행되고 있으며, 동북아 역내 FTA 추진을 위한 한중일 3국간 양자협약의 등도 진행 중이다. 2004.11월 이후 협상이 중단된 한·일 FTA의 협상재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제1차 양국 국장급 협의가 2010년 9월 일본에서 개최되었으며, 한·중 FTA도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2010.5월) 이후 협상 개시에 앞서 양국정부간에 민감분야 처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차 정부 간 사전협의를 2010년 9월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2009년 10월 한중일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3국간 FTA 준비를 위한 사전준비 단계로 산업계, 정부, 학계가 참여하는 공동연구가 시작되었으며, 2010년 중에 한국, 일본, 중국에서 각각 한 차례씩의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회의가 개최되었다.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는 한중일 3국이 중심이 되어 세계 주요 경제지역중 지역 경제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유일한 지역인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을 진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10년 중 파나마 등 중미국가와의 공동연구가 개시되는 등 FTA 준비 단계의 노력도 지속되었다.

〈표 8-6〉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2010.12월 현재)

단 계	대상국가 및 세부내용
발효(5건)/ 타결(3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칠레(2004년 4월 발효) • 싱가포르(2006년 3월 발효) • EFTA¹⁾ (2006년 9월 발효) • 아세안²⁾ (상품 2007년 6월 발효, 서비스 2009년 5월 발효, 투자 2009년 9월 발효) • 인도(2010년 1월 발효) • 미국(2007년 6월 서명, 2010년 12월 추가 협상 완료) • EU(2010년 10월 서명) • 페루(2010년 11월 가서명)
협상진행(7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2010년 5월 5차 협상) • 터키(2010년 7월 2차 협상) • 콜롬비아(2010년 10월 4차 협상) • 캐나다(2008년 3월 13차 협상) • 뉴질랜드(2010년 5월 4차 협상) • 멕시코(2008년 6월 2차 협상) • GCC(2009년 7월 3차 협상)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8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2010년 9월 협상재개 논의를 위한 국장급 협의) • 중국(2010년 9월 정부간 사전협의) • 한중일(2010년 12월 3차 산관학공동연구 회의) • 중미³⁾ (2010년 10월 공동연구 개시) • 몽골(2008년 10월 민간공동연구개시 합의) • MERCOSUR(2007년 10월 공동연구 종료) • 이스라엘(2010년 8월 공동연구 종료) • 베트남(2010년 10월 제2차 공동작업반 회의)

주 : 1)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2) ASEAN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3)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다. 향후 우리나라의 FTA 추진 방향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2010년 87.9%) 우리나라는 다자무역체제 구축을 위한 WTO DDA 협상뿐만 아니라 FTA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

여 교역과 투자기반을 확대하고 우리경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의 핵심인 미국과의 FTA 비준과 EU와의 FTA 잠정발효를 2011년 중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와의 FTA는 잔여쟁점을 정리하여 조속한 협상타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선점 및 자원협력을 위해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등 신흥국 중심으로 FTA 신규 추진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동아시아 역내 경제통합 진전을 위해 한·중, 한·일, 한·중·일 FTA 추진 등도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FTA 네트워크 확대와 함께 이미 체결된 FTA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FTA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는 한편 국내 취약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FTA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이해도 제고를 위해 홍보와 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 신흥경제권과의 맞춤형 복합 경제협력 확대¹⁷⁴⁾

우리 정부는 2010년에도 성장 잠재력이 크고 정치적 위상도 커지고 있는 BRICs, ASEAN, 중남미, 중동 등 권역별 주요 신흥 경제권과의 장기적·포괄적 경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노력했다. 또한, 양자간 경험 채널뿐 아니라 다자간 경험 채널에서도 맞춤형 복합 경제협력 의제를 논의하여 우리 기업 및 인력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 기회를 다양화하는데 주력하였다.

174) 집필자 : 기획재정부 통상조정과 김의택 사무관

2009년 11월 「한-중남미 경제협력 확대 방안」에 이어 전략적 진출 중요성이 큰 중동(10.3월)·아프리카(10.5월) 지역과도 맞춤형 경협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우리의 올림픽·월드컵 개최 경험 공유, 인프라 관련 기술지원 등과 같은 복합 경험 의제가 담긴 「스포츠·문화 관련 對중남미 협력 기반」(10.7월)을 마련하여 경제 분야 외에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려고 시도하였다.

위와 같은 경제협력 전략 외에도 실질적으로 BRICs, ASEAN, 아프리카 등과의 “장관급 경제협력 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신흥 경제권과의 맞춤형 경협사업을 적극 발굴하였다.

* 양자 채널 : 한-UAE 공동위('10.5월), 한-브라질 재무장관회의('10.6월), 한-中 경제장관회의('10.7월), 한-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10.9월), 한-호주 경제인 대화('10.10월)

* 다자 채널 : 메콩강유역개발포럼('10.9월), 한-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KOAFEC, '10.9월)

아울러 다양한 신흥 경제권과의 협력 속에서 MDB 등 국제기구와 공동 협력도 추진하였다. 아시아권의 메콩강 유역 개발포럼 개최, ADB, AfDB 등과의 협조융자(Co-financing) 등을 통해 개도국의 녹색성장 전략의 수립과 이행을 공동 지원한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서남아의 거점 국가인 인도와의 장관급 경협 채널 신설로 BRICs와의 경협채널을 완성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아프리카 지역과의 경협 채널 마련도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부록 1. 국내 및 해외 경제 일지

國內

○ 1월

-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 4 금융감독원, 「재래시장·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추진
- 8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의결
- 15 대외경제장관회의, 「해외건설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의결
- 19 한국은행, 일본은행과의 원/엔 통화스왑 계약기간 연장
- 20 금융위원회, 「2010년도 미소금융 추진계획」 발표
- 21 정부,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 개최
- 27 국토해양부,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 「2010년 소상공인 지원 9대 정책과제」 발표
지식경제부, 「신성장동력 투자활성화 방안」 발표
- 28 새만금위원회, 「새만금 내부개발 구상 및 종합실천계획」 심의·확정

○ 2월

- 5 정부,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세부 추진방안 발표
- 8 기획재정부,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 세제지원대상 선정
- 11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의결
노동부, 취업취약계층에게 디딤돌 일자리 1만개 제공
- 16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18만 6천개의 노인일자리 제공 발표
노동부, 고졸이하 청년층 전문인턴제 1만명 이상 실시
금융감독원,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마련 및 시행

- 18 정부, 유연근무제 확산방안 발표
- 24 금융위원회,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 3월

- 1 한·콜롬비아 FTA 2차협상 개최(3.1~5, 보고타)
- 2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유동화 기업어음(PF ABCP) 건전성 제고방안」마련, 추진
- 3 지식경제부,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발표
- 10 한-아세안 FTA 2차 이행위원회 개최(3.10~12, 마닐라)
- 11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의결
- 12 국토해양부,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2010~2019)」 및 「2010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발표
- 15 한·호주 FTA 4차협상 개최(3.15~18, 서울)
- 17 국토해양부, 미분양 해소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 18 정부,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발표
- 22 기획재정부,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 적용대상 확대」 발표
- 24 CMI 다자화협정 발효
- 26 금융위원회, 예대율*을 경영지도비율로 도입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예고

📅 4월

- 1 국토해양부,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계획」 발표
- 8 기획재정부, 「유망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방향」 발표

- 9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의결
- 14 Moody's社,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A2 → A1)
- 16 국토해양부, 「2010년 주택종합계획」 발표
- 20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시범 실시 발표
- 23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개최(워싱턴)
국토해양부,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 발표
- 26 한·터키 FTA 1차협상 개최(4.26~30, 앙카라)
국토해양부,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발표
- 30 금융위원회, 「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5월

- 3 중소기업청, 2010 나들가게(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중소형 슈퍼마켓 브랜드) 200개 개점 지원
- 6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출범
국토해양부, 2010년도 전국 18만호 보금자리주택 공급 발표
- 12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의결
한·뉴질랜드 FTA 4차협상 개최(5.12~14, 웰링턴)
- 17 노동부, 혁신형 중소기업 일자리 3만개 창출 추진
- 24 한·호주 FTA 5차협상 개최(5.24~28, 캔버라)
- 26 기획재정부, 「물가연동국고채 재발행 방안」 발표
- 27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 방안」 발표
- 29 제3차 한·중·일 정상회의(5.29~30, 서울)

📅 6월

- 4 국토해양부, 부실 해운선사 10곳 퇴출 발표회사

- 10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의결
기획재정부, 「서비스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발표
- 14 기획재정부,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발표
한·콜롬비아 FTA 3차협상 개최(6.14~18, 서울)
- 22 한국은행, 일본은행과의 원/엔 통화스왑계약 연장
- 26 제4차 G20 정상회의 개최(6.26~27, 토론토)
- 29 국토해양부, 미분양 부동산 펀드 1호 출시 발표
국토해양부,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기한 연장

7월

- 5 DDA 농업협상 개최(제네바)
- 9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의결
- 12 기획재정부, 「녹색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금융지원 강화방안」
발표
- 19 한·터키 FTA 2차협상 개최(7.19~23, 서울)
FTA 활용지원 종합대책 마련
- 21 고용노동부, 「지역 일자리공시제」 도입
- 26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장기
국채선물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
- 27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및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콜시장 건전화 및 단기지표채권 육성 등을 통한 단기금융시장
개선방안」을 발표
- 28 고용노동부, 2011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4,320원으로 결정
- 30 기획재정부, 2010년도 공공요금 조정방향 확정

8월

- 11 기획재정부, 「건설분야 기업환경 개선대책」 발표
- 12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의결
- 13 국토해양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17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과 공동으로 「금융투자회사 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 도입을 발표
- 26 국토해양부, 주택 준공실적 첫 공표
- 29 정부,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 30 한·페루 FTA 타결

9월

- 9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방안」 발표
- 10 보건복지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1~15) 시안」 발표
- 14 기획재정부, 8.29 부동산대책 시행을 위한 「소득세법 등 3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9.20 시행)
지식경제부, 「서비스부문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 15 중소기업청, 「니들가게 및 서민 지원 확대 방안」 발표
- 29 정부·업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발표

10월

- 5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외환공동검사 계획 발표
- 12 고용노동부,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국가고용전략 2020」 발표

- 13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 발표
- 14 고용노동부, 「청년 내 일 만들기」 제1차 프로젝트 발표
- 14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의결
- 22 금융위원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26 보건복지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최종 확정

📅 11월

- 1 금융위원회, 「ELW(Equity-Linked Warrant)시장 건전화 방안」 발표
- 3 금융위원회, 「은행의 참여확대를 통한 전환대출 활성화 방안」 발표
- 16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의결
- 16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지원사업 확대 개편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 「의료기기 산업 육성방안」 발표
- 17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제도 관련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지원금 제도」 시행
- 21 국토해양부,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 25 국토해양부, 「새만금 신항만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 12월

- 2 중소기업청, 「참살이(웰빙) 서비스 창조기업 육성대책」 발표
- 9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의결
- 16 기획재정부, 「2011년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 발표
- 19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 방안」 발표

- 21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31 보건복지부, 양육수당 지원 확대 시행

海 外

Q 1월

▶ 아시아

- 10 중국 국무원,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 촉진에 관한 통지」 발표
- 18 중국인민은행, 지급준비율 50bp 인상(대형은행 15.5% → 16.0%, 중소형은행 13.5% → 14.0%)
- 21 일본 금융청, 금융·자본시장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자본시장 제도 정비 최종안」 발표
중국, 4·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10.7% 기록
(3·4분기 9.1%)
- 26 일본, 정책금리(0.10%) 및 대출기준금리(0.30%) 유지
- 27 중국, 건축자재하향(建材下乡)정책 실시 결정
- 28 필리핀, 4·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1.8% 기록
(3·4분기 0.4%)

▶ 아메리카

- 8 미 노동부, 12월 고용지표 부진
- 13 미 연준 Beige Book, 대부분의 지역에서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
- 14 미 재무부, TARP 자금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대형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위기책임세(Financial Crisis Responsibility Fee)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

- 21 미 행정부, 금융기관의 위험감수 제한 및 납세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의 규모와 업무범위를 제한하는 금융규제개혁 방안을 추가로 발표
- 27 미 연준, 기준금리 현 수준(0.0~0.25%) 유지
- 29 미, 4·4분기 실질 GDP 성장률 5.7% 기록

▶ 유럽·아프리카

- 5 아이슬란드 대통령, 외국인에 대한 예금지급보증 관련 채무를 정부가 보증토록 하는 Icesave 법안에 거부권 행사
- 7 영란은행, 현 기준금리(0.5%) 및 자산매입한도(2,000억파운드) 유지
- 13 독일, 2009년 경제성장률 -5.0% 기록
- 14 유럽중앙은행, 현 기준금리(1.0%) 유지
- 18 스위스 중앙은행, 유럽중앙은행·폴란드 및 헝가리 중앙은행 등과의 외환스왑계약 종료 결정
- 19 유럽중앙은행, 1월말부터 EU 가입신청(예정)국에 대해 건전성 금융감독 기술지원 프로그램 시행 예정
- 25 영국, 4/4분기 경제성장률 0.1% 기록

◎ 2월

▶ 아시아

- 10 인도네시아, 4·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5.4% 기록 (3·4분기 4.2%)
- 15 일본, 4·4분기 실질GDP 성장률(속보치) 전기대비 1.1% 기록 (3·4분기 0.0%)
- 18 일본은행, 정책금리(0.10%) 및 대출기준금리(0.30%) 유지

- 19 싱가포르, 4·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4.0% 기록
(3·4분기 0.6%)
- 22 대만, 4·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9.2% 기록
(3·4분기 -1.0%)
태국, 4·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5.8% 기록
(3·4분기 -2.7%)
- 24 말레이시아, 4·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4.5% 기록
(3·4분기 -1.2%)
- 25 중국인민은행, 지급준비율 50bp 인상(대형은행 16.0% → 16.5%,
중소형은행 14.0% → 14.5%)
- 26 인도, 4·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6.0% 기록
(3·4분기 7.9%)

▶ 아메리카

- 8 미 노동부, 1월 고용지표 개선
- 10 미 연준, 출구전략 기본 방향 제시
- 18 미 연준, 재할인을 인상
- 19 미 정부, 주택시장 지원조치(총 15억달러) 발표
- 24 미 연준, 의회에 반기통화정책 보고서 제출
- 24 미 연방예금공사, 2009.4/4분기중 미국은행 이익 9.1억달러로 발표
- 26 미 상무부, 4/4분기 실질 GDP 성장률(잠정치) 5.9% 발표

▶ 유럽·아프리카

- 3 EU 집행위원회, 그리스의 재정건전화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을 권고
- 4 유럽중앙은행, 현 기준금리(1.0%) 유지

- 영란은행, 현 기준금리(0.5%) 및 자산매입한도(2,000억파운드) 유지
- 11 EU 정상회의, 그리스에 대한 금융지원에 원칙적으로 합의
- 16 EU 재무각료이사회, 그리스의 2012년까지 재정적자 비율(GDP 대비) 3% 이하 축소계획에 대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 3월

👉 아시아

- 2 호주, 정책금리를 3.75%에서 4.00%로 25bp 인상
- 4 말레이시아, 정책금리를 2.0%에서 2.25%로 25bp 인상
- 5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8%, 인플레이션 목표를 3%로 제시
- 11 일본, 4·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기대비 0.9% 기록(3·4분기 -0.1%)
- 17 일본은행, 정책금리(0.10%) 및 대출기준금리(0.30%)유지, 추가 금융완화조치 실시
- 19 인도, 정책금리를 4.75%에서 5.0%로 25bp 인상
- 22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투기적 자본유입에 대한 점검 실시 계획 발표
- 24 일본, 전년대비 4.2% 증가한 92조 3천억엔 규모의 2010회계연도 예산안 승인
- 29 중국 은행감독위원회,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대출조건 강화

👉 아메리카

- 5 미 노동부, 2월 고용지표 악화
- 8 미 연준, Reverse Repo 거래 대상기관 확대
- 8 미 의회예산국, 2014년까지 재정적자 축소 예상

- 16 미 연준, 기준금리 현 수준(0.0~0.25%) 유지
- 21 미 하원, 건보협(Health Care) 개혁법안 의결
 - 찬성 219대 반대 212로 의결하고 3.23일 오바마 대통령 서명으로 즉시 발효
- 22 미 상원 은행위원회, 금융감독개혁법안(Restoring American Financial Stability Act, 일명 Dodd안) 의결

▶ 유럽 · 아프리카

- 3 그리스, 추가 재정긴축 방안 발표
- 4 유럽중앙은행, 현 기준금리(1.0%) 유지
영란은행, 현 기준금리(0.5%) 및 자산매입한도(2,000억파운드) 유지
- 17 EU 집행위원회, 14개 회원국의 안정·수렴 프로그램(stability and convergence programme)을 평가하면서 과감한 재정긴축을 촉구
- 24 영국 정부, 경기부양과 재정긴축 방안이 포함된 2010회계연도 예산안 의회 제출
- 25 유로지역 정상, IMF와 공동으로 그리스 지원에 합의

📅 4월

▶ 아시아

- 6 호주, 정책금리를 4.00%에서 4.25%로 25bp 인상
- 8 중국인민은행, 22개월만에 3년만기 중앙은행증권 발행 재개
- 14 싱가포르, 1·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13.1% 기록 (4·4분기 4.0%), 명목실효환율 목표밴드(미공개) 상향 조정
- 15 중국, 1·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11.9% 기록 (4·4분기 10.7%)
중국 국무원, 부동산투기 억제책 발표

- 20 인도, 정책금리를 5.00%에서 5.25%로 25bp 인상
- 29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금년중 해외단기차입 한도 소폭 축소
- 30 일본은행, 정책금리(0.10%) 및 대출기준금리(0.30%)유지

▶ 아메리카

- 2 미 노동부, 3월 실업률 9.7%, 비농업취업자수 23만명 증가
- 5 미 재무부, 주택압류개선 방안(Home Affordable Foreclosure Alternatives Program, 일명 HAFA) 시행
- 8 미 연준 Beige Book, 경제활동이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
- 21 미 상원 농업위원회, 월가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법안(The Wall Street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Act) 의결
- 28 미 연준, 기준금리 현 수준(0.0~0.25%) 유지
- 30 미 상무부, 1/4분기 실질 GDP 성장률 3.2%(전기대비 연율, 속보치) 발표

▶ 유럽 · 아프리카

- 8 유럽중앙은행, 현 기준금리(1.0%) 유지하고, 2010년말 종료 예정이었던 적격담보 완화조치를 2010년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
- 영란은행, 현 기준금리(0.5%) 및 자산매입한도(2,000억파운드) 유지
- 9 Fitch,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을 BBB+ → BBB-로 하향조정
- 11 유로지역 재무장관회의, 그리스에 대한 세부 지원조건 합의
- 22 그리스, 2009년 재정적자 당초 추정치(GDP 대비 -12.7%)보다 높은 -13.6%로 발표
- Moody's,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2 → A3로 하향조정
- 23 그리스, Eurogroup · EU 집행위원회 · ECB에 공식적으로 자금지원을 요청

- 27 S&P, 그리스·포르투갈의 국가신용등급을 각각 BBB+ → BB+ 및 A+ → A-로 하향조정
- 28 S&P,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을 AA+ → AA로 하향조정

📌 5월

📍 아시아

- 4 호주, 정책금리를 4.25%에서 4.50%로 25bp 인상
- 7 일본은행, 그리스 재정위기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4조엔 규모의 긴급자금 공급 계획 발표
- 10 중국인민은행, 지급준비율 50bp 인상(대형은행 16.5% → 17.0%, 중소형은행 14.5% → 15.0%)
일본은행, 미국 연방준비은행과의 통화스왑 재개 결정
인도네시아, 1·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5.7% 기록(4·4분기 5.3%)
- 13 말레이시아, 1·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10.1% 기록(4·4분기 4.4%), 정책금리를 2.25%에서 2.50%로 25bp 인상
- 14 홍콩, 1·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8.2% 기록(4·4분기 2.5%)
- 20 일본, 1·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기대비 1.2% 기록(4·4분기 1.0%)
대만, 1·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13.3% 기록(4·4분기 9.1%)
싱가포르, 1·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15.5% 기록(4·4분기 3.8%)
- 21 태국, 1·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12.0% 기록(4·4분기 5.9%)
일본은행, 정책금리(0.10%) 및 대출기준금리(0.30%)유지

- 24 중국, 제2차 중·미 전략 및 경제대회 개최
- 31 인도, 1·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8.6% 기록
(4·4분기 6.5%)

▶ 아메리카

- 7 미 노동부, 4월 취업자수 큰 폭 증가
- 10 미 연준, 초과유동성 흡수를 위한 기간물예금제도 시범실시 계획 발표
- 21 미 상원, 금융기관규제 및 감독을 강화한 금융개혁법안 가결
- 27 미, 1·4분기 실질 GDP 성장률(잠정치)를 3.0%로
속보치(3.2%)보다 0.2%p 하향조정

▶ 유럽·아프리카

- 2 유로지역 재무장관회의, 유로회원국과 IMF가 공동으로 그리스에
3년간 1,100억유로를 지원하기로 합의
- 6 유럽중앙은행, 현 기준금리(1.0%) 유지
- 9 EU 및 유럽중앙은행, 남유럽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유로회원국에
대한 대규모 자금 지원, ECB의 국채 매입, 경제정책 공조방안 등을
발표
- 10 영란은행, 현 기준금리(0.5%) 유지
- 17 유로회원국, 그리스 자금지원 등 후속조치 발표
- 21 EU 재무장관, 경제정책공조 합의
- 24 스페인, 저축은행의 부실 심화로 합병 결정
- 26 이탈리아, 240억유로(GDP의 1.6%) 규모의 세부 재정긴축방안 발표
- 31 ECB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2007~2010년중 유로지역 은행들의
전체 상각액을 5,150억유로로 추정

6월

아시아

- 3 중국, 가전제품 보조금 지원 대상지역 확대 및 종료시한 연장
- 10 뉴질랜드, 정책금리를 2.50%에서 2.75%로 25bp 인상
- 14 중국, 노후차량 교체 보조금 지원 종료시한을 기존 금년 5월말에서 금년말로 연장
- 15 일본은행, 성장기반 강화 지원을 위한 3조엔 규모의 자금공급 조치(신대출제도)를 결정
- 18 일본, 신성장 동력 육성 및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한 「신성장전략」을 수립
- 19 중국인민은행, 위안화 환율의 유연성 확대
- 22 중국, 철강제품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 폐지
일본, 2020년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의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재정운영전략」을 발표
- 24 대만, 정책금리를 1.25%에서 1.375%로 12.5bp인상
뉴질랜드, 1·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1.9% 기록(4·4분기 0.5%)
- 29 중국 - 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

아메리카주

- 4 미 노동부, 5월 실업률 9.7%, 비농업취업자수 43.1만명 증가
- 9 미 연준 Beige Book, 경제활동의 완만한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
- 23 미 연준, 기준금리 현 수준(0.0~0.25%) 유지
- 25 미 의회, 금융개혁법안 최종합의

▶ 유럽 · 아프리카

- 10 유럽중앙은행 · 영란은행, 현 기준금리(각각 1.0% 및 0.5%) 유지
- 14 Moody's, 그리스 국가신용등급 4단계 하향조정(A3 → Ba1)
- 22 영국 신 연립정부, 향후 5년간 강도 높은 재정긴축 방안이 포함
(GDP대비 재정적자 2009년 11.0% → 2015년 1.1%)된 긴급예산안 발표
- 29 스페인 중앙은행, 저축은행 구조조정 진행상황 발표

📅 7월

▶ 아시아

- 2 인도, 정책금리를 5.25%에서 5.50%로 25bp 인상
- 5 중국, 서부대개발 프로젝트 규모 확대
- 8 말레이시아, 정책금리를 2.50%에서 2.75%로 25bp 인상
- 12 중국, 철강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강화
- 14 태국, 정책금리를 1.25%에서 1.50%로 25bp 인상
- 20 중국, 2·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10.3% 기록
(1·4분기 11.9%)
일본, 2011년도 예산 편성 지침안 마련
- 23 중국인민은행, 싱가포르 통화청과 1,500억위안 규모의 통화스왑계약 체결
- 27 인도, 정책금리를 5.50%에서 5.75%로 25bp 인상

▶ 아메리카주

- 2 미 노동부, 6월 취업자수 감소 전환

- 5 미 의회예산국, 재정수지가 2014년에 균형을 달성하겠으나 정부부채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21 미 연준, 반기통화정책보고서 제출
- 28 미 연준 Beige Book, 전반적으로 경기회복이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회복이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
- 30 미 상무부, 2·4분기 실질 GDP 성장률(속보치, 전기대비 연율)이 2.4%를 기록

▶ 유럽·아프리카

- 7 유럽은행감독위원회, 스트레스 테스트 실행방안 발표
- 13 무디스, 포르투갈 국가신용등급 2단계 하향조정(Aa2 → A1)하고 향후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으로 유지
- 23 유럽은행감독위원회,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
- 26 영란은행, 금융개혁 세부추진방안 제시

📅 8월

▶ 아시아

- 16 중국, 위안화 채권 시장 개방
- 19 중국, 중국 위안화-말레이시아 링기트화간 직거래 시작
- 25 태국, 정책금리를 1.50%에서 1.75%로 25bp 인상
- 29 중국, 수출업체의 수출대금 해외 예금 허용 계획
- 16 일본, 2·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기대비 0.1% 기록(속보치, 1·4분기 1.1%)
- 30 일본은행, 신형 담보대출제도의 자금공급규모를 현행 20조엔에서 30조엔으로 확대하는 추가 금융완화조치를 단행
일본, 9,200억엔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책 마련

▶ 아메리카주

- 6 미 노동부, 7월 비농업취업자수 5.4만명 감소, 실업률은 9.5%로 전월과 동일
- 10 미 연준, 기준금리 현 수준(0~0.25%) 유지
- 19 미 의회예산국, 재정적자가 2010~2004년중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정부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7 미 상무부, 2·4분기 실질GDP 성장률을 1.6%(잠정치, 전기대비 연율)로 속보치(2.4%)보다 하향조정

▶ 유럽·아프리카주

- 7 유럽중앙은행 및 영란은행, 기준금리 현 수준(각각 1%, 0.5%) 유지
- 13 EU 통계청, 유로지역 2·4분기 실질GDP 성장률(속보치, 전기비) 1.0%를 기록
- 19 EU 집행위원회, 그리스 재정건전화 평가
- 24 S&P, 아일랜드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AA → AA-으로 1단계 하향조정

● 9월

▶ 아시아

- 3 인도네시아, 정책금리를 6.5%로 동결하는 한편 지급준비율을 5.0%에서 8.0%로 인상(2010.11.1일부터 적용)
- 15 일본, 6년반만에 외환시장 개입
- 16 인도, 정책금리인 RP매각(자금흡수) 및 RP매입(자금공급) 금리 각각 50bp, 25bp 인상

- 26 중국, 미국산 닭고기 제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반덤핑 관세 부과
- 30 다만, 정책금리를 1.375%에서 1.5%로 12.5bp 인상

▶ 아메리카주

- 6 미 노동부, 8월 비농업취업자수 5.7만명 감소, 실업률은 9.6%로 전월보다 0.1%p 상승
- 8 미 백악관, 교통인프라 투자, 기업세제혜택 확대 등이 포함된 경기부양책 발표
- 9 미 연준 Beige Book, 전반적으로 경기회복이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회복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
- 21 미 연준, 기준금리 현 수준(0.0~0.25%) 유지
- 27 미 재무부, 중소기업고용법(Small Business Jobs Act)을 시행
- 30 미 상무부, 2/4분기 실질 GDP 성장률 1.7%(전기대비 연율, 확정치) 발표

▶ 유럽 · 아프리카주

- 7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 현 수준(1.0%) 유지
- 9 영란은행, 기준금리 현 수준(0.5%) 유지
- 24 영국 '은행개혁을 위한 독립위원회', 향후 은행산업 개혁안 및 의견수렴 계획에 관한 'Issues Paper' 발표
- 29 EU 집행위원회, 안정성장협약 법률안 발표

📅 10월

👉 아시아

- 5 일본, 정책금리를 0.1%전후에서 0.0 ~ 0.1% 수준으로 인하
일본, 5조엔 규모의 금융자산 매입을 실시하기로 결정
- 15 중국 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7기 5중전회)
개최
- 19 중국인민은행, 정책금리 25bp 인상 발표
- 21 중국, 3·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9.6% 기록
(2·4분기 10.3%)

👉 아메리카주

- 6 미 노동부, 9월 비농업취업자수 4.1만명 감소, 실업률은 9.6%로
전월과 동일
- 9 미 재무부, 2010년도 재정적자가 1조 2,941억달러(GDP대비 8.9%)로
2009년도보다 1,216억달러 줄어들었다고 발표
- 20 미 연준 Beige Book,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
- 29 미 상무부, 3/4분기 실질 GDP 성장률 2.0%(전기대비 연율,
속보치) 발표

👉 유럽 · 아프리카주

- 7 유럽중앙은행 및 영란은행, 기준금리 현 수준(1% 및 0.5%) 유지
- 11 유럽중앙은행, 회원국 중앙은행의 은행 대출시 담보 관련 규정을
강화

- 20 영국 재무부, 향후 4년간 정부부처 지출을 810억파운드(GDP의 4.5%) 절감하는 포괄적 재정지출계획 발표

📅 11월

👉 아시아

- 2 인도중앙은행, 정책금리 25bp 인상
호주중앙은행, 정책금리를 4.5%에서 4.75%로 25bp 인상
- 10 중국인민은행, 지급준비율 50bp 인상(대형은행 17.0% → 17.5%, 중소형은행 15.0% → 15.5%) 발표(11.16일 시행)
- 12 홍콩, 3·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6.8% 기록
(2·4분기 6.5%)
- 15 일본, 3·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기대비 0.9% 기록(속보치, 2·4분기 0.4%)
- 18 대만, 3·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9.8% 기록
(2·4분기 12.5%)
싱가포르, 3·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10.6% 기록
(2·4분기 10.3%)
- 19 중국인민은행, 지급준비율 50bp 인상(대형은행 17.5% → 18.0%, 중소형은행 15.5% → 16.0%) 발표(11.29일 시행)
중국 국무원, '소비자물가 안정 및 국민 기본생활 보장에 관한 16개 조항의 통지' 발표
- 22 말레이시아, 3·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6.7% 기록
(2·4분기 9.2%)
태국, 3·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5.3% 기록
(2·4분기 8.9%)
중국, 은행간 외환시장에서 위안화-루블화간 거래 시작

- 26 일본, 5조 900억엔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포함한 2010년도
보정예산편성
- 30 인도, 3·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8.9% 기록
(2·4분기 8.8%)

▶ 아메리카주

- 3 미 연준, 현 기준금리(0.0%~0.25%)를 24개월째 동결하는 한편 추가
양적완화정책 실시(2011년 상반기까지 6,000억달러의 장기국채를
추가 매입) 결정
- 5 미 노동부, 10월 비농업취업자수 17.2만명 증가, 실업률은 9.6%로
전월과 동일
- 10 미 국가재정개혁위원회,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약 3.8조달러의
재정적자 감축 방안 발표
- 17 미 연준, 19개 대형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2차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 23 미 상무부, 3·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을 2.5%(잠정치, 전기대비
연율)로 속보치(2.0%)보다 상향조정
- 24 미 연준, 2011년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3.5~4.2% → 3.0~3.6%,
4/4분기 대비)

▶ 유럽·아프리카주

- 4 유럽중앙은행 및 영란은행, 기준금리 현 수준(1% 및 0.5%) 유지
- 12 EU 통계청, 유로지역 3·4분기 실질GDP 성장률(속보치, 전기비)
0.4%를 기록
- 15 영란은행, 2009.1월 도입한 자산매입프로그램중 실효성이 낮아진
일부 제도 폐지 발표
- 28 EU·IMF 등, 아일랜드에 850억유로 구제금융 지원

Q 12월

▶ 아시아

- 1 태국중앙은행, 정책금리를 1.75%에서 2%로 25bp 인상
- 6 중국인민은행, 위안화 무역결제 시범기업 확대
- 10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최하여 2011년도 통화정책기조를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에서 '신중한 통화정책'으로 변경(12.10~12일)
중국인민은행, 지급준비율 50bp 인상(대형은행 18.0% → 18.5%,
중소형은행 16.0% → 16.5%) 발표(12.20일 시행)
- 16 일본, 경제활성화 및 고용확대를 위해 법인세율 5%p 인하 등을
포함한 2011 회계연도 세제 개편안 마련
- 24 일본, 92.4조엔 규모의 2011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 26 중국인민은행, 정책금리 및 재할인율 인상
- 30 대만중앙은행, 정책금리를 1.5%에서 1.625%로 12.5bp 인상

▶ 아메리카주

- 1 미 연준 Beige Book,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기회복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
- 3 미 노동부, 11월 실업률은 9.8%로 전월(9.7%)대비 0.1%p 상승
- 6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과 감세 및 실업수당지급 연장 등에 대해
합의
- 14 미 연준, 기준금리를 현 수준(0.0~0.25%)으로 유지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 6,000억달러의 장기국채 추가매입(QE2)을 재확인
- 28 미 상무부, 2010.3/4분기 성장률을 2.6%로 속보치(2.5%)보다 0.1%p
상향조정

▶ 유럽 · 아프리카주

- 4 유럽중앙은행 및 영란은행, 기준금리 현 수준(각각 1% 및 0.5%) 유지
- 6 Fitch는 아일랜드의 국가신용등급을 3단계(A+ → BBB+), Moody's는 헝가리의 국가신용등급을 2단계(Baa1 → Baa3) 하향조정
- 7 아일랜드 의회, 정부가 제출한 2011년 긴축 예산안 중 일부 의결
- 17 Moody's, 아일랜드의 국가신용등급 5단계(Aa2 → Baa1) 하향조정
유럽 정상회의, 영구적 위기관리기구 설치를 위해 리스본 조약의 일부 개정에 합의
23 Fitch, 포르투갈 및 헝가리의 국가신용등급을 1단계씩(각각 AA- → A+, BBB → BBB-) 하향조정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부록 2. 주요 경제 통계

1. 고용

(천명)

	15세이상 인 구	경제활동 인 구			비 경 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 가 율	고용률 (청년고용률)	실업률 (청년실업률)
			취업자	실업자				
2001	36,579	22,471	21,572	899	14,108	61.4	59.0(44.0)	4.0(7.9)
2002	36,963	22,921	22,169	752	14,042	62.0	60.0(45.1)	3.3(7.0)
2003	37,340	22,957	22,139	818	14,383	61.5	59.3(44.4)	3.6(8.0)
2004	37,717	23,417	22,557	860	14,300	62.1	59.8(45.1)	3.7(8.3)
2005	38,300	23,743	22,856	887	14,557	62.0	59.7(44.9)	3.7(8.0)
2006	38,762	23,978	23,151	827	14,784	61.9	59.7(43.4)	3.5(7.9)
2007	39,170	24,216	23,433	783	14,954	61.8	59.8(42.6)	3.2(7.2)
2008	39,598	24,347	23,577	769	15,251	61.5	59.5(41.6)	3.2(7.2)
2009	40,092	24,394	23,506	889	15,698	60.8	58.6(40.5)	3.6(8.1)
2010	40,590	24,748	23,829	920	15,841	61.0	58.7(40.3)	3.7(8.0)
2009. III	40,165	24,637	23,751	886	15,528	61.3	59.1(40.7)	3.6(8.1)
IV	40,277	24,448	23,631	817	15,829	60.7	58.7(40.1)	3.3(7.6)
2010. I	40,421	24,166	23,037	1,130	16,254	59.8	57.0(40.1)	4.7(9.5)
II	40,532	25,038	24,170	868	15,493	61.8	59.6(40.8)	3.5(7.7)
III	40,649	24,993	24,120	873	15,656	61.5	59.3(40.6)	3.5(7.6)
IV	40,758	24,796	23,989	808	15,962	60.8	58.9(39.9)	3.3(7.1)
2011. I	40,880	24,488	23,459	1,028	16,392	59.9	57.4(40.0)	4.2(8.8)
II	40,996	25,437	24,572	865	15,559	62.0	59.9(40.4)	3.4(7.9)
2010. 2	40,420	24,035	22,867	1,169	16,384	59.5	56.6(40.0)	4.9(10.0)
3	40,455	24,382	23,377	1,005	16,073	60.3	57.8(39.3)	4.1(9.0)
4	40,489	24,858	23,924	934	15,632	61.4	59.1(40.2)	3.8(8.6)
5	40,533	25,099	24,306	793	15,434	61.9	60.0(41.4)	3.2(6.4)
6	40,572	25,158	24,280	878	15,415	62.0	59.8(40.7)	3.5(8.3)
7	40,615	25,232	24,301	931	15,383	62.1	59.8(41.9)	3.7(8.5)
8	40,651	24,836	24,005	831	15,815	61.1	59.1(40.3)	3.3(7.0)
9	40,681	24,911	24,054	857	15,770	61.2	59.1(39.6)	3.4(7.2)
10	40,715	25,004	24,172	832	15,711	61.4	59.4(39.5)	3.3(7.0)
11	40,755	24,847	24,109	737	15,909	61.0	59.2(40.0)	3.0(6.4)
12	40,803	24,538	23,684	853	16,265	60.1	58.0(40.1)	3.5(8.0)
2011.1	40,843	24,114	23,196	918	16,729	59.0	56.8(40.6)	3.8(8.5)
2	40,878	24,431	23,336	1,095	16,448	59.8	57.1(40.1)	4.5(8.5)
3	40,918	24,918	23,846	1,073	15,999	60.9	58.3(39.4)	4.3(9.5)
4	40,953	25,240	24,303	936	15,713	61.6	59.3(39.9)	3.7(8.7)
5	41,003	25,480	24,661	819	15,523	62.1	60.1(40.9)	3.2(7.3)
6	41,033	25,592	24,752	839	15,441	62.4	60.3(40.6)	3.3(7.6)
7	41,087	25,473	24,636	837	15,614	62.0	60.0(42.0)	3.3(7.6)

(천명)

	산업별 취업자 ¹⁾									
	취업자					취업자 증감(전년동기대비)				
	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림어업	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림어업
2001	21,572	4,267	1,585	13,497	2,148	416	△26	5	539	△95
2002	22,169	4,241	1,746	14,044	2,069	597	△26	161	547	△79
2003	22,139	4,205	1,816	14,076	1,950	△30	△36	70	32	△119
2004	22,557	4,177	1,818	14,652	1,824	418	85	4	458	△125
2005	22,856	4,130	1,813	15,013	1,813	299	△47	△5	361	△11
2006	23,151	4,057	1,833	15,389	1,781	295	△73	20	376	△32
2007	23,433	4,014	1,849	15,745	1,723	282	△43	16	356	△58
2008	23,577	3,963	1,812	16,004	1,686	145	△52	△37	259	△37
2009	23,506	3,836	1,720	16,183	1,648	△72	△126	△91	179	△38
2010	23,829	4,028	1,753	16,383	1,566	323	191	33	200	△82
2009. III	23,751	3,791	1,699	16,342	1,799	△1	△143	△103	261	△25
IV	23,631	3,862	1,704	16,373	1,579	△6	△49	△107	261	△116
2010. I	23,037	3,911	1,644	16,144	1,235	132	61	△61	312	△164
II	24,170	4,015	1,816	16,509	1,733	433	172	44	324	△85
III	24,120	4,053	1,791	16,425	1,754	369	262	92	83	△45
IV	23,989	4,131	1,761	16,453	1,544	358	269	57	80	△35
2011. I	23,459	4,139	1,641	16,369	1,207	423	228	△3	225	△28
II	24,572	4,127	1,774	16,843	1,736	402	112	△41	331	3
2010. 2	22,867	3,886	1,595	16,088	1,197	125	45	△87	327	△143
3	23,377	3,924	1,720	16,248	1,385	267	110	△16	387	△188
4	23,924	3,991	1,792	16,416	1,630	401	145	19	388	△128
5	24,306	4,036	1,814	16,609	1,750	586	190	46	460	△87
6	24,280	4,017	1,843	16,501	1,820	314	181	67	125	△39
7	24,301	4,040	1,810	16,603	1,754	473	238	118	183	△40
8	24,005	4,058	1,790	16,307	1,752	386	297	109	36	△35
9	24,054	4,062	1,773	16,364	1,757	249	252	49	31	△58
10	24,172	4,098	1,780	16,406	1,790	316	241	94	54	△55
11	24,109	4,139	1,776	16,484	1,610	303	284	50	32	△50
12	23,684	4,156	1,726	16,469	1,231	455	284	25	154	1
2011. 1	23,196	4,148	1,632	16,299	1,018	331	224	15	203	△104
2	23,336	4,149	1,622	16,315	1,146	469	262	27	227	△51
3	23,846	4,122	1,670	16,491	1,456	469	198	△50	243	71
4	24,303	4,108	1,735	16,721	1,642	379	116	△57	305	12
5	24,661	4,137	1,787	16,868	1,777	355	101	△27	260	27
6	24,752	4,135	1,802	16,938	1,790	472	118	△42	436	△29
7	24,636	4,079	1,754	17,012	1,699	335	40	△55	410	△55

주: 1) '00, '04년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시계열 단절

	중사상지위별 취업자 증감 (단위 : 천명, 전년동기대비)									비경제 활동 인구			(단위 : 천명)			명목임금 ¹⁾ (전산업)		노동생산성 (제조업) (2008=100)	
	계	임금 근로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비임금			계	(단위 : 천명)		금액 (천원)	증가율 (%)	생산성 지수 ²⁾	증가율 (%)				
						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활동상태별	구직 단념 자								
2001	416	299	319	118	△139	118	187	△68	14,108	-	-	117	1,752.4	5.1	71.7	△2.9			
2002	597	522	148	160	215	75	139	△66	14,042	-	-	69	1,947.8	11.2	79.1	10.4			
2003	△30	221	407	118	△303	△252	△147	△103	14,383	907	345	90	2,127.4	9.2	84.5	6.7			
2004	418	492	356	78	58	△73	67	△141	14,300	1,033	383	100	2,254.9	6.0	93.1	9.4			
2005	299	291	293	△26	25	8	63	△55	14,557	1,238	457	125	2,404.4	6.6	100.0	7.4			
2006	295	365	287	87	△9	△71	△38	△33	14,784	1,277	525	122	2,541.9	5.7	112.0	12.0			
2007	282	420	416	30	△26	△138	△85	△52	14,954	1,321	546	108	2,683.2	5.6	119.9	7.1			
2008	145	236	386	△93	△57	△92	△79	△13	15,251	1,352	598	119	2,801.7	3.1	100.0	-			
2009	△72	247	383	22	△158	△319	△259	△60	15,698	1,475	591	162	2,863.3	2.2	103.6	3.6			
2010	323	517	697	△34	△146	△194	△118	△76	15,841	1,418	625	220	3,047.3	6.4	116.2	12.1			
2009.Ⅲ	△1	356	386	125	△155	△357	△276	△80	15,528	1,408	627	168	2,908.7	0.9	107.5	4.9			
Ⅳ	△6	385	515	105	△235	△391	△279	△111	15,829	1,510	568	162	2,980.3	4.0	110.8	18.1			
2010.Ⅰ	132	371	651	△37	△243	△239	△106	△133	16,254	1,496	635	232	3,030.1	7.0	111.8	20.7			
Ⅱ	433	623	766	42	△185	△189	△91	△98	15,493	1,271	649	219	2,903.2	6.3	117.2	14.2			
Ⅲ	369	541	671	△26	△104	△172	△130	△42	15,656	1,423	623	217	3,143.5	8.1	119.3	11.0			
Ⅳ	358	532	699	△114	△53	△174	△146	△28	15,962	1,483	594	212	3,112.3	4.4	116.2	4.9			
2011.Ⅰ	423	519	605	△88	2	△96	△115	19	16,392	1,736	595	220	2,992.0	△1.3	122.7	9.7			
Ⅱ	402	421	621	△137	△63	△19	△39	21	15,559	1,434	591	228	2,868.7	△1.2	-	-			
2010.2	125	329	593	△24	△239	△204	△70	△135	16,384	1,563	636	253	3,295.8	20.7	-	-			
3	267	541	752	35	△247	△274	△135	△139	16,073	1,389	681	247	2,881.5	7.2	-	-			
4	401	641	784	96	△240	△240	△106	△134	15,632	1,267	660	215	2,921.0	6.5	-	-			
5	586	770	763	147	△139	△185	△82	△103	15,434	1,242	674	229	2,758.0	6.3	-	-			
6	314	457	750	△116	△177	△143	△85	△58	15,415	1,305	613	212	3,030.8	6.1	-	-			
7	473	639	725	△40	△46	△166	△128	△38	15,383	1,345	617	218	3,117.5	8.8	-	-			
8	386	569	679	5	△115	△183	△133	△51	15,815	1,471	626	223	2,932.9	5.2	-	-			
9	249	416	611	△45	△151	△167	△131	△36	15,770	1,453	623	211	3,380.2	10.1	-	-			
10	316	488	652	△81	△84	△172	△146	△27	15,711	1,376	615	209	2,866.3	1.5	-	-			
11	303	511	731	△187	△33	△207	△166	△42	15,909	1,458	596	211	2,787.0	7.0	-	-			
12	455	599	715	△75	△41	△144	△127	△17	16,265	1,615	572	216	3,681.5	4.8	-	-			
2011.1	331	535	593	△13	△45	△204	△191	△13	16,729	1,872	573	239	3,162.4	8.6	-	-			
2	469	574	604	△57	27	△105	△130	25	16,448	1,807	597	201	2,916.3	△11.5	-	-			
3	469	448	617	△194	25	20	△25	45	15,999	1,531	616	220	2,898.8	0.6	-	-			
4	379	364	607	△220	△24	16	△16	32	15,713	1,442	619	212	2,873.7	△1.6	-	-			
5	355	372	630	△159	△99	△17	△49	32	15,523	1,430	582	257	2,757.1	0.0	-	-			
6	472	527	627	△33	△66	△55	△53	△3	15,441	1,431	573	215	2,975.6	△1.8	-	-			
7	335	439	611	△78	△94	△104	△39	△65	15,614	1,561	574	237	-	-	-	-			

주 : 1)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주 : 2) 물적노동생산성 = [산출량(산업생산)지수÷노동투입량(상용근로자수×근로시간)지수]×100

2. 물가 및 수출입 단가

(2005=100, %)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집세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
1999	83.0	0.8	84.7	0.3	73.9	7.3	86.7	0.5	86.9	△4.1	81.2	2.2	81.7	△1.0
2000	84.9	2.3	86.3	1.9	75.3	1.9	88.0	1.6	86.6	△0.4	87.0	7.1	83.4	2.0
2001	88.3	4.1	89.5	3.6	80.1	6.3	90.3	2.6	90.1	4.1	93.5	7.4	86.0	3.1
2002	90.8	2.8	92.1	3.0	85.1	6.2	91.8	1.6	95.2	5.7	92.2	△1.3	89.1	3.7
2003	93.9	3.5	94.9	3.1	90.1	5.9	94.0	2.4	98.7	3.6	94.6	2.5	93.1	4.5
2004	97.3	3.6	97.7	2.9	98.1	8.9	96.4	2.6	100.2	1.6	96.9	2.5	96.9	4.1
2005	100.0	2.8	100.0	2.3	100.0	1.9	100.0	3.7	100.0	△0.2	100.0	3.2	100.0	3.2
2006	102.2	2.2	101.8	1.8	99.9	△0.1	102.0	2.0	100.4	0.4	103.5	3.5	103.0	3.0
2007	104.8	2.5	104.2	2.4	101.8	1.9	104.0	2.0	102.2	1.8	106.7	3.1	106.2	3.1
2008	109.7	4.7	108.6	4.2	102.3	0.5	112.1	7.8	104.5	2.3	109.3	2.4	111.2	4.7
2009	112.8	2.8	112.5	3.6	108.9	6.5	114.9	2.5	106.2	1.6	111.4	1.9	114.3	2.8
2010	116.1	2.9	114.5	1.8	119.8	10.0	118.5	3.1	108.1	1.8	112.7	1.2	116.8	2.2
2009.8	113.4	2.2	112.8	3.1	109.4	4.9	116.0	1.4	106.3	1.3	112.0	2.4	114.8	2.2
9	113.5	2.2	112.9	2.7	109.0	4.4	116.3	1.8	106.4	1.3	112.0	2.4	114.8	2.1
10	113.2	2.0	113.0	2.6	107.8	5.5	115.7	1.1	106.5	1.1	112.1	2.3	114.8	2.0
11	113.4	2.4	113.2	2.5	104.9	2.8	116.9	3.7	106.7	1.1	112.1	1.5	114.9	2.0
12	113.8	2.8	113.3	2.2	107.8	3.4	117.0	4.6	106.9	1.2	112.1	1.8	115.2	2.0
2010.1	114.2	3.1	113.4	2.1	110.6	2.4	117.1	5.4	107.0	1.2	112.6	1.9	115.4	2.2
2	114.6	2.7	113.6	1.9	113.4	4.3	116.9	3.5	107.2	1.4	112.6	1.9	115.8	2.4
3	115.0	2.3	113.7	1.5	115.2	4.0	117.4	3.0	107.4	1.6	112.3	1.4	116.4	2.2
4	115.6	2.6	113.9	1.5	119.1	4.9	117.8	3.4	107.6	1.7	112.4	1.3	116.5	2.0
5	115.7	2.7	114.2	1.6	117.0	4.4	118.4	3.8	107.8	1.7	112.4	1.4	116.7	2.1
6	115.5	2.6	114.4	1.7	113.4	6.3	118.8	3.1	108.1	2.0	112.4	1.2	116.7	2.0
7	115.9	2.6	114.6	1.7	115.9	7.5	118.9	2.8	108.2	2.0	112.4	0.5	117.1	2.2
8	116.3	2.6	114.8	1.8	119.1	8.9	118.9	2.5	108.4	2.0	112.8	0.7	117.3	2.2
9	117.6	3.6	115.1	1.9	132.0	21.1	118.9	2.2	108.6	2.1	113.6	1.4	117.3	2.2
10	117.8	4.1	115.1	1.9	132.3	22.7	119.2	3.0	108.8	2.2	113.6	1.3	117.4	2.3
11	117.1	3.3	115.2	1.8	123.7	17.9	119.4	2.1	109.1	2.2	113.0	0.8	117.5	2.3
12	117.8	3.5	115.6	2.0	125.8	16.7	120.8	3.2	109.5	2.4	112.8	0.6	117.7	2.2
2011.1	118.9	4.1	116.3	2.6	129.9	17.5	122.1	4.3	109.8	2.6	113.8	1.1	118.4	2.6
2	119.8	4.5	117.1	3.1	133.5	17.7	122.7	5.0	110.1	2.7	113.9	1.2	119.3	3.0
3	120.4	4.7	117.4	3.3	132.4	14.9	124.3	5.9	110.8	3.2	113.0	0.6	119.9	3.0
4	120.4	4.2	117.6	3.2	130.0	9.2	124.5	5.7	111.4	3.5	113.0	0.5	120.3	3.3
5	120.4	4.1	118.2	3.5	123.9	5.9	125.4	5.9	111.9	3.8	113.7	1.2	120.6	3.3
6	120.6	4.4	118.6	3.7	123.9	9.3	125.7	5.8	112.4	4.0	113.7	1.2	120.8	3.5
7	121.4	4.7	119.0	3.8	128.9	11.2	126.4	6.3	112.7	4.2	114.1	1.5	121.0	3.3
8	122.5	5.3	119.4	4.0	134.9	13.3	127.4	7.1	113.2	4.4	114.4	1.4	121.3	3.4

(2005=100, %)

	생활물가		생산자물가		수입물가		수출단가		수입단가		교역조건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
1999	78.8	2.4	89.2	△2.1	82.9	△12.1	107.4	△2.4	74.4	△0.1	144.3	△2.2
2000	81.7	3.7	91.0	2.0	89.3	7.7	107.8	0.4	85.2	14.5	126.5	△12.3
2001	85.9	5.1	90.6	△0.4	92.4	3.5	93.7	△13.1	77.5	△9.0	120.9	△4.4
2002	88.0	2.5	90.3	△0.3	86.7	△6.2	89.6	△4.4	74.6	△3.7	120.2	△0.6
2003	91.6	4.0	92.3	2.2	88.2	1.8	91.7	2.3	81.4	9.1	112.6	△6.3
2004	96.1	4.9	97.9	6.1	97.2	10.2	98.7	7.6	91.4	12.3	108.0	△4.1
2005	100.0	4.1	100.0	2.1	100.0	2.9	100.0	1.3	100.0	9.4	100.0	△7.4
2006	103.1	3.1	100.9	0.9	100.9	0.9	100.6	0.6	107.7	7.7	93.4	△6.6
2007	106.3	3.1	102.3	1.4	105.5	4.5	103.8	3.2	114.0	5.8	91.1	△2.5
2008	112.0	5.4	111.1	8.6	143.7	36.2	108.4	4.4	138.1	21.1	78.5	△13.8
2009	114.3	2.1	110.9	△0.2	137.7	△4.1	90.5	△16.5	104.9	△24.0	86.3	9.9
2010	118.1	3.3	115.1	3.8	145.0	5.3	101.2	11.8	117.7	12.2	86.0	△0.3
2009.8	115.2	1.3	111.7	△3.0	139.5	△7.0	91.5	△20.5	106.7	△30.2	85.8	13.9
9	115.3	1.7	111.8	△2.6	136.8	△10.8	93.2	△16.5	108.2	△25.9	86.2	12.7
10	114.8	1.5	110.9	△3.1	135.3	△15.3	94.0	△7.9	108.6	△21.9	86.6	18.0
11	114.8	2.3	111.3	△0.4	137.9	△7.5	96.6	△0.4	111.6	△13.9	86.5	15.5
12	115.3	3.3	111.9	1.8	138.6	△1.4	97.7	7.1	114.9	△3.5	85.0	11.0
2010.1	116.0	3.8	112.7	2.8	136.9	△0.9	97.9	13.4	114.3	13.2	85.6	0.1
2	116.5	3.4	113.0	2.4	137.6	△4.1	97.1	14.9	114.9	15.4	84.5	△0.4
3	117.2	2.9	113.7	2.6	139.2	△4.3	98.6	16.8	114.4	15.6	86.2	1.2
4	118.0	3.0	114.6	3.2	140.9	5.1	102.4	17.2	117.1	20.7	87.4	△2.9
5	117.8	3.0	115.2	4.6	144.7	11.3	102.4	15.8	120.0	23.0	85.3	△5.8
6	117.3	2.8	114.8	4.6	147.6	8.0	101.3	12.2	118.1	15.1	85.8	△2.5
7	117.7	2.7	114.9	3.4	147.0	7.5	102.7	14.1	117.5	11.7	87.4	2.2
8	118.2	2.6	115.2	3.1	147.4	5.7	102.9	12.5	117.3	9.9	87.7	2.2
9	120.0	4.1	116.3	4.0	147.4	7.8	103.2	10.7	118.5	9.5	87.1	1.0
10	120.3	4.8	116.4	5.0	146.1	8.1	102.5	9.0	119.0	9.6	86.2	△0.5
11	118.9	3.6	116.7	4.9	149.2	8.2	102.8	6.4	122.0	9.3	84.3	△2.5
12	119.8	3.9	117.8	5.3	156.1	12.7	101.7	4.1	123.1	7.1	82.6	△2.8
2011.1	121.4	4.7	119.7	6.2	156.1	14.1	104.4	6.6	128.0	12.0	81.5	△4.8
2	122.5	5.2	120.5	6.6	160.9	16.9	105.2	8.3	132.0	14.9	79.7	△5.7
3	123.0	4.9	122.0	7.3	166.5	19.6	107.5	9.0	133.9	17.0	80.3	△6.8
4	122.8	4.1	122.4	6.8	167.6	19.0	111.3	8.7	139.4	19.0	79.9	△8.6
5	122.3	3.8	122.3	6.2	163.9	13.2	112.6	10.0	141.4	17.8	79.6	△6.7
6	122.3	4.3	121.9	6.2	163.2	10.5	111.5	10.1	140.7	19.1	79.3	△7.6
7	123.3	4.8	122.4	6.5	161.4	9.8	-	-	-	-	-	-
8	124.4	5.2	-	-	-	-	-	-	-	-	-	-

3. 국민소득계정

	GDP(경상)		GNI(경상)		1인당GNI(경상)		경제성장률(%)			GDP플레이어(%)	
	억원	억달러	억원	억달러	만원	달러	GDP (전년 동기비)	GDP (전기비)	GNI	지수	상승률
2001	6,514,153	5,046	6,498,989	5,035	1,372	10,631	4.0	-	3.0	90.2	3.9
2002	7,205,390	5,759	7,209,963	5,762	1,514	12,100	7.2	-	7.2	93.1	3.2
2003	7,671,137	6,436	7,677,714	6,442	1,604	13,460	2.8	-	2.5	96.4	3.6
2004	8,268,927	7,224	8,293,267	7,245	1,726	15,082	4.6	-	3.5	99.4	3.0
2005	8,652,409	8,447	8,644,273	8,439	1,796	17,531	4.0	-	2.4	100.0	0.7
2006	9,087,438	9,511	9,101,342	9,525	1,884	19,722	5.2	-	3.7	99.9	△0.1
2007	9,750,130	10,493	9,768,139	10,512	2,016	21,695	5.1	-	4.8	101.9	2.1
2008	10,264,518	9,309	10,341,154	9,379	2,128	19,296	2.3	-	△0.6	104.9	2.9
2009	10,650,368	8,344	10,697,831	8,381	2,195	17,193	0.3	-	1.6	108.5	3.4
2010 ^P	11,728,034	10,143	11,731,234	10,146	2,400	20,759	6.2	-	5.5	112.5	3.7
2006. III	2,303,901	-	2,317,069	-	-	-	5.0	1.6	3.6	101.1	0.1
IV	2,423,899	-	2,438,249	-	-	-	4.6	0.6	4.8	100.1	0.1
2007. I	2,241,845	-	2,238,199	-	-	-	4.5	1.4	4.2	101.0	1.5
II	2,409,997	-	2,396,777	-	-	-	5.3	1.4	5.3	100.6	2.0
III	2,466,966	-	2,485,724	-	-	-	4.9	1.1	6.1	103.2	2.1
IV	2,631,322	-	2,647,438	-	-	-	5.7	1.7	3.7	102.8	2.7
2008. I	2,409,997	-	2,430,519	-	-	-	5.5	1.0	3.9	102.9	1.9
II	2,615,194	-	2,612,143	-	-	-	4.4	0.3	2.1	104.7	4.0
III	2,626,149	-	2,643,925	-	-	-	3.3	0.2	△2.3	106.3	3.1
IV	2,613,178	-	2,654,567	-	-	-	△3.3	△4.6	△5.6	105.6	2.7
2009. I	2,386,384	-	2,398,697	-	-	-	△4.2	0.1	△5.2	106.4	3.4
II	2,648,024	-	2,653,419	-	-	-	△2.1	2.5	0.0	108.2	3.4
III	2,754,388	-	2,769,165	-	-	-	1.0	3.4	3.4	110.4	3.8
IV	2,861,572	-	2,876,549	-	-	-	6.3	0.2	7.8	108.8	3.0
2010 ^P . I	2,678,598	-	2,683,823	-	-	-	8.5	2.1	9.6	110.0	3.5
II	2,943,811	-	2,933,239	-	-	-	7.5	1.4	5.6	111.9	3.5
III	2,978,628	-	2,990,626	-	-	-	4.4	0.6	4.5	114.4	3.6
IV	3,126,996	-	3,123,545	-	-	-	4.7	0.5	3.0	113.6	4.4
2011 ^P . I	2,882,493	-	2,887,762	-	-	-	4.2	1.3	1.8	113.7	3.3
II	-	-	-	-	-	-	3.4	0.8	-	-	-

(2005년 불변가격 기준, %)

	경제활동별 성장률					지출항목별 증가율					국내총 투자율	총 저축률
	산 업			농 립 어 업	최종 소비	민간 소비	총고정 자본 형성	설비 투자		건설 투자		
		광공업	제조업					서비스 업	설비 투자			
2001	3.8	2.4	2.4	4.7	1.6	5.5	5.7	0.3	△8.3	6.3	29.3	31.1
2002	7.0	8.7	8.7	7.7	△2.2	8.1	8.9	7.1	7.3	6.2	29.3	30.5
2003	3.0	5.4	5.4	1.7	△5.4	0.5	△0.4	4.4	△1.5	8.5	30.0	31.9
2004	4.6	9.9	10.0	2.4	9.1	1.0	0.3	2.1	3.8	1.3	29.9	34.0
2005	4.0	6.1	6.2	3.5	1.3	4.6	4.6	1.9	5.3	△0.4	29.8	32.1
2006	5.1	8.0	8.1	4.4	1.5	5.1	4.7	3.4	8.2	0.5	29.7	30.8
2007	5.4	7.1	7.2	5.1	4.0	5.1	5.1	4.2	9.3	1.4	29.5	30.8
2008	2.5	2.8	2.9	2.8	5.6	2.0	1.3	△1.9	△1.0	△2.8	31.0	30.5
2009	0.6	△1.5	△1.5	1.2	3.2	1.2	0.0	△1.0	△9.8	3.4	26.2	30.2
2010 ^P	6.2	14.6	14.8	3.5	△4.3	3.9	4.1	7.0	25.0	△1.4	29.2	32.0
2006, III	5.0	8.6	8.7	4.0	△1.4	4.6	4.3	4.0	12.0	△0.5	29.8	30.8
IV	4.5	5.3	5.4	4.0	4.2	5.1	4.5	5.7	5.7	5.1	29.2	30.9
2007, I	4.5	4.5	4.5	4.8	1.6	5.1	4.9	7.3	12.6	4.4	29.0	30.9
II	5.4	7.1	7.2	4.9	7.0	5.4	5.2	5.7	13.0	2.0	30.0	30.5
III	5.2	6.2	6.3	5.1	8.2	5.3	5.4	1.5	4.0	△0.2	28.6	30.5
IV	6.4	10.0	10.2	5.6	△0.7	4.7	4.7	3.1	8.0	0.4	30.2	31.3
2008, I	5.8	8.8	8.9	4.6	7.8	4.3	4.5	△0.6	2.8	△2.5	30.7	31.1
II	4.6	8.2	8.3	3.6	4.6	3.0	2.7	0.6	2.0	△0.5	31.6	31.1
III	3.4	5.3	5.3	2.9	4.3	2.4	1.8	2.1	5.3	0.4	33.7	29.8
IV	△2.9	△9.3	△9.4	0.2	6.5	△1.7	△3.6	△8.7	△13.3	△7.7	27.9	30.1
2009, I	△3.9	△13.5	△13.6	△0.3	2.5	△2.2	△4.7	△7.5	△21.9	1.6	26.1	29.9
II	△1.6	△7.0	△7.1	0.4	0.0	0.7	△1.1	△3.0	△18.1	4.3	23.7	29.6
III	1.5	1.8	1.8	1.0	5.0	1.5	0.4	△1.0	△9.4	3.2	27.1	30.6
IV	6.1	13.0	13.1	3.4	5.0	4.8	5.6	6.2	12.2	4.0	27.7	30.7
2010 ^P , I	8.9	22.0	22.2	4.5	0.9	5.9	6.6	12.5	29.1	4.3	29.3	31.4
II	7.3	17.5	17.8	3.7	△2.2	3.4	3.5	6.8	30.5	△2.3	28.9	32.4
III	4.3	9.6	9.8	2.8	△7.3	3.4	3.6	6.8	26.6	△3.1	29.3	31.7
IV	4.7	11.1	11.1	3.1	△6.7	3.0	2.9	3.4	15.9	△2.9	29.5	32.3
2011 ^P , I	3.9	9.7	9.8	2.8	△8.6	2.5	2.8	△2.2	11.7	△11.9	29.0	31.9
II	3.2	7.3	7.3	2.8	0.9	2.9	3.1	△2.2	7.6	△8.6	-	-

4. 실물경제

가. 생산과 출하

(원지수 2005=100, 전년동월(분기)비)

시점	생산지수		서비스업		출하지수		재고지수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1999	63.6	24.5	77.3	-	64.9	25.3	74.3	2.1
2000	74.3	16.9	87.0	12.5	75.8	16.7	83.6	12.6
2001	74.7	0.6	91.1	4.7	76.7	1.2	83.9	0.3
2002	80.7	8.0	98.5	8.1	82.7	7.8	83.3	△0.7
2003	85.2	5.5	98.1	△0.4	86.6	4.8	88.4	6.1
2004	94.0	10.4	97.1	△1.0	94.7	9.3	96.7	9.4
2005	100.0	6.3	100.0	3.0	100.0	5.7	101.6	5.1
2006	108.4	8.4	105.1	5.1	107.6	7.6	111.0	9.3
2007	115.9	6.9	112.2	6.8	115.3	7.2	117.2	5.6
2008	119.8	3.4	116.2	3.6	118.3	2.6	125.3	6.9
2009	119.7	△0.1	118.3	1.8	116.7	△1.4	115.5	△7.8
2010	139.1	16.2	122.9	3.9	133.5	14.4	135.6	17.4
2009, III	125.3	4.9	118.9	2.4	120.7	2.3	113.0	△14.3
IV	131.2	16.8	123.4	4.8	126.9	12.9	115.5	△7.8
2010, I	129.8	25.4	119.9	6.2	124.0	20.9	124.6	7.5
II	141.0	18.8	122.9	4.2	135.1	15.9	129.7	17.5
III	139.0	10.9	121.6	2.3	132.7	9.9	134.6	19.1
IV	146.6	11.7	127.3	3.2	142.0	11.9	135.6	17.4
2011, I	143.6	10.6	123.1	2.7	138.7	11.9	137.4	10.3
II ^P	151.1	7.2	127.0	3.3	144.8	7.2	142.7	10.0
2009, 11	130.7	18.5	119.3	4.2	126.6	15.3	113.6	△14.6
12	134.8	34.8	131.6	7.7	130.1	26.2	115.5	△7.8
2010, 1	129.3	37.0	118.5	5.7	123.1	31.4	119.8	△3.3
2	119.1	18.3	116.7	6.2	113.6	13.3	123.3	4.8
3	141.1	22.4	124.4	6.6	135.2	18.8	124.6	7.5
4	140.0	19.5	121.5	3.8	134.7	16.5	126.3	12.5
5	140.0	20.6	123.3	4.8	133.4	17.2	129.9	16.5
6	142.9	16.5	124.0	4.0	137.3	13.9	129.7	17.5
7	143.1	14.8	122.4	3.8	135.7	13.0	134.1	20.3
8	136.5	15.9	120.9	3.3	131.0	15.3	134.5	20.1
9	137.3	2.9	121.6	△0.2	131.4	2.4	134.6	19.1
10	145.3	13.4	123.2	3.3	140.8	13.5	133.5	18.8
11	145.3	11.2	123.8	3.8	141.4	11.7	132.8	16.9
12	149.2	10.7	134.9	2.5	143.9	10.6	135.6	17.4
2011, 1	146.9	13.6	124.1	4.7	141.4	14.9	135.4	13.0
2	129.8	9.0	116.9	0.2	125.2	10.2	137.1	11.2
3	154.0	9.1	128.2	3.1	149.6	10.7	137.4	10.3
4	149.7	6.9	125.2	3.0	144.6	7.3	137.3	8.7
5	151.5	8.2	127.4	3.3	144.4	8.2	140.2	7.9
6 ^P	152.2	6.5	128.4	3.5	145.3	5.8	142.7	10.0
7 ^P	148.6	3.8	127.0	3.8	139.8	3.0	147.7	10.1

나. 투 자

(전년동월(분기)비 %)

	국내건설기성(경상)			국내건설수주(경상)			허가 면적	국내기계수주		설비투자 지수
	공공	민간		공공	민간			제조업		
1999	1.2	6.5	△3.7	0.8	△30.9	51.7	42.3	19.9	15.1	42
2000	△3.1	△5.6	△1.5	15.1	△8.8	23.8	11.8	18.0	22.9	29.9
2001	10.0	4.4	14.6	22.1	49.5	10.6	20.6	△3.5	△2.9	△8.2
2002	11.2	△8.1	24.5	33.0	△1.1	59.2	42.0	22.6	9.0	8.6
2003	16.6	10.7	20.6	19.3	0.9	27.6	2.4	△5.2	9.8	△2.3
2004	11.1	4.9	14.8	△3.9	13.5	△11.6	△17.3	6.3	17.5	3.6
2005	4.1	△3.7	7.5	7.3	△1.7	14.5	△5.1	△2.8	△6.1	5.9
2006	2.6	0.6	4.0	9.0	△6.3	12.8	19.5	17.4	31.7	9.2
2007	6.6	8.4	4.6	23.6	40.3	16.5	13.3	20.6	29.9	8.2
2008	4.9	6.5	2.2	△7.6	10.0	△14.3	△20.1	△14.1	△20.0	△2.3
2009	3.2	21.2	△5.8	5.0	63.1	△20.0	△12.9	△10.3	△25.8	△9.4
2010	2.7	8.5	0.5	△18.7	△43.7	2.8	19.3	11.2	32.3	25.1
2009.Ⅲ	△1.3	21.3	△11.9	8.1	77.0	△13.5	△4.6	5.4	△17.5	△8.3
Ⅳ	3.7	11.0	0.3	14.2	14.3	20.1	13.1	24.0	55.7	9.6
2010.Ⅰ	6.3	13.8	3.8	△1.6	△14.9	8.0	36.5	10.3	45.6	30.0
Ⅱ	2.0	5.5	2.6	△6.7	△61.9	105.4	47.4	24.7	58.5	29.5
Ⅲ	△0.4	△1.1	1.0	△3.6	△22.0	13.2	△14.3	△0.2	27.4	29.3
Ⅳ	3.3	15.9	△4.8	△40.2	△52.1	△34.4	18.1	11.3	4.5	13.6
2011.Ⅰ	△6.2	△2.4	△9.4	△12.8	△49.1	18.2	21.5	19.5	28.7	6.6
Ⅱp	△0.8	1.9	△5.3	△3.3	△11.9	0.5	3.8	9.0	3.4	4.8
2009.11	3.5	8.8	1.8	80.9	67.8	93.1	14.1	57.5	74.7	14.6
12	12.8	18.3	9.7	△16.6	△31.5	△5.9	42.7	30.6	92.0	21.5
2010.1	7.2	5.1	9.6	20.2	△11.5	49.2	33.3	11.8	39.4	26.3
2	0.8	12.9	△3.5	△4.6	△22.2	8.0	37.4	△2.0	66.8	23.7
3	10.5	22.2	5.3	△16.5	△11.9	△25.8	37.8	20.6	36.7	38.3
4	△1.0	△0.1	1.0	△14.1	△68.7	178.8	64.7	27.2	57.1	32.5
5	7.3	9.6	7.8	17.4	△62.9	138.3	72.7	56.3	101.1	28.4
6	0.2	6.7	△0.3	△16.9	△56.0	49.8	14.0	2.6	28.8	27.7
7	6.7	14.0	3.9	25.6	23.5	38.3	1.7	△16.5	41.8	31.5
8	6.5	1.4	11.2	△12.5	△26.2	△5.0	△4.7	26.6	37.1	41.2
9	△11.8	△14.6	△9.8	△18.1	△58.0	11.4	△33.0	2.3	9.6	17.1
10	0.9	10.5	△4.8	△58.8	△75.0	△45.7	15.9	9.9	13.2	21.6
11	△0.5	17.1	△9.4	△48.7	△61.4	△41.2	25.6	△9.2	4.2	13.1
12	8.2	18.6	△0.5	△22.5	△22.8	△23.9	15.3	34.9	△3.7	7.4
2011.1	△5.2	7.0	△12.5	△33.9	△46.3	△36.9	59.6	19.7	14.6	21.2
2	△14.1	△11.1	△17.3	△16.7	△35.7	9.5	11.3	26.1	30.4	1.0
3	△0.7	△2.8	0.0	13.7	△59.6	117.0	5.2	14.4	41.0	0.5
4	△4.1	3.5	△10.7	△2.7	△22.7	△0.1	0.7	6.6	9.8	△0.6
5	△4.0	△0.8	△6.9	△22.5	11.3	△33.4	3.5	△0.8	△10.5	10.3
6p	4.7	2.9	1.1	13.3	△17.6	41.1	7.8	20.7	13.2	4.7
7p	△7.4	△5.8	△8.2	△34.6	△55.5	△9.3	31.4	△2.4	△3.6	△2.7

다. 소 비

(전년동월(분기)비 %)

	소매판매액			내 수 용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소비재출하	내 구 재	비내구재
1999	14.8	34.7	13.3	7.5	19.2	46.7	10.5
2000	13.0	25.1	8.0	9.8	6.3	5.6	6.6
2001	7.4	8.0	7.9	6.8	1.7	1.7	1.7
2002	10.6	15.6	8.9	8.9	7.5	17.2	3.5
2003	△3.2	△9.2	△5.1	1.1	△4.8	△10.7	△2.0
2004	1.1	3.3	3.9	△1.4	△2.6	△8.4	0.0
2005	4.2	6.5	7.9	1.2	1.5	2.2	1.3
2006	4.0	13.8	4.0	3.1	6.6	10.4	5.0
2007	5.2	9.9	3.4	5.3	6.0	12.8	3.2
2008	1.1	1.6	△3.0	1.4	1.6	1.8	1.4
2009	2.7	8.2	1.3	1.2	1.4	6.5	△0.9
2010	6.6	14.9	6.8	2.2	4.8	3.3	5.6
2009, III	2.8	7.7	0.3	1.8	5.4	13.3	1.7
IV	10.9	34.1	4.5	4.0	10.2	29.2	2.2
2010, I	9.7	29.6	2.5	3.2	10.0	20.5	5.6
II	4.9	5.6	6.2	3.3	4.4	△0.3	7.1
III	7.5	17.0	6.6	3.0	1.8	△0.1	2.8
IV	5.1	10.6	11.1	△0.7	3.5	△3.3	7.2
2011, I	5.1	12.9	6.1	0.8	1.9	△1.3	3.6
II ^P	5.7	17.5	5.6	△0.4	△1.9	△3.4	△1.2
2009, 11	9.8	41.0	1.2	1.4	10.7	32.2	1.7
12	12.8	46.1	8.4	1.5	18.8	50.5	6.8
2010, 1	6.7	39.8	4.6	△5.3	15.0	37.4	7.0
2	12.8	21.8	2.6	13.0	6.3	12.3	3.6
3	9.7	28.4	0.6	3.1	8.9	15.0	5.9
4	7.3	16.7	3.5	3.4	7.0	12.3	4.8
5	3.6	2.1	6.5	2.6	3.5	△3.8	7.6
6	3.8	0.1	8.9	4.2	2.9	△6.8	8.9
7	8.9	18.7	8.5	3.9	2.4	△0.5	4.1
8	9.4	26.0	4.3	3.1	8.7	6.4	9.8
9	4.5	7.6	6.5	1.9	△4.7	△5.5	△4.3
10	4.1	14.1	12.0	△4.7	6.2	4.4	7.2
11	6.9	12.1	9.5	2.5	8.3	△1.4	13.6
12	4.3	6.2	12.0	0.2	△3.3	△11.9	1.3
2011, 1	10.6	14.0	11.1	9.4	4.8	△2.2	7.9
2	△0.8	9.1	2.0	△7.0	△4.0	△3.2	△4.5
3	5.2	15.3	5.0	0.1	4.4	1.1	6.3
4	5.1	15.8	7.4	△1.5	△1.6	△1.7	△1.7
5	6.3	20.0	5.2	0.3	△1.5	△2.9	△0.9
6 ^P	5.8	17.0	4.3	0.1	△2.6	△5.6	△1.1
7 ^P	5.3	12.6	4.0	2.1	△2.1	△2.3	△2.0

5. 대외거래

가. 국제수지(총괄)

(백만달러)

		경 상 수 지					
		상 품 수 지	수 지		서비스 수 지	본 원 소득수지	이 전 소득수지
			수 출	수 입			
1999	24,479	27,893	144,857	116,965	△158	△5,125	1,869
2000	14,803	18,656	178,049	159,394	△2,037	△2,383	566
2001	8,428	13,029	151,172	138,143	△2,969	△1,247	△385
2002	7,542	15,203	164,190	148,987	△6,442	399	△1,618
2003	15,584	24,028	199,692	175,664	△5,792	253	△2,905
2004	32,312	39,661	260,143	220,482	△5,958	1,042	△2,432
2005	18,607	32,857	289,873	257,016	△9,952	△1,817	△2,482
2006	14,083	31,433	336,494	305,061	△13,332	75	△4,093
2007	21,770	37,129	389,569	352,439	△11,967	135	△3,527
2008	3,198	5,170	434,652	429,481	△5,734	4,435	△674
2009	32,791	37,866	358,190	320,324	△6,641	2,277	△712
2010 ^P	28,214	41,904	464,287	422,383	△11,229	768	△3,229
2009. III	8,613	10,915	95,485	84,571	△2,663	949	△587
IV	8,077	10,579	102,332	91,753	△2,660	1,085	△928
2010 ^P . I	263	4,785	101,355	96,569	△4,201	546	△867
II	8,858	12,240	117,585	105,345	△1,873	△1,007	△503
III	9,931	12,542	118,257	105,715	△2,955	1,296	△953
IV	9,161	12,336	127,090	114,754	△2,201	△68	△906
2011 ^P . I	2,610	5,843	127,691	121,849	△2,538	388	△1,082
II	5,492	7,661	142,723	135,062	△796	△825	△548
2010 ^P . 1	△572	997	31,807	30,810	△1,652	415	△331
2	△363	586	31,120	30,533	△1,271	497	△176
3	1,198	3,202	38,428	35,226	△1,279	△366	△360
4	529	3,740	39,187	35,447	△1,269	△1,453	△490
5	3,999	3,658	38,250	34,592	147	220	△27
6	4,330	4,842	40,148	35,306	△752	226	14
7	4,458	5,269	41,130	35,861	△859	352	△304
8	1,976	2,826	37,903	35,077	△903	519	△467
9	3,498	4,447	39,224	34,776	△1,193	425	△182
10	5,113	5,485	42,012	36,527	△750	657	△280
11	1,934	3,171	41,940	38,769	△305	△690	△242
12	2,114	3,680	43,138	39,458	△1,146	△35	△385
2011 ^P . 1	155	1,558	42,663	41,105	△1,641	704	△466
2	1,126	1,531	37,228	35,697	△569	543	△378
3	1,330	2,754	47,800	45,046	△328	△858	△238
4	1,278	3,328	47,879	44,552	△179	△1,582	△289
5	2,184	1,634	47,150	45,516	16	517	17
6	2,031	2,700	47,694	44,994	△633	240	△276
7	4,938	5,894	49,712	43,818	△691	72	△337

(백만달러)

	자 본 · 금 융 계 정							오차 및 누락
	금 융 계 정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 상품	기타투자	준비자산			
1999	△20,307	△19,918	5,538	9,190	△514	△11,149	△22,983	△4,171
2000	△13,383	△12,768	4,802	12,177	△179	△5,796	△23,771	△1,420
2001	△11,086	△10,355	1,332	6,706	△123	△10,695	△7,576	2,658
2002	△7,010	△5,923	△632	346	362	5,800	△11,799	△532
2003	△16,347	△14,949	△610	17,287	619	△6,396	△25,849	763
2004	△35,467	△33,714	3,595	6,599	2,020	△7,218	△38,711	3,154
2005	△19,529	△17,189	△58	△3,518	1,790	4,403	△19,806	923
2006	△14,151	△11,025	△7,588	△23,230	484	41,421	△22,113	68
2007	△23,877	△21,489	△17,935	△26,058	5,445	32,188	△15,128	2,107
2008	△1,154	△1,263	△16,941	△2,406	△14,770	△23,593	56,446	△2,044
2009	△34,651	△34,941	△14,948	49,728	△3,093	2,039	△68,666	1,861
2010 ^P	△25,332	△25,157	△19,380	38,552	△7	△17,228	△27,095	△2,882
2009. III	△6,977	△6,873	△3,306	21,227	△1,051	△251	△23,493	△1,636
IV	△10,369	△10,354	△6,832	9,789	16	3,288	△16,615	2,292
2010 ^P . I	△155	20	△2,308	10,160	747	17	△8,595	△108
II	△9,099	△9,126	△2,564	7,098	△984	△7,076	△5,600	241
III	△7,680	△7,711	△6,217	14,032	△389	△4,725	△10,412	△2,252
IV	△8,398	△8,341	△8,291	7,262	619	△5,443	△2,488	△764
2011 ^P . I	△2,754	△2,573	△4,696	△1,379	730	6,252	△3,479	144
II	△6,808	△6,696	△4,138	2,035	△543	△1,433	△2,618	1,316
2010 ^P . 1	△686	△616	△1,070	118	242	7,077	△6,983	1,258
2	1,398	1,442	△614	2,484	549	△1,693	715	△1,035
3	△867	△805	△624	7,558	△45	△5,367	△2,327	△331
4	642	762	△1,164	5,792	81	5,343	△9,290	△1,171
5	△5,612	△5,713	△572	747	△855	△12,117	7,083	1,613
6	△4,129	△4,176	△829	559	△210	△303	△3,393	△201
7	△3,528	△3,528	△1,773	8,592	△297	△4,029	△6,021	△930
8	△1,422	△1,480	△1,184	1,061	61	93	△1,511	△554
9	△2,730	△2,703	△3,260	4,379	△153	△789	△2,880	△768
10	△5,870	△5,822	△5,394	7,447	0	△5,217	△2,659	757
11	△2,192	△2,166	△1,287	2,227	107	△1,494	△1,719	257
12	△336	△353	△1,610	△2,412	511	1,268	1,890	△1,778
2011 ^P . 1	△1,282	△1,161	△1,725	905	569	1,773	△2,683	1,127
2	△1,996	△1,964	△1,635	△3,004	△363	5,127	△2,088	870
3	524	552	△1,336	720	524	△649	1,292	△1,854
4	395	428	△739	4,575	△206	△146	△3,056	△1,672
5	△3,957	△3,907	△1,255	△1,140	165	△822	△855	1,773
6	△3,246	△3,218	△2,145	△1,400	△502	△465	1,293	1,215
7	△3,186	△3,200	327	9,258	527	△7,298	△6,014	△1,752

나. 수출입(통관)

(백만달러, 전년동기비 %)

	수 출(FOB)		수 출(L/C 내도액)		수 입(CIF)		수출입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1999	143,685	8.6	58,031	2.0	119,752	28.4	23,933
2000	172,268	19.9	61,869	6.6	160,481	34.0	11,786
2001	150,439	△12.7	53,270	△13.9	141,098	△12.1	9,341
2002	162,471	8.0	52,265	△1.9	152,126	7.8	10,344
2003	193,817	19.3	60,343	15.5	178,827	17.6	14,991
2004	253,845	31.0	72,426	20.0	224,463	25.5	29,382
2005	284,419	12.0	74,256	2.5	261,238	16.4	23,180
2006	325,465	14.4	89,190	20.1	309,383	18.4	16,082
2007	371,489	14.1	91,250	2.3	356,846	15.3	14,643
2008	422,007	13.6	100,526	10.2	435,275	22.0	△13,267
2009	363,534	△13.9	76,426	△24.0	323,085	△25.8	39,709
2010	466,384	28.3	93,087	21.8	425,212	31.6	41,172
2009, II	90,360	△21.1	18,980	△33.5	73,970,	△35.6	16,390
III	94,781	△17.6	20,234	△29.4	84,845	△31.0	9,935
IV	103,971	11.7	20,746	7.2	92,852	1.4	11,120
2010, I	101,084	35.8	21,400	30.0	98,156	37.4	2,928
II	120,238	33.1	23,601	24.3	105,631	42.8	14,607
III	116,315	22.7	22,758	12.5	105,698	24.6	10,617
IV	128,747	23.8	25,328	22.1	115,727	24.6	13,019
2011, I	130,999	29.6	26,798	25.2	123,672	26.0	7,328
II	142,741	18.7	28,166	18.7	134,363	27.2	8,378
2010, 1	30,735	45.4	6,674	34.3	31,536	26.7	△801
2	33,039	30.1	6,413	31.5	31,044	37.4	1,995
3	37,309	33.8	8,317	25.6	35,576	48.7	1,733
4	39,301	29.6	8,398	36.3	35,522	42.8	3,779
5	38,888	39.8	7,418	23.4	34,854	48.9	4,034
6	42,049	30.5	7,786	14.4	35,255	37.2	6,794
7	40,424	26.7	7,361	1.1	35,422	28.0	5,002
8	36,481	26.0	7,547	22.6	35,275	28.7	1,206
9	39,411	16.2	7,851	15.6	35,002	17.6	4,409
10	43,340	27.6	7,687	23.9	37,001	21.7	6,339
11	41,261	21.4	8,238	20.7	38,669	30.9	2,592
12	44,145	22.6	9,403	21.9	40,057	21.7	4,089
2011, 1	44,476	44.7	8,555	28.2	41,852	32.7	2,624
2	38,477	16.5	7,649	19.3	36,334	17.0	2,142
3	48,047	28.8	10,594	27.4	45,486	27.9	2,561
4	48,551	23.5	9,347	11.1	44,161	24.3	4,390
5	47,427	22.0	9,109	21.3	45,306	30.0	2,122
6	46,763	11.2	9,710	24.4	44,897	27.3	1,866
7	50,595	25.2	9,562	29.9	44,279	25.0	6,316
8p	46,384	27.1	-	-	45,563	29.2	821

다. 지역별 수출입차

(통관기준, 억달러, %)

	대 미					대 일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차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999	294.7	29.2	249.2	22.1	45.5	158.6	29.6	241.4	43.4	△82.8
2000	376.1	27.6	292.4	17.3	83.7	204.7	29.0	318.3	31.8	△113.6
2001	312.1	△17.0	223.8	△23.5	88.3	165.0	△19.4	266.3	△16.3	△101.3
2002	327.8	5.0	230.1	2.8	97.7	151.4	△8.3	298.6	12.1	△147.1
2003	342.2	4.4	248.1	7.8	94.1	172.8	14.1	363.1	21.6	△190.4
2004	428.5	25.2	287.8	16.0	140.7	217.0	25.6	461.4	27.1	△244.4
2005	413.4	△3.5	305.9	6.3	107.6	240.3	10.7	484.0	4.9	△243.8
2006	431.8	4.5	336.5	10.0	95.3	265.3	10.4	519.3	7.3	△253.9
2007	457.7	6.0	372.2	10.6	85.5	263.7	△0.6	562.5	8.3	△298.8
2008	463.8	1.3	383.6	3.1	80.1	282.5	7.1	609.6	8.4	△327.0
2009	376.4	△18.8	290.3	△24.3	86.1	217.8	△22.9	494.3	△18.9	△276.4
2010	498.2	32.3	404.0	39.1	94.1	281.8	29.4	643.0	30.1	△361.2
2009,6	32.7	△22.4	24.0	△25.9	8.8	18.2	△30.0	39.9	△22.8	△21.7
7	32.9	△20.8	25.8	△30.9	7.0	18.6	△29.1	42.5	△25.1	△23.9
8	31.4	△11.4	24.5	△26.2	6.9	17.8	△19.0	40.5	△22.4	△22.6
9	33.9	△11.6	29.0	△11.6	4.9	21.9	△4.7	46.1	△15.3	△24.2
10	32.0	△27.9	27.3	△17.6	4.7	20.1	△17.5	47.8	△6.7	△27.6
11	34.9	△0.3	27.1	9.5	7.7	21.3	2.5	43.9	10.9	△22.6
12	33.6	△3.8	29.1	15.8	4.5	20.7	3.4	51.6	35.8	△30.9
2010,1	30.6	16.5	27.1	55.7	3.4	18.8	23.6	42.0	40.1	△23.2
2	34.1	24.4	28.7	45.2	5.4	19.5	28.8	49.1	31.2	△29.5
3	40.7	38.7	37.2	88.2	3.5	21.2	36.9	57.6	48.1	△36.3
4	43.4	32.7	36.9	62.1	6.5	22.0	33.1	56.1	34.3	△34.1
5	41.6	41.6	35.0	47.6	6.6	22.6	39.7	48.7	42.8	△26.1
6	44.7	36.4	36.9	54.2	7.8	23.7	31.9	55.8	39.5	△32.1
7	45.4	39.5	35.1	36.0	10.3	24.9	34.2	57.0	34.0	△32.1
8	40.5	29.5	32.7	33.3	7.8	24.1	34.1	54.8	35.6	△30.7
9	41.5	22.6	33.2	14.8	8.3	23.8	9.5	53.7	16.3	△29.9
10	47.8	50.9	32.0	17.3	15.8	26.7	33.4	54.4	13.7	△27.7
11	44.5	27.7	33.5	23.5	10.9	27.8	32.7	54.6	24.3	△26.8
12	43.5	29.6	35.7	22.7	7.8	26.7	29.3	59.3	15.0	△32.6
2011,1	41.4	35.6	31.1	14.7	10.3	29.4	56.6	52.0	23.8	△22.6
2	38.1	11.9	29.7	3.3	8.5	27.0	38.4	52.5	7.0	△25.5
3	46.5	14.1	39.1	4.9	7.4	32.6	53.3	62.4	8.4	△29.8
4	51.0	17.4	38.2	3.4	12.8	35.8	63.0	58.2	3.8	△22.4
5	51.7	24.4	44.7	27.7	7.0	30.6	35.3	55.5	13.9	△24.9
6	49.8	11.4	39.2	6.2	10.6	34.1	43.9	61.3	9.9	△27.3
7	46.6	2.5	36.1	2.9	10.5	34.3	37.9	58.7	3.0	△24.4

(통관기준, 억달러, %)

	대 중					EU				
	수 출		수 입		수 출 입 차	수 출		수 입		수 출 입 차
	금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1999	136.8	14.6	88.7	36.7	48.2	202.4	11.4	126.3	15.6	76.1
2000	184.5	34.9	128.0	44.3	56.6	234.2	15.7	157.9	25.0	76.4
2001	181.9	△1.4	133.0	3.9	48.9	196.3	△16.2	149.2	△5.5	47.1
2002	237.5	30.6	174.0	30.8	63.5	216.9	10.5	171.1	14.6	45.9
2003	351.1	47.8	219.1	25.9	132.0	248.9	14.7	193.8	13.3	55.0
2004	497.6	41.7	295.8	35.0	201.8	378.3	52.0	241.9	24.8	136.4
2005	619.1	24.4	386.5	30.6	232.7	436.6	15.4	273.0	12.9	163.6
2006	694.6	12.2	485.6	25.6	209.0	492.4	12.8	301.7	10.5	190.7
2007	819.9	18.0	630.3	29.8	189.6	559.8	13.7	368.2	22.1	191.6
2008	913.9	11.5	769.3	22.1	144.6	583.7	4.3	399.8	8.6	183.9
2009	867.2	△5.1	542.4	△29.5	324.8	465.9	△20.2	322.3	△19.4	143.6
2010	1,168.4	34.8	715.7	31.9	452.6	535.1	14.8	387.2	20.1	147.9
2009.6	73.1	△16.1	44.1	△35.6	29.0	40.0	△8.8	28.4	△21.4	11.6
7	78.0	△12.9	45.4	△39.0	32.6	35.1	△32.9	27.5	△29.2	7.6
8	76.6	△10.3	44.8	△37.5	31.8	35.0	△28.2	28.4	△23	6.6
9	83.6	3.4	50.9	△31.0	32.7	37.8	△27.4	29.0	△15	8.8
10	81.8	9.5	48.0	△25.4	33.8	46.6	△12.4	28.0	△9.7	18.6
11	81.9	54.6	50.1	△3.8	31.8	43.6	3.3	30.5	26.6	13.1
12	91.0	93.1	53.1	20.9	37.9	46.1	40.9	32.3	16.9	13.8
2010.1	88.5	98.5	49.6	19.2	38.9	34.1	11.6	26.8	14.1	7.3
2	79.5	43.1	46.6	31.6	33.0	34.5	9.0	29.5	42	5.0
3	97.6	51.0	58.0	25.3	39.6	46.9	18.5	32.9	39.8	14.0
4	99.1	42.6	62.6	43.4	36.5	47.0	8.5	29.5	16	17.5
5	96.1	45.2	60.4	49.1	35.7	42.9	16.2	31.2	25.5	11.7
6	95.5	30.6	60.2	39.5	35.4	56.9	42.2	33.9	19.1	23.0
7	98.8	29.2	60.4	32.9	38.4	49.8	42.1	32.3	17.4	17.5
8	96.1	25.7	58.3	30.1	37.8	37.5	7.2	35.1	23.3	2.4
9	97.1	17.1	58.7	15.2	38.5	41.7	10.5	30.3	4.3	11.4
10	103.5	26.6	65.7	36.8	37.8	49.5	6.2	31.9	13.7	17.6
11	105.9	29.8	70.0	39.8	35.9	42.5	△2.5	36.6	20	5.9
12	110.7	21.6	65.4	23.1	45.3	51.7	12.3	37.3	15.6	14.4
2011.1	100.3	13.4	70.7	42.6	29.6	62.8	84.1	35.6	32.9	27.2
2	95.8	20.4	53.1	13.9	42.7	38.1	10.5	31.2	5.9	6.9
3	115.2	18.0	78.9	36.0	36.3	54.6	16.5	41.6	26.6	13.0
4	108.1	9.1	76.3	21.8	31.8	53.3	13.4	40.5	37	12.8
5	113.0	17.6	77.7	28.7	35.3	46.1	7.4	40.2	28.7	5.9
6	111.3	16.5	74.7	24.1	36.6	51.2	△10.0	41.4	22.4	9.8
7	119.5	20.9	71.0	17.7	48.4	42.2	△15.3	44.1	36.7	△1.9

라. 외채 · 외환보유액 · 외국인투자 · 원유도입

(억달러)

	총외채 ¹⁾	단기외채 ²⁾	대외채권	외환 보유액 ³⁾	순 채 권	외국인투자 ⁴⁾ (백만달러)	원 유 도 입 ⁵⁾	
							도입량 (백만BBL)	도입단가 (달러/BBL)
1999	1,448	431	1,461	740.5	13	15,545	874.1	16.91
2000	1,414	497	1,670	962.0	255	15,256	893.9	28.22
2001	1,213	403	1,637	1,028.2	423	11,287	859.4	24.86
2002	1,328	482	1,843	1,214.1	884	9,095	791.0	24.24
2003	1,417	508	2,301	1,553.5	1,383	6,471	804.8	28.73
2004	1,506	564	2,889	1,990.7	1,167	12,796	825.8	36.18
2005	1,614	659	3,171	2,103.9	1,557	11,566	843.2	50.53
2006	2,252	1,138	3,809	2,389.6	1,157	11,242	888.8	62.83
2007	3,334	1,603	4,206	2,622.2	836	10,514	872.5	69.36
2008	3,174	1,499	3,478	2,012.2	246	11,705	864.9	98.28
2009	3,454	1,492	4,107	2,699.9	653	11,484	835.1	60.75
2010	3,600	1,350	4,483	2,915.7	883	13,072	872.4	78.73
2009.6	3,198	1,464	3,676	2,317.3	479	2,967	62.0	64.42
7	-	-	-	2,375.1	-	-	65.4	68.75
8	-	-	-	2,454.6	-	-	72.8	69.15
9	3,400	1,462	3,953	2,542.5	553	3,375	68.0	70.95
10	-	-	-	2,641.9	-	-	75.2	71.06
11	-	-	-	2,708.9	-	-	59.0	75.59
12	3,453	1,492	4,107	2,699.9	653	3,465	70.6	77.84
2010.1	-	-	-	2,736.9	-	-	75.1	77.23
2	-	-	-	2,706.6	-	-	65.5	76.84
3	3,558	1,545	4,196	2,723.3	638	1,541	66.8	76.54
4	-	-	-	2,788.7	-	-	70.2	80.88
5	-	-	-	2,702.2	-	-	76.1	82.34
6	3,515	1,498	4,220	2,742.2	705	2,791	67.6	77.30
7	-	-	-	2,859.6	-	-	69.0	75.36
8	-	-	-	2,853.5	-	-	75.6	74.54
9	3,659	1,453	4,487	2,897.8	828	2,932	74.9	75.34
10	-	-	-	2,933.5	-	-	76.6	77.70
11	-	-	-	2,902.3	-	-	77.2	82.32
12	3,600	1,350	4,483	2,915.7	883	5,806	77.7	86.46
2011.1	-	-	-	2,959.6	-	-	84.3	91.21
2	-	-	-	2,976.7	-	-	70.7	97.02
3	3,826	1,485	4,689	2,986.2	863	2,005	80.1	104.98
4	-	-	-	3,072.0	-	-	76.0	114.20
5	-	-	-	3,050.8	-	-	72.3	116.45
6	3,980	1,497	4,874	3,044.8	895	3,360	75.9	112.41
7	-	-	-	3,110.3	-	-	78.3	109.39
8	-	-	-	3,121.9	-	-	-	-

주 : 1) IMF, World Bank 등 9개 국제기구가 마련한 새로운 편제 기준, 분기별 발표

2) 단기 : 계약만기(original maturity) 기준으로 1년(365일) 이하

3) 가용외환 보유액 기준

4) 신고기준, 분기별 발표

5) 한국석유공사 CIF 기준

마. 주요국가의 환율변동 비교

	한국(원/달러)			일본(¥/달러) ⁴⁾		대만(NT달러/달러) ⁴⁾		유로(달러/EUR)	
	기말 ¹⁾	절상률 ²⁾	기간평균 ³⁾	기 말	절상률	기 말	절상률	기 말	절상률
1996	844.2	△8.23	804.78	116.20	△11.02	27.50	△0.11	1,2421	△2.79
1997	1,415.2	△40.35	951.11	130.10	△10.68	32.64	△15.64	1,1056	△10.99
1998	1,207.8	17.17	1,398.88	114.65	13.47	32.23	1.24	1,1678	5.63
1999	1,145.4	5.45	1,189.48	102.10	12.29	31.49	2.35	1,0045	△13.98
2000	1,259.7	△9.07	1,130.61	114.36	△10.72	32.99	△4.55	0,9425	△6.17
2001	1,326.1	△5.01	1,290.83	131.38	△12.95	35.08	△5.97	0,8843	△6.18
2002	1,200.4	10.47	1,251.24	118.52	10.85	34.74	0.99	1,0475	18.46
2003	1,197.8	0.22	1,191.89	106.99	10.78	34.03	2.09	1,2545	19.76
2004	1,043.8	14.75	1,144.67	103.13	3.74	31.97	6.44	1,3632	8.66
2005	1,013.0	3.04	1,024.31	117.80	△12.45	33.10	△3.41	1,1839	△13.15
2006	929.6	8.97	955.51	118.90	△0.93	32.59	1.56	1,3148	11.06
2007	938.2	△0.92	929.20	112.58	5.61	32.53	0.18	1,4722	11.97
2008	1,257.5	△25.39	1,102.59	90.22	24.79	32.82	△0.97	1,4125	△4.06
2009	1,167.6	7.70	1,276.40	92.46	△2.43	32.29	1.64	1,4339	1.52
2010	1,138.9	2.52	1,156.46	81.52	13.42	29.22	10.51	1,3290	△7.32
2009. I	1,377.1	△8.68	1,415.22	97.34	△7.31	33.93	△3.27	1,3190	△6.62
II	1,284.7	△2.12	1,350.93	96.14	△6.16	32.81	0.03	1,4083	△0.30
III	1,188.70	5.79	1,312.71	90.14	0.09	32.39	1.33	1,4589	3.28
IV	1,167.60	7.70	1,276.40	92.46	△2.43	32.29	1.64	1,4339	1.52
2010. I	1,131.80	3.16	1,144.51	92.87	△0.44	31.76	1.67	1,3426	△6.37
II	1,210.30	△3.53	1,154.35	88.70	4.24	31.59	2.22	1,2190	△14.99
III	1,142.00	2.24	1,164.48	83.77	10.37	31.37	2.93	1,3625	△4.98
IV	1,138.90	2.52	1,156.46	81.52	13.42	29.22	10.51	1,3290	△7.32
2011. I	1,107.20	2.86	1,120.40	83.13	△1.94	29.48	△0.88	1,4121	6.25
II	1,078.10	5.64	1,101.84	80.72	1.00	28.91	1.07	1,4474	8.91
2010.5	1,200.20	△2.72	1,142.75	91.03	1.57	32.27	0.06	1,2283	△14.34
6	1,210.30	△3.53	1,154.35	88.70	4.24	31.59	2.22	1,2190	△14.99
7	1,187.20	△1.65	1,161.91	86.67	6.68	31.26	3.29	1,3076	△8.81
8	1,189.10	△1.81	1,164.16	84.58	9.32	31.92	1.16	1,2664	△11.68
9	1,142.00	2.24	1,164.48	83.77	10.37	31.37	2.93	1,3625	△4.98
10	1,126.60	3.64	1,160.38	80.01	15.56	30.65	5.35	1,3929	△2.86
11	1,157.30	0.89	1,157.27	84.27	9.72	30.52	5.80	1,3119	△8.51
12	1,138.90	2.52	1,156.46	81.52	13.42	29.22	10.51	1,3290	△7.32
2011.1	1,114.30	2.21	1,120.07	82.14	△0.75	29.05	0.59	1,3587	2.23
2	1,127.90	0.98	1,119.21	81.68	△0.19	29.37	△0.51	1,3737	3.36
3	1,107.20	2.86	1,120.40	83.13	△1.94	29.48	△0.88	1,4121	6.25
4	1,072.30	6.21	1,111.70	81.62	△0.12	28.76	1.60	1,4839	11.66
5	1,080.60	5.40	1,106.12	80.91	0.75	28.84	1.32	1,4341	7.91
6	1,078.10	5.64	1,101.84	80.72	1.00	28.91	1.07	1,4474	8.91
7	1,052.60	8.20	1,095.62	77.79	4.80	28.77	1.56	1,4325	7.79
8	1,071.70	6.27	1,092.63	76.73	6.25	29.01	0.72	1,4437	8.63

주: 1) 매매기준율

2) 절상률은 전년말 대비

3) 매매기준율(연간누계평균)

4) 일본시장, 대만시장의 현지일 기준

6. 통화 · 금리

(10억원, 전년동기대비, %)

	본 원 통 화 ¹⁾				M1 ²⁾			
	말 잔 액		평균잔액		말 잔 액		평균잔액	
	10억원	증감률 (%)	10억원	증감률 (%)	10억원	증감률 (%)	10억원	증감률 (%)
2000	28,238.1	△0.9	26,357.0	20.0	196,714.5	15.3	183,349.9	24.5
2001	32,826.8	16.3	29,375.9	11.5	246,720.5	25.4	216,442.4	18.0
2002	37,987.4	15.7	33,579.3	14.3	283,580.8	14.9	265,042.4	22.5
2003	40,749.0	7.3	35,754.7	6.5	298,952.9	5.4	283,397.4	6.9
2004	38,791.8	△4.8	37,272.4	4.2	321,727.7	7.6	306,839.8	8.3
2005	43,249.0	11.5	38,785.2	4.1	332,344.9	3.3	332,902.1	8.5
2006	51,869.5	19.9	41,664.0	7.4	371,087.6	11.7	330,134.1	△0.8
2007	56,399.0	8.7	48,543.7	16.5	316,382.7	△14.7	312,832.3	△5.2
2008	64,846.3	15.0	52,272.8	7.7	330,623.7	4.5	307,273.6	△1.8
2009	67,779.1	4.5	61,739.6	18.1	389,394.5	17.8	357,344.1	16.3
2010	74,545.7	10.0	67,585.1	9.5	427,791.6	9.9	399,412.3	11.8
2009.5	59,916.4	10.8	60,082.5	19.0	359,698.8	17.7	355,922.0	17.0
6	65,406.1	24.3	59,530.3	16.1	375,303.8	19.9	362,111.3	18.5
7	59,199.0	10.8	59,420.2	17.4	357,861.3	16.9	363,421.4	18.5
8	62,171.8	12.1	60,570.3	16.5	365,842.2	19.0	361,012.4	18.5
9	66,636.7	14.2	59,650.3	11.9	379,731.1	20.5	367,070.3	19.5
10	60,544.2	13.6	63,681.7	20.2	372,262.6	17.8	371,531.7	19.6
11	60,194.2	3.0	61,154.5	12.7	374,320.2	15.9	370,979.7	17.3
12	67,779.1	4.5	62,633.2	5.6	389,394.5	17.8	376,977.3	16.4
2010.1	67,409.4	6.3	65,054.7	1.6	386,966.9	17.0	381,218.2	15.0
2	71,152.0	0.8	66,563.8	5.6	390,792.4	12.9	387,858.6	15.9
3	72,203.4	0.7	65,643.6	0.0	384,902.1	11.2	386,015.4	12.6
4	68,987.7	15.5	64,274.7	4.7	388,243.6	9.5	388,174.7	10.8
5	72,770.4	21.5	67,835.1	12.9	397,348.2	10.5	394,880.2	10.9
6	73,710.6	12.7	66,250.8	11.3	407,134.5	8.5	400,132.8	10.5
7	67,165.2	13.5	66,958.2	12.7	401,594.6	12.2	403,785.1	11.1
8	70,709.1	13.7	67,318.7	11.1	396,132.8	8.3	400,882.5	11.0
9	73,457.9	10.2	70,266.5	17.8	398,296.7	4.9	404,413.5	10.2
10	70,788.3	16.9	69,905.0	9.8	408,217.4	9.7	405,000.1	9.0
11	71,714.7	19.1	69,476.8	13.6	416,070.8	11.2	414,912.8	11.8
12	74,545.7	10.0	71,472.9	14.1	427,791.6	9.9	425,673.9	12.9
2011.1	80,344.4	19.2	73,540.8	13.0	433,252.5	12.0	429,368.1	12.6
2	72,889.0	2.4	75,432.1	13.3	432,542.7	10.7	432,482.8	11.5
3	78,375.7	8.5	73,012.7	11.2	422,368.5	9.7	430,936.6	11.6
4	75,395.7	9.3	73,206.1	13.9	426,690.1	10.5	425,420.5	9.6
5	72,175.3	△0.8	73,828.5	8.8	414,731.7	4.4	423,994.7	7.4
6	79,785.3	8.2	74,705.5	12.8	421,696.6	3.6	421,885.3	5.4

주 : 1) 본원통화 = 화폐발행액(기념화폐 제외) + 지급준비예치금

2) M1(협의통화) = 현금통화(기념화폐를 제외한 민간화폐보유액) + 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투신사 MMF 포함)

(10억원, 전년동기대비, %)

	M2 ³⁾				L ⁴⁾			
	말 잔액		평균잔액		말 잔액		평균잔액	
	10억원	증감률 (%)	10억원	증감률 (%)	10억원	증감률 (%)	10억원	증감률 (%)
2000	707,698.9	5.2	691,393.5	2.2	911,641.8	7.1	882,764.3	5.6
2001	764,979.3	8.1	739,337.0	6.9	1,017,715.3	11.6	967,324.9	9.6
2002	872,075.6	14.0	824,227.8	11.5	1,155,739.8	13.6	1,092,168.8	12.9
2003	898,069.4	3.0	888,988.6	7.9	1,209,750.8	4.7	1,187,839.8	8.8
2004	954,722.5	6.3	929,621.8	4.6	1,295,821.8	7.1	1,260,518.9	6.1
2005	1,021,448.7	7.0	993,960.1	6.9	1,391,559.6	7.4	1,348,818.8	7.0
2006	1,149,262.1	12.5	1,076,682.4	8.3	1,538,299.7	10.5	1,454,858.8	7.9
2007	1,273,611.9	10.8	1,197,094.8	11.2	1,691,565.2	10.0	1,603,516.0	10.2
2008	1,425,887.5	12.0	1,367,713.4	14.3	1,846,283.7	9.1	1,794,820.6	11.9
2009	1,566,850.0	9.9	1,508,550.4	10.3	2,018,785.0	9.4	1,937,336.0	7.9
2010	1,660,530.0	6.0	1,639,675.1	8.7	2,137,197.9	5.9	2,096,530.1	8.2
2009.5	1,498,549.1	10.0	1,491,542.7	9.9	1,919,967.2	7.2	1,913,084.5	7.3
6	1,509,702.2	10.3	1,501,898.3	9.6	1,937,080.0	8.0	1,925,418.1	7.0
7	1,506,976.6	9.5	1,512,822.5	9.7	1,938,606.2	7.7	1,940,223.0	7.7
8	1,526,511.9	9.5	1,524,879.7	10.0	1,962,277.1	7.7	1,956,130.6	8.0
9	1,541,191.2	10.7	1,535,279.8	10.0	1,982,529.3	8.5	1,972,408.5	7.7
10	1,554,701.4	10.2	1,551,319.5	10.5	1,992,984.2	8.2	1,990,248.2	7.8
11	1,564,351.2	9.6	1,564,175.8	9.7	2,006,403.2	8.1	2,000,503.6	7.6
12	1,566,850.0	9.9	1,570,027.1	9.3	2,019,400.9	9.4	2,015,377.4	8.1
2010.1	1,589,487.9	10.0	1,574,215.8	9.3	2,034,620.1	9.1	2,019,563.5	8.1
2	1,596,976.4	8.6	1,595,403.8	9.4	2,052,999.2	8.8	2,041,164.1	8.6
3	1,609,271.8	9.7	1,607,896.1	9.3	2,069,203.2	9.7	2,058,117.7	8.8
4	1,620,071.8	9.3	1,621,176.9	9.4	2,078,802.1	9.4	2,069,616.1	9.0
5	1,632,746.4	9.0	1,630,904.7	9.3	2,096,502.7	9.2	2,084,007.4	8.9
6	1,645,713.7	9.0	1,647,981.2	9.7	2,108,729.1	8.9	2,104,724.0	9.3
7	1,644,278.7	9.1	1,653,057.5	9.3	2,110,773.0	8.9	2,111,672.2	8.8
8	1,647,880.8	8.0	1,653,907.2	8.5	2,112,601.2	7.7	2,113,052.7	8.0
9	1,652,908.0	7.2	1,659,400.1	8.1	2,123,099.4	7.1	2,123,558.2	7.7
10	1,674,134.4	7.7	1,669,376.6	7.6	2,139,973.5	7.4	2,134,385.4	7.2
11	1,678,849.9	7.3	1,679,909.9	7.4	2,150,218.9	7.2	2,145,901.5	7.3
12	1,660,530.0	6.0	1,682,871.9	7.2	2,137,197.9	5.9	2,154,482.3	6.9
2011.1	1,669,219.0	5.0	1,676,448.8	6.5	2,144,119.3	5.4	2,152,901.1	6.6
2	1,673,697.1	4.8	1,674,390.5	5.0	2,156,080.0	5.0	2,148,254.1	5.2
3	1,675,788.6	4.1	1,677,475.9	4.3	2,161,401.7	4.6	2,152,566.3	4.7
4	1,689,262.4	4.3	1,684,792.3	3.9	2,177,337.1	4.7	2,163,560.1	4.5
5	1,684,435.6	3.2	1,690,543.0	3.7	2,179,550.6	4.0	2,175,498.1	4.4
6	1,693,131.7	2.9	1,697,204.2	3.0	2,194,358.0	4.1	2,190,295.1	4.1

주 : 3) M2(광의통화) = M1+기간물 예적금 및 부금+시장형금융상품(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 등)+실적배당형 상품(금전신탁, 수익증권 등)+금융채+기타(투신증권저축,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 등) 단, 장기(만기 2년 이상) 금융상품 제외

4) M3(총유동성) = 현금통화+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예수금+금융채+상업어음매출+양도성예금증서+환매조건부채권매도+표지어음(1989년 11월부터 표지어음 포함)

* M1, M2는 예금취급기관 (중앙은행, 일반은행, 특수은행, 수출입은행, 증곡사, 투신사, 은행신탁,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탁, 상호금융, 우체국예금)을, M3는 예금취급기관, 한국증권금융 및 생명보험회사를 각각 대상금융기관으로 함

(10억원, 전년동기대비, %)

	화폐발행액		회사채 유통 수익률 (3年)	CD 유통 수익률 (91物)	콜금리 (1日)	어음부도율(금액기준) ⁵⁾		주 식	
	말잔액	증감률 (%)				서 울	전 국	평 지	균 수
2000	21,424.9	△5.1	9.25	7.08	5.14	0.38	0.39	734.2	30,612
2001	22,336.0	4.3	7.04	5.3	4.70	0.38	0.38	572.8	30,616
2002	24,174.1	8.2	6.59	4.80	4.19	0.09	0.11	757.0	85,725
2003	24,490.9	1.3	5.43	4.31	3.98	0.13	0.17	679.8	54,201
2004	24,882.3	1.6	4.71	3.78	3.62	0.13	0.18	832.9	37,289
2005	26,135.8	5.0	4.69	3.65	3.32	0.10	0.14	1,073.6	46,763
2006	27,843.1	6.5	5.17	4.48	4.19	0.06	0.09	1,352.2	27,910
2007	29,321.9	5.3	5.70	5.16	4.77	0.01	0.02	1,712.5	36,373
2008	30,758.3	4.9	7.02	5.49	4.78	0.02	0.03	1,529.5	35,521
2009	37,346.2	21.4	5.81	2.63	1.98	0.02	0.03	1,429.0	48,390
2010	43,307.2	16.0	4.66	2.67	2.16	0.03	0.03	1,765.0	38,086
2009.6	32,152.2	13.3	5.21	2.41	1.93	0.01	0.02	1,395.2	49,799
7	32,769.5	15.2	5.46	2.41	1.93	0.01	0.02	1,460.0	46,166
8	33,043.9	15.6	5.74	2.48	1.98	0.01	0.02	1,577.9	51,063
9	37,631.7	25.9	5.58	2.64	1.99	0.01	0.02	1,659.4	47,925
10	35,106.8	18.7	5.60	2.79	1.99	0.02	0.02	1,630.6	36,553
11	35,599.4	18.9	5.43	2.79	2.00	0.03	0.04	1,583.5	27,966
12	37,346.2	21.4	5.35	2.82	2.00	0.03	0.03	1,646.6	34,947
2010. 1	36,887.9	10.1	5.40	2.88	2.00	0.03	0.03	1,682.2	45,991
2	39,400.9	27.9	5.32	2.88	1.99	0.03	0.03	1,599.0	37,990
3	37,567.9	24.0	5.02	2.83	2.01	0.02	0.02	1,665.7	41,796
4	38,045.9	24.0	4.69	2.51	2.00	0.03	0.03	1,730.3	42,301
5	39,204.4	29.1	4.48	2.45	2.01	0.03	0.03	1,648.3	39,872
6	38,939.6	21.1	4.65	2.45	2.00	0.03	0.04	1,691.9	33,298
7	39,421.8	20.3	4.82	2.58	2.20	0.03	0.03	1,731.1	36,582
8	39,421.8	19.8	4.27	2.63	2.28	0.04	0.04	1,762.2	33,119
9	43,247.5	14.9	4.41	2.66	2.27	0.03	0.03	1,815.8	33,283
10	41,352.2	17.8	4.13	2.66	2.26	0.01	0.02	1,889.7	37,113
11	41,967.2	17.9	4.19	2.73	2.37	0.02	0.03	1,889.7	35,313
12	43,307.2	16.0	4.17	2.80	2.50	0.01	0.02	2,002.5	39,901
2011. 1	48,083.1	30.3	4.52	2.93	2.66	0.01	0.01	2,091.6	39,038
2	44,655.7	13.3	4.72	3.13	2.75	0.02	0.02	2,002.9	31,500
3	43,731.2	16.4	4.54	3.35	2.92	0.02	0.02	2,002.7	30,086
4	44,116.1	16.0	4.54	3.40	3.01	0.03	0.06	2,154.9	36,761
5	44,679.5	14.0	4.44	3.46	3.03	0.02	0.02	2,121.9	31,099
6	44,580.7	14.5	4.40	3.53	3.20	0.04	0.04	2,074.6	26,061
7	-	-	4.48	3.59	3.26	0.01	0.02	2,150.0	31,406
8	-	-	4.29	3.59	3.25	-	-	1,869.3	43,681

주 : 5) 전자결제 조정후

7. 경 기

(2005=100, %)

	선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순환변동치	
2008.1	116.3	△0.3	6.5	119.3	0.8	103.7
2	115.6	△0.6	5.1	119.6	0.3	103.5
3	115.1	△0.4	4.0	119.9	0.3	103.4
4	114.9	△0.2	3.2	119.9	0.0	102.9
5	114.8	△0.1	2.5	120.0	0.1	102.6
6	114.2	△0.5	1.4	119.8	△0.2	102.0
7	113.5	△0.6	0.2	119.8	0.0	101.5
8	113.3	△0.2	△0.4	120.0	0.2	101.3
9	113.1	△0.2	△0.9	120.3	0.3	101.1
10	112.5	△0.5	△1.7	120.3	0.0	100.6
11	111.3	△1.1	△3.1	118.8	△1.2	99.0
12	110.5	△0.7	△3.9	116.1	△2.3	96.4
2009.1	110.8	0.3	△3.6	114.1	△1.7	94.3
2	112.2	1.3	△2.4	114.1	0.0	93.9
3	113.4	1.1	△1.3	115.3	1.1	94.5
4	115.3	1.7	0.5	117.1	1.6	95.5
5	117.3	1.7	2.6	118.1	0.9	96.0
6	119.9	2.2	5.4	120.4	1.9	97.4
7	121.5	1.3	7.2	121.7	1.1	98.0
8	122.5	0.8	8.4	122.7	0.8	98.4
9	123.4	0.7	9.4	123.5	0.7	98.7
10	124.6	1.0	10.4	124.4	0.7	98.9
11	126.4	1.4	11.7	125.2	0.6	99.2
12	127.2	0.6	12.0	125.8	0.5	99.2
2010.1	127.5	0.2	11.6	126.6	0.6	99.5
2	127.0	△0.4	10.4	127.8	0.9	100.0
3	127.1	0.1	9.6	128.8	0.8	100.3
4	126.9	△0.2	8.6	129.6	0.6	100.5
5	127.3	0.3	7.7	130.5	0.7	100.8
6	127.7	0.3	6.8	131.4	0.7	101.0
7	128.4	0.5	6.2	132.4	0.8	101.4
8	128.8	0.3	5.4	132.6	0.2	101.1
9	128.8	0.0	4.5	132.2	△0.3	100.4
10	128.4	△0.3	3.3	131.8	△0.3	99.6
11	128.7	0.2	2.8	132.1	0.2	99.5
12	129.3	0.5	2.9	133.1	0.8	99.8
2011.1	130.1	0.6	3.0	135.1	1.5	100.8
2	129.8	△0.2	2.3	135.3	0.1	100.6
3	129.4	△0.3	1.6	135.9	0.4	100.6
4p	128.9	△0.4	1.0	135.5	△0.3	99.9
5p	129.5	0.5	1.3	136.6	0.8	100.2
6p	130.2	0.5	1.7	137.7	0.8	100.6
7p	130.7	0.4	2.0	138.7	0.7	100.9

※ p는 잠정치임

8. 재 정

(조원)

	총지출 ¹⁾ (GDP대비, %)					총수입 ¹⁾ (GDP대비, %)				
	경상지출	이차지출	자본지출	순융자		국세수입	세외수입	자본수입	사회보장 기여금	
1990	34.1 (17.8)	25.1	1.3	4.7	4.3	32.5 (17.0)	26.9	3.1	1.0	1.5
1991	41.5 (17.9)	30.6	1.2	6.3	4.6	37.5 (16.2)	30.4	4.0	1.3	1.8
1992	45.5 (17.2)	35.2	1.5	6.3	4.0	43.8 (16.6)	35.4	4.9	1.1	2.4
1993	50.7 (17.0)	39.8	1.2	6.9	4.0	51.5 (17.2)	39.4	6.6	1.4	4.1
1994	60.3 (17.2)	45.4	1.9	8.7	6.2	61.8 (17.7)	47.3	8.1	1.8	4.6
1995	71.6 (17.5)	49.8	2.2	13.1	8.7	72.8 (17.8)	56.8	9.3	1.3	5.4
1996	84.4 (18.3)	56.2	2.2	17.1	11.1	85.5 (18.5)	65.0	11.8	1.3	7.4
1997	100.3 (19.8)	62.8	2.3	18.8	18.7	93.4 (18.4)	70.0	13.6	1.3	8.5
1998	115.4 (23.0)	70.6	3.4	20.4	24.4	96.7 (19.3)	67.8	17.5	0.9	10.5
1999	121.0 (22.0)	76.8	5.9	24.4	19.8	107.9 (19.7)	75.7	18.9	1.4	12.0
2000	129.3 (21.4)	87.2	6.9	22.3	19.8	135.8 (22.5)	92.9	26.7	1.4	14.8
2001	136.8 (21.0)	101.9	7.2	24.9	10.1	144.1 (22.1)	95.8	29.4	1.3	17.5
2002	136.0 (18.9)	106.3	6.8	29.4	0.4	158.7 (22.0)	104.0	33.5	1.5	19.7
2003	164.3 (22.4)	136.2	6.6	30.6	△2.5	171.9 (22.4)	114.7	35.1	1.5	20.7
2004	173.5 (21.0)	145.1	8.7	27.0	1.4	178.8 (21.6)	117.8	36.8	1.3	22.8
2005	187.9 (21.7)	158.7	10.1	24.6	3.0	191.4 (22.1)	127.5	37.8	1.3	24.9
2006	205.9 (22.7)	173.7	12.2	26.5	5.7	209.6 (23.1)	138.0	42.7	1.5	27.3
2007	209.8 (21.5)	169.7	13.4	33.0	7.1	243.6 (25.0)	161.5	50.5	1.9	29.7
2008	238.8 (23.3)	196.9	14.4	36.5	5.5	250.7 (24.4)	167.3	48.6	1.9	32.9
2009	272.9 (25.7)	209.7	16.0	45.1	18.0	255.2 (24.0)	164.5	54.3	2.5	33.9
2010	254.2 (22.1)	216.9	13.4	34.2	3.1	270.9 (23.1)	177.7	55.2	2.4	35.6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		관리대상수지 (GDP대비, %)		국가채무 (GDP대비, %)		조세부담률 (%)	국민부담률 (%)
1990	△1.6	(△0.8)	△2.5	(△1.3)	24.5	(12.8)	17.4	18.1
1991	△4.0	(△1.7)	△5.0	(△2.2)	27.7	(12.0)	16.6	17.4
1992	△1.7	(△0.6)	△2.9	(△1.1)	31.0	(11.7)	16.9	17.8
1993	0.8	(0.3)	△1.9	(△0.6)	32.8	(11.0)	16.8	18.2
1994	1.5	(0.4)	△1.3	(△0.4)	34.4	(9.8)	17.3	18.6
1995	1.2	(0.3)	△2.3	(△0.6)	35.6	(8.7)	17.6	18.9
1996	1.1	(0.2)	△4.2	(△0.9)	45.6	(9.9)	17.9	19.5
1997	△7.0	(△1.4)	△12.8	(△2.5)	60.3	(11.9)	17.4	20.3
1998	△18.8	(△3.7)	△24.9	(△5.0)	80.4	(16.0)	17.0	20.3
1999	△13.1	(△2.4)	△20.4	(△3.7)	98.6	(18.0)	17.2	20.87
2000	6.5	(1.1)	△6.0	(△1.0)	111.4	(18.5)	18.8	22.6
2001	7.3	(1.1)	△8.2	(△1.3)	122.1	(18.7)	18.8	23.0
2002	22.7	(3.1)	5.1	(0.7)	133.6	(18.5)	18.8	23.2
2003	7.6	(1.0)	1.0	(0.1)	165.7	(21.6)	19.3	23.9
2004	5.2	(0.6)	△4.0	(△0.5)	203.1	(24.6)	18.4	23.1
2005	3.5	(0.6)	△8.1	(△0.9)	248.0	(28.7)	18.9	23.9
2006	3.6	(0.4)	△10.8	(△1.2)	282.8	(31.1)	19.7	25.0
2007	33.8	(3.5)	3.6	(0.4)	298.9	(30.7)	21.0	26.5
2008	11.9	(1.2)	△15.6	(△1.5)	309.0	(30.1)	20.7	26.5
2009	△17.6	(△1.7)	△43.2	(△4.1)	359.6	(33.8)	19.7	25.6
2010	16.7	(1.4)	△13.0	(△1.1)	392.8	(33.5)	19.3	25.1

주 : 1) 통합재정 기준

9. 해외지표

가. 주요국의 경제지표

(미 국)

연월중	GDP 성장률 (%)	1인당 GDP	무 역 ¹⁾				경상 수지	대외 준비 ²⁾ (기말)	달러화 실 효 율 ³⁾ 환	물 가 ⁴⁾		실업률	노 동 생산성 ⁵⁾ (%)
			상품수출 (BOP)		상품수입 (BOP)					생산자	소비자		
			달러	억달러	전기 대비 (%)	억달러							
2007	1.9	46,449	11,640	12.0	19,828	5.7	△718	707	77.98	3.9	2.9	4.6	1.5
2008	△0.3	46,883	13,075	12.3	21,376	7.8	△669	783	74.49	6.3	3.8	5.8	0.7
2009	△3.5	45,332	10,695	△18.2	15,754	△26.3	△378	1,332	77.71	△2.6	△0.4	9.3	2.3
2010	3.0	46,844	12,887	20.5	19,346	22.8	△470	1,327	75.55	4.2	1.6	9.6	4.1
2010.6			1,053	△1.2	1,643	2.0		1,250	79.36	2.7	1.1	9.5	
7			1,083	2.8	1,620	△1.4		1,292	77.01	4.1	1.2	9.5	
8	2.5	47,048	1,085	0.2	1,661	2.6	△120	1,294	76.18	3.3	1.1	9.6	2.1
9			1,088	0.3	1,652	△0.5		1,324	75.22	3.9	1.1	9.6	
10			1,126	3.5	1,649	△0.2		1,361	72.50	4.3	1.2	9.7	
11	2.3	47,422	1,138	1.1	1,663	0.8	△112	1,320	73.04	3.4	1.1	9.8	2.2
12			1,163	2.2	1,707	2.7		1,327	74.05	3.8	1.5	9.4	
2011.1			1,195	2.7	1,811	6.1		1,339	73.18	3.6	1.6	9.0	
2	0.4	47,700	1,174	△1.7	1,771	△2.2	△119	1,346	72.22	5.4	2.1	8.9	△0.6
3			1,245	6.0	1,856	4.8		1,354	71.02	5.6	2.7	8.8	
4			1,265	1.7	1,847	△0.5		1,429	69.75	6.8	3.2	9.0	
5	1.0	48,029	1,253	△1.0	1,907	3.2	-	1,409	69.85	7.3	3.6	9.1	△0.3
6			1,212	△3.2	1,888	△1.0		1,427	69.76	7.0	3.6	9.2	
7			-	-	-	-		1,448	69.63	7.2	3.6	9.1	

연월중	통화 ¹⁾ M2 전기 대비 (연율 %)	금 리(연%)					산업생산 ¹¹⁾				수요관리지표		주가지수 ¹³⁾
		Federal Funds Rate (기말)	재할인율 ⁸⁾ (기말)	프라이머이 레이트 (기말)	단 기 국 채 수익률 (기간평균)	장 기 국 채 수익률 (기간평균)	전산업	제조업	제조업 가동률 ⁹⁾ (%)	소매 판매액	주택착공 호수		
												전기 대비 (%)	
2007	6.1	4.25	4.75	7.25	4.47	4.63	2.7	3.2	79.1	3.3	△24.8	13,264.8	
2008	10.4	0-0.25	0.50	3.25	1.39	3.67	△3.7	△4.7	74.7	△1.2	△33.2	8,776.4	
2009	3.5	0-0.25	0.50	3.25	0.15	3.26	△11.2	△13.5	66.0	△7.0	△38.8	10,428.1	
2010	3.4	0-0.25	0.75	3.25	0.14	3.21	5.3	5.9	71.9	6.4	5.9	11,577.5	
2010.6	4.2	0-0.25	0.75	3.25	0.12	3.20	0.1	0.0	71.7	△0.2	△7.1	9,774.0	
7	2.3	0-0.25	0.75	3.25	0.16	3.01	0.9	0.9	72.4	0.3	2.0	10,465.9	
8	6.5	0-0.25	0.75	3.25	0.16	2.70	0.2	0.1	72.6	0.9	10.2	10,014.7	
9	6.8	0-0.25	0.75	3.25	0.15	2.65	0.3	0.3	72.7	1.0	△1.5	10,788.1	
10	5.7	0-0.25	0.75	3.25	0.13	2.54	△0.1	0.3	73.0	1.3	△9.7	11,118.5	
11	5.4	0-0.25	0.75	3.25	0.14	2.76	0.3	0.2	73.1	0.7	2.2	11,006.0	
12	4.6	0-0.25	0.75	3.25	0.14	3.29	1.3	1.1	73.8	0.6	△4.5	11,577.5	
2011.1	3.4	0-0.25	0.75	3.25	0.15	3.39	0.2	0.7	74.3	0.8	20.9	11,891.9	
2	8.7	0-0.25	0.75	3.25	0.13	3.58	△0.4	0.2	74.4	1.3	△18.6	12,226.3	
3	3.9	0-0.25	0.75	3.25	0.10	3.41	0.7	0.7	74.8	0.8	14.5	12,319.7	
4	4.9	0-0.25	0.75	3.25	0.06	3.46	△0.3	△0.4	74.4	0.2	△7.4	12,810.5	
5	7.8	0-0.25	0.75	3.25	0.04	3.17	0.2	0.2	74.6	0.0	0.7	12,569.8	
6	12.9	0-0.25	0.75	3.25	0.04	3.00	0.4	0.2	74.6	0.3	10.8	12,414.3	
7	30.1	0-0.25	0.75	3.25	0.04	3.00	0.9	0.6	75.0	0.5	△1.5	12,143.2	

주 : 월별 및 분기별 전기비 증감률은 계절변동조정 후 기준, 최근 수치는 잠정치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국제수지 기준 2) 금+SDR+IMF포지션+외환 3) 캐나다, 유로지역, 일본, 영국, 스위스, 호주, 스웨덴 등 7개국 통화에 대한 가중평균환율치 수, 명목기준 4) 생산자물가는 최종재 기준 5) 군인 제외, 계절변동조정 후 6) 전산업(농업부문 제외)취업자의 단위시간당 불변산출액 기준 (1992=100) 7) M1 = 민간보유화폐액+비은행금융기관발행 여행자수표+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예금금융기관의 NOW계정 및 AST계정+신용조합의 출자금 계정 + 저축금융기관의 요구불예금, M2 = M1+예금금융기관의 익일물 RP+미국은행 해외지점의 거주자 익일물 유로달러 예금+예금금융기관의 저축예금 및 소액정기예금+일반투자가 보유 MMF-예금금융기관 및 MMF의 IRA와 Koeigh계정 예금, 평잔기준 8) 2003. 1. 9일 이후부터는 primary credit 기준 9) 3개월 만기 10) 10년 만기 11) 지수(1992=100) 증감률 12) 월별 수치는 계절변동조정 후 13) 다우존스 공업평균주가, 기말기준

자료 : Federal Reserve Bulletin(미 연준),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IMF), Reuters, 미 노동부 및 상무부

(중 국)

연월중	GDP 성장률 전년동기 대비(%)	1인당 GDP 미달러	무 역				경 상 수 지	대외준비 ¹⁾ (기말)	대미달러 환율 (Yuan/US\$) ²⁾	
			수출(FOB)		수입(CIF)				기 말	평 균
			억 미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 미달러	전년동기 대비(%)				
2007	14.2	2,645	12,182	26.7	9,563	20.8	3,718	15,282	7,3046	7,6048
2008	9.6	3,404	14,289	17.9	11,319	19.9	4,261	19,460	6,8346	6,9464
2009	9.2	3,735	12,019	△15.8	10,039	△9.4	2,971	23,992	6,8282	6,8306
2010	10.3	4,283	15,785	32.3	13,939	41.6	3,062	28,473	6,5900	6,7687
2010.6			1,374	43.9	1,174	34.1	-	24,543	6,7815	6,8185
7			1,455	38.1	1,168	22.7	-	25,389	6,7735	6,7762
8	9.6	-	1,393	34.4	1,193	35.2	-	25,478	6,8069	6,7872
9			1,450	25.1	1,281	24.1	-	26,480	6,6905	6,7418
10			1,360	22.9	1,088	25.3	-	27,609	6,6707	6,6678
11	9.8	-	1,533	34.9	1,304	37.7	-	27,678	6,6670	6,6523
12			1,542	17.9	1,411	25.6	-	28,473	6,5900	6,6461
2011.1			1,507	37.7	1,443	51.0	-	29,317	6,6017	6,5979
2	9.7	-	967	2.4	1,041	19.5	-	29,914	6,5713	6,5757
3			1,522	35.8	1,521	27.3	-	30,447	6,5483	6,5644
4			1,557	29.9	1,443	21.8	-	31,458	6,4900	6,5267
5	9.5	-	1,572	19.4	1,441	28.4	-	31,660	6,4790	6,4951
6			1,620	17.9	1,397	19.3	-	31,975	6,4635	6,4744
7			1,751	20.4	1,436	22.9	-	-	6,4360	6,4578

연월중	물 가		통 화 ³⁾		금리(기말, 연%)		산 업 생 산		소매판매	주가지수 ⁴⁾
	생산자	소비자	M1	M2	재할인율	금융기관 대출금리 (1년)	전산업	국유기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기대비(%)			
2007	3.1	4.8	21.1	16.7	3.24	7.47	18.5	13.5	16.6	5,261.56
2008	6.9	5.9	9.1	17.8	2.97	5.31	12.9	9.1	21.7	1,820.81
2009	△5.4	△0.7	32.4	27.7	1.80	5.31	11.0	8.2	15.5	3,277.14
2010	5.5	3.3	21.2	19.7	2.25	5.81	15.7	13.9	18.4	2,808.08
2010.6	6.4	2.9	24.6	18.5	1.80	5.31	13.7	13.3	18.3	2,398.37
7	4.8	3.3	22.9	17.6	1.80	5.31	13.4	11.4	17.9	2,637.50
8	4.3	3.5	21.9	19.2	1.80	5.31	13.9	11.7	18.4	2,638.80
9	4.3	3.6	20.9	19.0	1.80	5.31	13.3	11.0	18.8	2,655.66
10	5.0	4.4	22.1	19.3	1.80	5.56	13.1	10.6	18.6	2,978.84
11	6.1	5.1	22.1	19.5	1.80	5.56	13.3	10.9	18.7	2,820.18
12	5.9	4.6	21.2	19.7	2.25	5.81	13.5	9.8	19.1	2,808.08
2011.1	6.6	4.9	13.6	17.2	2.25	5.81	-	-	19.9	2,790.69
2	7.2	4.9	14.5	15.7	2.25	6.06	14.9	10.5	11.6	2,905.05
3	7.3	5.4	15.0	16.6	2.25	6.06	14.8	12.9	17.4	2,928.11
4	6.8	5.3	12.9	15.3	2.25	6.31	13.4	10.4	17.1	2,911.51
5	6.8	5.5	12.7	15.1	2.25	6.31	13.3	8.9	16.9	2,743.47
6	7.1	6.4	13.1	15.9	2.25	6.31	15.1	10.7	17.7	2,762.08
7	7.5	6.5	11.6	14.7	2.25	6.56	14.0	9.5	17.2	2,829.47

주 : 최근 수치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외환보유액 2) 국가외환관리국 고시환율 3) M1=현금통화+요구불예금, M2=M1+준통화(정기예금+저축예금+기타예금), 말잔기준 4) 상해 종합주가지수, 기말기준

자료 : 중국인민은행, 통계계보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각호

(일 본)

연월중	GDP ¹⁾ 성장률	1인당 GDP	무 역				경상 수지	대외 준비 ²⁾ (기말)	대미달러 ³⁾ 환 율			물 가 ⁴⁾		5) 실업률	6) 노 동 ⁶⁾ 생산성	
			수출(FOB)		수입(CIF)				심업엔	역달러	기말	평균	생산자			소비자
			전년동 연율 (%)	미달러	역엔	전년동 기대비 (%)										
2007	2.4	34,268	839,314	11.5	731,359	8.6	24,794	9,734	113.04	117.75	1.8(2.7)	0.1(0.7)	3.9	2.3		
2008	△1.2	38,271	810,181	△3.5	789,548	8.0	16,380	10,306	90.23	103.33	4.6(0.9)	1.4(0.4)	4.0	△2.2		
2009	△6.3	39,740	541,706	△33.1	514,994	△34.8	13,287	10,494	92.10	89.50	△5.2(△3.8)	△1.4(△1.7)	5.1	△14.5		
2010	4.0	42,325	674,039	24.4	606,645	17.8	17,171	10,962	81.48	83.36	△0.2(1.2)	△0.7(0.0)	5.1	13.0		
2010.6			58,668	27.7	51,846	26.5	1,058	10,502	88.73	90.87	0.4	△0.7	5.2	12.2		
7	3.9 (5.0)		59,827	23.5	51,835	16.1	1,719	10,635	86.47	87.65	△0.2	△1.0	5.1	10.5		
8			52,079	15.5	51,239	18.4	1,143	10,701	84.54	85.45	0.0	△1.1	5.0	10.9		
9			58,409	14.3	50,524	10.3	2,018	11,096	83.32	84.30	△0.2	△0.9	5.0	8.5		
10	△2.5 (2.1)		57,241	7.8	49,057	8.9	1,495	11,181	80.40	81.78	0.9	△0.2	5.1	1.7		
11			54,398	9.1	52,807	14.3	955	11,010	83.82	82.40	0.9	△0.3	5.1	4.5		
12			61,123	12.9	53,865	10.7	1,198	10,962	81.12	83.36	1.2	△0.4	4.9	2.7		
2011.1	△3.6 (△1.0)		49,703	1.4	54,497	12.2	547	10,930	82.20	82.61	1.5	△0.6	4.9	3.3		
2			55,890	9.0	49,387	10.0	1,701	10,915	81.80	82.50	1.7	△0.5	4.6	2.9		
3			58,612	△2.3	56,749	12.0	1,739	11,160	82.87	81.80	2.0	△0.5	4.6	△11.3		
4			51,566	△12.4	56,243	9.0	406	11,355	81.19	83.33	2.5	△0.5	4.7	△11.5		
5		△1.3 (△1.0)		47,600	△10.3	56,173	12.4	591	11,395	81.57	81.22	2.1	△0.4	4.5	△2.8	
6				57,756	△1.6	57,069	9.8	527	11,378	80.44	80.47	2.6	△0.4	4.6	-	
7				57,819	△3.3	57,094	9.9	-	11,509	76.77	79.42	2.9	0.2	4.7	-	

연월중	통화 ⁷⁾ M3		금리(기말, 연%)		광 공 업 ⁸⁾				수요관리지표			주기지수 ¹¹⁾	
	전년동기 대비 (%)	기 대 이	준 비 금 리 ⁹⁾	단 기 프 라 인 레 이 트	장 기 프 라 인 레 이 트	생	출	재	제조업 가동률	소 매 판 매	민 간 계 수 액 ¹⁰⁾		민 간 계 수 액
						산	하	고					
2007	0.2	0.75	1.875	2.30	2.8	3.1	1.7	103.7	△0.1	△3.6	16.4	15,308	
2008	0.7	0.30	1.675	2.40	△3.3	△3.2	2.6	99.3	0.4	△4.9	11.3	8,860	
2009	1.8	0.30	1.475	1.65	△21.9	△21.3	△8.9	74.0	△2.3	△28.0	△2.9	10,546	
2010	2.1	0.30	1.475	1.60	16.5	16.6	△1.2	89.0	2.6	7.7	△14.8	10,229	
2010.6	2.2	0.30	1.475	1.45	△1.5	△0.1	0.6	88.9	3.3	1.4	△0.4	9,383	
7	2.1	0.30	1.475	1.45	0.3	0.0	△0.2	88.5	3.8	4.1	2.9	9,537	
8	2.1	0.30	1.475	1.40	△0.1	△0.3	0.4	88.5	4.3	12.8	4.7	8,824	
9	2.1	0.30	1.475	1.45	△0.8	△0.2	0.2	88.1	1.4	△14.5	△20.5	9,369	
10	2.1	0.30	1.475	1.30	△1.4	△2.4	△0.5	86.7	△0.2	0.8	8.9	9,202	
11	2.0	0.30	1.475	1.40	1.6	2.9	△1.7	88.2	1.5	2.8	△2.4	9,937	
12	1.8	0.30	1.475	1.60	2.4	1.3	1.6	90.2	△2.1	△1.3	7.7	10,229	
2011.1	1.8	0.30	1.475	1.50	0.0	△0.8	3.9	91.1	0.1	4.0	△10.2	10,238	
2	1.8	0.30	1.475	1.65	1.8	3.3	1.5	93.7	0.1	1.7	21.8	10,624	
3	1.9	0.30	1.475	1.60	△15.5	△14.6	△4.2	73.6	△8.3	1.0	△1.4	9,755	
4	2.1	0.30	1.475	1.70	1.6	△2.6	0.5	72.8	△4.8	△3.3	33.5	9,850	
5	2.1	0.30	1.475	1.55	6.2	5.3	5.6	82.1	△1.3	3.0	20.2	9,694	
6	2.3	0.30	1.475	1.50	3.8	8.1	△2.8	86.4	1.2	7.7	13.1	9,816	
7	2.3	0.30	1.475	1.50	-	-	-	-	0.7	-	-	9,833	

주 : 최근 수치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 1) () 안은 전년동기대비 2) 재무성발표 외환보유액 3) 동경시장 현저자가 기준 4) () 안은 12월의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는 2005년=100, 생산자물가는 국내상품 기준 5) 계절변동조정 후 6) 제조업2005년=100 7) M3 (구M2+CD) = 현금통화 + 요구불예금 + 준통화 + 양도성예금기준, 2008.6.9개편, 평균기준 8) 2006년 8월 11일자로 일본은행이 종전의 공정보험을 2001년 이후부터 소급하여 「기준환율을 및 기준대출이율」로 명칭 변경 9) 광공업 2005년=100, 10) 선박 및 전력용 기계 제외 11) 일경평균주가, 기말기준, 자료: 일본은행, 내각부, 재무성, 경제산업성 등

(유로지역)

연월중	GDP 성장률	1인당 GDP ¹⁾	무 역 ^{2) 3)}				경상 수지 ³⁾	대외 준비 ⁴⁾ (기말)	대미달러 환율		물 가 ⁵⁾		실업률 ⁶⁾ (%)
			수출(FOB)		수입(CIF)				기말	평균	생산자	소비자	
			억유로	전기대비 (%)	억유로	전기대비 (%)							
2007	2.9	32,454	15,062	8.6	14,982	6.4	72	5,114	1,459	1,371	2.7	2.1	7.6
2008	0.4	33,137	15,637	3.8	16,176	8.0	△1,439	5,208	1,398	1,471	5.9	3.3	7.7
2009	△4.1	31,963	12,799	△18.1	12,663	△21.7	△275	6,661	1,432	1,394	△4.9	0.3	9.6
2010	1.8	32,696	15,347	19.9	15,461	22.1	△432	7,895	1,338	1,326	2.9	1.6	10.1
2010.6			1,320	6.5	1,355	5.9	△31	7,157	1,217	1,221	3.1	1.5	10.2
7			1,319	△0.1	1,333	△1.6	△33	6,977	1,305	1,280	4.0	1.7	10.2
8	0.4	-	1,328	0.7	1,358	1.9	△25	7,268	1,269	1,290	3.6	1.6	10.1
9			1,333	0.4	1,326	△2.3	△22	7,537	1,363	1,309	4.3	1.9	10.1
10			1,345	0.9	1,319	△0.6	△31	7,698	1,395	1,390	4.3	1.9	10.2
11	0.3	-	1,353	0.6	1,382	4.8	△68	7,767	1,298	1,364	4.6	1.9	10.1
12			1,350	△0.2	1,367	△1.1	△76	7,895	1,315	1,323	5.4	2.2	10.0
2011.1			1,405	4.1	1,441	5.4	△48	7,699	1,363	1,344	5.9	2.3	10.0
2	0.8	-	1,426	1.4	1,448	0.5	△74	7,991	1,338	1,368	6.6	2.4	10.0
3			1,441	1.1	1,455	0.4	△37	8,192	1,417	1,402	6.8	2.7	9.9
4			1,437	△0.2	1,462	0.5	△54	8,495	1,480	1,447	6.8	2.8	9.9
5	0.2	-	1,458	1.5	1,466	0.3	△56	8,527	1,439	1,432	6.2	2.7	9.9
6			1,390	△4.7	1,407	△4.1	△74	-	1,450	1,439	5.9	2.7	9.9
7			-	-	-	-	-	-	1,440	1,430	-	2.5	-

연월중	통화 M3 ⁷⁾ 전년동기대비(%)	금 리(연%,기말)					산업생산			수요관련지표		주가지수 ¹¹⁾	
		초단기 여신 금리	초단기 수신 금리	단기공채 시장조작 금리	EURIBOR ⁸⁾	장기 국채 수익률 ⁹⁾	전산업 ¹⁰⁾	제조업		건설업	소매 판매액		신규차량 등록수
								전기대비(%)					
2007	11.2	5.00	3.00	4.00	4.68	4.38	3.9	4.3	1.3	1.7	△0.9	2,867.3	
2008	9.5	3.00	2.00	2.50	2.89	3.69	△1.6	△1.8	△5.5	△0.7	△8.2	2,447.6	
2009	3.0	1.75	0.25	1.00	0.66	3.76	△14.7	△15.8	△7.9	△2.4	3.9	2,965.0	
2010	0.6	1.75	0.25	1.00	0.94	3.36	7.5	7.9	△7.7	0.8	△8.9	2,792.8	
2010.6	0.3	1.75	0.25	1.00	0.71	3.03	0.4	0.6	10.3	△0.3	△13.7	2,573.3	
7	0.2	1.75	0.25	1.00	0.83	3.01	△0.1	△0.3	△10.5	0.3	△17.4	2,742.1	
8	1.1	1.75	0.25	1.00	0.83	2.48	1.2	1.3	0.7	△0.1	△18.7	2,623.0	
9	1.1	1.75	0.25	1.00	0.85	2.67	△0.7	△1.0	△1.6	△0.2	△12.5	2,747.9	
10	1.1	1.75	0.25	1.00	0.99	2.86	0.9	1.1	0.6	0.0	△15.1	2,845.0	
11	2.1	1.75	0.25	1.00	0.97	3.11	1.4	1.4	△1.1	△0.1	△9.6	2,651.0	
12	1.7	1.75	0.25	1.00	0.94	3.36	0.1	0.7	△2.5	△0.3	△7.2	2,792.8	
2011.1	1.6	1.75	0.25	1.00	1.02	3.49	0.1	0.6	4.0	0.2	△3.2	2,953.6	
2	2.1	1.75	0.25	1.00	1.05	3.49	0.5	1.2	△0.5	0.2	0.4	3,013.1	
3	2.2	1.75	0.25	1.00	1.18	3.66	△0.1	△0.5	△0.2	△0.8	△4.3	2,910.9	
4	1.9	2.00	0.50	1.25	1.35	3.55	0.2	0.2	1.1	0.7	△0.1	3,011.3	
5	2.3	2.00	0.50	1.25	1.38	3.37	0.2	0.2	0.1	△1.3	△1.0	2,861.9	
6	1.9	2.00	0.50	1.25	1.49	3.41	△0.7	△1.1	-	0.9	△3.5	2,848.5	
7	2.0	2.25	0.75	1.50	1.56	-	-	-	-	-	-	2,670.4	

주 : 월별 및 분기별 증감률은 계절변동조정 후 기준, 최근 수치에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IMF 자료 2) 역내교역체외 3) 계절변동 조정후 4) 유럽중앙은행 및 회원국 중앙은행의 대외준비자산(금+SDR+IMF포지션+외환) 5) 생산자물가는 건설업 제외, 소비자물가는 종합소비자물가지수(HICP) 기준 6) ILO 기준, 계절변동 조정후 7) 현금통화+요구불예금+만기 2년 이내의 정기예금+통지기간 3개월 이내의 통지예금+환매채+만기 2년 이내의 채무증서+투자신탁+단기금융상품, 말잔기준 8) 3개월 만기 9)10년 만기 10) 건설업 제외 11) Dow Jones EURO STOXX 50 Index, 기말기준

자료 : Monthly Bulletin(European Central Bank), Reuters

(독 일)

연월중	GDP 성장률	1인당 GDP ¹⁾ 미달러	무 역 ²⁾				경상수지 ²⁾ 억유로	대 외 준 비 (기말) ³⁾ 억달러	물 가 ²⁾	
			수출(FOB)		수입(CIF)				생산자 ⁴⁾	소비자
			억유로	전기대비 (%)	억유로	전기대비 (%)				
2007	2.7	40,570	9,685	8.4	7,719	5.1	1,812	1,362	1.3	2.3
2008	1.0	44,525	9,817	1.4	8,051	4.3	1,548	1,380	5.5	2.6
2009	△4.7	40,832	8,017	△18.3	6,639	△17.5	1,337	1,808	△4.2	0.3
2010	3.6	40,512	9,468	18.1	7,949	19.7	1,411	2,165	1.6	1.1
2010.6			819	2.3	704	1.4	134	1,975	1.7	0.9
7	0.8	-	813	△0.8	688	△2.3	104	1,898	3.7	1.2
8			811	△0.2	689	0.2	57	1,982	3.2	1.0
9			836	3.0	681	△1.2	155	2,053	3.9	1.3
10	0.5	-	825	△1.3	681	0.1	140	2,096	4.3	1.3
11			828	0.5	709	4.1	136	2,126	4.4	1.5
12			833	0.5	691	△2.6	189	2,165	5.3	1.7
2011.1	1.3	-	825	△0.9	707	2.4	70	2,080	5.7	2.0
2			847	2.7	735	3.9	87	2,173	6.4	2.1
3			909	7.2	758	3.1	196	2,221	6.2	2.1
4	0.1	-	858	△5.6	739	△2.5	90	2,343	6.4	2.4
5			896	4.4	767	3.8	67	2,342	6.1	2.3
6			885	△1.2	770	0.3	119	-	5.6	2.3
7			-	-	-	-	-	-	5.8	2.4

연월중	실업률 (%) ⁵⁾	금 리(연%, 기말)		산업생산(전기대비, %)			수요관련지표(전기대비, %)			주가지수 ⁸⁾
		단기국채 수익률 ⁶⁾	장기국채 수익률 ⁷⁾	전산업	제조업	건설업	소 매 판매액	자본재 수	건설수주	
2007	9.0	3.66	4.31	6.1	6.9	3.0	△1.2	11.9	4.5	8,067.3
2008	7.8	0.86	2.95	0.0	0.3	△0.5	△0.1	△8.9	△4.3	4,810.2
2009	8.2	0.28	3.39	△16.4	△17.3	△0.1	△2.7	△25.0	△7.0	5,957.4
2010	7.7	0.31	2.96	10.7	11.5	0.2	1.0	24.1	1.1	6,914.2
2010.6	7.7	0.16	2.58	△0.6	0.0	△0.3	0.1	6.7	△2.8	5,965.5
7	7.6	0.22	2.67	0.6	0.3	0.8	0.0	△5.1	5.1	6,148.0
8	7.6	0.21	2.12	1.3	1.7	0.3	△0.6	7.5	△1.5	5,925.2
9	7.5	0.36	2.28	△0.4	△0.4	△0.1	△0.3	△5.2	△2.8	6,229.0
10	7.5	0.55	2.52	2.4	2.3	2.4	0.3	2.1	4.9	6,601.4
11	7.4	0.41	2.67	△0.1	△0.1	△0.9	△1.3	8.0	△4.7	6,688.5
12	7.4	0.31	2.96	0.5	0.1	△24.1	0.5	△4.7	△5.6	6,914.2
2011.1	7.4	0.49	3.16	0.2	0.6	33.9	1.5	1.5	7.6	7,077.5
2	7.3	0.44	3.17	1.3	1.5	3.0	△0.4	3.6	8.7	7,272.3
3	7.2	0.75	3.35	1.0	1.1	4.3	△0.9	△5.3	1.9	7,041.3
4	7.1	0.81	3.24	△0.3	0.1	△3.2	0.1	4.8	△3.2	7,514.5
5	7.1	0.84	3.02	1.0	1.4	△0.2	△1.7	2.0	1.1	7,293.7
6	7.0	0.98	3.03	△0.8	△0.9	△4.5	4.5	5.0	△6.4	7,376.2
7	7.0	0.61	2.54	-	-	-	-	-	-	7,158.8

주 : 월별 및 분기별 증감률은 계절변동조정 후 기준, 최근 수치에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IMF 자료 2) 계절변동 조정 후, 경상수지는 조정 전 3) 연방은행의 대외준비자산(금+외환+SDR+IMF포지션+유럽통화협력기금에 대한 출연금 및 대여금) 4) 공산품 기준 5) 계절변동조정 후 6) 3개월 만기 7) 10년 만기 8) DAX Index(1987. 12. 30 = 1,000), 기말기준

자료 : Monthly Bulletin(Deutsche BundesBank),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IMF), Main Economic Indicators(OECD)

(영 국)

연월중	GDP 성장률	1인당 GDP ¹⁾ 미달러	무 역				경상 수지	대외 준비 ²⁾ (기말)	대미달러 율		실업률 ⁴⁾
			수출(FOB)		수입(CIF)				환		
			억파운드	전기대비 (%)	억파운드	전기대비 (%)			기말	평균	
2007	2.7	46,118	2,209	△9.3	3,106	△2.9	△365	573	1,9847	2,0016	5.4
2008	△0.1	43,652	2,521	14.1	3,452	11.1	△238	530	1,4626	1,8524	5.6
2009	△4.9	35,257	2,276	△9.7	3,100	△10.2	△239	667	1,6154	1,5666	7.5
2010	1.6	36,298	2,653	16.5	3,641	17.4	△362	824	1,5599	1,5455	7.9
2010,6			228	4.6	302	1.6		736	1,5034	1,4759	7.8
7			224	△2.1	309	2.6		750	1,5682	1,5298	7.8
8	0.6	-	222	△0.5	309	△0.2	△120	752	1,5342	1,5650	7.8
9			222	△0.4	308	△0.3		803	1,5711	1,5570	7.7
10			230	3.6	314	1.9		799	1,6038	1,5857	7.9
11	△0.5	-	234	1.9	323	3.0	△130	789	1,5551	1,5953	7.9
12			236	0.8	335	3.6		824	1,5599	1,5598	7.9
2011,1			250	6.0	326	△2.4		860	1,5846	1,5846	7.9
2	△0.5	-	250	0.3	319	△2.3	△94	875	1,6256	1,6134	7.8
3			246	△1.7	323	1.3		897	1,6031	1,6158	7.7
4			246	△0.1	318	△1.5		946	1,6701	1,6383	7.7
5	0.2	-	252	2.6	337	5.8	-	931	1,6471	1,6337	7.7
6			240	△4.8	329	△2.4		-	1,6047	1,6218	7.9
7			-	-	-	-		-	1,6418	1,6149	-

연월중	물 가		통 화	금리(기말, 연%)		산업생산		수요관리지표		10) 주가지수
	생산자 ⁵⁾	소비자	M ⁷⁾	정책금리 ⁸⁾	장기국채 수익률 ⁹⁾	전산업	제조업	소 매 판매량	기업투자	
	전년동기대비(%)					전기대비(%)				
2007	1.9	2.3	12.9	5.50	4.47	0.1	0.5	4.1	8.1	6,456.9
2008	7.2	3.6	12.3	2.00	3.94	△3.1	△2.8	0.8	△1.9	4,434.2
2009	1.6	2.2	13.4	0.50	4.47	△10.1	△10.7	△0.7	△19.9	5,412.9
2010	4.2	3.3	2.0	0.50	4.13	2.1	3.5	1.6	△19.8	5,899.9
2010,6	4.4	3.2	2.9	0.50	4.12	△0.6	0.2	0.5		4,916.9
7	4.2	3.1	2.2	0.50	4.22	0.1	0.3	0.5		5,258.0
8	4.2	3.1	1.8	0.50	3.70	0.3	0.3	△0.1	4.7	5,225.2
9	3.8	3.1	1.1	0.50	3.77	0.3	0.1	△0.4		5,548.6
10	4.0	3.2	△0.7	0.50	4.01	△0.2	0.7	0.3		5,675.2
11	4.1	3.3	△1.2	0.50	4.14	0.6	0.4	0.0	2.1	5,528.3
12	4.2	3.7	△1.6	0.50	4.13	0.4	△0.2	△0.5		5,899.9
2011,1	5.0	4.0	△1.8	0.50	4.39	0.3	0.8	1.0		5,862.9
2	5.3	4.4	△1.5	0.50	4.33	△1.4	△0.1	△1.3	△3.2	5,994.0
3	5.6	4.0	△1.3	0.50	4.31	0.2	0.1	0.1		5,908.8
4	5.6	4.5	△1.0	0.50	4.11	△1.8	△1.6	1.2		6,069.9
5	5.4	4.5	△0.3	0.50	4.04	0.8	1.8	△1.5	-	5,990.0
6	5.7	4.2	△0.7	0.50	4.19	0.0	△0.4	1.0		5,945.7
7	5.9	4.4	-	0.50	3.87	0	-	0.2		5,815.2

주 : 월별 및 분기별 전년대비 증감률은 계절변동조정 후 기준, 최근 수치에는 잠정치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IMF 자료 2) 금+외환+SDR+IMF포지션+유럽통화협력금에 대한 출연금 및 대여금 3) Reuters 기준 환율 4) 실업수당신청자 기준, 계절변동조정후 5) 제조업 산출물가 기준 6) 화폐발행액+은행의 자금결제용 영란은행 예치금, 평잔기준, 연간은 당해년도 12월의 전년동월대비 7) 민간화폐보유액+파운드화표시 민간부문요구불예금+파운드화표시 민간부문정기예금(CD 포함)+(민간보유 주택대출조합의 주식 예금 및 CD-주택대출조합보유 은행예금, CD 및 현금), 말잔기준 8) 영란은행 RP 금리 9) 20년만기 10) FTSE 100 Index(1984.1.3=1,000), 기말기준

자료 : Monthly Digest of Statistics(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IMF), Main Economic Indicators(OECD)

(대 만)

연월중	GDP 성장률	1인당 GDP	무 역			경 상 수	대외준비 ¹⁾ (기말)	대미달러 환 율 ²⁾ (NT\$/US\$)		실업률 (%)	
			수출(FOB)		수입(CIF)			기 말	평 균		
			백 만 미달러	전년동기 대비(%)	백 만 미달러						전년동기 대비(%)
2007	6.0	17,123	246,680	10.1	219,250	8.2	35,154	270,310	32.42	32.84	3.9
2008	0.7	17,480	255,620	3.6	240,450	9.7	27,505	291,710	32.76	31.53	4.1
2009	△1.9	16,372	203,680	△20.3	174,390	△27.5	42,911	348,200	31.95	32.25	5.8
2010	10.8	18,304	274,650	34.9	251,400	44.2	39,900	382,010	29.17	29.86	5.2
2010.6			22,720	34.1	21,180	39.4		362,380	32.27	32.20	5.2
7			23,900	38.5	21,750	42.7		370,110	31.95	32.10	5.2
8	10.7	-	24,050	26.6	21,790	28.0	9,104	372,060	32.02	31.88	5.2
9			22,400	17.5	20,630	25.0		380,510	31.19	31.19	5.1
10			24,190	21.9	21,210	27.9		383,840	30.60	30.81	4.9
11	7.1	-	24,370	21.8	23,960	33.8	9,248	379,260	30.47	30.31	4.7
12			22,830	19.1	22,230	21.4		382,010	29.17	29.86	4.7
2011.1			25,350	16.6	23,470	22.0		387,110	29.03	29.11	4.6
2	6.2	-	21,250	27.3	20,330	28.7	10,752	390,690	29.75	29.29	4.7
3			27,250	16.7	25,480	16.7		392,630	29.40	29.49	4.5
4			27,320	24.6	24,360	25.7		399,540	28.67	28.98	4.3
5	5.0	-	27,880	9.5	26,650	19.3	9,015	398,680	28.64	28.73	4.3
6			25,170	10.8	23,790	12.5		400,330	28.77	28.80	4.4
7			28,120	17.6	24,770	14.0		400,770	28.87	28.82	4.4

연월중	물 가 ³⁾		노 동 생산성 ⁴⁾	통 화 ⁵⁾		금리(기말, 연%)		산 업 생 산 ⁷⁾		소매 판매	주가지수 ⁸⁾
	생산자	소비자		M1B	M2	재할인율	프라이머이 레이트 ⁶⁾	전산업	제조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기대비(%)					
2007	6.5(8.6)	1.8(3.3)	7.1	6.5	4.3	3.375	4.313	7.4	7.9	3.5	8,506.28
2008	5.3(△9.7)	3.5(1.3)	△1.3	△2.9	2.7	2,000	4,205	△1.0	△0.7	△1.0	4,591.22
2009	△8.5(5.8)	△0.9(△0.3)	0.1	16.7	7.2	1,250	2,563	△5.7	△5.3	1.6	8,188.11
2010	5.5(2.3)	1.0(1.2)	17.5	15.3	4.6	1,625	2,676	28.5	30.4	6.8	8,972.50
2010.6	7.0	1.2	17.9	13.2	3.8	1,375	2,568	24.9	26.8	7.4	7,329.37
7	5.3	1.3	13.1	12.5	4.1	1,375	2,592	21.1	22.6	8.8	7,760.63
8	3.3	△0.5	10.6	12.3	4.6	1,375	2,628	23.5	24.8	7.1	7,616.28
9	3.8	0.3	9.3	12.2	4.7	1,375	2,628	12.1	13.0	8.3	8,237.78
10	3.7	0.6	10.5	10.1	4.8	1,500	2,648	14.4	15.2	7.9	8,287.09
11	2.4	1.5	9.8	9.2	5.2	1,500	2,672	19.6	20.2	5.7	8,372.48
12	2.3	1.2	13.6	8.8	5.1	1,625	2,676	18.9	19.7	3.1	8,972.50
2011.1	2.0	1.1	10.5	9.4	5.6	1,625	2,688	17.4	17.5	22.9	9,145.35
2	3.8	1.3	13.0	9.4	6.0	1,625	2,718	12.9	15.1	△0.9	8,599.65
3	5.8	1.4	10.2	9.2	6.0	1,625	2,718	13.7	14.3	8.7	8,683.30
4	4.6	1.3	10.0	8.2	5.9	1,750	2,730	7.2	7.4	6.8	9,007.87
5	3.4	1.7	3.0	8.0	6.1	1,750	2,766	7.6	7.5	3.9	8,988.84
6	3.9	1.9	1.6	8.1	6.0	1,750	2,784	3.8	3.7	6.2	8,652.59
7	4.0	1.3	-	7.6	6.2	1,875	2,807	3.9	3.7	5.5	8,644.18

주 : 최근 수치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외환보유액 2) Reuters 고시환율 3) ()안은 12월의 전년동월대비 4) 제조업 5) M1B = 현금통화+당좌예금+보통예금+보통저축예금, M2 = M1B+정기예금+외화예금+우편예금+환매거래잔액+외국인보유 현금, 평균기준 6) 대만은행 7) 산업생산 2006=100 8) 가권지수(1966=100), 기말기준

자료 : 금융통계월보(대만 중앙은행), Monthly Bulletin of Statistics(Bureau of Statistics)

대만행정원 주계처, 중화민국대만지구 국민경제동향통계계보 각호, Reuters Business Briefing

나. 주요국가의 GDP규모

(십억달러)

기간중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브라질	이탈리아	캐나다	인도	러시아
1990	5,801	390	3,058	1,547	1,249	1,018	508	1,136	583	326	-
1991	5,992	409	3,485	1,815	1,249	1,059	445	1,199	598	289	-
1992	6,342	488	3,796	2,067	1,374	1,098	427	1,272	580	292	86
1993	6,667	613	4,350	2,006	1,292	983	479	1,023	564	285	184
1994	7,085	559	4,779	2,151	1,366	1,061	597	1,055	564	324	277
1995	7,415	728	5,264	2,525	1,572	1,157	770	1,127	591	368	313
1996	7,838	856	4,643	2,439	1,574	1,221	840	1,260	614	379	392
1997	8,332	953	4,262	2,163	1,426	1,359	872	1,194	638	424	405
1998	8,793	1,019	3,857	2,187	1,474	1,456	841	1,219	617	428	271
1999	9,354	1,083	4,369	2,146	1,458	1,503	573	1,202	661	457	196
2000	9,951	1,198	4,667	1,906	1,333	1,481	642	1,101	725	480	260
2001	10,286	1,325	4,095	1,893	1,341	1,471	553	1,118	715	491	307
2002	10,642	1,454	3,918	2,024	1,463	1,615	500	1,223	735	514	345
2003	11,142	1,641	4,229	2,447	1,804	1,863	556	1,510	866	595	430
2004	11,868	1,932	4,606	2,749	2,061	2,204	666	1,730	992	690	591
2005	12,638	2,257	4,552	2,793	2,148	2,283	890	1,781	1,134	810	764
2006	13,399	2,713	4,363	2,921	2,270	2,448	1,093	1,865	1,279	908	990
2007	14,062	3,494	4,378	3,334	2,599	2,812	1,378	2,119	1,424	1,152	1,300
2008	14,369	4,520	4,880	3,652	2,865	2,679	1,655	2,307	1,499	1,259	1,660
2009	14,119	4,991	5,033	3,339	2,656	2,182	1,601	2,117	1,336	1,269	1,222
2010	14,658	5,878	5,459	3,316	2,583	2,247	2,090	2,055	1,574	1,538	1,465
기간중	스페인	호주	멕시코	한국	네덜란드	터키	인도네시아	스위스	폴란드	벨기에	스웨덴
1990	521	328	288	270	296	202	126	238	62	203	243
1991	561	328	345	316	304	203	141	241	80	209	256
1992	613	321	400	338	337	214	153	251	89	232	265
1993	515	312	491	372	328	242	175	244	90	222	202
1994	517	356	513	436	352	174	195	270	104	243	218
1995	597	382	335	531	419	228	223	316	139	285	254
1996	623	428	387	573	418	244	251	305	157	275	276
1997	573	428	468	532	387	255	238	265	157	250	253
1998	602	382	487	358	403	269	105	273	172	256	255
1999	619	414	566	462	412	250	155	268	168	254	259
2000	582	401	672	533	386	266	166	250	171	233	247
2001	610	379	710	505	401	196	161	255	190	232	227
2002	689	426	706	576	439	232	196	279	198	253	251
2003	885	543	700	644	539	303	235	325	217	312	315
2004	1,046	659	760	722	611	392	257	363	253	361	362
2005	1,132	738	849	845	640	483	286	372	304	378	371
2006	1,236	784	952	952	678	529	364	391	342	400	399
2007	1,444	954	1,035	1,049	784	649	432	434	425	459	463
2008	1,601	1,061	1,096	931	877	730	511	502	529	507	486
2009	1,468	988	882	833	797	614	538	492	431	472	404
2010	1,410	1,236	1,039	1,007	783	742	707	524	469	466	456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1.4)

다. 주요국가의 1인당 GDP

(달러)

기간중	호주	미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1990	19,076	23,198	21,089	24,774	22,017	19,610	17,782	20,029	13,408	9,073
1991	18,877	23,648	21,374	28,119	21,926	22,713	18,441	21,130	14,402	9,702
1992	18,269	24,700	20,460	30,523	24,006	25,703	19,073	22,403	15,691	10,581
1993	17,583	25,629	19,674	34,864	22,484	24,796	17,026	17,998	13,140	9,802
1994	19,840	26,907	19,492	38,196	23,694	26,459	18,343	18,558	13,150	10,383
1995	20,999	27,827	20,179	41,969	27,183	30,935	19,947	19,819	15,164	12,078
1996	23,234	29,077	20,757	36,930	27,131	29,807	20,990	22,164	15,772	12,677
1997	23,025	30,541	21,345	33,821	24,495	26,396	23,312	20,985	14,486	12,312
1998	20,321	31,858	20,475	30,527	25,245	26,676	24,902	21,416	15,146	12,323
1999	21,728	33,502	21,775	34,512	24,854	26,166	25,610	21,128	15,496	12,639
2000	20,804	35,252	23,653	36,800	22,574	23,220	25,142	19,334	14,464	11,662
2001	19,419	36,065	23,100	32,214	22,551	23,039	24,891	19,633	14,971	11,950
2002	21,566	36,950	23,467	30,756	24,434	24,591	27,219	21,463	16,812	13,446
2003	27,140	38,324	27,402	33,134	29,922	29,698	31,277	26,344	21,250	17,693
2004	32,560	40,451	31,104	36,059	33,928	33,366	36,821	29,887	24,694	20,860
2005	35,910	42,681	35,205	35,633	35,105	33,922	37,898	30,460	26,305	21,936
2006	37,581	44,823	39,302	34,150	36,858	35,513	40,399	31,746	28,244	23,931
2007	44,848	46,577	43,307	34,268	41,939	40,570	46,118	35,840	32,468	28,009
2008	48,828	47,155	45,068	38,216	45,987	44,525	43,652	38,701	35,364	31,308
2009	44,999	45,934	39,683	39,459	42,410	40,832	35,315	35,251	32,030	29,328
2010	55,590	47,284	46,215	42,820	41,019	40,631	36,120	34,059	30,639	27,302
기간중	한국	대만	브라질	러시아	터키	멕시코	남아공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1990	6,308	8,086	3,464	-	3,860	3,458	3,039	341	699	378
1991	7,289	8,973	2,986	-	3,790	4,069	3,192	353	770	329
1992	7,730	10,573	2,814	575	3,915	4,633	3,390	417	822	325
1993	8,422	11,029	3,108	1,237	4,366	5,578	3,316	517	923	311
1994	9,757	11,932	3,815	1,865	3,094	5,732	3,382	467	1,017	346
1995	11,779	12,865	4,845	2,114	3,960	3,675	3,685	601	1,144	386
1996	12,587	13,376	5,207	2,642	4,167	4,181	3,439	699	1,264	390
1997	11,582	13,740	5,321	2,749	4,278	4,982	3,495	771	1,184	429
1998	7,724	12,546	5,060	1,853	4,434	5,118	3,100	817	516	425
1999	9,906	13,535	3,396	1,346	4,044	5,862	3,029	861	746	445
2000	11,347	14,641	3,751	1,775	4,245	6,859	2,986	946	807	460
2001	10,655	13,108	3,180	2,096	3,064	7,118	2,633	1,038	773	463
2002	12,094	13,370	2,836	2,377	3,582	6,991	2,445	1,132	928	477
2003	13,451	13,738	3,104	2,968	4,603	6,865	3,656	1,270	1,100	543
2004	15,029	14,986	3,665	4,100	5,862	7,374	4,723	1,486	1,188	620
2005	17,551	16,023	4,832	5,348	7,108	8,163	5,267	1,726	1,300	716
2006	19,707	16,451	5,893	6,962	7,767	9,077	5,511	2,064	1,636	791
2007	21,653	17,123	7,345	9,153	9,422	9,786	5,973	2,645	1,916	989
2008	19,162	17,372	8,729	11,701	10,484	10,270	5,661	3,404	2,237	1,065
2009	17,074	16,326	8,360	8,614	8,711	8,203	5,758	3,739	2,327	1,058
2010	20,591	18,458	10,816	10,437	10,399	9,566	7,158	4,382	3,015	1,265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1.4)

라. 국제금리, 국제원유 및 1차상품가격

(기말)

	금 리 (%)			현물유가 (달러/BBL)			Reuter 지 수 (기간평균)
	LIBOR\$ (3개월물)	미우대금리	T/Bill (3개월)	Dubai	WTI	Brent	
1996	5.56	8.25	5.17	22.21	25.80	24.48	2,013.4
1997	5.81	8.50	5.35	15.04	17.71	16.53	1,918.1
1998	5.07	7.75	4.45	10.68	12.16	11.04	1,581.2
1999	6.00	8.50	5.33	22.76	25.71	25.21	1,360.4
2000	6.40	9.50	5.90	20.52	26.75	23.54	1,386.3
2001	1.88	4.75	1.73	17.91	20.88	20.44	1,246.1
2002	1.38	4.25	1.19	26.75	31.25	30.01	1,370.2
2003	1.15	4.00	0.92	28.40	32.46	30.18	1,493.5
2004	2.56	5.25	2.21	34.15	43.32	39.91	1,618.9
2005	4.54	7.25	4.07	53.49	61.17	58.33	1,679.6
2006	5.36	8.25	5.01	56.71	61.17	58.68	2,019.4
2007	4.70	7.25	3.24	83.90	95.97	96.28	2,398.5
2008	1.43	3.25	0.11	36.45	44.61	36.57	2,535.6
2009	0.25	3.25	0.07	78.04	79.35	78.00	2,078.7
2010	0.30	3.25	0.13	88.80	91.38	93.72	2,552.6
2009. 5	0.66	3.25	0.14	63.86	66.35	64.93	2,099.4
6	0.60	3.25	0.20	71.85	69.08	68.09	2,117.6
7	0.48	3.25	0.19	67.78	69.13	69.96	2,082.0
8	0.35	3.25	0.14	70.36	69.39	73.14	2,158.6
9	0.29	3.25	0.12	65.33	70.28	65.83	2,146.7
10	0.28	3.25	0.06	77.09	76.95	75.19	2,196.9
11	0.26	3.25	0.06	77.71	77.63	76.61	2,244.5
12	0.25	3.25	0.07	78.04	79.35	78.00	2,293.8
2010. 1	0.25	3.25	0.08	71.59	72.89	71.46	2,342.5
2	0.25	3.25	0.13	74.29	79.66	73.87	2,290.2
3	0.27	3.25	0.16	78.71	83.43	80.30	2,269.1
4	0.35	3.25	0.16	85.78	86.15	85.78	2,329.4
5	0.54	3.25	0.17	73.32	74.18	73.31	2,273.4
6	0.53	3.25	0.18	73.14	75.77	74.98	2,285.0
7	0.45	3.25	0.15	73.75	78.53	78.64	2,599.5
8	0.30	3.25	0.14	72.76	71.80	75.69	2,686.6
9	0.29	3.25	0.16	77.24	79.95	81.62	2,764.5
10	0.29	3.25	0.12	79.86	81.39	82.89	2,824.3
11	0.30	3.25	0.17	84.53	84.82	86.02	2,951.9
12	0.30	3.25	0.13	88.80	91.40	93.72	3,118.7
2011. 1	0.30	3.25	0.16	94.57	92.22	100.14	3,228.2
2	0.31	3.25	0.14	107.41	97.04	112.23	3,322.8
3	0.30	3.25	0.10	109.40	106.74	117.14	3,221.4
4	0.27	3.25	0.05	118.35	113.81	125.76	3,245.8
5	0.25	3.25	0.06	109.66	102.61	116.81	3,128.4
6	0.25	3.25	0.02	106.75	95.18	111.98	3,142.5
7	0.26	3.25	0.10	111.10	95.78	116.23	3,145.2
8	0.33	3.25	0.02	109.73	88.82	115.91	3,038.4

● 本書의 發刊을 위하여 協助하여 주신 人士 ●

남병훈(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정규삼(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박지원(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김민규(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
김현영(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이진호(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강희민(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정 원(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
이미혜(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	방대성(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
김현익(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김남희(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
이승한(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강창기(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
이미희(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박지혜(기획재정부 사회정책과)
조성중(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이운호(기획재정부 사회정책과)
이근우(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	최형석(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배준형(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	조영관(기획재정부 민영화과)
정동영(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이윤범(기획재정부 제도기획과)
박은미(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이정선(기획재정부 국고과)
도종록(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	이병두(기획재정부 국유지선진화기획단)
오재우(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	김완수(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
손선영(기획재정부 국부운용과)	김영민(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

● 本書의 發刊을 위하여 協助하여 주신 人士 ●

김시동(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	문진주(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김경국(기획재정부 국토해양예산과)	윤수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김준하(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장태희(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황석채(기획재정부 사회정책과)	양순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박상운(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	방우리(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김만수(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박경찬(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정 형(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박은영(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윤충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지광철(기획재정부 거시총괄과)
이용선(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허수진(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
박성무(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서영환(기획재정부 금융협력과)
최우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장인주(기획재정부 금융협력과)
이종수(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권상원(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
이호범(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정호용(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
박수현(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염경윤(기획재정부 통상정책과)
박지훈(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김의택(기획재정부 통상조정과)

- 경제백서의 내용 중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 전화 : (02) 2150-2738, 2150-2737
- 경제백서는 정부간행물 판매센터 (02-394-0337)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0년 경제백서

2011년 9월 일 인쇄
2011년 9월 일 인쇄
편집검
발행인 기 획 재 정 부

인쇄 : 사회복지법인 흥애원 (02) 2261-1788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427-72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www.mosf.go.kr